

韓國 速記五十年史

大韓速記協會

< 속기사의 주무대 (국회의사당 변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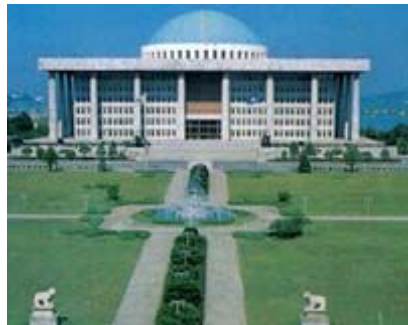
구중앙청 제헌국회의사당



부산 피난시절 임시국회의사당으로
사용했던 경상남도청내 무덕정



태평로 국회의사당



현여의도 국회의사당

발간사

우리나라의 제헌국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언 반세기동안을 議政史와 그 궤를 같이 해 온 速記界의 역사를 정리한 「韓國速記 50年史」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速記가 이 땅에 처음 도입된 이래 速記人들은 記錄文化의 기수로서 오직 진실된 歷史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번 「韓國速記 50年史」의 발간은 바로 지난 50년동안 속기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늘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여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速記界가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던 만큼 미흡한 점들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韓國速記 50年史」가 앞으로의 百年大計를 준비하며 미래의 급변하는 速記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記錄文化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끝으로 「韓國速記 50年史」를 발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당국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속기 문화의 보전이라는 일념으로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기고문과 권용태, 신세화 부회장 그리고 도움사의 유순태 회원을 비롯하여 그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1998. 12
회장 지대섭

축사

대한민국 국회개원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의 하나는 국민의 민주의식의 향상과 세계화를 향한 민족의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숭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창조의 길로 나아왔습니다.

지난 건국 반세기의 기간은 현대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격동과 파고 높은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간 속기계는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정사의 현장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기록보존하여 세계에서 몇 안되는 의정사의 전 기록물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기계가 지난 반세기의 속기문화의 발달사를 한데 모아 {한국속기 50년사}를 펴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록보국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21세기는 첨단 정보화시대로서 지나온 반세기에는 상상하지 못한 변화의 바람이 지구촌 곳곳에서 몰아쳐 올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언제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속기인들은 다시 펼쳐질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록보국의 사명은 역시 속기인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속기 5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속기계의 무궁한 발전과 전국 속기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국회의장 박준규

축사

1948년 5월30일 대한민국 국회의 개원과 함께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기 시작하며 출발한 우리 속기의 역사가 어느덧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속기 50년사]를 펴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우리 속기인들은 대한민국의 의정사를 기록.정리하는 사관으로서 기록보국의 일념으로 묵묵히 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다기화할수록 체계적인 사료의 정리와 기록물의 발간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물론, 정보화시대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대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도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국회회의록을 현재 국회 LAN망을 통하여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는 전국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까지 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때 속기사의 임무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속기계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한국속기 50년사]의 발간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시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이 시대 의정사의 산 증인으로 거듭나 정확하고 바른 사관의 임무를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속기계의 무궁한 발전과 전국 속기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12월 31일
국회사무총장 박 실

사진으로 보는 속기오십년사



부산 피난시절에 사용됐던 경상남도청 내 무덕정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발언자는 이승만 대통령(1950년 7월)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졸업식에 신익희 국회의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조봉암 부의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참석하여 속기사양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1954년 3월)



일간지에 광고한 대한속기학술협회 결성에 관한 성명서(1955.12. 13)



신문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속기협회 재창립 총회 장면. 이 창립총회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장에 이원만 의원, 부회장에 강준원·이동근을 선출(1966. 12. 10)



YMCA에서 가진 제1회 속기 무료강습회 개강식(1967. 1. 30)



제1회 속기강습회 회장인사를 대독하는 이동근 부회장(1967. 1. 30)



신문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속기협회 재창립 총회 장면. 이 창립총회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장에 이원만 의원, 부회장에 강준원.이동근을 선출(1966. 12. 10)



제2회 대한속기협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강준원 부회장(1968. 4. 27)



가칭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창립총회 당면. 이 장면에서 이원만 의원을 회장에 장기태, 이동근을 부회장에 안인영을 이사장에 각각 추대(1968. 6. 4)



국회속기사양성소 제1회수료(1969. 2. 15)



광복 25주년 기념 태평로 국회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개최된 속기전시회 개막데이프커팅 장면(왼쪽으로부터 최치환회장, 이효상 국회의장. 이동일이사장(1970.9.7~10)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지부승인의 건을 보고하고 있는 정원도 이사장(1969.12.30)



광복 25주년 기념 속기전시회 (1970.9.7~10)에 속기문자로 그려 출품된 박정희 대통령 초상화(김종수 작)



신흥사 뒷편 공터에서 실시한 제 1회 체육대회(1971.4.17)



광복 25주년 기념 속기전시회 (1970.9.7~10)에 속기문자로 그려 출품한 이효상 국회의장(채강희 작)



신임 김용태 회장이 전임 최치환 회장(오른쪽)에게 감사패 증정을 하고 있는 장면(1970년대초)



농협초급대학에서의 제4회체육대회. 축구 시합에 앞서 심판의 주의를 받도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능름하다.(1974.5.5)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인터스테노 제36차 총회에서 연설하는 박권흥 회장 (85.7.13~19)



대한속기협회 제24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권흥 회장 (1991.2.27)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속기실무워크샵(1993.6.12)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는 김기영 이사



대한속기협회 제27회 정기총회 (1994.2.19)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우혁 회장



덕수상고에서 실시한 기계속기 기능검정 장면(1995.5.14)



제2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실무세미나
(1996.11.16)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제3회 속기학술
세미나를 마친 회원들의 기념촬영
(1997.6.14~15)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1997.6.14~15)에
서 치사하고 있는 지대섭회장



1997년 9월 벨기에 리에즈에서 개최된
INTERSTENO 제 42차 2중앙위원회 회
의장면



1997년 9월 벨기에 리에즈에서 개최된
INTERSTENO 제42차 중앙위원회에 참
석한 우리 대표단이 한국총영사관 앞
에서 기념촬영(오른쪽으로부터 첫 번째가
조영기 부장, 두 번째가 지대섭회장, 다
섯 번째가 권용태 부회장, 여섯 번째가
염덕훈 이사)



1997년 9월 벨기에 리에즈에서 개최된
INTERSTENO 제42차 총회 참석후 회의
장 건물 앞에서 우리 대표단 기념촬영
(오른쪽으로부터 성천영 이사장, 김진기
고문, 황인하 기록편찬국장, 이경식 이
사)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급한 속기사 자격증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위)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1967년 5월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된 속기문화 창간호



1970년 4월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된 속기문화 창간호



1972년 3월 21일 발간된

1955년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된 속기문화 창간호

목 차

▶ 축사 1	국회의장	-----	별도
▶ 축사 2	국회사무총장	-----	별도
▶ 발간사	회 장	-----	별도
▶ 사진으로 보는	한국속기50년사	-----	별도

제1편 總 說

제1장 速記의 定義와 速記文化

1. 速記의 定義
2. 기록의 마술사 속기사와 문자의 변천
3. 速記術의 起源과 外國速記 發達史
 - 1) 速記術의 起源
 - 2) 外國速記法의 發達史

제2장 速記의 必要性和 速記士의 역할

1. 速記의 必要性
2. 현대 速記士와 조선조의 史官
3. 速記士의 용도

제3장 速記가 우리 文化에 끼친 영향

제2편 韓國速記의 발자취

제1장 速記法式的 創案과 普及

제1절 日帝下의 우리말과 非實用速記法式的 胎動

1. 日帝의 植民政策과 우리말 탄압
2. 非實用速記法式的 創案發表
 - 1) 非實用速記와 實用速記의 意義
 - 2) 海外에서 먼저 발표된 우리말 速記法
 朴如日의 朝鮮速記法
 金料奉의 날적말적기 약기법
 - 3) 국내에서 발표된 우리말 속기법
3. 日帝下 韓國人速記士의 實態

제2절 解放後 實用速記法式的 創案發表

1. 8·15解放과 實用速記法式 創案前夜
2. 활기 띤 實用速記法式 創案 發表
3. 實用速記法式別 基本文字
 - 1) 逸波式
 - 2) 高麗式
 - 3) 東邦式
 - 4) 서울식(姜駿遠式)
 - 5) 世鐘式
 - 6) 韓國式
 - 7) 南天式

제3절 초창기 速記術의 普及實態와 實用化

1. 초창기에 발족된 속기단체와 속기술의 보급실태
 - 1) 해방 직후에 발족된 속기단체
 - 2) 초창기 速記術의 보급실태
2.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의 속기업무 담당
 - 1)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開院과 速記士 채용
 - 2) 過渡立法議院時節의 速記業務 實態

第2章 國會를 무대로 한 速記界의 躍進 (1948-1961)

第1節 制憲國會的 개원과 速記士 채용

1. 制憲國會的 構成
2. 速記士 채용시험과 채용현황
3. 초창기 速記士에 대한 處遇
4. 速記業務와 速記席 배치
5. 速記錄 作成樣式
6. 최초의 국제회담 속기로 기록된 韓中 頂上會談
7. 速記錄 낭독
8. 速記士의 公傷
9. 國防部 速記學校

第2節 6.25와 速記界의 수난

1. 6.25와 國會速記士
 - 1) 釜山 피난시절의 국회운영
 - 2) 速記錄 작성 일시 중단
 - 3) 釜山 피난 시절 國會速記業務와 速記士의 생활상
 - 4) RP通信
 - 5) 速記錄은 못 고쳐...
2. 6.25동란과 직후의 速記教育
 - 1)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설립
 - 2) 陸軍高級副官學校 속기반
 - 3) 陸軍諜報部隊
 - 4) 民間 速記士養成機關
 - 5) 國會 速記士 임용

第3節 主要事件을 통해 본 速記士의 역할과 애환

1. 國民防衛軍事件
2. 居昌事件
3. 拔萃改憲 파동
4. 四捨五入改憲
5. '容共' 발언
6. 保安法 파동
6. 自由黨 시대와 民主黨 過渡政府 시절

제4절 속기사 양성소의 실태와 자격시험

1. 민간속기학원의 운영실태와 교육여건
 - 서울식(姜駿遠式)(姜駿遠 창안)
 - 逸波式(張基泰 창안)
 - 高麗式(金天漢 창안)
 - 東邦式(李東根 창안)
 - 世宗式(金世宗 창안)
 - 韓國式(舊朝鮮式)(朴松 창안)
2. 하계무료속기강좌
3. 지방의회의 속기업무 실태
4. 속기모리배의 발호
5. 파식간의 갈등 - 건의서 파동
6. 속기교육 정책의 부재

第5節 速記士 국제무대 첫 진출과 大韓速記協會 창립

1. 제네바 國際會議에 速記士 최초 파견
2. 大韓速記學術協會 창립

제6절 兩院制 실시에 따른 속기사의 입지와 회의록 작성 明文化

1. 兩院制 실시와 속기사 立地強化
2. 國會會議錄 작성 法規로 明文化

제7절 第2共和國과 5.16에 따른 속기계의 悲運

1. 第2共和國의 출범과 붕괴
2. 5.16 직후 국회해산과 國會 速記士
3. 직장 잃은 速記士들 전직 사태
4. 中央情報部 速記士
5. 軍事政權下에서도 史官으로서의 命脈 유지

제3장 민정이양과 제3공화국의 출범

제1절 제3공화국 의정활동과 주요 속기록

1. 민정으로의 이행과 혁명의 정당성 논란
 - 1) 제6대 국회개원
 - 2) 오오노(大野)망언과 대통령 출석요구
 - 3) 대통령 연두교서와 야당 기조연설파문
2. 三粉暴利事件에 관한 질문
3. 4대의혹사건을 추궁한 1964년도 국정감사 및 그 기록의 보관상태
4. 언론법 파동
 - 1) 언론법 통과와 그 여파
 - 2) 언론법 국회내 논쟁의 전개
5. 韓日會談 추진과 6·3사태
6. 한비밀수사건과 국회 오물사건
7. 꼭두새벽 별관에서 통과시킨 憲法改正案
8.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기록과 보존

제2절 1970년대의 速記界 활동

1. 《速記界》의 창간
2. 각급학교 및 사회단체에 대한 속기강좌와 속기무료강습
 - 1) 속기강좌
 - 2) 속기무료강습
3. 문화공보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4. 속기자격검정시험과 속기경기대회
 - 1) 속기자격검정시험
 - 2) 속기경기대회
5. 협회마크의 제정
6. 남북적십자회담과 속기
7. 여성속기사의 증가
8. 국회속기사의 법원 진출
9. 속기전시회
 - 1) 제3회 속기전시회
 - 2) 제4회 속기전시회
10. 속기과의 세대교체

제3절 국회속기사양성소 설립과 무료속기강습(홍기표)

1. 국회속기사양성소 설립
 - 1) 설립배경
 - 2) 기구 및 운영
 - 3) 교육방식의 전환
 - 4) 국회속기사양성소동문회
 - 5) 규정 및 내규의 변천
2. 무료속기강습으로 속기인 저변 확대
 - 1) 무료강습 - 협회의 연례사업
 - 2) 그 밖의 무료강습
3.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 설치와 의회속기법식 창안 발표
 - 1)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 설치
 - 2) 의회속기법식 창안 발표
 - ① 창안과정

제4절 국회의정사의 기록과 속기(김선옥, 손재옥)

1. 1년 3개월만에 해산된 제8대국회
 - 1) 1970년대초의 국회와 속기계 개관
 - (1) 배경
 - (2) 速記界 概觀
 - 2) 제7대대통령선거와 제8대국회의 출범
 - (1) 제7대대통령선거
 - (2) 제8대국회 출범
 - ① 의장·부의장 선거
 - ② 상임위원장 선거
 - (3) 중요사건과 국회
 - ① 10.2抗命波動
 - ② 국가보위법파동
 - ③ 국회공전
 - 3) 제8대국회의 해산
 - (1) 10.17대통령특별선언
 - (2) 1972년도 일반국정감사실시와 중단
 - 4) 10월유신과 속기계
2. 체육관 대통령 탄생과 제9대국회
 - 1)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체육관대통령
3. 제9대국회 출범
 - 3) 중요사건과 국회
 - ① 金大中 납치사건

- ② 박정희대통령 狙擊事件
 - ③ 개헌특위안파동
 - ④ 法改正案波動
 - ⑤ 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이전
 - ⑥ 김옥선파동
 - ⑦ 야간국회 한번도 없었던 1976년
4. 1년 8개월만에 막 내린 제10대 국회
- 1) 제10대 국회와 속기계
 - (1) 벽두부터 순탄치 못한 출발
 - (2) 제10대 국회의 주요사건과 회의록
 - ① 제10대 총선과 白斗鎭파동
 - ② 金泳三총재 제명파동
 - ③ 野黨議員 전원 사직서 제출
 - ④ 10.26사태와 헌법개정특위 구성

제4장 시대적 전환기에 처한 속기계(장미경)

제1절 정치적 혼란기와 속기계의 대응

- 1. 속기사의 강제해직
- 2. 10년만에 재개된 전국 속기경기대회
- 3. 속기사자격검정업무 정부로 이관
- 4. 협회, 인터스테노 가입
- 5. 속기업무용어집 발간
 - 1 速記業務用語集 발간의 배경과 목적
 - 2 速記業務用語集의 발간과정

제2절 국정감사 부활에 따른 기록업무의 활성화

- 1. 도입·폐지·부활과정 거친 국정감사제도
- 2. 시대별 국정감사 개요
 - 1) 制憲國會부터 第8代國會까지의 國政監査
 - 2) 第13代國會부터 第15代까지는 國會(1997년 12월 현재까지)
- 3) 歷代國會의 주요 국정감사 활동과 속기업무
 - (1) 1988년도 국정감사
 - (2) 1990년도 국정감사
 - (3) 1995년도 국정감사

제3절 의회활동과 속기업무

1. 國政調査 활동
2. 歷代國會의 주요 國定調査활동과 속기업무
 - 1) 制憲國會부터 第4代까지의 國會
 - 2) 第5代國會
 - 3) 第6代國會~第12代國會
 - 4) 第13代國會~第15代國會(1997년 12월현재까지)
 - ① 居昌事件調査報告에 대한 처리의 건회의록
 - ② 12·12사태 및 율곡사업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회의록
3. IPU(國際議員聯盟) 제70차서울총회
4. 聽聞會 활동
 - 1) 청문회 제도의 역사적 의의
 - 2) 회의록을 통해본 주요청문회
 - (1) 日海財團聽聞會
 - (2) 光州民主化運動聽聞會
 - (3) 言論聽聞會
 - (4) 韓寶聽聞會
5. 公聽會 활동

제4절 速記士 파견 會議業務

1. 大統領 年頭記者會見 속기
2.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속기
3. 韓.日議員聯盟 속기

제5장 地方議會制度 실시와 속기계의 중흥

제1절 地方化時代와 速記界

1. 地方議會의 구성
2. 地方議會會議錄의 필요성과 作成方法
3. 地方議會의 速記界 현황
 - 1) 技能職 職制
 - 2) 速記士 定員 부족
4. 地方議會 速記士들의 노력
5. 地方議會 速記의 發展方向과 課題
 - 1) 職制의 改正
 - 2) 業務의 電算化
 - 3) 速記人力の 보강
 - 4) 속기사의 自己啓發

제2절 速記業務의 電算化

1. 國會會議錄 全文支援시스템

- 1) 시스템의 開發背景
- 2) 시스템의 필요성
- 3) 시스템의 내용
- 4) 기대효과
 - (1) 會議錄의 신속한 배부
 - (2) 會議錄의 正確性 확보
 - (3) 신속한 情報檢索 및 會議錄 활용의 多樣化
 - (4) 人力 . 豫算 및 시간절감
 - (5) 他 媒體로의 전환 가능성
 - (6) 保管空間 및 보존상의 문제점 해소

2. 國會會議錄 작성 . 편집 . 교정업무의 전산화 추진

- 1) 지금까지의 速記業務 電算化 추진과정
- 2) 會議錄 作成業務의 일부 電算化 추진배경
- 3) PC의 教育訓練 및 作業施行
 - (1) PC교육, 훈련계획 및 실시
 - (2) 業務電算化研究班 운영
 - (3) PC번문 및 회의록 발간 소요일수
 - 4) PC 이용 會議錄 發刊作業 과정도
 - 5) PC도입의 효과와 고려사항
 - (1) PC도입의 효과
 - (2) 고려사항

3. 國會會議錄 작성에 기계속기의 도입

- 1) CAS速記
 - (1) CAS속기기계의 특징
 - (2) CAS속기의 活動현황
- 2) 빠른손워드速記
 - (1) 빠른손워드속기의 특징
 - (2) 빠른손워드速記의 活動現況

제3절 속기학술세미나 및 속기실무교육

1. 제1회 속기 실무워크샵
 - 1) 實務워크샵
 - 2) 速記競技大會
 - 3) 速記人體育大會
2. 제2회 속기 및 회의록작성실무세미나
 - 1) 실무중심의 강연회
 - 2) 情報化社會에 걸맞는 세미나
3. 제3회 速記學術세미나
 - 1) 地方議會 운영과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
 - 2) CAS速記와 빠른손워드速記의 현황 및 발전방향
 - 3) 地方議會의 속기업무와 개선방안
4. 제4회 速記學術세미나
 - 1) 세미나 主題發表
 - 2) 全國速記競技大會

제4절 속기협회 활성화 및 속기환경의 변화

1. 대한속기협회의 새로운 출발
2. 대한속기협회 기관지 발간
3. 女性 速記士의 의한 진출

제6장 INTERSTENO 가입과 원외활동

제1절 Intersteno와 대한속기협회

1. Intersteno 의 현황
 - (1) Intersteno의 조직
 - 가. 회원국 현황
 - 나. 총회(The General Meeting)
 - 다. 중앙위원회(The Central Committee)
 - 라. 의장단(The Board)
 - 마. 사무국(The General Secretariat)
 - 바. 회계감사위원회(The Auditing Committee)
 - 사. 의회속기사부(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
 - (2) 목적 및 성격

2. Intersteno의 발전과정
 - (1) 제1기
 - (2) 제2기
 - (3) 제3기
3. Intersteno의 가입 및 활동현황
4. Intersteno의 의회속기사부(IPRS) 가입
5. Intersteno의 가입의의와 나아갈 방향

제2절 速記士 法院進出(김정동)

1. 裁判速記 도입의 필요성 대두
2. 法院書記 속기교육과 문제점
3. 國會速記士 法院으로 轉職(76.9.20)
4. 안정기의 裁判速記 실제

제3절 公公機關과 민간단체 및 기업의 速記錄 작성

1. 기업공개에 따른 株總速記錄 작성
 - 전국 速記事務所 현황조사
 - 速記요금표(첨부요망)
2. 錄音器의 대중화에 따른 錄取錄 작성
3. 기타 會議錄 및 速記錄 작성

제4절 활로 모색하는 속기계(1986년 - 1996)

1. 地方議會 실시(1991년)와 速記熱風
2. 학원의 난립과 通信교육의 문제점 대두
3. 手筆速記교육의 침체와 컴퓨터速記 등장
 - 1) 美製 速記機械의 보급과 헤크닥 출현
 - 2) 國會電算速記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착수
 - 3) 컴퓨터速記 機械 및 프로그램 開發
 - 4) 國會에 컴퓨터 速記士 첫 進出

제7장 議政史의 史草 국회회의록

제1절 국회회의록의 의의

1. 국회회의록의 개념
2. 국회회의록의 종류
 - 1) 회의체에 따른 종류
 - (1) 본회의회의록
 - (2) 위원회회의록
 - (3) 국정감사회의록
 - (4) 국정조사회의록
 - 2) 발간특성에 따른 회의록의 종류
 - (1) 臨時會議錄
 - (2) 配付會議錄
 - (3) 保存會議錄
 - (4) 非公開會議錄
3. 국회회의록의 발간과정
4. 회의록의 보존 관리
5.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
 - 1) 개발배경과 추진목적
 - 2) 대상 DB 및 검색방법
 - 3) 자료의 출력
6. 국회회의록 담당부서의 업무분장(1997.12.31 현재기준)
 - 1) 속기1과
 - (1) 편집담당
 - (2) 속기1담당
 - (3) 속기2담당
 - (4) 속기3담당
 - (5) 속기4담당
 - 2) 속기2과
 - (1) 속기1담당
 - (2) 속기2담당
 - (3) 속기3담당
 - (4) 속기4담당

제2절 국회회의록의 변천

1. 국회회의록의 발간실태

- 1)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록
- 3) 국정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 3) 임시.배부.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
 - (1) 임시.배부.보존회의록
 - (2) 비공개회의록

2. 회의록의 변천

- 1) 제호(명칭)의 변천
 - (1) 본회의
 - (2) 위원회
- 2) 표기 및 체제의 변천
 - (1) 제헌국회
 - (2) 제2대국회
 - (3) 제3대국회
 - (4) 제4대국회
 - (5) 제5대국회
 - (6) 제6대국회
 - (7) 제7대국회
 - (8) 제8대국회
 - (9) 제9대국회
 - (10) 제10대국회
 - (11) 제11대국회
 - (12) 제12대.제13대.제14대국회
 - (13) 제15대국회
 - (14) 기타-국가보위입법회의
- 3) 회의록작성 내용의 변천
 - (1) 전차회의록 통과
 - (2) 보고사항
 - (3) 年號(紀元) 및 시간표기
 - (4) 개회식.폐회식
 - (5)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회의록게재

3. 발간과정의 변천

- 1) 속기조의 편성
- 2) 속기 및 번문수단
- 3) 검토절차

제3절 한국속기의 오늘과 내일 (좌담회) ----- 별도

제1장 우리나라 속기의 당면과제

제1절 우리나라 속기의 현주소

제2절 대한속기협회의 역할과 과제

(타속기단체와의 관계정립 포함)

제3절 침체기에 접어든 수필속기의 활로모색

제3편 외국의 속기계 ----- 별도

제1장 영국

제2장 미국

제3장 프랑스

제4장 일본

제5장 중국

제6장 스위스

제7장 호주

제8장 캐나다

제9장 러시아

제10장 UN

제4편 자료편 ----- 별도

부록

1. 대한속기협회 현황 및 연혁
2. 대한속기협회 역대 임원진
3. 대한속기협회 정관 및 제규정
4. 협회 주요행사
5. 협회간행물 발간현황
6. 한국속기50년사 년표
7. 대한속기협회 공로패.감사장.감사패 수여현황
8. 인터스테노규약 및 의회속기사부 정관
9. 속기검정시험 기준
10. 전국지방의회주소록

제1편 총 설

제1장 속기의 정의와 속기문화

제2장 속기의 필요성과 속기사의 역할

제3장 속기가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

제1장 속기의 정의와 속기문화

1. 속기의 정의

速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은 많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다.

지금까지 속기가 완전 독립된 학문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백과사전인 《The Encyclopedia》에는 속기란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빨리 쓰는 기술"이라 정의되어 상당히 고속도의 기술을 요하는 專門速記에 국한시키고 있다. 반면에 《스탠다드 사전(Standard Dictionary)》은 속기를 "적은 근육운동으로 모든 언어와 문장을 필기체인 도표의 글씨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이는 보통 필기와는 다른 것"라고 정의하여 사람의 발음속도만큼 빨리 쓸 수 있는 수준의 속기문자로 기록하는 專門速記뿐 아니라 일반문자가 아닌 속기문자로 전문속기보다 低速인 수준의 非專門速記까지 포함시켰다.

한편 국내 사전의 경우 민중서림의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에선 속기를 "빨리 적음, 속기법으로 적음"이라 정의하고, 속기법을 다시 "썩 간단하고 편리한 부호로써 연설·강연·담화·회의·의사 등을 그대로 직석에서 빨리 적는 방법"이라 풀이했으며, 두산동아의 《새국어사전》(이기문 감수)에는 속기를 "남의 말을 기호를 이용하여 빠르게 받아 적는 일 또는 그 기술"이라 정의함으로써 다 같이 비전문속기도 속기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밖의 사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같은 사전적 속기의 정의와는 달리 현재 우리 나라 속기계에서는 속기의 速度와 實用有無의 관점에 따라 다음 두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나는 기록의 속도면에서 "사람의 발음 속도만큼 빨리 쓸 수 있는 법식의 속기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번문하는 행위의 총칭"을 '속기'라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발음 속도만큼은 빨리 쓸 수 없어도 특정의 부호를 사용하여 일반문자에 의한 방법보다 빨리 기록하고 번문할 수 있는 수준이면 모두 속기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렇게 속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주의 주장은 다르지만 "속기문자라는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언어를 빨리 쓰는 기록행위"가 '속기'라는 데에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速記의 정의를 종합해볼 때 속기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의사표시를 어떤 특정의 부호문자인 속기문자로 정확하게 빨리 필기하여 이것을 일반문자로 번문하는 활동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기활동의 수단인 특정의 기호(부호)를 '速記文字'라 하고, 속기문자를 사용하여 속기하는 기술을 '速記術'이라 하며, 이같은 속기술의 공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速記士, 속기사에 의해 속기된 기록을 速記錄, 속기를 통해 형성된 문화를 '速記文化'라 하고, 이같은 모든 부문에 대해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학술적으로 비교분석 체계화하면서 속기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문이 '速記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컴퓨터를 활용한 속기술의 보급과 속기사 자격시험에 컴퓨터속기사 자격시험이 포함됨에 따라 이상과 같은 속기의 정의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만큼 학술적인 속기의 정의는 좀더 시간을 두고 내려야 할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2. 기록의 마술사 속기사와 문자의 변천

사람의 언어속도와 일치하여 속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속기사를 일컬어 흔히들 '말의 사신사' '기록의 마술사' '역사를 기록하는 현대판 史官'이라 칭한다.

의회정치의 본산인 영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사람은 國王과 國會議長과 裁判官과 速記士다"라는 俗言이 있다.

또 오늘날 속기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록 중에는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시간의 기록이다. 따라서 속기사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교량"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국회의장은 의회의 공식적인 눈이며, 국회속기사는 의회의 공식적인 귀"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 이러한 말들은 現代史의 史草를 엮어가는 속기사의 임무와 역할을 극명하게 잘 대변한 표현들이다.

역사는 기록이다. 인류문명은 기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록의 수단에는 문자를 비롯하여 錄音이나 映像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도 영구보존이 가능하며, 인류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용되어온 문자가 제일 으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자 없는 문화생활은 생각할 수 없다. 수천년 전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문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문자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형의 언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낸 유형의 符號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인간의 의사표시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직접 대좌함으로써만 가능했다. 물론 중간 전달자를 통해서 상대방에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은 의사전달의 불충분과 왜곡에 의한 오해를 빚기가 일쑤였다. 그 결과 문자를 갖지 못한 원시인들은 들을 쌓아놓거나 나무를 꺾어놓거나 혹은 그들이 지닌 물건을 미리 약속된 장소에 걸어두거나 놓아 두어 직접 만나서 의사전달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의사표시를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사전에 서로의 약속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뒤따랐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노끈으로 엮어 표시한 결승문자(結繩文字)와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는 회화문자(繪畫文字)였고, 그보다 더 정교하게 고안된 문자가 물건의 형상을 그려 표시한 상형문자(象形文字)와 바빌로니아-앗시리아 시대에 췌기형상으로 자획의 모양을 만들어 쓴 설형문자(楔形文字)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자들 역시 고대문자로서 부분적인 집단에만 통용될 정도였다.

그 후 인류의 끊임없는 문자발명의 노력으로 漢字와 같은 表意文字와 라틴문자나 한글과 같은 表音文字가 창안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발명된 문자는 2세기초 중국의 채륄(蔡倫)이 삼(麻)과 같은 식물의 껍질로 종이를 만들면서부터 그 보급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다가 12세기경 펜과 잉크의 발명을 비롯하여 1760년 독일의 카스파 화버에 의한 연필의 발명, 1884년 미국의 워터맨에 의한 만년필의 발명, 1454년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기의 발명 등으로 문자보급은 일반화되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약 7백여종의 言語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 쓰이고 있는 문자는 50여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문자 가운데 언어속도와 일치하여 기록할 수 있는 문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상대방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적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특히 증거성을 요하는 발언은 더욱 그러하다.

그 결과 고안된 것이 이른바 速記文字이다.

3. 속기술의 기원과 외국속기 발달사

1) 속기술의 기원

速記術의 起源은 일반문자의 기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속기문자는 일반문자보다 훨씬 늦게 태동했지만 언어속도만큼 빨리 쓰고자 하는 욕망은 문자의 발명과 때를 같이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속기술은 기원전 10세기경 페르샤·이집트·헤브류·그리스 등의 고대국가에서 이미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아직까지 그 확실한 체계나 논증이 희박한 실정이고,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춘 속기법이 창안된 때는 로마의 웅변술이 번성했던 B.C 1세기경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B.C 63년 당시 정치가이자 유명한 웅변가였던 마커서 타리아스 시세로(Marcus Tullius Cicero)가 원죄(罪)로 사형언도를 받았다가 구사일생으로 죄를 면하여 각 지방을 유세하고 다닐 때 그의 제자였던 타이로(Tiro)가 로마자의 두미자(頭眉字 : 머리글자와 끝의 글자)를 적당히 약기하는 방법으로 시세로의 연설을 받아적어 공표하였는데, 타이로의 이 약기법이 속기법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약기법은 로마 원로원 의원들의 연설을 기록하는 데도 사용됨으로써 그 보급이 활발하여 학교의 학생들과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황제까지 타이로의 약기법을 배웠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속기법은 각 단어의 어휘마다 개개의 부호가 따로 있어 1만개 이상이나 되는 약부를 익히는데 무려 10년 이상이란 장기간을 요했다.

2) 외국속기법의 발달사

타이로의 약기법은 14세기까지 계속 보급되었고, 그동안 속기문자의 개량 등 많은 발전도 가져왔다. 그러나 그의 약기법은 기록방법상 중요단어마다 특정부호가 부여되는 약기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10여년이나 걸리는 습득기간의 단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후 1588년 영국의 티모디 브라이트(Timothy Bright)가 1만개 이상이나 되는 타이로의 약기법을 5천여개로 줄여 속기술 습득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시켰지만 이것 역시 습득기간의 장기화로 일반인에게 실용화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속기다운 속기법의 등장은 1602년 영국의 윌리스(Willis)에 의해 창안된 윌리스식부터라고 보는 것이 좋을성싶다.

윌리스식 이후 50년간에 걸쳐 현대속기의 産室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선 10여종이나 되는 속기법이 창안되었을 정도로 속기술의 보급이 활성화 되었으며, 1736년엔 필립 기브스(Phillip Gibbs)가 모음을 長短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表音速記術을 발표한 데 이어 1767년에 바이롬(Byrom)이 바이롬식을, 1780년에 매로우(Maror)가 매로우식을, 그리고 1786년에 테일러(S.Taylor)가 테일러식을 각각 발표함으로써 속기의 열기를 뜨겁게 했다. 그 중에서 특히 옥스퍼드대학의 철학교수인 테일러가 발표한 테일러식은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속기에 크게 응용되었을 정도로 유명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영국보다는 좀 늦었지만 1651년 코사루(Jaeques Cosard)가 《Methode

pour écrire aussive vite guon parle》이라는 속기책을 출간한 것을 기점으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베르망(Bertin)·테베나트(Thvenot)·프레페안(C.Pr pean)·에메파리(Aim paris) 등에 의한 속기법이 나오게 되었다.

다음 미국에서는 영국의 테일러식이 사용되었고, 널리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에서는 1800년 스페인의 마티(Marti)가 테일러식을 응용하여 발표한 마티 속기법식을 응용 사용하였다.

이렇게 B.C 1세기경 타이로의 속기법 전래 이후 19세기 초까지 발표된 속기법식은 무려 260여 방식에 달했다. 하지만 그러한 속기법들을 모두 완전한 속기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완전한 속기라 할 수 있는 속기법의 시작은 세계적으로 속기발달사에 中興을 이루었다는 아이작 피트맨(Isaac Pitman)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국의 글러스터셔(Gloucestershire)에 있는 한 학교의 교사였던 그는 1837년 종래의 기음적 선상필기법(記音的 線上筆記法)을 고안하여 《表音速記術(Stenographic Sound)》을 저술하고 속기학원을 세워 후진들을 양성하는 한편 속기문자에 의해 인쇄된 80여권에 달하는 叢書까지 발간했다.

현재 구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기법 중 대부분이 피트맨식을 근거로 고안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구미속기계를 통틀어 타이로를 속기계의 元祖라 한다면 피트맨은 中興의 祖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속기법식들이다.

영국에서 우세한 속기법식은 역시 피트맨식이고 다음으로 테일러식·거니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888년 존 로버트 그레그(John Robert Gregg)가 고안·발표한 '그레그식'이, 프랑스에서는 1878년 듀로네(Albert Delaun y)가 '쁘레보식'을 개량한 '쁘레보 듀로네식'과 1862년에 듀프로이(Abbe Duploye)가 창안한 듀프로이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796년 세이 카이루가 고안하여 1834년 가벨스버거(Franz Xavier Gabelsberger)에 의해 완성된 '가벨스버거식'이 널리 사용·보급되고 있다.

한편 동양에 속기가 보급된 것은 서양에 비해 좀 느린 편이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빠른 나라가 일본이다. 즉, 일본은 1882년 다쿠사리(田鎖綱紀)가 '그라함식'을 응용하여 '다쿠사리식'을 고안, 1890년에 출발한 국회의 제1차 회의때부터 사용한 것을 기점으로 구마사기(熊崎)의 '구마사기식'(1906), 나까네(中根)의 '나까네식'(1914), 가와구찌(川口涉)의 '와세다식(早稻田式)'(1931) 등을 위시하여 參議院式·衆議院식 등이 계속 발표, 보급되었다.

또 중국에서는 1895년 蔡錫勇이 창안한 전음쾌자(傳音快字)속기법이 중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고, 1910년 그것이 중국의 《政治官報》에 발표된 후 지금까지 개량 보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실용속기법은 후술하는 일제침략에 따른 우리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영향으로 매우 늦게 태동하였다.

제2장 속기의 필요성과 속기사의 역할

1. 속기의 필요성

현대는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는 스피드시대임을 뜻한다. 모든 것이 신속·정확을 요하는 시대인 것이다.

정보 수집 및 보관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최선의 수단인 문자화된 기록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날로 복잡다원화되어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즉석에서 연사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어야 할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속기문자에 의한 방법 외에 다른 일반문자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녹음기로 녹음하여 다시 일반문자로 녹취하면 되겠지만, 그래가지고선 원하는 시간에 모든 기록을 완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속기술이다.

앞으로 사람의 언어를 인식하여 곧바로 문자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그 어떤 양태로든 속기술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서류없는 OA시대를 구가한다 해도 종이와 필기구를 떨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속기 역시 그러하다.

언어가 있고 토론이 있고 회의가 있고 정치가 있는 곳에 速記士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 때 녹음기의 등장으로 속기무용론도 대두된 적 있으나 국정을 논하는 의사당에선 지금도 변함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서까지 "회의록에는 속기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속기의 필요성을 공인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속기록이 회의진행 상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기록한 史草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국립문서보관소 관보국 기록 담당자에 의해 기록된 문서는 발언자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수정을 요구해도 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一례로 미국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행하는 모든 발언과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성명서와 명령 등 각종 문건을 1주일 단위로 기록·정리하여 책자로 발행되는 《주간 대통령문서록》이라는 것이 있다. 이 문서록에는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확하게 기록된다.

《주간 대통령문서록》이 처음 발행된 것은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인 1966년 7월이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를 지냈던 존슨은 의회속기록 같은 것을 만들어 자신의 발언과 백악관의 움직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백악관 속기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속기록 작성의 기본원칙은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이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당시의 일이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맞아 베푼 국민만찬 석상에

서 축사를 하던 포드 대통령이 '이집트'를 '이스라엘'로 착각, '우리의 우방 이스라엘'로 부르는 실수를 범했고, 속기록에는 가감없이 발언 그대로 기록되었다. 사후에 이 사실을 알고 당황한 포드 대통령은 이튿날 이를 정정해줄 것을 속기록 정리 책임자인 《주간 대통령문서록》 편집장에게 부탁했으나 한 번 작성된 속기록을 되바꿀 수는 없었다. 또 부시 대통령의 연설 시에도 인용된 통계숫자가 연설문 작성자의 잘못으로 틀리게 발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역시 연설문 작성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틀린 숫자 그대로 기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곧 속기록이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정확성을 잘 대변한 일례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는 현재 한 해 동안 발행한 《주간 대통령문서록》을 한테 묶어 매년 발행하며, 신임대통령의 취임 첫해를 기록한 문서록은 특별히 가죽으로 제본돼 대통령에게 증정된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주간 대통령문서록》과 같은 류의 대통령 문서록은 주간은 아니지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도 발행되었고, 아이젠하워 때는 집권2기의 전반부인 1956년과 1957년 2년치를 각각 두권의 책으로 발행했다. 관보국은 또 아이젠하워의 전임자인 트루먼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인 1951년과 1952년의 문서록을 역시 두권으로 각각 발행하기도 했다. 그 후에도 역대 대통령의 문서록은 간헐적으로 간행되었다.

미국의 이같은 사례는 속기자의 손을 거친 통치자의 문서록은 후세에 그 통치자의 치적을 엄밀하게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 중의 하나다.

2. 현대 속기사와 조선조의 사관

오늘날 의정사를 기록하는 속기사를 일컬어 조선조 때 史草를 작성하는 史官에 비유하는 것도 의회속기사들이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라는 대한속기협회 제정 '속기사의 신조' 정신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속기록은 그 어느 기록 수단보다 정확하다.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은 시청각면에선 정확성이 속기록보다 뛰어나지만 시청각 이외의 분위기나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속기록을 당해낼 수 없다. 녹음기 역시 청각적인 면에선 속기록보다 뛰어나지만 그 밖의 분위기 묘사의 표기 면에선 속기록을 당할 수 없다.

그리고 회의장면이나 발언내용을 비디오 촬영 또는 녹음을 해두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수의 사람에게 회람시키거나 영구보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文字化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속기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생산적인 기록이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속기록은 기록의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속기사는 속기시 발언내용을 녹음기처럼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디오나 사진으로 촬영할 수 없는 부분과 분위기까지 속기록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속기사를

일컬어 '말의 사진사'라 명명하기도 한다.

전술한 미국의 《대통령문서록》과 같은 것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졌다. 이조시대의 《承政院日記》가 바로 그것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승정원에서 어전회의를 비롯하여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朝鮮王朝實錄》을 편찬할 때 이것을 자료로 삼았다.

승정원에서 기록을 담당한 史官의 직함은 注書였고, 注書가 기록한 원본이 史草다. 오늘날의 속기록과 같은 이 사초를 쓰기 위해 주서들은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유의 흘림서체인 조보체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朝報體'라는 서체 이름은 《朝報》라는 어전신문의 이름을 따 명명한 듯하다. 이 朝報體는 지금의 速記文字와는 다르지만 당시로는 가장 빨리 기록할 수 있는 부호문자였음에 틀림없다.

조선조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經國大典》에 나오는 정치원칙의 골격은 첫째 어전 앞에서 큰소리로 해야 공명정대한 정치가 되고, 둘째 영의정일지라도 왕과의 독대를 금하게 하여 밀실정치를 지양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조선조에는 '史官制度'가 있었다.

그리고 어전회의에는 반드시 두명의 사관이 입회하여 기록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두명의 사관이 어전회의에 입회하는 것은 오늘날 의사당에서 주무와 부무 두 사람의 속기사가 입회하여 속기하는 제도와 비슷하다. 다만 그 목적이 상이할 뿐이다. 조선조에는 두명의 사관 중 한명은 그 회의에서 오고가는 말을 가감없이 直筆하고, 다른 한명은 발언자의 언행과 어전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를 기록하기 위함인 데 반해 오늘날 속기사는 두명 모두 발언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誤聽과 誤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조선조의 사관의 신분은 비록 낮았지만 그 권한과 임무는 대단했다.

이같은 기록의 정신은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업적이기도 하다.

조선왕조가 한 체제로서 27대 519년을 이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이 기록정신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우리 조상들이 事大했던 중국의 명나라가 13대 275년, 淸나라가 290년 밖에 유지하지 못했고, 일본의 도쿠가와(德川)막부 정권도 15대 250년 밖에 유지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동양의 유교권내에서 조선만이 500년의 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사관제도에 의한 열린 정치를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관이 작성한 기록, 즉 史草가 일단 사통에 넣어진다면 당대 왕은 물론 어느 누구도 열람할 수 없었다. 사초 내용의 열람은 왕이 승하하고 난 다음에야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사관은 비록 직위는 낮다 해도 왕의 언행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쪽 같은 성품과 청렴하고도 높은 기개를 지닌 자긍심이 강한 관리들이었다. 이들이 기록한 사초를 가지고 쓴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 오는 조선왕조실록 888권이다.

지금의 국회속기록은 바로 5백여년 전 사관들에 의해 기록된 사초를 가지고 쓴 왕조실록에 버금간다 할만하다. 아니 그보다도 더 객관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조선조의 실록은 어전에서 논의된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역사책으로 특정한 사관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사실과는 달리 왜곡된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의 국회속기록은 발언내용을 빠짐없이 그대로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만은 가장 사실에 가까운 史草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속기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속기사를 일컬어 현대판 史官이라 일컫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3. 속기사의 용도

신문기자나 역사가들도 물론 현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史料를 남기지만 그들의 기록은 자신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기 마련인데 반해 속기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은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있어선 속기사의 기록이 단연 앞선다.

그러면 오늘날 속기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현재 속기사를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곳은 국회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와 법원 등이다. 그 밖에 속기가 활용되는 분야의 속기로는 취재속기·강의속기·좌담속기·비서속기·녹취속기·저술속기·설교속기·방송속기·군대속기·세미나속기·메모속기·생활속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속기의 용도별 분류중 국회속기·지방의회 속기·법원속기 등은 전문속기에 해당할 것이고, 기타 속기는 비전문속기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전문속기는 2급 이상의 속기사들이 할 수 있으나 비전문속기는 3급 이하의 속기실력자라도 가능하다.

제3장 속기가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인류문화가 존재하고, 기록의 주체인 인류는 기록의 수단으로 문자를 발명했다. 그리고 문자를 발명한 인류는 문자의 활용과 함께 더 빨리 쓰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속기술을 탄생시켰다.

이 속기술이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언어 및 정치문화에서 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그러하다.

정치인의 주무대인 의사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는 뒀니뒀니해도 속기석이다. 발언자의 발언을 가장 정확히 청취할 수 있고, 장내 분위기를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곳이 속기석이다. 여기서 현대판 史官인 速記士들은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가감없이 기록하여 《速記錄》이란 문헌으로 발간 보존한다. 이 속기록은 그 어느 史料보다 정확한 우리나라 現代史의 史料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발언자의 사상이나 인품 및 역량과 함께 나라와 국민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노력과 공헌도를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발언자는 누구나 다 속기사와 속기록을 의식하면서 발언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 정치인의 자질을 높이는 계기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정치문화는 한걸음씩 발전해간다.

이처럼 정치문화에 영향을 주는 의회속기록은 그것 자체만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기록은 역사학자들에게 史料를, 언론인들에게 기사거리를, 경제인들에게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문학하는 문필가에게는 작품의 素材를, 학자들에게는 연구자료를 각각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에 영향을 주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自主生活을 침해받을 위치와 조건에 놓여 있었으면서도 민족정신을 생명으로 알고 지켜온 衄이 이 속기계에서도 훌륭히 증명된 바 있다. 舊韓末 일본의 침략정책으로 을사보호조약이 조인되고 국운이 기울자 미국 하와이로 건너간 교포 朴如日이 1909년 '朝鮮速記法'을 고안하여 발표한 이래 上海 등 망명지에서까지 우리말 속기가 발표되어 韓民族의 긍지와 실력을 과시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와같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하에서도 꾸준히 연구한 보람이 있어 우리나라를 초대국회 때부터 속기록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의회민주주의국가로서 그 나라의 초대의회부터 速記錄이 남아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뿐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그 나라 의회정치 초창기에 속기를 채택할 만한 여건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기개관 p.9~10)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헌국회 때부터 남겨놓은 속기록은 매우 자랑할 만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기록에 있어서 스피드와 능률을 추구하는 속기는 고도의 문화사회에서나 실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의 속기는 우리 문화의 귀중한 유산임에 틀림없다.

제2편 한국속기의 발자취

제1장 속기법식의 창안과 보급

제2장 국회를 무대로 한 속기계의 약진 (1948-1961)

제3장 민정이양과 제3공화국의 출범

제4장 시대적 전환기에 처한 속기계(장미경)

제5장 지방의회제도 실시와 속기계의 중흥

제6장 INTERSTENO 가입과 원외활동

제7장 의정사의 사초 국회회의록

제1장 속기법식의 창안과 보급

제1절 일제하의 우리말과 비실용속기법식의 태동

1. 일제의 식민정책과 우리말 탄압

우리나라의 속기법 창안연도가 서양은 물론 같은 동양권인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늦은 이유는 일제 36년하의 문화적 식민정책 때문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민지배국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文化的 同化를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탄압하는 것이 통례였다. 특히 일제의 문화적 식민정책은 더욱 혹독한 것이었다.

日帝는 韓日合邦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언론·출판활동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일제 금하였고, 이러한 일제의 탄압은 1919년 3·1운동때까지 지속되었다.

1910년 일제는 당시 이완용과 같은 일부 매국노들을 회유하여 조작한 '韓日合邦條約'을 공포하는 과정에서부터 막강한 헌병·경찰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을 탄압 감시하고, 우리나라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키는 한편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짓밟았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민족의 항거에 대비하여 "집회·결사 또는 신문·잡지·광고 등 기타의 수단으로 공안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사형을 포함한 극형에 처한다(군률 제15조)"고 하는 이른바 '軍律'로써 야만적 탄압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범처벌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까지도 철저히 규제하였다.

이같은 일제의 식민정책은 한일합방 이전까지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해오던 대부분의 언론자들을 폐간시켰고, 《大韓每日申報》는 《每日申報》로 改題하여 총독부 기관지로 만들었다. 아울러 일제는 우리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사람들이 발행하는 신문까지도 총독부에 중립 또는 반대하는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했다.

당시 '신문지규칙'은 신문을 발행코자 하는 자는 관청의 認許可를 받아야 하고, 治安을 방해한 자는 본국과 같이 재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그 발행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총독부는 한국인의 民族精氣와 民族意識을 말살하기 위해 대대적인 焚書·販禁 조치를 취했다. 즉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서울의 종로 일대와 전국 각지의 서점·학교·서원·舊家·양반집 등을 급습, 張志淵의 《大韓新地誌》, 李採雨의 《愛國精神》, 申采浩의 《乙支文德》과 같은 조선의 역사책을 비롯하여 조선영웅전, 윤리서적, 해외독립운동사와 亡國史 등 무려 51종에 달하는 수천권의 서적을 불사르고, 이러한 류의 책을 팔지도, 읽지도, 빌려주지도 못하게 감시했다.

이같은 대대적인 焚·禁書소동으로 말미암아 민족교육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특히 공립학교는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실업교육에만 전념토록 강요당했다.

일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더욱 가혹한 것이었다.

한일합방 이전 대한제국 말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정치·사회단체가 출현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합방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부 애국 단체들은 총독부의 철저한 감시를 피해 지하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일제식민정책에 항거했지만 끝내는 적발되어 민족운동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新民會다.

'新民會'는 1907년에 조직되어 산업·교육·출판활동을 하는 한편 무장활동을 계획하다가 1910년에 발생한 이른바 '105인사건'으로 간부들이 모두 검거되어 그 활동이 중지되었다. 이 밖에 獨立義軍府·光復會·朝鮮國權恢復團·朝鮮國民會와 같은 비밀결사단체들도 적발되어 그 활동이 중지되었다.

日帝는 이같은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탄압과 더불어 식민지교육체제도 강화시켜나갔다.

1911년에는 유서깊은 成均館을 폐지하고 經學院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인의 고유한 민족정신을 말살하려 는가 하면 외국어학교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인이 해외로 눈돌릴 수 있는 안목과 진출을 막았으며, '朝鮮敎育令'에 따라 漢城師範學敎도 폐지하여 한국인교사를 일본인으로 대치시키려 했고, 1918년 들어선 '書堂規則'을 발표하여

사사로이 한문을 가르쳐온 글방인 서당까지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이같은 민족문화말살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역사의 조작도 서슴치 않았다.

일제의 韓國史 왜곡은 일본이 明治維新 이후 서양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여 국력이 커짐에 따라 대륙에의 침략정책을 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른바 神功皇后의 新羅征伐說이라든가 任那日本府設 또는 廣開土王碑文을 왜곡되게 이용하여 일본국민에게 황국주의 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대부분 皇國主義思想에 입각한 허황된 것이거나 조작된 것들이었다.

또 총독부는 1922년 '朝鮮史編纂委員會規定'을 공포하고 대대적인 史料수집과 편찬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 조선사 편찬의 강령을 결정하는 심의과정에서 조선인 위원들의 제의는 채택되지 않은 채 일본인 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통과되었다.

日人學者들의 조선사 연구는 그 대부분이 조선의 정체성·타율성·열등성·후진성과 같은 부정적인 면만 입증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그들의 논리는 조선이 3국시대 이래 본질적으로 정체되어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개항시키고 합방을 하여 식민정책을 베풀으로써 비로소 조선은 정체의 늪을 벗어나 근대사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식이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한국어의 시간을 줄이고, 일본어 시간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일어를 常用하는 자(일본인)와 일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의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민족적 차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日本人化의 교육에 심혈을 쏟았다. 그리고 보통학교에 대해서는 일본역사와 일본지리를 새로이 가르치면서도 韓國史와 한국지리에 관한 교육은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1937년 들어서는 모든 조선인이 일본어를 상용토록 종용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다. 또한 일제 말기인 1943년에는 이른바 '國語(일본어)보급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일본어를 해독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상용토록 권장하고, 일본어를 모

르는 조선인에게는 강습소·신문·잡지·라디오·반상회를 통해 강습시켰다. 그런가 하면 국민학교의 경우는 각종 처벌 등을 강화하여 일본어 상용을 강요했다. 이같은 일제의 탄압은 우리 민족의 문화보급과 그 전수를 아예 단절시켜 버리려는 말기적 발악과도 같은 것이었다.

일제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36년 4월 조선의 洞名을 일본식 町名으로 고친 데 이어 1940년에 들어서는 조선인의 姓名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創氏改名까지 강요했다. 그들은 創氏를 안한 조선인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도록 탄압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과 진학을 못하도록 하는 등 온갖 박해를 가했다. 이같은 日帝의 우리 민족에 대한 創氏改名 강요의 이면에는 우리말을 말살하려는 것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가족제도까지 일본식으로 同化시키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민족문화와 우리말에 대한 일제의 말살정책은 결국 한글속기의 창안과 속기문화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 비실용속기법식의 창안발표

1) 비실용속기와 실용속기의 의의

우리말 속기의 起源은 한 마디로 구미 제국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졌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半島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외부 세력의 잦은 침입과 더불어 일찍이 우리의 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그만큼 우리 한글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특히 日帝36년간의 암흑기에 우리말·우리글의 사용을 금지시켰던 민족 문화말살정책으로 우리말 속기의 창안과 연구, 그리고 속기사의 양성이란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또 일부 해외 이민자나 망명자들에 의해 그러한 움직임이 더러 있었으나 속기가 뿌리를 내리고 實用化 되는 환경은 되지 못하였다.

모든 문화는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가 國泰民安할 때에는 문화의 꽃이 만개하기 마련이다. 속기문화 또한 그러하다.

예컨대, 속기의 起源을 이룬 로마시대만 하더라도 로마문명이 한참 융성할 때였다. 타이로(Tiro)가 속기법식을 고안하게 된 것도 당시의 로마에는 웅변술이 한참 번성했던 까닭에 그 기록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나 영국에 있어서 현대속기법의 발생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우리 속기법의 창안과 발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일본만 하더라도 日語速記의 始祖로 받들어지는 다꾸사리(田鎖綱紀)가 속기법을 창안하던 시대는 소위 明治維新으로 일본이 한참 서구의 신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몸부림치던 시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속기는 發案期에 日帝의 식민지라는 정치적·사회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속기법의 창안과 실용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말 속기를 발달사적으로 구분할 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누어 8·15 이전을 창안발안기로 보고, 8·15 이후를 실용기와 성장기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속기개관 p.37), 速記의 實用化 여부를 기준으로 8·15 이전의 속기를 非實用速記, 그 이후를 實用速記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海外에서 먼저 발표된 우리말 速記法

○ 朴如日의 朝鮮速記法

우리말 속기의 창안은 불행하게도 일제의 우리말 말살정책으로 인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말 속기가 처음 창안 발표됐던 때는 1904년 한국을 떠나 美洲 하와이로 이민간 경상도 출신인 이민 2세 朴如日이란 사람이 1909년 '朝鮮速記法'을 창안하여 시카고에서 速記學 강의를 하는 한편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신문인 《신한민보》에 발표하면서부터이다.

朴如日의 '조선속기법식'은 點·直線·曲線과 선의 長短 및 굵기로 문자의 변화를 이룬 正圓派이다.

속기의 筆法은 일반적으로 正圓派(幾何線派)·斜線派(草書派)·怨圓派(草書派)·文字派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 斜線派와 怨圓派는 모두 草書派에 속한다.

여기서 박여일의 朝鮮速記法 필법인 正圓派는 자(尺)와 콤파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기하학적 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하선파라고도 한다. 이 필법은 정원을 等分하여 그 등분된 원의 둘레와 등분한 직선들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점·원·타원·갈고리 등의 점획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속기법식은 대부분 이 필법을 이용하고 있다.

다음 斜線派는 로마자의 필기체를 정리, 右上의 사선을 기초로 그 사선의 字頭나 字尾에 갈고리나 원의 획선을 붙여 정리한 것이고, 怨圓派는 정원과 사선과의 양자를 절충한 필법을 취하고 있다.

끝으로 文字派는 이상 세가지의 필법과 달리 일반문자의 획선을 중요시하여 일반문자의 草書化 또는 省略化한 것을 그대로 사용코자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필법은 실제로 쓰이는 획선은 다르다 하더라도 속기방식의 발전과정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나타난 형태이다. 구미에 있어서도 정원과파가 나타나기 이전의 속기방식은 대부분 이 필법을 이용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朝鮮速記法'을 보급하던 朴如日은 1920년 印度 남쪽 '마인'이라는 곳에 이주하여 그의 저서 출판에 착수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그의 출판 작업은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한채 중단되고 말았다.

만약 그때 박여일의 속기법 저서가 계획대로 발간되었다면 국내에서 태동조차 못했던 우리말 속기가 해외에서 어떻게 창안되었고, 또 어떻게 보급되었는지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말 速記史에 있어 크나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909년 미주 하와이에서 '조선속기법'을 발표한 박여일이 미국속기법인 '그래그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의 속기법이 발표된 지 11년이 지난 1920년 인도에서 책자발간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의 '조선속기법'은 현대 우리말 속기법 대부분이 일본어 속기법을 기초로하여 창안된 것과는 달리 그래그식을 기초로 하여 창안되었고, 아울러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양태로든 우리말 속기술 보급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원과파(기하선파)를 취하고 있는 박여일의 '조선속기법'의 특징은 單複한 一點에서 시작하여 문자를 구성하고 있다. 즉, 하나의 점이 커져서 하나의 平直線(-)을 이루고, 이 점이 구부러져 穹선()을 이루며, 이것이 또 길이와 굵기의 변화로 하나의 문자를 이루고 있다.

○ 金料奉의 날적말적기 약기법

박여일이 조선속기법을 발표한 후 14년이 지난 1923년, 그러니까 기미독립운동이 있는지 3년 후에 중국 上海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金料奉 이 망명지인 상해에서 출간한 文法書 《김도 조선말본》 제2부록에 〈날적말 적기 약기법〉을 실었다. '날적말 적기'란 날개, 즉 새가 나는 듯 빠르게 적는다는 의미이며, '약기법'은 글자그대로 축소된 속기문자로 縮字하여 쓰는 방법을 뜻한다.

청년시절 한글학자였던 김두봉에 의해 창안된 이 날적말적기 약기문자는 1597년에 발표된 영국의 브라이트식처럼 水平各小線의 子音에다가 垂直各線의 모음을 적용한 부호문자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해방전 해외에서 발표된 우리말 속기의 基本文字 原形

조선속기법(박여일 창안)

ㄱ ㅋ ㆁ ㄷ ㄸ ㄴ ㄹ ㅁ ㅂ ㅃ ㅅ ㅆ ㅈ ㅊ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날적말적기 약기법(김두봉 창안)

子 音	ㄱ	ㄷ	ㅁ	ㅅ	ㄴ	ㅅ
	/	(⌒	⌒	\	/
	ㅍ	ㅌ	ㅍ	ㅌ	ㅍ	ㅌ
	ㅡ	⌒	⌒	⌒	⌒	/
	ㅋ	ㅌ	ㅍ	ㅌ	ㅎ	ㄹ
	\	⌒	⌒	⌒	/	

母 音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ㅣ

例)

가 너 도 무 문 참
ㅏ ㅓ ㄷ ㄴ ㅁ ㅅ

3) 국내에서 발표된 우리말 속기법

국내에서 우리말 속기법이 처음으로 발표된 때는 박여일이 미주 하와이에서 '朝鮮速記法'을 발표했던 1909년보다 무려 16년이나 뒤늦은 1925년이다.

우리말 속기법이라면 당연히 우리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국내에서 먼저 창안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은 우리 速記史에 있어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그런 까닭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제하에서도 분명히 우리말과 우리글이 일상적으로 쓰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단순히 일제의 식민정책 때문이라고만 치부할 순 없는 일이다.

여하튼 국내에서 우리말 속기법이 가장 먼저 발표된 때는 《朝鮮日報》 方台煥의 권유로 渡日하여 일본의 다꾸사리식(田鎖式)을 연구한 方翼煥·李源祥 등이 공동으로 '朝鮮語速記術'을 발표한 1925년이다.

즉, 그해 7월 1일과 2일자 《時代日報》에 발표한 '조선어속기술'은 다꾸사리식과 같이 각 子音線에 각 방향있는 크고 작은 타원으로 된 모음을 가하는 식이다.

다음 方翼煥·李源祥 등이 <朝鮮語速記術>을 발표한 지 2년 후인 1927년에는 金한터가 《月刊 新朝鮮》誌 1월호에 '우리말 速記法'을, 그리고 嚴正友가 《月刊 東光》誌 7,8월호에 '朝鮮速記術'을 각각 발표하였다.

金한터의 '우리말 速記法'은 한 子音線에다가 오른쪽 방향의 작은선 혹은 작은 타원을 가하는 것인데 그 특징은 글자선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음선 중 'ㅅ'자에는 小字 뿐이고 大字가 없는 것이 주목된다. 또 嚴正友의 '朝鮮速記術'은 한글 자음선형에 가까운 각 방향곡선을 자음으로 하고 各方向大小直線을 모음으로 하여 初聲複用으로 終聲을 쓰는 식이다. 예컨대 '직'자를 쓰려면 충분히 三筆로 써야 되는 식이다.

金한터와 嚴正友의 속기법 발표후 7년째인 1934년 2월에는 《東萊高 普教友會誌》에 당시 동래고보 학생이었던 金勇虎가 '朝鮮語速記法'을 게재하였는데 이 속기법은 橫書가 아닌 縱書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상의 속기법은 모두가 속기의 기본문자 소개에 불과하였고, 제대로 체제를 갖추어 발표된 속기법은 1935년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29회에 걸쳐 《東亞日報》에 <朝鮮語速記術講解>라는 주제로 연재된 姜駿遠의 '朝鮮語速記術'이다.

강준원의 '조선어속기술'은 單劃式 타원파로 미국의 그래그식과 유사한 속기법이다. 그러나 이 법식 또한 일제치하에서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그 밖에 1926년(昭和 원년) 林容德이라는 사람이 일본어와 우리말을 혼용한 조선어속기술연구에 노력하여 1,400자 정도의 약자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1934년판 《日本速記50年史》에 나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창안 발표된 모든 속기법식들은 시도 자체에 그쳤고 실용화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속기법 자체가 실용화 되기엔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당시 우리말 우리글 자체의 존립마저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회적 여건 때문이었다.

非實用速記 創案發表 年代表

발표 연도	창안 발표자	발 표 방 법	속 기 법 특 징
1909	朴 如 日	하와이에서 《신한민보》	정원파(기하선파)이며, 점·직선·곡선, 선의 長短 및 굵기로 문자의 변화를 이룸.
1923	金 科 奉	상해에서 《김도조선 말본》 제2부록	영국의 브라이트식처럼 水平各小線子音에다 수직各線母音을 적용한 부호문자로 구성.
1925	方 翼 煥 李 源 詳	《時代日報》 7월 1,2일자	일본 다꾸사리식(田鎖式)과 같이 한 자음선에 각 방향이 있는 大小타원으로 된 모음을 가했음.
1927	金 한 터	《新朝鮮》 誌 1월호	한 子音에다가 右方向小線 혹은 작은 타원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특색은 기록선의 下向線을 막기 위하여 자음선 중 下向에는 소문자뿐이고 대문자가 없음.
1927	嚴 正 友	《東光》 誌 7,8월호	한글 子音線形에 가까운 각 방향곡선을 자음으로 각 방향 大小直線을 모음으로 하여 初聲複用으로 終聲을 쓰고 있음.
1934	金 勇 虎	《東萊高普校友會》 誌 2월호	橫書가 아니라 縱書式으로 특이함.
1935	姜 駿 遠	《東亞日報》 6월18일 ~7월 28일	單劃式 타원파로 미국의 그래그식과 유사함.

3. 일제하 한국인속기사의 실태

해방 전 국내에는 한국인 속기사가 5~6명에 일본인 속기사가 10명 정도 있었다.

일파식 창안자 張基泰는 1970년 4월에 창간된 《速記界》에 기고한 '速記와 나'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 해방 전 한국땅의 속기인 실태를 보면 韓人速記士가 대여섯명에 日人速記士가 10여명 정도 있었다고 기억된다. 일본의 2대신문인 《朝日》·《每日》은 서울을 비롯한 支局에 속기사를 배치하고 본사에 대한 기사수신이 속기사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赤根谷이란 日人이 속기사무소를 차려놓고 총독부 일을 도맡아 보았다. 筆者(張基泰)는 《每新》에 있었던 관계인지 일인속기사들과는 전혀 면식없이 지냈다. 방송국에서는 郡이라는 日人과 같

이 있었을 뿐이었다. 당시 서울식 창안자 姜駿遠씨는 《京城日報》에 있었으나 서로 상면할 기회는 거의 없이 지냈다. 또한 1945년 洪鍾仁씨가 소개 입사한 白某라는 속기사가 《每新》에 같이 있었는데 해방후 만나보지 못하고 있다. (中略) 在日時 당시만 해도 일본에는 속기사의 활약이 대단했다. 영화의 대사(동시녹음)도 속기사가 화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음의 기록을 담당했으니 오늘날 한국의 속기계를 돌아볼 때 참으로 반세기 이상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저기서 개최되는 강연회의 속기기록이 現今 거리의 주간신문 팔리듯 팔리며 신문·잡지사의 속기 이용이 우리와 비해 놀랄 만큼 컸었다. ……” 한편 우리말 속기의 실상에 대해 1934년판 《日本速記50年史》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는 古來로 관청사무에 쓰기 위한 유치한 속기법이라고 칭할 일종의 草書法을 안출하여 실제로 써본 일은 있지만 완전한 조직과 과학적 방식에 의하여 편성된 것은 없었다. 그런데 大正8년(1919)경 《京城日報社》司事 方台榮이 일찍이 朝鮮語速記術 편성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朝鮮貴族及 실업방면 유력자로부터 愆憑한 바 있어 드디어 方翼煥으로 하여금 일본속기술을 연습케 한 다음에 조선어속기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京城鐘路 기독교청년회관 교수 李源詳과도 협의제휴하여 大正9년(1920) 초두부터 연구를 개시하였다. 조선어속기술은 조선어 발음의 規短準繩이 될 조선언문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로 단순히 他語에 쓰이는 속기술의 형태를 直譯的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요점을 충분히 捕捉한 후에 조선어를 본위로 한 것을 만듭이 긴요하다. 조서언문의 조직은 11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되어 1자는 5綴 이상 5綴 이내로 한하며, 또 모음 기호가 다 최초부터 일정한 발음이 있을 뿐이고 配合에 의하여 색색으로 변화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또 영어와는 언어의 계통이 全然 다르므로 美英의 것을 그대로 範則으로 함은 적당치 않다. 세계중 朝鮮語에 제일 가까운 것은 일본어 외에 없으며, 더욱이 한문을 혼용하는 점도 전혀 동일하므로 속기기호에 있어서 가장 참고가 되는 것은 일본어속기술이니 거기에 일본어와 조선어의 상위점을 생각하고 조선어 본질상에 적합하도록 조선어에 특유한 방식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방침하에 연구를 진행시켜 조선어속기법을 발명창시하였다는 보도에 접한 것이 大正9년(1920) 6월이었다. 이리하여 조선어속기법은 창시되었지만 아직 실용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조선어속기의 모양은 한 사람의 강연자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5,6명의 速記者라고 자칭하는 필기자가 큰 탁자 앞에 쭉 늘어앉아 상호간 하등의 연락도 없이 각자 귀에 들리는 대로 붓이 돌아가는 것만 필기하니 물론 講演者의 10語에 대하여 2,3語밖에는 필기 못한다. 강연이 끝나면 그것을 이리저리 이어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 講演速記錄이라고 하여 신문잡지에 게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昭和元年(1926년)에 이르러 林容德이라는 사람이 일본어·조선어 공용의 조선속기술 연구에 노력하여 금일에는 완전히 활용하게 되었다. 氏의 말에 의하면 조선어는 일본어에 비하여 어려움고 또 지방어가 극히 많으며, 또 발음이 어려우므로 속기기본문자도 일본의 기본문자에 비하여 훨씬 많다. 略字(縮熟語)는 1,400자 가량 있다.”

이 문헌 자료에 나타난 “…조선어 속기법을 발명 창시하였다는 보도에 접한 것이 大正9년 6월이었다”는 기록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속기법이 朴如日이 1909년에 창안 발표했다는 ‘朝鮮速記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말 속기법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속기인들이 앞으로 계속 조사 연구해봐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제2절 해방후 실용속기법식의 창안발표

1. 8·15解放과 實用速記法式 創案前夜

日帝36년간의 잔재가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가 우리의 언어생활이다.

언어는 사람의 의식과 사고를 담아내는 틀이라 할 수 있다. 한번 만들어진 이 틀을 깨기는 쉽지 않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아직까지 일본식 思考와 표현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부터

시작된 일제의 우리 민족에 대한 언어간섭은 1938년 신교육령 발표와 우리말 신문폐간, 1940년의 창씨개명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일제의 철저한 우리말 말살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 앗아갔다. 따라서 해외에서이긴 하지만 韓日合邦 이전인 1909년에 우리말 속기법이 태동했고, 그 이후 8·15해방 전까지 몇몇 우리말 속기법식이 국내외에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되지 못했다. 물론 발표된 속기법이 구조상의 미비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같은 이유 역시 우리말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바로 그러한 장애물이 제거되는 순간이었다.

언어를 가장 많이 구사해야 하는 문인이나 정치가를 비롯한 강연자 및 웅변가들이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나 언어의 자유를 되찾으면서 쏟아내는 말들은 마치 갈었던 봇물이 터져나오듯 거세고 도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는 속기술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각종 속기법의 출현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조류였다.

그러나 8·15 광복 당시 국내에는 日本語速記 가능자만 10여명 있었을 뿐 우리말 속기 가능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해방 후 서울식을 창안한 강준원이 일제시대인 1935년 《동아일보》 지상에다 '朝鮮語速記術講解'를 발표했고, 그 밖에 이미 우리말 속기법을 창안, 또는 연구중에 있는 실용속기법 창안자들이 몇몇 있긴 했으나 실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했다.

일제말기 일본어속기를 할 수 있는 한국인 속기사들은 주로 언론기관과 개인속기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中央式의 朴寅泰가 《京城日報》에, 高麗式의 金天漢이 《동명통신》에, 서울식의 姜駿遠이 《京城日報》에 근무하고 있었고, 대구 출신인 李勇吉이 서울에 있는 개인속기사사무소에서 근무했었다.

당시 언론사의 편집국에는 '연락부'라는 부서가 있었고, 속기사들은 대개 이 부서에 배속되는 것이 통례였다.

연락부의 주된 업무는 본사와 지국과의 기사 송수신업무였는데, 지방주재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통해 기사를 수신하는 업무가 속기사들의 몫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속기방법은 한국어를 일본어로 즉시 알아듣고 일본어속기법으로 속기한 다음 다시 한글로 번문하는 식이었다. 그 밖에 속기사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강연속기·좌담속기 등이 많았다. 녹음기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라 속기사에 대한 대우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의 한국인 속기사 배출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속기를 배우고 싶어도 오늘날처럼 쉽지가 않았다. 우선 일본어속기를 배우자면 무엇보다도 일본어에 능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945년의 8·15광복은 한글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속기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해방 직후 언론이 되살아나고, 각종 정치집회나 강연회 및 좌담회 등의 회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속기사의 수요처도 늘어났다. 그같은 분위기는 곧 우리말 속기의 창안을 서둘러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오늘날 '실용속기법'이라 불리우는 대부분의 우리말 속기법은 일본어속기사들에 의해 창안되었다. 따라서 그들에 의해 발표된 우리말 속기법식의 기본문자는 창안자가 쓰고 있는 일본어속기법식의 구성원리를 응용할 수 밖에 없었다.

2. 활기면 實用速記法式 創案 發表

속기술의 발달은 議會政治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말은 곧 의회정치가 일찍 발달한 나라일 수록 속기술의 발달도 그에 비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해방 전에 이미 우리말 속기법이 고안·발표되긴 했지만 우리 말 사용마저 제약받던 일제하에서 우리말 속기의 보급은 극히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던 차 민족의 숙원이었던 8·15광복은 이미 태동은 했으며 빛을 보지 못했던 速記界에 활력소가 되어 새로이 고안된 속기법이 속속 발표·보급되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해방이 되자 국내 속기인들간에는 앞으로 개원될 국회의 議政史를 당장 누가 속기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당장 속기사를 양성하려 해도 우리말 속기법은 일부 일본어속기사들에 의해 겨우 연구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해방후 우리말 실용속기법을 가장 먼저 발표한 張基泰를 비롯하여 朴松·朴寅泰·姜駿遠·李東根·金天漢 등 일본어속기사는 제각기 자신이 쓰고 있는 일본어속기법을 기초로 하여 우리말 속기법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하나의 문자를 창안해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재정적인 지원없이 순전히 개인의 힘만

으로 창안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 속기를 창안한 후에도 그것을 발표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 ... 나는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우리말 速記考案에 몰두하였다. 소득없는 困窮한 생활도 고통이었지만 한시가 바쁜 우리말 속기사 양성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가 더욱더 초조스러운 심리작용을 가져와 애타는 연구는 더욱 애를 태웠고, 주야없는 불결한 窮房生活 1년(마마까지 앓아가며)의 성과를 들고 각 신문·통신·방송국을 찾고 정부기관을 찾은 것이 1946년 6월 - 그 후 수개월을 양성소 설립자를 구하기에 동분서주했지만 도로였다. 국회기록이라는 국가적 임무수행을 내걸고 다녀봤으나 실망은 컸다. 그때만큼 내 자신의 愚行을 自嘆한 일은 없다. 식구를 처가에 맡기고 여기저기 寄食하는 처지보다도 그 혼한 敵産家屋 2층방 하나 얻지 못하는 내 능력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련했다. 그 때 만사를 체념하고 직업 전환을 했던들 오늘날 내 식구들이야 희생을 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 自掘自墓라 할까! 별로 보람없는 생애를 지내는 일을 위해 허둥지둥 시내를 개미 쳇바퀴 돌 듯 했으니 ... 아뵘든 창신동 산속 私設學院의 한 교실 小兒用 책상에 앉아 있는 어린 1기생들의 희망에 찬 얼굴들, 가시밭길을 무릅쓰고 未知의 장래를 개척해보려는 그 의지에 찬 여러 청장년을 실망시키지 않을 무거운 책임감에 열을 올린던 그때가 눈에 선하다..." 張基泰가 《速記界 2號》(1970.6.30)에 발표한 이 <회상기>에서 우리는 당시 우리말 속기 창안자들의 고뇌와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말 속기법은 속속 지상 또는 책자로 발표되었다.

즉, 1946년 6월 20일 張基泰가 逸波式을 《서울신문》과 그 밖의 신문에 발표함과 동시에 《逸波式速記學概論》을 저술했으며, 동년 10월 12일에는 週刊 《學生新聞》에 朴 松이 主幹으로 있는 '朝鮮語速記者聯盟' 결성광고가 게재된 데 이어 동년 10월 19일부터 6일간 《學生新聞》에 <朝鮮語速記에 관한 研究>라 하여 朴 松의 '朝鮮式(후에 韓國式으로 개칭)'이 소개되었으며, 12월 25일에는 朝鮮教育研究會 간행으로 朴鍾浣의 《朝鮮速記》가 출간되었다.

그리고 1947년 7월에는 朴寅泰가 '中央式'이라는 속기법식으로 중앙속기학원을 설립하였고, 이듬해 1948년 4월에는 姜駿遠이 '서울速記法'으로 안암동에 서울速記專門學館을 설립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李東根이 '解放速記(후에 東邦式으로 개칭)'라 칭하여 을지로 4가에다 해방속기학원을 설립했는가 하면 한달 후인 9월에는 金天漢이 '高麗式速記法'이라 칭하여 효창동에다 高麗速記學院을 설립하였다.

겨우내 땅속에서 잠들었던 개구리가 봄을 맞아 움추렸던 몸을 풀고 뛰어나오듯 우리말 속기도 일제의 식민정책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법식들이 앞다투어 속속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때 발표된 법식들은 그 창안자들이 제헌국회의 전신인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필요로 하는 속기사를 당장 배출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어속기법을 기초로 한 급조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속기법 자체에 결함도 많았다.

金天漢의 高麗式速記法이 학원개설로 발표된 후 얼마간 새로운 속기법 발표가 뜸하다가 1950년 2월 3일에 金世鍾이 '世鍾速記法'을 발표하고 주로 호남지방에서 속기사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저술은 없었고, 1956년 들어 南相天의 '南天式'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해방후 이처럼 여러 방식의 속기법이 창안·발표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1968년 2월 3일 국회사무처내에 국회속기서양성소가 개설되고, 동년 5월 20일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 설치와 때 맞추어 연구작업에 들어간 결과 1969년 1월 10일에 의회식이 창안발표되었다.

3. 실용속기법식별 기본문자

1) 일 파 식

- 創案者 : 張基泰
- 발표연월일 : 1946년 6월 20일
- 流 派 : 正圓派(幾何線派)

基本文字

(숫자는 mm임)

모음	(10)	(5)	(15)	(10)	(5)	(10)	(5)	(15)	(10)
자음	ㅏ(ㅑ)	ㅓ(ㅕ)	ㅗ(ㅛ)	ㅜ(ㅠ)	ㅡ	ㅣ	ㅈ	ㅊ	ㅌ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2) 高麗式

- 創案者 : 金天漢
- 발표연월일 : 1946년
- 流 派 : 正圓派(幾何線派)

基本文字

(숫자는 mm임)

모음	(10)	(10)	(10)	(20)	(10)	(20)	(5)	(5)	(10)	(10)	(10)	(20)
자음	ㅏ(ㅑ)	ㅓ(ㅕ)	ㅗ(ㅛ)	ㅜ(ㅠ)	ㅡ	ㅣ	ㅈ	ㅊ	ㅌ	ㅋ	ㆁ	ㅇ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ㅋ												
ㆁ												
ㅇ												

4) 서울式(姜駿遠式)

- 創案者 : 姜駿遠
- 발표연월일 : 1935년 6월 18일
- 流派 : 橢圓派(單劃式)

基本文字

		모음					
자음		ㅏ	ㅑ	ㅓ	ㅕ	ㅗ	ㅛ
ㄱ		↗	—	↘	↘		↗
ㅂ		↗	—	↘	ㅏ	ㅑ	↗
ㅃ		↗	—	↘	ㅏ	ㅑ	↗
ㅇ		↘	↘	↘	↘	↘	↘
ㅈ		↘	↘	↘	↘	↘	↘
ㅊ		↘	↘	↘	↘	↘	↘
ㅋ		↘	↘	↘	↘	↘	↘
ㆁ		↘	↘	↘	↘	↘	↘
ㄴ		↘	↘	↘	↘	↘	↘
ㄷ		↘	↘	↘	↘	↘	↘

6) 한국식

- 創案者 : 朴 松
- 발표연월일 : 1946년 10월 19일
- 流 派 : 正圓派(幾何線派)

基本文字

(숫자는 mm임)

모음	15	15	4	7.5	4	2	15	7.5	7.5
자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7) 남 천 식

- 創案者 : 南相天
- 발표연월일 : 1956년 3월 20일
- 流 派 : 正圓派(幾何線派)

基 本 文 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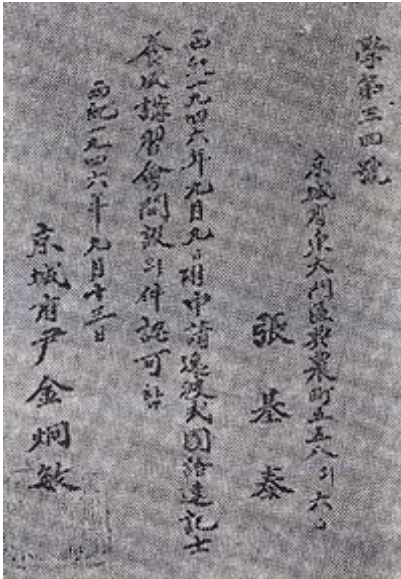
(숫자는 mm임)

모음	10	10	10	10	25	25	5	5	10	1.25
자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제3절 초창기 속기술의 보급실태와 실용화

1. 초창기에 발족된 속기단체와 속기술의 보급실태

1) 해방 직후에 발족된 속기단체



해방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정치·사회 단체들이 속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速記界에도 일본어속기사 출신들이 주축이 된 속기단체들이 등장했고, 이들 단체의 모임을 통해 우리말 속기법 창안자들에 의해 발표, 또는 연구중인 속기법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즉, 1946년 6월 말경에는 속기문화의 보급·발전·연구를 위한 속기인의 단체인 '朝鮮語速記學會'가 제일 먼저 결성되었다.

조선어속기학회의 초대회장에는 姜駿遠이, 부회장에는 朴寅泰가 피선되었다. 이 무렵 姜駿遠은 '서울속기법'을, 朴寅泰는 '中央式'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朝鮮語速記學會'의 결성 소식이 국내 각 신문에 보도되자 전국에 산재해 있던 속기인들간의 교류가 잦게 되고, 공동발표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1946년 8월 3일에는 朝鮮神學校에서 한글바로쓰기협회 속기부 주최

로 '속기건설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비로소 각 창안자들의 자기속기법식 소개가 있었다.

참석자는 張基泰·姜駿遠·朴寅泰·朴鍾浣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가 일본어속기사들로서 우리말 속기는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된 張基泰의 逸波式뿐이었고, 그 밖의 다른 법식은 창안 단계에 있었으므로 참석자 상호간에 많은 비판과 의견이 오고 갔다.

한편 1946년 8월 7일에는 '朝鮮語速記學會'와는 별도로 '朝鮮速記文化協會'가 발족되었다. 이 협회에선 해방후 가장 먼저 우리말 속기법을 발표한 張基泰가 主幹을 맡았다.

'조선속기문화협회'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속기 사무 분야의 활성화와 속기사 양성 사업이었다.

이들 사업중 속기 사무는 언론인 閔載禎의 많은 협조로 활발히 진행되었고, 속기사 양성사업은 張基泰 자신의 비상한 노력과 희생으로 1946년 9월 11일 우리나라 최초로 규모있는 속기사 양성기관인 逸波式速記士養成所의 개설로 막을 올렸다.

閔載禎은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을 졸업한 忠南 稷山 출신으로 다나카(田中)라는 와세다식 속기법을 익힌 사람과 함께 일찌기 中日戰爭 당시 서울에다 速記普及會를 개설한 사람이다. 그는 속기사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있어 속기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 나머지 우리나라에 속기술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다. 비록 큰 성과 없이 경비만 낭비하고 말았지만 逸波式의 창안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2) 초창기 速記術의 보급실태

실용속기법 가운데 가장 먼저 체계적인 강습소에서 교습된 속기법식은 張基泰의 逸波式이었다. 1946년 6월 20일을 기점으로 《서울신문》을 비롯하여 몇몇 신문에다 자신의 속기법을 발표한 張基泰는 같은해 9월 11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던 창신학원에다 '逸波式速記士養成所'를 임시로 개설하고 속기사 양성에 돌입했다. 당시 입소생은 45명이었고, 수업은 야간 수업으로 시작되었다.

張基泰가 속기사 양성소를 개설한 같은해에 朴 松도 서울 中區 挑洞에 있는 태평여관에서 韓國速記專門學館을 개설하고 자신이 창안한 '朝鮮式'의 강습에 들어갔다.

張基泰와 朴 松의 속기강습소 개설은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일본어속기법을 기초로 하여 우리말 속기법을 이미 체계적으로 창안해 두었거나 연구중에 있는 다른 速記法式의 창안자들을 자극했고, 그러한 자극은 곧 여타법식의 속기학원 설립분위기를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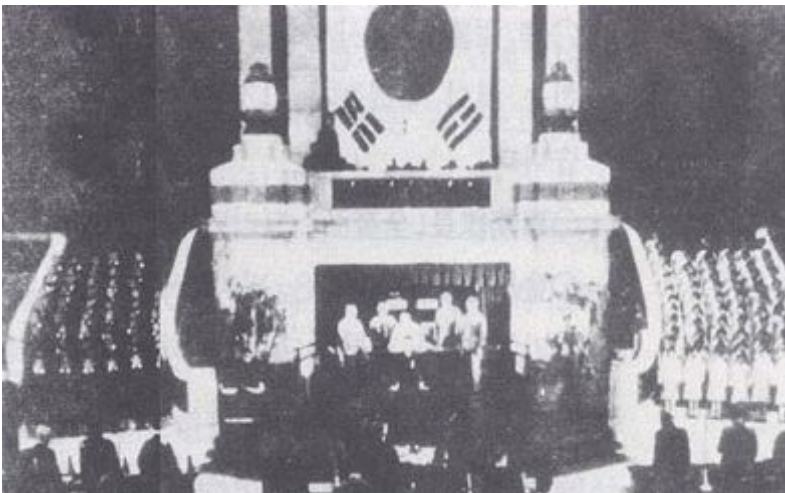
특히 1947년에 개원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속기업무에 종사한 바 있는 張基泰가 속기 실무보다는 속기사 양성에만 전심전력한 결과 1948년 3월 30일 9명의 제1기 수료생을 배출하게 된 쾌거는 초창기 속기법 창안자들의 속기법 발표 및 강습소 개설을 더욱 서둘게 했다.

그리하여 1948년 4월 들어 姜駿遠이 서울 안암동에다 서울速記專門學館을 설립하고 '서울速記法'을 강습한 데 이어 8월에는 李東根이 을지로 4가에다 해방속기학원을 설립하여 '解放速記(후에 東邦式으로 개칭)' 강습에 들어갔고, 또 한달 후인 9월에는 金天漢이 효창동에다 高麗速記學院을 설립하여 '高麗式速記法'을 강습하기 시작했다.

한편 지방에서의 속기술 보급은 서울보다 몇 년 늦은 1950년 世鍾速記法을 발표한 金世鍾이 주로 호남지방에서 속기사 양성사업에 힘썼다.

2. 남조선과도립법의원에서의 속기업무 담당

1) 남조선과도립법의원의 개원과 속기사 채용



◀구조선총독부 청사에서 열린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개원식(1946.12.12)

우리말 속기가 비록 구미제국이나 일본·중국 등 동남아 속기선진국보다 훨씬 늦게 실용화된 것은 사실이나 속기사의 주활동 무대라 할 수 있는 의회속기에 있어서만은 선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제헌국회

이전에 이미 의회속기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속기록을 작성, 보관·관리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에서 속기록을 가장 먼저 작성했던 때는 1946년 12월 12일에 개원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제1차회의가 개최된 1946년 12월 11일 오전 10시이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1號'는 첫머리에

"時日(단기 4279년 12월 11일 오전 10시), 處所(군정청 제1회의실), 參席議員(金奎植·元世勳·安在鴻·黃信德·呂運弘·金 孚·張 勉·柳英根 등 53명)"이라고 기재한 데 이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상오 11시 40분 開議

○ 事務總長(金奎弘) 여러분 오래동안 기다리게 하여서 대단히 宋安합니다.

○ 議會局長(李宣敎) 여러분 다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事務總長(金奎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여서 대단히 宋安합니다. 방금 개최할 시간에 임박해서 돌발한 사건이 있어서 법령 제118호를 改訂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령제118호의 改訂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申略)……

○ 事務總長(金奎弘) 오늘의 준비회의가 의장선거를 하기 위한 회의니만큼 지금부터 의장 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있어서 임시로 사회하실 분을 정해가지고 그분이 나오셔서 선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혹 그냥 저에게 지명이 계신다면 그대로 계속해도 좋겠습니다.

○ 姜 ○ 議員 임시사회를 한분 선거하기로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선거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것은 여러 의원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事務總長(金奎弘) 그러면 선거로 ……

○ 金朋濬議員 그것은 번다한 것이겠으니까 司會가 그냥 지정해서 투표시키는 것이 간단하고 좋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 事務總長(金奎弘) 지금 임시로 사회하실 분을 선거하시겠다는 의견과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계속해서 선거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편이 좋을런지.

○ 元世勳議員 사무총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데에 책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 중에서 임시사회를 하는 의장을 선거하는 그 목적보다는 後世에 記錄을 남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 임시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임시사회를 하는 의장을 투표선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者 有함)

○ 呂運弘議員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임시사회를 하는 임시의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연령·學識으로 보든지 力量으로 보든지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金奎植박사를 임시사회로 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動議에 찬성이요」 하는 者 有함)

(拍手)

○ 事務總長(金奎弘) 그 動議에 再請입니까?

(拍手)

(金奎植박사 登壇 의장석에 就함)

○ 事務總長(金奎弘) 임시의장 金奎植박사를 소개합니다.

(拍手)

○ 臨時議長(金奎植) 지금 개회를 선포해주신 사무총장의 말씀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의장을 선거하는 계단입니다. 그 의장을 선거하는 계단에 있어서 본인으로 하여금 의원 자격으로 임시사회를 해달라고 해서 명령을 복종하고 나왔습니다.…… ”

이 속기록의 편집형태는 2단 세로조판으로 되어 있고, 발원자 표기 방법 및 회의장 狀況表記 등은 오늘날의 국회속기록과 매우 흡사하다.

김규식박사를 포함하여 4명이 입후보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의장선거에서는 金奎植박사가 총투표수 53표 중 49표를 얻어 의장에 피선되었다. 그의 의장 피선은 우리 速記史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왜냐 하면 그가 바로 입법의원 사무처에 速記士를 구하라고 강력히 주장한 장본이었기 때문이다.

1946년 9월 20일 당시 미군정청 입법자문기관으로 설치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출범과 함께 미군정청인사행정처를 통해 速記士 채용공고를 냈는데, 이 때 金奎植박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던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金奎植박사는 미국 유학 시절 미국속기를 손수 한 분으로 속기에 대해 남달리 이해가 많았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시만 해도 일반인에게는 '速記'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하게 들렸던 시절이었다. 심지어 속기사 채용공고를 낸 사무처 실무진까지도 국내에 속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조차 잘 알길이 없었고, 또 있다 해도 실무가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러웠던 터였다.

바로 이 무렵 姜駿遠·朴寅泰·金天漢 등 우리말 속기 창안자들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속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설득하기 위해 사무처 담당자를 찾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입법의원에서 속기사를 찾겠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다. 그러지 않아도 속기사를 찾는 마당에 뜻하지 않았던 속기사들의 방문은 오히려 속기사를 찾고 있던 입법의원 속기사 채용 실무자들에게 반가운 손님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막상 미군정청인사행정처로부터 나온 속기사 채용공고를 접한 원로 속기인들은 속기사 채용소식의 기쁨도 한순간, 걱정이 앞섰다. 당시 국내에는 실무속기가 가능한 속기인들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실무가능한 속기사들도 하나같이 일본어속기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속기인들의 모임인 朝鮮語速記學會와 朝鮮速記文化協會는 수차례 걸쳐 협의의 거듭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선 실무가능한 속기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까닭에 입법의원에서 원하는 속기 본래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 태도 결정을 일시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속기문화의 씨앗을 뿌릴 터전을 마련할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초 속기사 정원은 10명이었으나 이를 채울 수 없어 1946년 12월 우선 1차로 姜駿遠·朴寅泰·金天漢 등 세사람이 먼저 속기사에 대한 대우를 우대해줄 것과 속기시양성기관 설치의 방

도를 강구해줄 것을 조건으로 過渡立法議院에 들어가 속기 실무에 임한 데 이어 朴準泰·朴鍾浣·李勇吉 등이 다음으로 합세했으며, 아울러 7명의 속기수강생도 채용하여 姜駿遠式速記를 교수하게까지 되었다.

이들 속기사 중 《嶺南日報》에 근무한 적 있는 李勇吉(筆名 李楨樹)은 대구 출신으로 해방 전 日本速記事務所에서 근무한 경력에다 《女俳優》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한 작가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우리말 속기진은 1946년 12월 11일 오전 11시 金奎植 박사 외 52명의 의원이 참석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예비회의에서부터 그 활동을 개시하였다. 우리말속기가 실용단계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이다. 개원 초기의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불꽃튀기는 토론장이었다. 발언자들은 누구나 강한 의욕과 열정이 흘러넘쳤다. 그래서 본회의와 상위는 매일 개최되다시피 했고, 그것도 종일회의가 태반이었다.

당시 속기업무의 량에 비하여 속기사의 수가 절대부족이었으므로 속기사는 본회의에 국한하여 배치하였다. 그러나 속기량의 過負荷로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고, 길어진 회의시간에 비하여 적은 수의 속기사가 이를 다 소화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거기다 실무 속기사들 대부분이 일어속기만 가능했었고, 姜駿遠·朴寅泰등 우리말 속기 창안자들까지도 자신의 속기법에 숙련되지 않았던 까닭에 자신이 창안한 속기법을 쓰지 못하고 발언자의 말을 일어속기법으로 속기한 다음 다시 우리말로 바꾸어 번문해야 했으므로 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속기사의 수가 10명이 채 못되었을 때는 계장까지 속기석에 배치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

이 때 속기사의 소속은 처음 비서처 문서과였다가 얼마후에 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기록계로 바뀌었고, 계장은 姜駿遠이었다.

당초에 속기사 배치는 2인 1조로 30분간씩 기록하도록 했지만 하루에 두세 번 배치될 때가 허다했다. 그만큼 속기사들의 고충과 피로도 날로 쌓여가기만 했다. 결국 속기사 중 朴準泰는 과로로 인하여 근무중 사무실에서 졸도하기에 이르렀으며,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말 속기의 창안 및 보급은 활발히 전개되어 1947년도에는 서울식을 배운 朴喜善·金學憲·徐廷祿·金商鎬 등이 속기견습생으로 立法議院에 들어갔다가 후일 정식직원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韓鐵永(중앙식)·金龍煥·李吉鉉(서울식)·許 樹(일파식) 등이 채용됨으로써 立法議院의 속기진은 차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1948년 초 立法議院이 문단기 직전에 일파식을 배운 鄭源道·金鎮基 등이 역시 견습생으로 들어갔다가 制憲國會 개원과 더불어 정식직원이 되었다.

이와같이 속기사가 늘어나고 현직속기사들이 야간작업을 마다 않고 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시간에 속기록을 제대로 발간하지 못하자 過渡立法議院 第106次會議에선 速記錄 작성제도의 존재문제가 논의되어 마침내 同議院에서는 속기사에 의한 속기를 일시 중단하고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略記를 시켜 형식적인 기록을 한 때도 있었다.

2) 과도립법의원시절의 속기업무 실태

1947년도에 들어와서 속기사는 다소 충원되었지만 늘어난 회의의 속기록을 다 간행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속기록 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 하면 현인원으로 1회기(20여일)의 속기를 전부 번문하자면 무려 3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여기까지 이르자 할 수 없이 속기 전담부서인 기록계는 현재의 당면과제를 고위층에 보고하게 되었다. 결국 최종 보고를 받은 金奎植의장의 배려로 속기사가 충원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주요회의록은 완벽하게 번문하고 보통 안건에 대해서는 약기형식으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상부로부터 내려졌다. 이 때 만약 金奎植의장이 速記士의 애로점과 速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의회에서의 속기록 작성 제도 자체가 오늘날처럼 존속됐을까 하는 의문점을 남기게 한다.

金奎植의장은 속기사를 가리켜 언제나 '속기원'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속기사에 대한 대우를 남달리했다. 그는 속기문제뿐 아니라 의회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노출되면 즉석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원활히 운영되게 하는 데 백과사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예컨대 의원 중에 의사진행을 잘못하거나 발언하다가 失言을 할 경우 이를 시정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

속기사가 10명 이상 늘어나면서부터 속기시간은 종래의 30분 교대에서 10분으로 변경되었고, 회의록도 정상간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개원 2년째인 1947년 하반기에 접어들자 속기 부하량이 갑자기 불어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회의가 종일회의로 이어지는 바람에 속기의 번문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과로까지 겹쳐 결근자가 속출하는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속기사들은 속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줄 것을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속기사 대우는 일반기술직 공무원 급여에도 못 미치는 박봉이었으며, 야간근무수당이 나 휴일근무수당 따위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

사무처에선 속기사의 격무는 이해하지만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속기사들의 탄원을 일축하였고, 결국 속기사들은 '속기중단'으로 맞대응하는 벼랑끝 처우개선 요구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약 10일 동안 속기없는 의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속기사가 없던 동안에는 임시방편으로 임시정부에서 서기로 일했다는 임정요인 金鵬濬씨의 딸이 略記로 작성하여 속기공백기를 커버했는데, 이 사실은 우리 速記史에 있어 큰 오점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속기수당제는 여타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끝내 실시되지 않다가 제헌국회에 들어서야 겨우 실현을 보게 되었다.

제2장 국회를 무대로 한 속기계의 약진 (1948-1961)

제1절 제헌국회의 개원과 속기사 채용

1. 제헌국회의 구성



◀제헌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던 구 중앙청 전경

1945년 8월 15일 우리 나라는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해방은 자율적이 아닌 타율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해방은 곧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光復을 맞은 흥분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동족 상호간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 國土兩斷이라는 쓰라린 현실

에 직면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議會政治의 民主獨立國家를 수립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유엔 감시하에 전 한국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불응으로 인하여 1948년 2월 26일 유엔 小總會에서 "한국의 가능한 지역에서 한국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행하고 이 선거는 인구비례에 의하여 독립정부 수립의 第1보로 설정될 한국 국회의 3분의 2의 대의원을 선거하고 잔여 3분의 1의 대의원은 북한 선거시까지 유보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유엔 臨時韓國委員會監視團 입회하에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제헌국회의 개원을 보게 되었다. 제헌국회는 小選舉區制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19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국회의장에는 李承晩의원, 부의장에는 申翼熙의원과 金東元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당시 우리 民族의 念願을 가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議員宣誓文 草案을 소개한다.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빛나는 역사적 조국재건과 독립완수의 중임을 다하기 위하여 憲法의 제정으로 中央政府를 수립하고 남북통일의 大業을 수행하는 한편 모든 법률에 의한 정치·경제·문화 등 國家萬年의 기초 확립과 國利民福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우리나라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항구적 평화에 공헌함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다하기로 이에 殉國先烈과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制憲國會는 1948년 6월 3일부터 헌법 제정에 착수하여 7월 12일 單院制의 국회구성과 大統領中心制의 권력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통과시켜 7월 17일에 공포 시행하였다. 이어 同年 7월 20일 국회는 초대 대통령에 李承晩 국회의장, 부통령에 李始榮씨를 선출하여 마침내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기하여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함으로써 잃었던 主權을 39년만에 되찾았다.

한편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48 대 6, 기권 1의 압도적인 지지하에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였다.

또 1948년 8월 4일 議長補選에선 부의장이었던 申翼熙의원이 選出되고 그 후임에 무소속인 金若水의원이 피선되었으며, 1949년 7월 2일 金若水 부의장의 사임에 따라 그 後任으로 尹致暎의원이 補選되었다.

이렇게 制憲國會는 2년간의 임기 중 헌법을 비롯하여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 149건에 달하는 중요 법률안과 기타 많은 議案을 심의통과시킴으로써 新生 民主共和國의 굳건한 터전을 닦고 제헌국회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

2. 속기사 채용시험과 채용현황

해방후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기 선각자들은 우리말 速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速記法式 연구는 물론 속기사 양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수나마 사회에 속기사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는 속기사 자격제도가 없었으며, 국회에서 모집할 때도 人事規則이나 시험규정이 없었으므로 공개모집을 하는 데도 학과목은 없이 속기실무 시험만 보았다. 그리고 速記錄을 발간하는 데에는 속기사의 수가 절대부족이었으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응시만 하면 거의 채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는 속기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10여명에 불과했다 하니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만하다.

제헌국회의 속기 진용은 주로 남조선과도 입법의원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경험을 쌓은 속기사들로 구성되었다.

속기장은 姜駿遠이었고 속기사는 朴喜善·金天漢·金龍完·韓龜永·金鎭基·金學憲·徐廷錄·許 樹·李吉鉉·金商鎬·張惠根·鄭源道 등이었다. 憲法·國會法·政府組織法 등 시급한 건국작업의 법제정을 위한 업무량이 과다하여 연일 늦은 밤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1949년 4월 朴寅泰·韓奉永·柳浩龍·李鍾浩가 채용되었고, 같은해 7월 이들 중 李鍾浩가 퇴직하고 새로이 具然東·柳章熙·劉載殷·申景鉉등이 추가로 採用됨으로써 속기진의 보강을 가져왔다.

3. 초창기 速記士에 대한 處遇

“立法議員 개원을 앞두고 立議事務處 당국은 회의의 기록을 速記法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速記士 모집을 서둘렀으나 좀처럼 속기사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말 속기사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무척 서운하게 여겼고, 日帝의 우리말 말살정책을 원망하면서도 행여나 하는 기대를 걸고 계속 속기사 수색전을 벌였다. 천신만고 끝에 속기사를 찾아냈을 때에는 쾌재의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倭政下에서 속기술을 연구하고 우리말 속기를 창안하여 해방과 더불어 實用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속기 창안자들의 노고와 업적에 경의와 찬양을 드리는 바이다.

立法議院에 채용된 속기사는 5·6명에 불과하였으며 그 대우는 그 당시 사무처장(제헌국회때는 사무총장)의 月俸을 능가하였음은 그 稀少價値에서 오는 이유만은 아니고 앞에 들은 그들의 노고와 업적에 연유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이상은 《速記文化》 창간호에 게재된 前 民議院事務處 金震熙 속기과장이 기고한 내용중의 일부다.

그리고 당시 速記長으로 활약했던 서울식 창안자 姜駿遠의 회고에 의하면 速記長은 이사관 대우이고, 월급은 본봉 3,000 에 수당도 3,000 이었으며, 일반 속기사들도 부리사관이나 서기관 정도의 대우를 받았고, 수당까지 받았으니 다른 직원들이 무척 부러워했다고 한다.

명칭도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서기(주사급)는 緣事, 계장급은 幹事, 과장급은 參事, 국장급은 理事라고 하였지만 속기사는 계장까지도 속기사라 하여 우대하였다. 이렇게 처음 속기사를 우대하는 것은 그 수가 적어 稀少價値가 있기도 하지만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國政을 논의하는 국회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초창기에는 소리로서 공중에 흩어지는 言語를 붙잡아 文字로 옮겨서 회의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속기뿐이었기 때문에 더욱 속기사들이 우대받았던 것이다.

4. 속기업무와 속기석 배치

速記士는 인간생활의 광범한 언어활동에 있어서 그 언어의 내용대로 정확하게 기록, 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사회가 多樣化하면서 속기의 영역도 급속히 확대되어 가는데 政治·經濟·社會·文化·科學 등 다방면의 토론을 一言一句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존하는 歷史의 記錄者로서, 상반된 利害關係로 야기되는 다툼의 틈바구니에서도 어김없는 유력한 증거력의 保存者로서 사회적 임무가 막중하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速記士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질과 교양이 필요하다

첫째, 유능한 속기술과 풍부한 경험

둘째, 폭넓은 상식과 명석한 두뇌

셋째, 문장력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속기사가 어느 職에서나 필요한 프로정신과 성실성을 발휘한다면 그는 이미 一流 速記士이다.

속기 업무에 있어서 誠實性은 매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되지도 않는 말을 해 놓고 들리는 대로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들리는 대로 적어놓았다 해서 그것이 곧 속기라고 할 수는 없다. 速記는 소리를 적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말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속기가 아니다. 그래서 速記는 高度의 精神活動이라고 한다. 풍부한 경험과 명석한 두뇌를 활용하여 誠實性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最高의 速記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速記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會議의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발언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速記士가 위치해 있어야 한다. 速記士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발언대가 앞에 따로 나와 있는 경우는 國會 本會議場처럼 발언대와 의석 중간에 속기석이 있어야 하며, 國會 常任委員會처럼 의석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으면 한가운데가 회의상황이나 발언자를 확인하는데 편리할 것이고, 원탁회의인 경우는 사회자 옆자리가 좋지만 速記士가 2명이고 좌석의 여유가 있으면 사회자와 90도되는 자리와 바로 건너 쪽 자리가 難聽을 보완하는데 적합한 속기석이다.

5. 속기록 작성양식

우리나라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立法議院 開院부터 速記錄을 남겼다. 전술한 바와같이 우여곡절 끝에 잠시 중단된 적이 있으나 개원식부터의 速記錄이 존재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初期의 速記錄은 16절(가로 18cm, 세로 26cm) 크기로 조판 사이즈는 가로 15cm, 세로 23.5cm이고, 가는 선과 굵은 선의 이중 테두리가 있으며, 한 면은 3段 32行으로 組版되었고, 1面 오른쪽에는 '第몇회 國會速記錄 第몇號 國會事務處'라 표기하고 위쪽에도 '第○回-第○號'를 표시하였다.

會順과 토의된 안건 다음에는 開議時間을 쓰고 會議進行으로 들어가는데 시간과 상황설명은 괄호 안에 넣었다.

발언자 표시는 직책 뒤 괄호 안에 이름을 넣었고, 議員인 경우에는 이름 뒤에 議員이라 붙이고, 한 칸 띄어서 發言내용을 적었다. 발언자의 성명 앞에 원형 약물을 표기하는 것은 王朝實錄의 근거가 되는 《承政院日記》의 붓뚜껑 도장을 본받은 듯하며, 이 원형 약물표기는 日本의 帝國議會 議事速記錄과 현재 우리나라 國會速記錄에도 있다.

이 체제는 나중에 發言者名을 고딕체로 바꾸고, 國漢文 혼용이 한글 전용으로, 다시 國漢文 혼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제63회부터 테두리는 그대로 둔 채 2段 가로쓰기로 大轉換을 하였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A4용지를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 체제로 바꾸고, 테두리를 없애는 한편 漢文 사용도 차츰 줄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시대를 맞이한 적절한 변화로서 과거에 翻文을 위해 사용되었던 펜과 원고지는 사라지고, 대신 프린터와 디스켓이 등장하였으니 초창기 속기사들이 달필로 원고지를 메워 나가던 정겨운 모습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6. 최초의 국제회담 속기로 기록된 한중 정상회담

1949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당시 李承晩대통령과 自由中國 장개석총통의 정상회담이 鎮海에서 개최되다. 이때 국회 속기사로 근무하는 金鎭基와 許 樹가 정상회담의 속기를 담당하였다. 이것은 우리말 속기가 국제회담에서 쓰여진 최초의 일로써 그 의의가 있다.

다음은 당시 速記를 담당했던 金鎭基의 회고담이다.

“다른 速記士들처럼 나도 국회에 있으면서 부업으로 公報處에 검직을 하고 있었는데, 1949년 8월 어느 날 공보처로부터 여의도 비행장으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당시는 여의도가 허허벌판으로 미공군 비행장이면서 우리나라 국제공항이었는데, 가보니 許 樹 씨는 이미 와 있었고, L-9 연습기 두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연습기는 2인승이기 때문에 조종사 외에는 한 사람밖에 더 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기 한 대에 한 명씩 타고 갔는데, 속기사 두 명이 가는데 비행기 두 대가 동원된 셈이었지. 그래서 기분 좋게 진해에 도착해서 일박하고 다음날 가니까 검소한 회담장에는 두 정상이 나란히 앉아 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 때 李承晩대통령은 영어로 말하고, 蔣介石 총통은 중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속기할 수 있을리가 없었지. 그래서 그 때 함께 갔던 외무부 정보국장 黃聖秀씨가 이 사정을 얼른 알아 차리고 내 귀에 대고 조그만 소리로 계속 통역을 해주어서 그것을 속기했어요. 한참 쓰다가 옆을 보니까 許 樹 씨는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던군요. 결국은 나 혼자 속기를 했는데 그런 속기해본 사람 아마 없을걸.”

7. 속기록 낭독

速記는 言語를 그대로 문자화(文字化)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그 言語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증거력을 가질 수 있다.

制憲國會에서는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 세번이나 速記錄 즉석 낭독이 있었다. 듣는 편에서는 발언자의 말꼬투리를 잡아 입씨름을 벌이든지, 심하면 의원징계로까지 몰고 가려는 저의까지 내포된 [速記錄 朗讀提議]의 경우이다. 대개는 부결되는 것이 상례지만 세번은 가결이 되어서 속기사가 큰 소리로 조금 전에 속기한 速記原文을 발언자 보다도 낭랑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읽어 내려가면 神技에 가까운 재주에 의원들은 감탄해마지 않았다. 速記錄에는 이 부분이 두 번 나와 있어 발언증명 낭독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고 있다.

速記士로서는 이런 경우가 긴장의 순간이기는 하지만 速記의 '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8. 속기사의 공상

制憲國會때의 일이다.

國會 本會議 발언내용을 속기하던 두 사람중 한 사람인 柳浩龍의 머리가 얻어터진 사건이 발생했다. 흥분한 壇下의 어느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의원에게 집어던진 자신의 참나무 명패가 사정거리가 모자라 발언대 바로 아래에서 속기하고 있던 速記士의 머리에 명중한 것이다.

그 결과 유호룡은 6개월간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萬機를 公論으로 해결하려는 토론의 열기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故意는 조금도 없었기에 公加傷 公負傷이라고 할는지. 어쨌든 公傷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사건이 있은 뒤 議員 명패는 속이 빈 플라스틱으로 원재료 재료가 바뀌고, 경첩까지 붙여 議員이 출석했을 때는 세우고, 퇴석할 때는 누이기로 하였다.

한편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절에는 금속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재떨이가 각 의석에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 의원들의 감정이 격할 때에는 재떨이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양은 재떨이로 바꾸었는데, 이것을 던지면 인공위성처럼 날아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쨌거나 지금의 會議場은 금연이기 때문에 이같은 불상사가 사라져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9. 국방부 속기 학교

일반사회의 속기 수요가 차츰 증가할 즈음 軍에서도 속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속기병을 차출하여 중요 회의의 기록을 맡겼다.

東邦速記의 1회 수료생인 池孝相은 速記兵으로 전선의 野外 브리핑을 속기하느라 고생했다는 회고를 하고 있고, 國防部 政訓局에는 이미 逸波式의 李圭洪, 김종만 등 速記文官이 근무하고 있었다. 김종만은 6.25동란시 행방불명되고, 李圭洪은 1955년 10월 국회속기사로 임명되어 速記 係長을 역임하며 5.16군사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軍에서도 속기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1949년 國防部에서는 速記學校를 개설하여 陸海空軍에서 선발된 30여명의 장병을 상대로 1년 과정으로 속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때 속기교육은 李圭洪과 김종만이 담당하였으며, 15명이 졸업하였는데, 불행히도 이 속기학교는 6.25동란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이 때 速記教育을 받은 安仁榮은 군복무를 마치고 1956년 4월 국회에 진출하여 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하면서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이사장 3회와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 나라 속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제2절 6.25와 속기계의 수난

1. 6.25와 국회속기사

1) 부산 피난시절의 국회운영



◀부산피난시절 임시 의사당을 사용했던 경남도청 무덕정

제2대 국회는 1950년 5월 30일 총선거에서 당선된 2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6월 19일 개원식을 갖고 의장에 申翼熙의원, 부의장에 張澤相의원과 曹奉岩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그 후 1952년 5월 6일 張澤相 부의장이 국무총리 취임에 따라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金東成의원이 보선되었다. 같은해 7월 10일 임기만으로 실시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申

翼熙의장과 曹奉岩부의장이 각각 재선되고 尹致暎의원이 새로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제2대 국회는 개원된 지 6일만에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으로 사상 미증유의 전란을 당한 이래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3년간 많은 受難을 겪게 되었다.

6.25동란중 사망 또는 납북된 국회의원은 35명이나 되며, 戰勢의 推移에 따라 수차에 걸쳐 의사당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전란중에도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부통령의 직선제와 國會의 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憲法改正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으나 원내 안정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1952년 1월 18일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國會內 野黨側에 의해 4월 17일 郭尙勳의원 외 122명으로부터 議員內閣制와 單院制를 내용으로 하는 憲法改正案이 提案되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大統領直選制와 兩院制를 내용으로 하는 憲法改正案을 5월 14일 또 다시 제출함으로써 정국은 혼란을 면치 못하였다.

국회는 6월 21일 野黨案과 政府案을 동시에 상정하고, 이 두 안을 절충한 改憲案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성립된 제1차 改憲은 그 권력구조에 있어 大統領中心制를 근간으로 하였고, 대통령의 直選制와 국회의 兩院制를 채택하는 한편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인정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였다. 제2대 國會는 임기중 예산안 21건, 법률안 215건을 비롯하여 전란수습을 위한 많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2) 속기록 작성 일시 중단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전쟁준비를 해온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한을 유린하였다.

2년 임기의 制憲國會가 끝나고, 1950년 6월에 개원된 제2대 국회는 동란 다음날인 6월 26일 제3차 회의를 끝으로 동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되었다. 당시 李承晩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한다는 방송담화를 발표하였고, 국회도 서울死守를 결의하였다. 그 결과 많은 서울시민과 함께 速記士들도 敵 治下에 남게 되어 곤욕을 치루었을 뿐 아니라 제각기 흩어지는 비운을 맞았다. 따라서 速記士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져 온 議會記錄도 피난국회중 중단되어 애석하게도 조국의 수난을 둘러싼 國事를 논의한 기록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말았다.

3) 부산 피난 시절 국회속기업무와 속기사의 생활상

1950년 9월 28일 首都 탈환으로 대한민국이 起死回生됨에 따라 다음 달인 10월 서울에서 2대國會가 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速記士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 하지만 전란중에 피살·납북 또는 他職에의 轉業 등으로 많은 速記士를 잃어 당장 국회속기록 작성 실무가 가능한 속기사는 金天漢·韓龜永·徐廷錄·金鎮基·鄭源道·張惠根·韓奉永·柳浩龍·金龍完(1주일후 행방불명) 등 9명에 불과해 이들만으로 動亂收拾을 위한 산적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養成機關들이 재정비되어 11월에는 李鍾鎬·韓奎勳·楊佑鎮·李柱範·尹炳高·李東淳·李暲熙·蔡惠鄉 등이 신규채용되어 겨우 진용을 갖추었지만 中共軍의 개입으로 다시 戰局이 악화되고 1951년 1월 4일 정부는 또 다시 부산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어 1953년 환도시까지 임시수도 釜山에서 고난의 피난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는 다행히 국회와 더불어 속기사들도 전원이 피난을 하게 되어 동란 직후와 같은 공백은 없었으나 51년 4월에 韓龜永과 徐廷錄이, 5월에는 蔡惠鄉이 퇴직하고 뒤이어 李鍾鎬·韓奉永까지 퇴직하게 되어 다시 수복 직후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 速記士의 보충이 시급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양성기관이 전폐되어 신인 발굴의 기회가 막혀 51년 8월에 他機關에서 다른 업무에 근무하던 속기사 중에서 韓奉永이 다시 복직을 하고, 尹載秀·朴元求가 임명되었다.

釜山에서의 의사당은 시내 극장 또는 慶尙南道廳內 武德亭을 사용하였는데, 원래 회의용 건물이지 아니어서 주위 환경이 어수선하고, 방음장치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소리가 울리고, 리시버·녹음기 등 補助用具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속기석은 50년대 학생용 책상과 걸상을 사용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피난지에서 온 국민이 다 같이 겪는 고통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행히 戒嚴司令部에서 큰 건물을 접수하여 가족이 같이 피난온 속기사는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독신 속기사는 조신히 호텔의 방 몇 개를 주어서 합숙하도록 하였다. 좁은 부산 바닥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들끓어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주거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다.

당시 속기사에게는 병역면제의 특전이 있었다.

속기사를 다시 구할 수 없는 처지이고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특전으로 인하여 轉職했을 경우 병역기피자로 몰려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전투가 가열해지면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길거리에서는 軍警 합동으로 삼엄한 검문이 행해졌고 병역 미필자가 적발되면 가차없이 훈련소행이었다. 이와 같이 젊은이가 길거리를 다니기 무서운 시절, 釜山에서 國會速記士였던 金鎭基는 신분증 없이 나왔다가 검문에 걸려 붙들려 갔는데, 신분을 밝히고 국회속기사의 직무를 해도 속기사에 대해 생소했던 군인은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난감해 하던차 국회에 연락이 닿아서 국방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제주도훈련소로 가기 직전에 풀려났다고 하니 당시 速記士가 얼마나 대접받던 시대였던 가를 짐작케 한다.

4) RP통신

‘R P’는 Radio Press의 略字다.

초창기의 속기사들은 대부분 부업으로 통신사의 일을 겸무하였다. 일본에서 방송되는 뉴스나 시사해설을 일본어로 속기하여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특히 6.25동란으로 통신시설이 파괴되어 마비된 상태에서 외국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나날이 달라지는 戰況이 더욱 궁금한 터라 각 통신사에서는 일본 방송 청취 내용을 RP通信이라 하여 신속히 등사, 독자에게 보도하였다. 당시로는 이 RP通信이 신빙할 만하고 가장 신속한 정보였기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5) 속기록은 못 고쳐...

요즈음은 議長의 裁可를 얻어 議員의 발언을 수정 보완할 수도 있고, 院議로 게재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으나,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速記는 ‘말의 寫眞’이라 하여 틀린 말도 그대로 적고, 반복된 말도 그대로 적는 頑固한 속기였으므로 發言者가 자기 발언을 취소해도 그 발언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한다는 발언까지 기록하였으니 대단한 일이다.

釜山 피난 시절 국회 본회의장에서 張澤相부의장이 趙炳玉의원에게 몹시 심한 말로 항의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심하니 빼 달라고 張澤相부의장과 趙炳玉의원이 담당 속기사인 張惠根에게 요청을 했는데, “速記錄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부를 하였다.

美軍政下에서 警務部長과 首都廳長을 지낸 당대 실력자의 요청을 거부한 속기사는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없을까 하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길거리를 가더라도 자주 주위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2. 6.25동란과 직후의 속기교육

1)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설립

서울 재수복 후 속기사 양성기관들이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었으나 신인속기사의 발굴은 극히 어려웠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속기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國會가 자체적으로 國費養成機關을 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속기를 이해해 주는 많은 국회의원과 유지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국회내에 1951년 11월 30일 문교부장관 인가를 얻어 12월 1일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를 開設, 약 120명의 제1기생을 선발하여 逸波法式으로 국비양성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學習期間은 1년으로 하고, 主로 速記學과 速記術을 敎習케 하였으며, 일반교양과목으로 國語·法律·經濟·常識을 합하여 야간에 週 18시간을 수업케 하였고, 速記學은 金鎭基·鄭源道·張惠根이 담당 교수하였다.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의 설립으로 우리나라는 비로소 안정적 속기사 공급을 보장받은 셈이며, 이 학교는 실제로 우리 速記界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우수한 속기사를 많이 배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國費 養成機關에서 한 개의 法式만 교수함으로써 다른 法式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게 되어 速記法式間의 均衡發展이라는 면에서는 부정적인면도 없지 않았다.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졸업생 가운데 林壽洪·金宗弘·崔英泰등이 1955년 5월 국회 속기사로 채용되었다.

2) 육군고급부관학교 속기반

6.25동란으로 속기사 양성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결과 국회에 필요한 속기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軍에서 필요로 하는 속기사를 채용은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陸軍高級副官學校에 속기반을 두어 지속적인 속기교육을 실시하였다. 부관학교 속기반은 논산 훈련소에서 특과분류를 할 때 판단력·순발력·기억력이 좋은 士兵을 시험을 통하여 1개반 50명씩을 선발하여 36週間 교육했는데 5.16 이후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육군고급부관학교 속기반은 1기부터 20기까지 수많은 속기사를 양성하여 軍의 수요에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속기사를 배출하여 속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副官學校 출신으로는 大韓重石·國會·住宅公社 등에서 근무하다 서울 서대문에서 高麗速記學院을 운영한 崔鎭洙, 國家再建最高會議 速記責任者를 거쳐 국회에서 근무한바 있는 申彦植, 法務부와 國防部 그리고 最高會議를 거쳐 국회 外務위원회에서 근무한 崔光錫, 最高會議와 國會를 거쳐 兵務廳에서 次長까지 역임한 李炳雲, 국회에서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간 金鍾瀚 등이 있다.

3) 육군첩보부대

1953년 9월 陸軍諜報部隊에서는 국내외 방송 특히 북한 방송을 청취, 기록하기 위하여 速記敎育을 실시하였다. 東邦法式 창안자 李東根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김병재·박지학이 오전 오후 교육을 담당하여 6개월간의 기본교육을 하였으며, 3개월간은 평양 출신 교관이 실무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軍 특유의 정신무장으로 선발된 30명의 교육생 중 9명은 교육후 즉시 실무에 투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9명 중에는 후에 中央情報部에 들어가 고위간부로 승진, 정년 때까지 근무한 崔瓚默, 1958년부터 속기학원을 운영하면서 東邦速記 50年史를 주도하며 큰 발자취를 남긴 李康賢이 포함되어 있다.

4) 민간 속기사양성기관

6.25 避難中 高麗式 창안자 金天漢은 1951년 9월 釜山 西面에 高麗速記專門學院을 재설립하여 속기를 교습하는 한편 中央通信·經濟通信 등의 외신부장을 겸임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陸軍高級副官學校에 제자 4명을 파견하여 많은 속기사를 배출하였다. 그는 서울 수복후 국회 속기사들이 국회를 따라 서울로 올라 갔으나, 釜山에 그대로 잔류하면서 서울 교남동에 高麗速記技術學院이라 개칭하여 다시 개설하고 속기사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釜山學院을 分院으로 함께 운영하였다.

또한 逸波式 창안자 張基泰는 또한 1952년 봄 釜山 西大新洞 소재 大韓軍警援護會의 技術學校는 두개의 속기반을 운영하였는데, 速記A班은 張基泰가 逸波式을 교습하였고, B班은 金天漢이 高麗式을 교습하였으나 5개월간의 교육으로 중도에 끝났으니 애석한 일이다.

또 國會 速記士였던 韓奉永은 釜山市 수정동에 있는 수정초등학교의 시설을 빌려 서울식 速記를 교습하였다.

한편 東邦式 창안자 李東根은 1952년 10월에 大邱 南山洞에 東邦速記學院을 재개설하여 속기 교육에 전념하면서 憲兵總司令部와 大倫高等學校로부터 초청을 받아 출강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弟子 김병재와 박지학을 陸軍諜報部隊에 파견하여 東邦速記를 교습토록 하였다.

5) 국회 속기사 임용

1953년 서울 수복 당시 釜山에서 국회 속기사로 재직중이던 속기사 중 金天漢·朴元求만이 퇴직하고 나머지 속기사들은 전원 상경하여 속기업무를 담당했다.

53년 12월에 盧元鎬가 부임한데 이어 다음 해인 54년 4월에 宋貞浩·金允洙·朴貴順·徐萬福·金哲淳·尹壽鉉 등이 採用되었고, 課의 업무분담도 1係에서 3係로 增設, 鄭源道·張惠根·金鎮基가 각각 係長으로 보직되었다.

55년 4월에는 金仁寧·金永善·全範成·10월에는 李圭洪, 11월에는 金百坤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56년 4월에 崔夔重·李東一·金明純·尹在彬·孫弘基·李琿煥·崔明淑·韓弘男·白廷鉉·金宗煥·李永

實·黃圭鎭, 8월에는 安仁榮 등 많은 인원이 채용되었다.

이렇게 서울 수복후 매년 속기사수가 증원되었으나 그만큼 업무량도 늘어나 회기중 특근은 여전했다.

57년 6월에는 黃圭鎭의 퇴직으로 崔龍夏가 들어왔고, 58년 2월에는 朴保和·金永浩·金泰宣·李相烈·梁基興·徐秉運·姜萬根 朴殷煥 등이 4월에도 河大煥·金鍾壽·全海成·申世華·趙東植·尹炳直 등이 증원 채용되어 5.16 혁명 이전까지 가장 많은 속기사가 채용된 해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국회 속기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速記係도 3係에서 4係로 증설되었고 4계장에는 李圭洪이 보직되었다.

58년에 가장 많은 속기사를 채용했던 까닭에 59년에는 閔丙高 한 사람만이 4월에 채용되었고, 60년 4월에 徐長玉·朴明愛·金謙善·金福振·鄭應采·金永熙·元光淵·楊澈在·沈鉉洙·宋基勳·李瓏熙가 채용되고, 係도 하나 더 증설되어 5계장에 金宗弘이 補職되었다.

제3절 주요사건을 통해 본 속기사의 역할과 애환

1. 국민방위군사건

2. 거창사건



◀거창사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6.25동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51년 2월에 지리산을 본거지로 하여 출몰하는 북한공산군의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해서 居昌邑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 제3대대의, 소위 淸野潔壁의 作戰法에 의해서 감행된 居昌郡 神院面 良民 大量虐殺事件이 터졌는데, 이 사건이 同年 3월 29일 국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거창 출신 愼重穆의원에 의해서 보고됨으로써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愼重穆의원의 보고 다음 날인 30일국회는 정부측으로부터 國防·內務·法務 3部長官의 보고를 들었다. 그러나 정부측은 성의가 없고 책임을 피하는 報告에만 그쳤으므로 국회에선 特別調査委員會를 구성하여 현지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 국회 조사단이 현지로 떠났을 때 당시 현병 부사령관 겸 경상남도 계엄민사부장이었던 金宗元대령이 국군 1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하여 국회 조사단에게 위협적인 충격을 하게 함으로써 조사활동을 중단하는 사태를 유발하였다. 다시금 국회는 5월 8일 徐二煥의원이 긴급동의로 제출한 거창사건 조사처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즉 [거창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조사가 그 전말이 대동소이하고, 이 사건은 포악무도하고 출몰비상한 공비를 토벌하는 전투지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전투사정이 개재 또는 관련되었으리라는 것은 시인하는 바이나, 현정의 제도인 민주정치의 달성 보장을 기하기 위하여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사단장 이하의 각 책임자와 현지의 행정책임자를 준엄하게 처벌 또는 징계함으로써 행정의 과오를 시정, 천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언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5월 14일 채택했던 것이다.

이 거창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국방·내무·법무의 3부 장관이 사임하게 되었고, 동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현병 부사령관 겸 계엄민사부장 대령 金宗元대령, 제9연대장 대령 吳益慶대령, 제9연대 제3대대장 韓東錫소령, 동 제3대대 정보주임 이종배소위 등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작전명령 제5호 附錄에는 神院作戰에 참가하는 대대장은 이동군법회의 설치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이적행위자로 판결되는 자는 간이재판에 의거하여 현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국군부대를 공비로 가장시켜서 국회 조사단을 방해한 것이 문제되어 군법회의

에 회부된 책임자들은 기소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 가 있던 전 국방장관 신성모의 출정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5개월여 군법회의를 끌어 가다가 12월 16일 대구에서의 中央高等軍法會議에서 金宗元대령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파면·전금요 몰수·징역 3년, 吳益慶대령은 살인·軍務 불신임죄로 無期懲役, 韓東錫소령은 殺人·군무 불신임죄로 징역 10년, 이종배소위는 무죄가 각각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특사·감형·형집행정지 처분 등으로 1년여만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 거창사건 국회 조사단의 일원으로 동행한 속기사는 鄭源道였다. 일행은 신원면 현장에는 접근을 못하고 인근의 지서에서 수십명의 증인을 불러 철야로 2일간 신문하였는데 속기는 鄭源道 한 사람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변문할 시간이 없어서 법원의 글씨 잘 쓰는 서기들을 데려다가 鄭源道가 속기록을 구두로 낭독하고 서기들이 받아썼기 때문에 翻文하는데도 무려 1주일이나 소요되었다고 한다.

3. 발체개헌 파동

李承晚政府가 정권연장과 독재강화를 위하여 大統領中心制와 內閣責任制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강제통과시킨 이른바 5.29 政治波動 때에도 속기사의 애환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국회에 의한 간선제로서는 李承晚이 다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될 가망이 없음을 인식한 정부가 直選制와 兩院制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제2차 개헌안)을 제출하여 1952년 1월 이를 국회에서 표결한 결과 可 19, 否 143, 기권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알력이 생겨 헌법에도 없는 국회해산과 反民意 國會議員의 소환을 요구하는 벽보가 나붙고 데모가 일어났는가 하면, 정부는 議員召還(recall)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國會가 가결한 '政治變動期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하는 정치운동에 관한 法律案'을 공포하지 않는 등 협약한 공기였다.

이 때 국회는 郭尙勳 外 122 명의 의원이 내각책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헌안을 4월 19일 제출하였고, 정부는 다시 5월 14일 大統領責任制를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는 국회안과 정부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한편,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與黨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이들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정부측 개헌안을 지지케 하였고, 마침 徐珉濠의원의 현역 육군 대위 사살한 사건이 터져 '민족자결단' '백골단' '땃벌떼' 등의 이름으로 徐 의원을 사형에 처하고 국회의원을 소환하며, 국회를 해산하라는 데모가 연일 계속되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데모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험악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院內 自由黨 議員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나 內閣責任制 改憲을 지지하는 院內派와 정부 및 원외 자유당을 지지하는 원외파로 갈라져 원내파는 民友會와 함께 張澤相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목단체 新羅會를 결성하여 정치적 중간지대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는 5월 24일자로 李範奭을 內務部長官에 임명하고, 25일

에는 부산을 포함한 慶南·全南北 일대에 공비의 준동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6일에는 50여명의 국회의원이 탑승한 버스가 헌병대에 불법런행 구금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된 사건이 터졌다. 뿐만아니라 國際共產黨의 비밀공작 혐의로 국회의원 12명이 체포되는가 하면 29일에는 전국 7개 道議會가 국회해산을 결의하였고, 신문도 보도에 앞서 사전검열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맞서 국회는 28일 釜山地區 계엄령의 즉시 해제와 체포된 국회의원 전원 석방을 결의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모두 묵살하고 말았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金性洙부통령은 국회에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 政治波動은 국제적으로도 파문을 일으켜 5월 28일에는 유엔韓國委員團이, 6월 28일에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뱀플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李承晚 대통령을 방문했고, 7월 3일에는 트루만 미국 大統領이 "유엔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하고 있다"는 함축성 있는 각서를 발표하고, 英國·오스트렐리아·프랑스도 이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여론에 못 이겨 李大統領은 "국회해산은 일시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12일에는 지방의원의 대표가 釜山에 모여 국회의 해산을 거듭 결의하고 연일 데모를 계속하였으며, 정부는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 중계를 중지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李始榮·金性洙·張勉·趙炳玉·金昌淑·李東廈·申興雨·白南勳·徐相日 등 60여명의 著名人事들은 署名으로 부산 국제구락부에서 '反獨裁護憲救國宣言'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테러단의 습격을 받아 유희리에 중지되었다.

한편 6월 25일 6.25 기념식장에서 李大統領 저격 미수 사건이 일어나 국회의원 2명이 이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고, 28일에는 역시 의사당을 포위한 데모 군중의 아우성과 함께 62명의 自由黨 院外派의 의원들이 국회 자진해산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런 가운데 30일 정기국회 폐회식에서 李大統領은 국회에 대한 그의 요구가 용납되지 않으면 수일내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改憲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7월초부터 은신한 의원을 경관으로 하여금 案内라는 명목하에 국회까지 강제 호송하고, 또 군사재판을 받고 있던 구속중의 의원까지 보석시켜 국회에 함께 연금하였다.

장택상 의원을 중심으로 한 新羅會가 전부터 모색하던 타협안은 각파 대표의 협의 끝에 마침내 政府案과 國會案의 原案을 발체 혼합하여 兩院制와 大統領中心制라는 정부안을 골자로 하고, 국회안인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권 등 지엽적인 내용을 가미한 第3案으로 실현되어 4일 하오 9시 반에 재적의원 182명 중 166명의 출석으로 拔萃改憲案을 무장경관의 감시와 폭력단이 포위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기립표결에 붙여 163 : 0, 기권 3으로 가결시켰다.

이렇게 하여 국회를 통과한 개정헌법은 7월 7일 공포되어 李承晚 장기집권과 완전 독재의 기틀을 마련한 다음 7월 28일에는 해제와 함께 공산당과의 관련협의를 받았던 7명의 의원 기소도 취하되었다.

4. 사사오입개헌



◀ 사사오입개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박상훈 부의장(웃줄 왼쪽에서 두번째)

1954년 11월 29일 국회에서 발생한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事件이다. 제3대 국회는 자유당이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議會史上 처음으로 여당이 원내 안정세력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李起鵬 의원 외 135명으로부터 李承晩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 폐지, 주권의 제약 및 영

토의 변경에 대한 國民投票制의 채택,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 불신임제의 폐지, 대법관 기타 고급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參議院의 인준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1954년 9월 6일 정식으로 제안되었다. 정부는 9월 8일 이를 공고하고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27일 표결에 들어갔다.

崔淳周부의장으로부터 표결결과 재석 203명 중 可 135, 否 60, 기권 7로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선포가 있는 2일 후 그는 재석 203명의 3분의 2선은 四捨五入하여 135명이면 족하다는 결론을 내려 전날의 부결선포를 번복,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나라 憲政史上 하나의 큰 오점을 찍어 놓았다.

당시의 언론은 이렇게 '사사오입 개헌' 사실을 보도했다.

"수라장화한 議事堂. '改憲通過'로 會議錄 수정

지난 27일 국회에서 투표 결과 贊票가 재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을 선포하였던 憲法改正案은 자유당측으로부터 재석 203에서 贊 135표는 3분의 2에 달한다는 異論을 일으켜 29일 국회에서는 여야간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 나중에는 난투극까지 벌어졌다.

즉, 국회가 개막되자 전일 부결을 선포한 崔淳周부의장은 '당시는 정족수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부결을 선포한 것이고, 135는 203의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전일 否決宣布를 취소한다'고 발언하여 야당측에서는 명패를 치며 일제히 일어나 '일단 국회에서 결정하여 선포까지 하고 아무말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되지도 않는 이유를 붙여 취소 운운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나? 하단하라'고 호령하였으나 崔副議長이 불응하자 나중에는 야당측에서 단 위에 올라가 崔副議長을 끌어 내리는가 하면 여당측에서도 몰려 올라가 일시 의사당은 수라장이 되고, 앞치고 덮쳐 난투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어 사회를 교체한 李起鵬의장이 會議錄 정정을 중용하게 되자 소수인 야당측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 이런 꼴을 볼 수 없다'고 총퇴장하였으나 姜世馨의원만은 그대로 의석에 남아 있

었다. 이후 회의는 자유당 의원만으로 진행되어 결국 '재적 203의 3분의 2는 135이므로 이번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라'고 회의록을 수정토록 결의하게 되었다.

이날 崔副議長은 자기로서는 당시 정족수의 확실한 수자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는 책임을 지고 이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단상에서 공언하였으며, 純無所屬系인 姜世馨의원은 끝까지 야당석에 혼자 남아 있다가 會議錄 訂正에 손을 들어 동 결의는 13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총퇴장한 야당 善良 60명은 郭副議長室에 모여 違憲對策委員會를 조직하는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여당 처사의 불순성을 규탄하였다."

다음은 李起鵬의장의 談話文이다.

"改憲案 通過를 보고

지난 18일 이래 전후 9일간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여 온 憲法改正案은 지난 27일 제90차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03명 중 3분의 2 통과선인 135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監票報告의 착오로 선포가 잘못되어 29일 제91차 국회본회의에서 院議에 의하여 135표가 법정 통과선임을 만장일치로 확인 결의하고 그 가결을 선포하는 동시에 同案을 곧 정부에 보내기로 수속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사무상 착오로 인하여 전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는 참으로 陳謝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民主力량의 승리적 전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경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5. '용공'발언

1958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에 일대 집단란투극이 연출되었다. 이날 10시 30분에 開議된 국회는 의사일정 제3항 '大韓民國憲法制定言說과 國土統一에 대한 民主黨代表最高委員의 國會決議 反對에 대한 質疑'를 상정하고, 민주당의 통일방안을 圍繞한 질문전이 전개되었다. 질문대에 선 자유당의 孫道心의원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인 趙炳玉의원에 대해서 "容共의이고 外勢依存的인 의심이 든다"는 발언을 되풀이하여 민주당 의원들을 극도로 흥분시켰으며, "趙炳玉박사가 자기를 가리켜 즐장부라고 했는데, 얼굴이 무섭게 생겨야 대장부고, 거친 말을 해야 대장부고, 술을 많이 마시고 통쾌하게 놀아야 대장부냐?"하는 식으로 험구를 마음대로 하였다.

이러한 孫道心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의 郭尙勳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등단한 다음 "孫道心의원은 민주당이 용공단체인 동시에 외세의존적 단체이며, 역적도배가 모인 단체로 몰고 있다"고 비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의석에 있던 자유당의 崔昌燮의원은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따라서 이에 흥분한 郭尙勳의원은 껌을 연단에 내려치면서 "이놈, 너 이놈 가만히 있어. 너 이놈 어디서 빌어먹던 놈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 때 자유당측 의석에서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으며 崔昌燮의원에 대해 의석에서 비난을 한 민주당 禹昌熙의원을 향하여 자유당의 李協雨의원이 쓴살같이 달려가 "이놈 누구에게 욕설을 하느냐?"하면서 육탄전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禹昌熙의원은 李協雨의원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후려갈긴 것을 계기로 禹·李 兩議員간에 주먹질이 오고 갔다. 주위에 있던 자유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밀치고 치는 집단적 난투극이 전개되고 말았다.

한편 싸움을 유도한 崔昌燮의원은 "사실이지 무엇이 사실 아니냐?"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崔昌燮의원을 向해서 민주당의 許潤秀의원이 육박함으로써 전 국회의사당은 그대로 싸움터로 화하고 거기에 20여명에 달하는 경위까지 합류함으로써 싸움을 말리는 사람, 싸움을 하려는 의원들간에는 밀고 밀리는 극적인 광경이 연출되고 말았다.

따라서 사회자인 李在鶴부의장은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하고 郭尙勳의원의 하단을 명한 다음 12시 34분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였다.

난투극에 앞서 孫道心の원이 발언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나 자유당의 統一案은 일관된 것이며 갈팡질팡하는 것은 민주당측 통일방안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진통일이다. 이북은 失地이며 폭력단이 있어 주권이 미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북진통일의 길밖에 없는데 최후의 양보선은 大韓民國 主權下에, 憲法節次下에, 우리 主導權下에 북한을 선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북통일문제에 꼭 헌법을 고쳐야 되겠는가?

총선거라는 것은 同一時日에 同一方法으로 하는 선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총선거라는 것이 남한에는 한국헌법 절차하에서 하고, 이북은 유엔 감시하에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총선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총선거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제네바회의의 14개 항목 중 제2항과 제11항이 있는데 "그 국회에서..."云云이라고 규정된 11항의 조문은 확실히 我國會法下에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趙炳玉박사는 대한민국 주권하에 총선거를 하는 것을 희망하는가, 희망하지 않는가? 趙炳玉박사는 某雜誌에서 "結社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좌익정당을 허용한다"고 그랬으니 민주당이 용공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趙炳玉박사가 답변하기를 바란다.

6. 보안법 파동



◀ 국가보안법가결 저지를 위한 야당의원
철야농성(1958.12.19)

國家保安法은 國憲을 위배하여 국가를 變亂할 목적으로 結社·集團 또는 團體를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집단에 가입하여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48년 12월 전문 6조로 제정하여 1949년 12월 전문 18조로 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6.25동란을 겪은 후 휴전이 되었어도 북한은 계속하여 군사·외교·정치·경제에 관

한 기밀정보를 탐지할 목적으로 간첩을 남파하거나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깨뜨릴 목적으로 공작원을 침투시키고 있어 이들의 만행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하여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刑事訴訟法의 절차에 있어서도 수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國家保安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국회의 야당의원들은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농성을 하며 반대하였으나 당시의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고 결국 이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문 40조로 된 이 법률은 1958년 12월 26일 공포되고 다음해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保安法 波動的 經過를 살펴 보자

民主黨 院內對策委員會와 同黨 소속 法司委 위원들은 1958년 12월 1일 하오 연석회의를 열고, 保安法案을 반러시키는 방향으로 원내투쟁을 적극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투쟁은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통해서 양면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1일 하오 자유당에서는 만일 민주당이 법사위의 保安法案 심의를 극도로 방해할 때에는 同法案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前記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간부들은 徐範錫의원 외 54명이 제안한 保安法返戾動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제66조에 비추어서 保安法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單獨副署는 확실히 違憲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同連席會議에서는 법사위에서 보안법안의 위원회 심의권을 법사위로 한정시켰다 할지라도 전기한 법사위의 결정이 본회의에 의하여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법사위는 보안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수 없다는 점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므로 민주당에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內務·國防·法司 등 3 委員會에 보안법안을 회부하는 것이 국회법 제39조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곧 이어 前記한 바와 같이 保安法案返戾動議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 방해공작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유당에서는 保安法案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국회법 제33조에는 "...議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後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法案인 保安法案은 원칙상 본회의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당측에서는 제33조 4항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 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만일 法司委에서 保安法案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게 되면 일단 同委員會에서는 보안법안을 폐기시키고, 30인 이상의 연서로써 직접 同法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려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11일 하오 국가보안법안을 상정하였던 국회 법사위원회는 옥설과 난투로 수라장화되었다. 이날 하오 3시 50분에 개의원 法制司法委員會는 무조건 洪法務部長官으로부터 保安法案提案說明을 청취하자는 자유당측과 保安法案返戾動議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이전에는 제안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야당측의 주장이 대립되어 처음부터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비좁은 法制司法委員會 회의실에는 院內 正.副 總務를 포함한 自由·民主 兩黨側의 의원 약 40여명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패싸움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金意俊위원장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고 바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洪法務長官이 좌석에서 일어나 "법무부장관 洪璣基입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절차상 保安法返戾動議와 公聽會開催決議가 처리되지 않고, 한편 孫道心 의원이 민주당을 용공단체로 몰아넣었으며, 자유당 의원들은 이에 대하여 박수까지 보낸 이상 민주당이 용공단체가 아니라는 결의가 없는 한 보안법안 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줄을 이어 역설하였다.

洪法務部長官은 야당측의 연속적인 발언으로 말미암아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5시 30분경 金委員長이 또 다시 제안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빠다가가 부러져도 못한다"는 嚴詳燮위원과 洪長官 옆에 다가선 金善太위원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金善太위원과 기어이 洪長官에게 제안설명을 시키려는 金委員長 사이에 심상치 않은 옥설이 오가기 시작하였다.

6시가 되자 洪法務部長官은 긴장한 낮으로 기립하여 "3일간 보안법안에 대해서 구두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위신을 지킬 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保安法案 提案理由書를 인용한다"고 말을 맺었다. 金委員長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유서로써 제안설명을 대치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말에 야당 위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항의하였으며, 金善太위원이 위원장에게 접근하여 전화기를 뒤집어 엎고 불법성을 항의할 무렵 金委員을 만류하려던 법사위원이 아닌 자유당의 安均燮위원과 金委員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졌으며, 심한 옥설이 오갔다.

6시 15분경 회의실이 수라장화되자 金意俊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이날의 난투극은 막을 내렸다.

보안법 파동의 당시 속기를 담당했던 金百坤 속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保安法 관계로 국회가 어수선할 때 야당의원들이 극한투쟁을 하면서 法務長官이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위원장이 할 수 없이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합니다"라고 하자 야당의원이 속기석으로 달려와 速記原文을 빼앗아다가 찢어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명칭이 있다 생각해 보니까 큰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의원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 의원도 흥분했는지라 자기 주머니에서 속기원문이 빠져 나온 것을 모르는 틈을 타서 몰래 집어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겨우 速記錄을 만들어낸 일도 있습니다. 그 후로는 회의장이 이상하다 하면 速記原文을 얼른 품속에 넣고 도망갈 구멍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19日 하오 국회는 보안법안 파동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위기가 폭발하고 말았다. 자유당이 法司委에서 이날 날치기식으로 보안법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保安法案改惡反對鬪委會는 이날 하오 5시 25분을 期하여 議事堂에서 史上 두번째로 議會籠城鬪爭에 돌입하였다. 法司委의 불법결정을 원상으로 복귀할 것을 당면한 투쟁목표로 하고있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議會籠城鬪爭은 자칫하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릴 정도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法司委에서 보안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에서는 하오 4시경 의원총회를 열어 "첫째 保安法案 중의 위험한 조문을 끝까지 반대한다. 둘째 法司委의 결정이 불법한 것이므로 이를 원상(질의계속 상태)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국회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한다. 셋째 불법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李起鵬의장을 초청하여 긴급대책을 강구한다"는 당면 투쟁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총회는 앞으로 투쟁을 保安法案改惡反對鬪委가 주동이 된다는 전제하에 趙炳玉·郭尙勳 두 지도위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嚴詳燮·李哲承·劉沃祐

·尹濟述·閔寬植·梁一東 등 여섯명의 의원 保安法案改惡反對鬪委會對策委員으로 선출하고 유기적인 투쟁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國家保安法案改惡反對院內鬪爭委員 일동은 19일 밤 暴惡에 대한 농성투쟁에 돌입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國家保安法案의 질의가 계속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8일의 질의일정을 21일까지 결의한 바 있으며, 19일 하오 2시 40분에는 야당 위원들이 미리 좌석에 서류를 두고, 지하 식당에서 잠간 휴식하고 올 것을 말하고 갔던 바, 소정 3시가 되자마자 야당 위원들이 來到. 2분 전에 자유당 위원만으로써 질의 종결, 답변 생략, 諸讀會 생략으로 원안을 무수정 통과시키고, 날치기 선언을 하고 거미같이 헤어져 버리는 야비하고 불법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20일의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들의 등원을 奸計로써 방해하고 불법술책으로 이 악법의 기습통과를 강행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우리들은 의사당에 농성하여 천인이 공노할 포악에 대한 극한의 투쟁을 개시하는 동시에 憂國同胞 제위의 열화 같은 성원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19일 국회 법사위는 상오중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로 말미암아 하오 3시에 開議되어 曹在千위원의 질의가 계속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고,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개의시간을 기다리는 틈을 타서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3시 정각에 일제히 집합하여 민주당 의원 일부가 법사위에 발을 들여놓기 1.2분 전에 전광석화와 같이 保安法案을 통과시켜 놓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법사위의 문을 나가버렸다.

그런데 우선 이날 역사상 초유의 법안통과 기록을 수립한 법사위의 회의진행 상황을 速記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下午 3時 開議)

○委員長 金意俊 : 자 착석하세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開議합니다.

그런데 曹在千위원 질문 차례인데 曹在千위원이 아직 임석 안하셨는데 曹在千위원의 질문은 나중에 돌리겠습니다. 崔圭鈺위원이 議事進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崔圭鈺위원 : 議事進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曹在千위원 질문이 3일간이나 걸치는 것을 보니 아마 지연전술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지연할 수 없으니 曹在千위원이 지금까지 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서류로 제출케 하고, 즉각 질의 종결하고 本國家保安法案을 諸讀會를 생략하여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意俊 : 지금 崔委員의 動議가 나왔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任哲鎬위원 : 再請이요.

○委員長 金意俊 : 그러면 動議가 성립되었습니다. 可否 표결하겠어요.

(거수 표결)

9대 0,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부에는 한 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하오 3시 3분 산회)

그런데 이상과 같이 전격적으로 보안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하오 2시 40분 曹在千·李炳夏·金善太·朴晚元 등 네 委員이 의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때 曹在千위원은 "카레라이스나 시켜다 먹지..."하고 말을 꺼내었고, 金善太위원은 "먹고 싶지 않다" 李炳夏위원은 "벌써 먹었어"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曹在千·金善太·李炳夏 등 세 委員은 자기 자리에다 法案 보따리를 놓고 "밥을 먹고 오겠소"하는 소리를 남겨놓고 각각 지하식당과 다방으로 향하였다. 3시 5분. 李炳夏위원이 의사당 3층에 있는 法司委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와 만난 朴晚元·朴世徑위원은 슬그머니 李委員을 피하였고, 마지막으로 李委員과 상봉한 金尙道위원이 보안법안이 通過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張暲根위원은 답변하러 달려온 洪璣基 법무부장관을 도중에서 돌려 보내고 말았다.

20일 상오 야당의원들에 의해서 철야 농성투쟁이 전개되고 있던 국회는 야당 의원들과 의장석 주변을 정리하려는 경위들 사이에 史上最大의 육박전이 전개되었다.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당 의원들은 10시 30분부터 羅相謹의원을 선두로 의사당에 몰려들어와서 흩어져 있는 책상과 의자를 바로 정돈하기에 바빴고 경위들도 자유당 의원들에게 협력하였다. 그리하여 10시 45분 일단 의석에 앉게 된 자유당 의석에서 경위들에 대하여 의장석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야당 의원들의 침구를 정리하라는 소리가 나오자 약 20여명의 경위들이 단상에 올라가 이부자리에 손을 대려 하였다. 그 때까지 묵묵히 앉아 있던 야당 의석에서는 분노의 욕설이 터져 나오면서 "누가 치우라고 그랬어?"하는 소리와 함께 尹明運·趙一

載·金載坤·劉聖權의원 등이 선두에 나서서 경위를 향하여 의장석으로 육박하였다.

순간 野黨 의원들과 경위들 사이에는 육탄전이 벌어졌다. 劉聖權·李哲承 두 의원은 경위들을 단하로 밀어 던졌다. 趙一載의원은 닳치는 대로 경위들의 멱살을 잡고 떠밀고 金應柱의원은 머리로 태클을 연속하였다. 이 때 "이 놈들 나를 죽여라!"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약 1개월 전에 장염 수술을 받은 金載坤의원이 싸움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金議員은 경위들의 머리위에 붓 뿜다가 단하로 곤두박질 쳐서 기절하고 말았다. 사태가 격화될 무렵 李哲承의원은 의자를 들고 야당 의원들을 밀치고 있는 경위들을 후려갈기려 하였다.

또한 金溶珍의원은 의장석을 밀어서 내동댕이를 치고 의장 의자, 사무총장 책상, 마이크 등을 닳치는 대로 부수어 버렸다. 10명의 야당 의원들은 경위들의 모자를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고 그들을 단하로 밀쳐 내리기에 전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경위들은 7분만에 후퇴하였다.

그리고 11시 정각 金義澤의원은 두손을 번쩍 들고 "金載坤의원이 죽었다!"고 소리를 쳐 의사당은 아연 긴장하였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의 "金意俊(法司委員長)을 죽여라! 이 놈 올라 와라!"하는 소리가 의사당을 진동하였다.

禹熙昌의원은 "빨리 사무총장을 불러서 金載坤의원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도록 하라!"고 요청하였고 韓根祖의원은 "이것이 기껏 자유당의 하는 짓이냐?"고 외쳤는데 문제의 金意俊의원은 자유당 의석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金載坤의원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단상에 올라갔던 趙炳玉의원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역적같은 놈들..."하며 자유당 의석을 향하여 고함을 쳤다.

11시 10분 어느새 자유당 의석으로 숨어 들어갔던 劉沃祐·趙一載·兩議員은 자유당측 범사위원인 崔圭鉦의원의 멱살을 잡고 法司委의 불법결의를 힐난하였고 李哲承의원도 그 자리에 달려가 앞에 서 있는 金意俊의원에게 "釜山 政治波動 때 너를 살리려고 모든 연락을 다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역적짓을 하면 되느냐!"고 대어들자 金意俊의원은 "너만 애국자냐!"하며 응수하였으나 자유당 의원들에 의해 위기일발의 사태는 수습되었다.

12시 24분 李在鶴부의장이 의사당에 나타나 "오늘 의사당에서 이와 같은 불상스러운 사태가 일어나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이 상태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오늘은 流會한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의장도 노력하겠거니와 여야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단 국회는 산회하였다.

1958년 12월 24일. 議政史上 未曾有의 비극은 국회에서 폭발되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기 위하여 이날 아침 농성 야당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를 굳게 하면서 자유당의 입장을 기다렸다.

10시 10분전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당 정문을 활짝 열고 입장을 시작하였다. 거의 여당 의원들이 의석에 자리를 잡게 될 찰라 2,3백명 정도로 추산되는 경위복의 들은 조직적으로 편대를 이루어 의장석을 중심한 좌우 양쪽 입구로부터 난입해 왔다.

야당 의원들은 아우성을 치며 의장석을 향하여 몰려 갔다. 陳馨夏의원은 의장석을 넘어뜨렸다. 경위복의 거인들은 용서없이 야당 의원 하나하나를 꼬집어내어 의사당 바깥으로 내동댕이를 쳤다. 경위복의 거인들은 때로는 발악하는 야당 의원들을 쥐어박기도 했다. 朴瓚鉉의원은 머리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대로 끌려 나갔다.

李哲承의원은 사력을 다해 가며 거인들과 맞붙어 엮어치기로 거인 하나를 넘어뜨렸다. 그들

은 10여명이 달려들어 李議員을 끌고 나갔다. 金學俊·閔壯植의원 등은 사지를 붙들려 의사당 바깥으로 끌려 나갔다. 그대로 수라장이요 지옥이었다. 金應柱의원은 의석에 올라 서서 이놈들, 역적들아! 하며 소리를 쳤고 朴順天 의원은 눈물어린 목소리로 경위들은 죄가 없소. 죄는 몇 놈들에게 있다.”고 소리를 쳤다.

의장석에 올라 갔던 최후의 10여명 의원들은 鄭成太의원을 중심으로 앉은 채 스크램을 짰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수십명의 警衛服 巨人들이 무자비하게 스크램을 짓밟았다. 역사는 순식간에 힘의 偉大(?)함을 증명하기 시작하였다.

의장석에 버티고 있던 具喆會의원은 대성통곡을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끌려 나가지 않았던 야당 의원들은 흥분한 가운데에서 더 애통의 눈물을 적셨다. 金相敦·朴順天 두의원은 의사당에 태연히 앉아 있는 자유당 의원들을 통박하였다. 의사당 바깥으로 끌려 나갔던 야당 의원들은 철통같은 경위복의 거인들의 방어진을 뚫고 의사당으로 재차 들어오려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金意俊 나오너라! 역적들아!하며 외쳤다.

우르르 몰려든 10여명의 경위들은 朴順天의원을 끄집어 나간다. 가냘픈 朴順天 여사의 몸은 태풍 앞에 놓인 실 가닥에 불과하였다. 10시 20분경 의장석 우측에서 신문지에 쓴 오물이 날라 들어와 趙瓊奎의원 의석에 떨어졌다. 徐範錫의원은 이 썩은 자유당 놈들아!하는 최후의 말

10시 30분 국회직원들이 정연히 입장을 하였다. "경위복의 거인들은 삼중사중으로 의장석과 의원석 사이에 열을 지었으며, 야당과 여당 의석 사이에도 검은 경위복의 선이 그어졌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趙炳玉의원은 柳珍山 민주당 원내총무에게 당 소속 의원들의 퇴장을 권유했다. 朴海禎·金元萬의원 등 10여명은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면서 경위복 거인에 끌려 나갔다. 곧 이어 韓熙錫부의장이 입장하여 의장석에 착석하였다. 최후까지 버티고 있던 梁一東·柳鴻 두의원은 "韓熙錫 이놈아! 이 역적 놈아!"를 부르짖다가 호되게 끌려 나갔다. 최후적인 야당의 사투는 이로써 완력 앞에 종막을 고하였다.

金一煥 내무부장관과 洪法務部長官이 입장했고, 줄을 이어 財務·復興·農林·保社·文教·商工·交通 등 長官이 입장하였다.

국회는 韓熙錫부의장의 역사적인 開議宣言으로 막을 올렸으며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韓 副議長은 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하였음을 밝혔고, 자유당 원내총무인 朴容益의원 외 33인은 내무위원회에서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33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 朴容益의원 외 20인이 낸 國家保安法案과 地方自治法 改正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金石辰의원이 대리설명하여 그대로 채택한 다음 일사천리로 國家保安法案과 地方自治法 改正案 및 豫算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한 들뜬 분위기의 다른 거리와는 판이하게 태평로 거리는 아침부터 교통이 차단되고 의사당 주위는 총을 든 경찰관이 물샐 틈없는 경계망을 둘러치고 있었다.

7. 자유당 시대와 민주당 과도정부 시절

제1차 개헌으로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제4대 국회에 와서도 參議院 구성에 필요한 입법조직의 미비로 1958년 5월 2일 民議院의원 선거만 실시하여 3代 國會보다 30명이 증가된 233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는 인구증가로 인한 소선거구의 재조정과 휴전 성립후 연기되어 오던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선거실시에 기인한 것으로 이 선거에서 여당인 自由黨은 126석으로 과반수를 확보하였고, 야당인 民主黨이 79석, 統一黨이 1석, 無所屬이 27석을 차지하여 자유당과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88%를 차지함으로써 제4대 국회는 양당정치 실현에 진일보한 가운데 1958년 6월 7일 개원을 보았다. 의장에는 李起鵬의원, 부의장에는 李在鶴·韓熙錫의원이 각각 선출되었고 그 후 韓熙錫부의장의 사임으로 任哲鎬의원이 1959년 10월 14일에 補選되었다.

한편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大統領·副統領 선거는 선거 전반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1960년 4월 19일 3.15선거의 부정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를 규탄하는 4.19의거가 일어나게 되어 정국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하여 국회는 동년 4월 26일 "李承晩대통령의 하야, 정·부통령선거의 재실시, 헌법 개정, 국회의 자진해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許政 외무부장관에게 과도내각 구성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李承晩대통령은 同日자로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국회에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됨으로써 12연간에 걸친 第1共和國은 끝을 맺고, 第2共和國의 수립을 위한 선거관리내각의 성격을 지닌 過渡政府가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政局의 추이에 따라 국회는 李起鵬의장의 사망으로 꺾이던 의장 보선을 1960년 5월 2일 실시하여 민주당의 郭尙勳의원을 선출하였다. '先總選·後改憲'과 '先改憲·後總選'의 대립된 의견 속에서 논란이 벌어졌으나 後者를 택하기로 하고, 內閣責任制 改憲案起草特別委員會를 구성하였다. 同特別委員會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기초하여 鄭憲柱의원(同 特別委員長) 외 174명의 찬성으로 같은해 5월 11일 이를 제안하여 6월 15일 통과시킴으로써 제3차 改憲이 이루어졌고, 이어 7월 25일 국회는 자진해산하였다.

第5代 國會는 制憲 이래 최초로 民·參 兩院으로 구성되었으며, 1960년 7월 29일 小選舉區制에 의한 233명의 民議院 의원과 中選舉區制에 의한 58명의 參議院 의원의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民議院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175명, 무소속 49명, 자유당 2명, 社會大衆黨 4명, 기타 3명으로서 民主黨이 의원정수의 3분의 2선을 넘었고, 參議院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31명, 무소속이 20명, 자유당이 4명, 기타 3명으로 역시 민주당이 과반수선을 상회하게 되어 원내안정세력을 이룩하였다.

第5代國會는 1960년 8월 8일에 開院되어 民議院 의장에 郭尙勳의원, 부의장에 李榮俊의원과 徐珉濠의원을 각각 選出하였으며, 參議院의장에는 白樂濬의원, 부의장에는 蘇宣奎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그리고 같은해 8월 12일 兩院合同會議를 열고 민주당의 尹潁善의원을 第2共和國의 大統領으로 선출하였으며 8월 19일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張 면의원을 國務總理로 인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內閣責任制인 第2共和國이 출범했다.

第5代 國會는 開院한지 不過 9個月만인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으로 해산되기까지 在任期間中 3건의 예산안과 66건의 법률안을 심의통과시켰으며, 1960년 11월 28일 不正選舉關聯者와 부정축재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제4차 改憲이 이루어졌다.

제4절 속기사 양성소의 실태와 자격시험

1. 민간속기학원의 운영실태와 교육여건

일제치하에서 연구·발표된 우리말 속기법식은 모두 7가지에 이르고 있으나 언어속도를 따라 적을 수 있는 실용 가능한 것은 1935년 6월 강준원이 동아일보에 연재 발표한 朝鮮語速記術講解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으로 인해 우리말 속기법식의 연구가 일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조국광복을 맞게 되자 각종 새로운 속기법식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1946년 장기태가 일파식을 서울신문에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이어서 1950년까지 5년 동안 무려 6가지의 속기법식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각 법식의 창안자들은 연구·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속기술의 실용보급을 위해 각기 속기사양성소를 설립·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식의 강준원은 동대문구 안암동에 서울식속기연구소, 일파식의 장기태는 종로3가에 일파식속기사양성소, 고려식의 김천한은 을지로 3가에 고려속기학원, 중앙식의 박인태는 을지로 5가에 중앙속기학원, 조선식(후에 한국식으로 개칭)의 박 송은 남대문로에 조선속기학원, 이동근은 을지로 4가에 동방속기전문학원을 각각 설립하였다. 또한 지방에서도 김세중(세종식)이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정화량은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속기술의 보급에 힘쓰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속기인들이 조국광복의 희망에 부풀어 능력있는 속기사의 양성을 위해 진력하면서, 속기문화의 초석을 쌓아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창안자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한국속기계가 막 성장기로 접어들 무렵,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을 맞게 된다. 그 동안 공들여 터를 닦아온 각 양성소는 전면 폐쇄의 비운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까지 몇 명 안 되던 속기사 중에서 피랍, 월북,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가 부산으로 일시 후퇴함에 따라 피란 수도 부산에서 국회의 속기업무는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으나 재직중인 속기사마저 전직자가 속출하여 결원보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 1951년 9월 고려속기학원이 부산에서 재개설되었고, 10월에는 서울식의 한봉영이 부산에서 의정속기학원을 설립하였다.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양성기관인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가 피란 중인 부산에서 국회내에 설립되었다. 이어서 1952년 10월에는 대구에 동방속기학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피란지의 갖가지 애로를 무릅쓰고 설립한 의정속기학원은 졸업생 9명을 배출하는 것을 끝으로 문을 닫았고, 고려·동방 두 사설학원 역시 시국의 불안정으로 인해 극심한 운영난에 부닥치게 되어 속기사양성이라는 장기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속기보급이라는 단기 강습과정으로 후퇴하게 된다. 다만, 국비양성기관인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만이 우수한 속기사를 계속 배출하게 되어 국회에서 필요한 속기사 채용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1953년,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함에 따라 국회는 물론 각 속기사 양성기관들 역시 서울로 이전하여 계속 속기사의 양성에 힘쓰게 된다. 또한, 국회의 업무량도 늘어나 국회속기사도 1955년에는 35명, 1958년에는 51명, 1960년에는 민의원 61명, 참의원 42명을 합하여 총 103명으로 대폭 증가세를 보였고, 지방의회의 출현에 따라 속기사의 진출폭도 넓어졌다.

해방 이후 각 범식별 교육활동 상황을 약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식(姜駿遠式)(姜駿遠 창안)

1946. 6. : 조선어속기학회를 결성하여 속기사 양성.
 1948. 4. : 서울速記專門學院을 설립하여 속기사를 양성하던 중 6·25동란으로 閉院.
 1951.10. : 피난지 부산에서 韓奉永이 의정속기학원 설립하고, 수료자 9명 배출하고 중단.
 1954. . : 《서울식 속기초본》 출간.
 1955. . :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속기교육(尹炳高).
 1956. . : 연세대학교에 速記科 개설(이길현 교수)
 1964. . : 이화여자대학교·경희대학교에서 속기 강의.

○逸波式(張基泰 창안)

1946. 9.11 : 《逸波式速記學概論》을 출간함과 동시에 '일파식속기사양성소'를 설립하고
 1950년 6.25 동란으로 중단될 때까지 3期 배출.
 1949. 2.20 : 국방부내에 육군속기사양성소를 설치하고, 李圭洪·金種萬 등이 교수.
 1951.12. 1 : 피난수도 부산에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법에 의한
 1년제 고등학교로서 民議院事務處 직속기관으로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를 설립하고
 國費로 속기사를 양성했으며, 1960년 5·16군사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될 때까지
 10회에 걸쳐 졸업생 313명을 배출.
 1956. . : 서울고등학교·선린상업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속기 강습.
 1957. . : 양정고등학교에서 속기교육(黃善明)
 1968. 3.15 : 국회사무처내 국회속기사양성소에서 同法式을 강습했으나 1969년 3월 의회속기
 방식의 창안·강습에 따라 중단.
 1969. 5. : 새로이 정리된 《일파식 실용속기》를 출간.
 서울경리학원에 속기과를 증설하고 장기태가 직접 강의를 전담했으나 1년 후 閉院
 1970. . :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속기강의(孫弘基)

○高麗式(金天漢 창안)

1948. 9. : 고려속기전문학원을 용산구 효창동에 개설하여 속기사를 양성하던 중 6·25동란
 으로 중단.
 1951. 9. : 피난수도 부산에서 동학원 개강하고, 69년까지 운영함.
 1953. 5. : 부산학원을 分院으로 남겨둔 채 서울 橋南洞에 高麗速記術學院으로 개칭하여 개원.
 1953. 3. : 육군고급부관학교에 2회 졸업생 중 속기교관 파견하여 속기교육
 1953. 9. : 선린상업고등학교에서 속기교육 정규교육(향후 5년간 계속)
 1954. 5. : 서울 서대문구 교남동에 고려속기기술학원 설립.
 1954.11. : 同學院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속기통신교육부를 부설.

- 1955. . : 숙명여대에서 속기 정규교육
- 1956. 7. : 시립서울성인학교에서 속기교육
- 1956.11. : 육본정훈감실정훈장교 속기교육
- 1957. 5. : 창덕여자고등학교에서 속기 정규교육
- 1957. 8. : 마산성인학교에서 속기 정규교육
- 1958. 9. : 개원10주년 기념강습회 개최
- 1959. 3. : 성신여자고등학교에서 속기 정규교육
- 1965. 4. : 학원 위치를 西大門區 大峴洞으로 이전.
- 1966. 3. : 운영난으로 폐원(제1기부터 제46기까지 230명 배출)
- 1968. 3. : 국회사무처내 속기사양성소에 고려식반을 설치, 강습하였으나 1969. 3. 의회속기 법식의 창안으로 강습 중단.

○東邦式(李東根 창안)

- 1948. 2. : 《解放速記學》을 발간하여 창안자가 직접 개인교습.
- 1948. 8. : 서울 을지로 4가에 解放速記學院을 설립.
- 1948.10. : 東邦速記專門學院으로 개칭하고, 서울시 학무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최신시설로 수강생 100여명을 수용하는 한편 특별반으로 군통위부 위탁생 30명을 야간반으로 교육.
- 1949. 9. : 東邦速記學院으로 개칭하여 1950년 6·25동란시까지 양성하다 중단.
- 1952. 4. : 단행본《速記學講義》출간.
- 1952. 7. : 《東邦速記通信講義錄》을 발간하여 전국 서점에서 시판.
- 1952.10. : 대구 남산동에 東邦速記專門學院을 재설립(75년까지 운영).
- 1952.12. : 대구 학원 건물내에 신문학원 및 시사통신사 대구지사 경영으로 속기학원 운영비 충당함.
- 1953. 7. : 육군첩보부대에서 속기교육
- 1954. . : 대구 대륜고등학교에서 속기교육
- 1956. 3. : 《速記學講義錄》간행.
- 1956. 6. : 남대문에 東邦實業專門學館을 개설하고 速記科·經理科를 둠.
- 1958.10. : 서울 종로 2가에 英語速記를 유치하여 東邦速記學院을 재설립.
- 1964. 5. : 《東邦速記學講義錄》을 발행하고, 제1기부터 제169기까지(4개월 속성과 포함) 총1,693명을 배출.
- 1966. . : 덕성여자대학에서 속기학 강의(이강현)
- 1967. . : 건국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에서 속기강의(이강현)

○世宗式(金世宗 창안)

- 1951. . : 전주·광주에 世宗速記學院을 설립하여 속기사 양성.
- 1952. . : 이리·대전·부산·마산·목포에 世宗速記學院 설립.

1955. . : 서울·인천에 世宗速記學院 설립.

1957. . : 《세종식速記學》 출간.

○韓國式(舊 朝鮮式)(朴 松 창안)

1947. . : 서울 역전 태평여관에서 朝鮮速記學館을 개설한 후 18기생을 배출,
6·25 동란으로 중단.

1954. . : 서울 수복과 함께 세종로 교육회관에 韓國速記學館을 개설했다가 후에
韓國聯合速記學院으로 개칭.

1964. 5. : 운영난으로 閉院

자료) 《速記概觀》 이상 속기사 양성기관의 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5 전까지는 그
간 창안된 각 속기법식의 양성소가 있었으나 6·25 동란 후에는 강습이 중단된 법식이 속출하
였다.

더구나 5·16 이후에는 속기사의 유일한 수요처였다고 할 수 있는 民·參議院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회의 해산으로 우리 速記界는 일대 수난을 겪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양성기관들마저 완전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국비속기사이양성기관인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도 국회해산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해
체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민정양당이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 速記界의 활로가 열리는 듯했으나 다시 문을 연
양성기관은 '東邦式'의 東邦速記學院 하나뿐이었고, 여타 양성소는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거기다 실질적으로 속기사의 수요 자체도 각급 지방의회가 재구성되지 않음으로써
國會速記士에 국한된 상태여서 한동안 신진속기사의 공백상태를 이루었다.

이처럼 속기사이양성기관들이 문을 닫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속기사 진출의 문이 좁아졌다는 것이 그 첫번째 원인이고, 다음 속기술 습득기간이 다른
사무기능보다 길다는 것이 그 두번째 원인이다. (速記概觀, P. 103-104)

한편 5,60년대에는 단순히 사설학원에서만 속기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
교를 비롯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일부 대학교에서도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을 만큼 속
기술 보급이 매우 활발했었다. 다음은 대한속기학술협회(1957년 대한속기협회로 개칭)에서
발행한 속기문화 1 ~ 5호에 게재된 내용과 생존해 있는 속기 원로들의 증언을 종합 정리해
본 것이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는 총장의 특별한 관심으로 1인1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던 중, 1956학
년도 2학기부터 속기와 타자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강의는 《延世春秋》 주
간을 겸하고 있는 李吉鉉교수가 맡고, 강의 법식은 서울식. 1주일 3시간 강의에 학기당 1학점

을 인정하고, 특별히 교재까지 발간하였다.

속기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라 습득후에 즉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1학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수강 신청생이 3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養正高等學校

1956년 12월 이래 과외 특별활동으로서 속기반을 신설하고 매주 2시간씩 黃善明이 일과식을 강의하였다. 수강생은 약 200명.

善隣商業高等學校

1953년부터 매주 1시간씩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학도호국단 부서에 速記部가 있어 매주 2시간 이상의 특별활동 시간에는 속기부 학생들이 과외공부를 하였다. 1957년의 경우 속기부 학생은 70여명에 이르렀으나 만족할 만한 속기능력자는 배출되지 못했다.

江原大義塾

강원대의숙은 강원도 儒道會에서 운영했던 교육기관으로서 1956년 11월에 速記科를 신설, 강원도 의회 속기사인 洪龍杓가 일과식을 강의하다가 군입대후 徐平吉이 담당하였다. 수업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일 3시간씩이었으며, 수강생은 20여명이었다. 강원도내의 유일한 속기사양성 기관이었다.

서울市立成人學校

서울시 교육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로서 정부의 성인교육비로 운영되었다. 교육은 용산구에 소재한 청파국민학교에서 야간에 실시되었다. 이 학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 취미와 소질에 따라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과목이 설치되어 있었고, 속기과목도 그중의 하나였다. 이 기구는 1기를 3개월로 하여 各科를 수업하였으나 속기과는 3개월 수료해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고려속기기술학원에 편입하여 계속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陸軍高級副官學校

1953년부터 현역군인을 상대로한 속기교육을 위해 대구에 있는 육군고급부관학교에 속기반이 설치되어 현역군인 속기사를 다수 배출하였다. 교과과정은 1일 8시간씩 9개월 과정이었고, 每期 40명씩의 수료생을 내다가 1957년부터 학급수를 늘려 250명씩 교육하였다. 속기교관은 고려속기학원 부산(임시)학원 졸업생 4명이 담당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25가 끝나고 다시 서울에서 속기교육을 시작한 것은 5개소였다. 戰前에 비해 2개소가 줄어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대부분이 얼마 못 가서 학원문을 닫아야 했으며, 운영난을 무릅쓰고 속기교육을 계속했던 곳은 고려식 양성소와 동방식 양성소 두 군데뿐이었다. 두 양성소가 그래도 끝까지 문을 닫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려식의 김성환과 동방식의 이강현 두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었다.

2. 하계 무료속기강좌



◀대한속기협회 제1회 속기강습회 개최시 연단 아래에서 속기사가 내빈축사를 속기하고 있다.

대한속기협회의 전신인 대한속기학술협회에서는 속기 보급을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일반 사회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하계 무료속기강좌를 실시하였다. 이 무료속기간좌는 당시로선 속기협회 홍보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협회에서는 이를 위해 1956년 7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강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소

위원회에 지방의회의 속기사 진출에 대한 교섭도 겸해서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강좌소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진기(이사장)·윤병설(사업부장)·정원도(일파식 대표)

이주범(고려식 대표)·이동순(중앙식 대표)·한봉영(서울식 대표)

이 무료속기강좌는 2회 실시 후 중단되었다.

제1회 하계속기무료강좌	제2회 하계속기무료강좌
<p>기간 ; 1956. 8. 7 ~ 8. 30 교수법식 ; 고려식 장소 ; 고려속기학원 대상 ; 남,녀 고교 대학생 및 일반인 수강인원 ; 150명</p>	<p>기간 ;1957. 7. 23 ~ 8. 12(20일간) 교수법식 ; 일파식 장소 ; 교동국민학교 대상 ; 남,녀 고교, 대학생 및 일반인 수강인원 ; 137명</p>

3. 지방의회의 속기업무 실태

우리 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漢水以北, 즉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회의록 작성에 필수요원인 속기사를 필요로 했다. 역시 많은 숫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지방재정 형편상 많은 속기사를 채용하지는 못하였다. 자연히 속기업무는 과중할 수밖에 없었다. 《속기문화》 1~5호에 게재되어 있는 당시의 각 지방의회의 속기현황을 정리해 본다.

서울특별시
개원에 따르는 속기록 작성의 필요성을 절감한 동의회에서는 속기사 채용시험을 공개 실시하여 5명의 속기사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5명의 속기사가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다시 4명의 속기사를 공개채용하였다. 당시 서울시의회 속기사는 다음과 같다.

일파식(4명) ; 金仁亨·金顯祐·金佑義·姜萬根

고려식(3명) ; 金春燮·洪乙姬·柳智永

기타(2명) ; 기록 없음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역시 지방의회의원 선거 이후 개원과 더불어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개원초에는 洪龍杓·姜萬根(이상 일파식) 두 사람이 집무하다가 후일 徐平吉·皮光鏞(이상 일파식) 두 사람이 바톤을 받아 속기업무를 담당하였다. 2명의 속기사로서 속기록을 작성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었으나 예산관계상 부득이한 일이었으며, 회의가 없는 때에는 다른 행정사무까지 도와 주어야 할 형편이다.

忠淸南道議會

1952년 3월에 개원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개원 이래 전속속기사 2명을 채용하여 속기록을 작성, 인쇄하여 각부 및 의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전속속기사는 일파식의 李甲熙·安永吉 두 사람으로 4급공무원(현재의 6~7급) 대우를 받고, 회의가 없을 때나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역시 다른 사무까지 맡아 했다.

慶尙南道議會

1952년 3월 개원 이래 속기록은 작성하고 있으나 예산관계로 인쇄는 하지 못하고 번역된 원고만 보관하였다. 이 사무를 담당했던 속기사는 촉탁 1명과 임시속기사 1명. 1957년 당시 촉탁은 서울식의 朴元求였고, 임시속기사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채용하였다. 속기사의 대우는 촉탁이 월 4만원대였으며, 임시속기사는 본회의에 한하여 일당 3,000원 정도였다.

京畿道議會

경기도의회에서는 속기록을 작성치 않고 다만 의회발언을 녹음으로 보존하였다. 동의회 개원 당시 대한속기협회에서는 누차 속기사 채용을 종용하며 교섭하였으나 의회당국이 제시한 인원과 조건이 너무 부당하여 거부하였다. 그후 그 조건을 허락한 한국속기측이 이를 담당하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실력이 속기록을 작성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의회 당국자로 하여금 속기를 불신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속기록을 작성치 않고 녹음만을 보존하게 되었다.

各市議會

그 외에도 부산시의회에서는 李廷仁(서울식), 수원시의회에는 金承烈(고려식), 그리고 춘천시의회에는 李鴻元(일파식)이 속기록 작성을 담당하고 있었다.

4. 속기모리배의 발호

1955년 대한속기학술협회를 창립하고 나서, 협회측은 모든 속기법식에 문호를 개방하고 창립 당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법식들과도 같이 힘을 합해 속기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협회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해온 법식이 있었는데, 반면에 또 다른 속기단체를 조직하고 속기인의 본분을 일탈, 협회와 대립하려는 법식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식(한국속기고등기술학관)측이었다. 이들은 도저히 언어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미숙한 속기법식을 가지고 학원 간판을 내걸고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았던 것이다. '我國唯一國防部委囑 速記士養成機關'이니 'OO院書記局委囑 速記士養成'이니 '卒業後 就職斡旋'이니 '資格證授與'니 등의 미끼를 내어걸고 연중무휴로 학생모집광고를 신문에 내었다. 한 마디로 사이버 속기법식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내고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케 하는 전형적인 속기모리배들의 효시인 셈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속기학술협회에서는 이사회에 결의로써 여러 차례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국속기기술학관을 방문하였지만 그 중심인물인 신현부는 그때마다 자리를 비우거나 만나 주지조차 않았다. 이러한 사이버 도배들의 발호는 속기문화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진정한 속기인들에게는 암적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협회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그들의 사술에 속지 않도록 사회 일반인에 대하여 성명서 하나 발표할 수 없었다. 그저 속기는 허위.과장광고로써는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니 때가 되어 자연도태되기만을 기대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에 1956년 8월 13일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가 구성되었다. 협회측에서는 속기 유능력자를 진출시키기 위해 각 의회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얼마후 서울시의회에서 속기사를 비공개로 채용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즉시 확인해 본 결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한국속기측에서 추천한 5명

이 서울특별시의회 속기사로 내정되어 시장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협회는 그들이 비밀리에 내정된 이면에는 속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무담당 하부직원들에게 한국속기측의 로비가 있었음을 간파하고 부랴부랴 서울시 당국의 고위층을 방문하였다. 속기란 어떤 것이며, 왜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지를 역설했다. 서울시 당국은 협회의 설득에 수긍, 내정자 5명의 채용방침을 취소하고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파식 2명, 고려식 1명, 한국식 2명이 서울시의회 속기사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의회가 구성된 지 4개월이 지나자 속기사 5명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4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한국속기측에서 추천한 이들을 채용키로 이미 의장의 결재(전에는 시장 결재)까지 났다는 것이었다. 또 다시 서울특별시 당국을 찾아가 보니 사무진영이 전반적으로 개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채용 절차도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리하여 담당자들에게 지난번 속기사 채용 경과를 설명하여 결재까지 난 것을 번복시켜 공개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그 결과, 고려식 2명, 일파식 2명이 채용되고 한국식은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를 못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에 대한 교섭에서는 도 당국이 제시하는 처우조건과 인원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이번에는 협회측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한국속기측에서 여하한 조건이라도 좋다고 수락함으로써 경기도의회는 한국속기측의 속기사를 채용케 되었다. 그러나 며칠 못가서 그들의 실력부족이 탄로남으로써 도 당국은 이제 속기 자체를 불신케 되었고, 결국 경기도의회에서는 속기업무를 폐지하고 녹음기로 대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건전한 속기문화 발전을 방해하고 온갖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던 그들은 양심적인 속기학원들이 운영난에 허덕이는 가운데서도 10여년간 호황을 누리다가 60년대 중반 그 대표되는 신현부의 죽음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5. 파식간의 갈등 - 건의서 파동

6.25동란으로 모든 속기교육이 완전 중단되다시피한 상태에서, 일파식의 장기태는 부산 전 시국회에서 국회사무처 당국의 호의와 협조를 얻어 국회 안에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는 행운을 잡았다. 이로 인해 일파식은 우수한 속기능력자를 계속 배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다른 속기법식에게는 학원운영을 어렵게 하여 한국 속기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각 법식의 창안자들과 학원 운영자들은 4.19혁명으로 새 정권이 수립된 뒤 참의원 구성을 앞두고 국회 당국에 아래와 같은 건의서를 전달하게 된다.

參議院速記課構成에 對한 意見書

우리나라의 速記文化는 解放後 過渡立法議院서부터 시작되어 15년이란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나 先進諸國에도 있듯이 多種의 速記式이 있어 각기 速記術의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유독 逸波式이란 一個法式만이 民議院에서 官費養成機關을 自法式이 독점하여 10여년간 自法式만을 습득시켜 이들만이 의회에 登용되고 在野 私設速記學院에서

배출되는 속기인들은 응시의 기회조차 안 주거나 응시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自法式만을 임용하여 在野 有能速記人들의 議會登用の 길은 봉쇄당하여 왔던 것입니다.

前述한 방법으로 신성해야 할 速記界에 파벌만을 격화시키고 自派勢力 扶植策에 급급하였던 現民議院 速記課 逸波式에서는 自戒는커녕 參議院 速記課의 중책의 자리마저 탐내고 있사오니 民議院과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고 신성한 新發足の 參議院 速記業務를 흐리게 할 수 없어 그간 억압 속에 활로를 잃은 在野 速記人(民議院 速記陣에서도 다수의 호응자가 있음) 일동은 速記文化의 발전과 議會政治의 발달을 위해 一齊團合하여 이에 意見書를 제출하오니 각별하신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伏望하나이다.

단기 4294년 10월 일
 陸軍副官學校 速記科同門會
 高麗速記技術學院
 韓國速記技術學館
 韓國聯合速記技術學院
 東邦速記技術學院
 軍出身速記士一同
 正副議長
 運營委員長
 運營委員 貴下
 事務總長

학원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이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회 당국에 직접 찾아가서 당국으로부터 앞으로 선처하겠다는 구두답변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실현은 보지 못하였다.

4 . 19혁명으로 새로 구성된 내각제 의회와 지방의회의 활성화로 속기사의 진로폭이 그만큼 넓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속기계 발전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속기인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도 잠시뿐 곧이어 닥쳐온 5 . 16군사쿠데타는 이 모든 기대를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돌려 버렸다. 국회가 해산되면서 유일한 국비 양성기관이었던 대한속기 고등기술학교마저도 폐쇄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나라에는 속기의 수요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고려.동방 두 속기학원만이 남아 속기교육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 가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속기학원은 계속되는 출혈운영을 견디지 못하고 1966년 가을 끝내 문을 닫았고, 동방속기학원만이 우리나라 유일의 속기사양성기관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고군분투해야 했던 암담한 상황이 1950년대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 속기계에 길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였다.

6. 속기교육 정책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의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명맥을 이어오던 양성기관들은 차례로 폐원의 비운을 겪어야 했다. 더구나 5.16 이후 민정이양이 되면서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속기사의 수요처는 국회 한 군데만 남게 되었다. 관립 양성기관이었던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의 폐쇄에 이은 일반 사설 양성기관의 소멸은 신진 속기사의 배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외국과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속기교육정책이 전무하였다는 데에 큰 이유가 있다.

속기술의 습득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라 장기간의 고된 훈련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고 난 뒤의 취업마저 여의치 않아 속기술을 배우려는 희망자는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민간 양성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그런 상황에서 5.16군사 쿠데타로 民參兩院을 비롯한 각급 지방의회까지 해산됨으로써 지속적인 속기교육 자체를 아사지경으로 몰아갔다.

민정이양으로 6대국회가 다시 구성되고 나서도 몇 년간은 기성속기사들로 충당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속기교육 기관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 국회속기사의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다. 그것은 속기사 양성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관립 속기양성소를 폐쇄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1968년도에 국회속기사양성소를 설립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이다.

제5절 속기사 국제무대 첫 진출과 대한속기협회 창립

1. 제네바 국제회의에 속기사 최초 파견

제네바 국제회의는 한국통일과 인도차이나 휴전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1954년 4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로서 처음한국은 이 회의 참가를 거부했으나 美國의 권고로 3개월 기한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 회의의 참가국은 韓國戰爭에 파병하였던 16개국 중 남아프리카연방을 제외한 15개국과 蘇聯·中共·인도차이나 3國, 북한과 공산월맹 등이었다. 회의에선 먼저 韓國問題부터 토의되었다. 선거관리와 外軍 철수에 관한 自由·共產 양측의 의견차이가 심해 쉽게 해결을 볼 수 없었다. 한국 수석대표 卞榮泰 외무부장은 最終案으로 14개항을 제출한 바 있는데, 북한 대표 南 日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南北韓 군대의 병사수를 각각 10만명으로 감소, 南北韓 어느 쪽에 대하여서든 군사적 의무를 지게 하는 모든 조약의 폐기, 全國委員會를 구성하여 분단된 한국의 평화적 발전에 관한 모든 준비를 추진시키게 할 것" 등을 제안하여 이를 거둬 고집함에 따라 이 회의는 6월 15일 決裂되고 말았다. 이 會議에 파견된 속기사는 당시 국회 속기사였던 柳浩龍이었다. 유호룡의 파견은 우리나라 속기사의 最初 國際舞臺 진출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 대한속기학술협회 창립

1955년 11월 13일 國會速記士들이 주축이 되어 당시 民議院 事務處 속기3계장이었던 金鎮基를 위원장으로 하는 발기준비위원회의 주선으로 國會豫算決算委員會 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12월에 大韓速記學術協會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大韓速記學術協會는 최초의 汎速記人團體로서 속기인의 상호친목과 速記文化의 向上發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速記文化》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고, 최초로 속기경기대회도 가졌다. 특히 56년 8월에는 제1회 하계속기무료강습회를 열어 速記의 大衆化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958년 10월에는 속기전시회를 열어 속기를 일반인에게 인식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협회에 참여한 人事들은 회장 張基泰, 부회장 金天漢, 이사장 張惠根을 비롯하여 宋廷浩·柳浩龍·金星漢·李柱範·韓奉永·韓圭勳·尹丙高·李東淳·楊佑鎮·尹壽鉉·全範成·金春盛 등의 이사와 監事 吳潤玉·具然東·金炳庸 등의 감사였고, 참여 범식은 逸波式·高麗式·서울式·中央式 등이었다.

협회 창립의 취지와 목표는 다음 성명서에 잘 나타나있다.

"大韓速記學術協會 結成에 際하여

일체의 民族文化 말살정책으로 민족의 생명인 우리의 언어조차 잃어버렸던 韓民族의 광복의 숙원을 이룩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다.

36년만에 도로 찾은 우리의 언어와 더불어 우리나라 速記學術도 지난 10년 동안에 長足の 발전을 보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밖으로는 國際會議에까지 진출하고, 안으로는 民議院을 비롯하여 정부기관·언론계 등 사회 各 部面에서 不可缺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는 비단 우리 速記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문화계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경하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然이나 現下 우리나라 속기계를일별(一瞥)하건대 사회적 인식의 미흡을 기화로 학술상 결합이 내포된 速記法式과 사이비 速記能力者 내지는 양성기관이 저속한 선전술로 대두출현하여 사회 인사들을 현혹케 하고 후진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의 진로를 그릇 판단케 하여 영리주의자의 사리에 희생케 하는 폐단을 야기하고 있음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如斯한 실정에 당면하여 우리들은 비록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 이상 좌시하기에는 良識이 不許하여 茲에 사이비 속기술의 배격과 아울러 진정한 速記文化의 보급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공헌하고자 감연히 단합하여 本 協會를 결성하였다.

本協會의 육성강화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識者諸位의 협력과 지도편달을 바란다.

檀紀 4288년 12월 13일. 大韓速記學術協會"協會는 57년 4월 제2회 정기총회에서 협회명칭을 '大韓速記協會'로 변경하고 5월 理事會에서 高麗速記學院長 金星漢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제6절 양원제 실시에 따른 속기사의 입지와 회의록 작성 명문화

1. 양원제 실시와 속기사 입지강화

1960년 4.19혁명후 制憲 이래 최초로 單院制에서 兩院制로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속기사의 증원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新設된 參議院 당국으로부터 속기사의 전형을 의뢰받은 민의원 사무처에서 공개모집공고를 해서 42명의 속기사를 선발했으나 新規採用된 사람 중에는 일부 他機關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실력자도 있었다. 대부분이 新人으로서 실무를 전적으로 맡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부득이 民議院 사무처에 재직중인 속기사와 안배해서 실무에 지장이 없도록 速記士의 교류와 계편성을 하였다.

民議院의 速記課는 재직중이던 일부 인사가 參議院에 전보됨으로써 鄭源道·張惠根·李圭洪·金宗弘·李柱範이 계장으로 보직되었고, 參議院 速記課에는 과장에 金鎭基, 계장에는 李東淳·盧元鎬·韓奉永이 보직되었다.

여기서 特記할 사항은 과거 民議院 速記課의 책임자인 속기과장은 行政官으로서, 물론 속기에 대한 많은 인식과 이해가 있기는 하였으나 速記人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회제도가 양원제로 바뀌에 따라 국회 속기사의 수도 民·參 兩院을 합하여 100명을 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民議院 속기3계장이었던 金鎭基가 參議院 속기과장으로 昇進榮轉되었다.

2. 국회회의록 작성 법규로 명문화

1960년 8월 5代國會가 개원되면서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중전의 議決結果에 중점을 두어 작성된 회의록과 議事內容에 중점을 둔 速記錄으로, 二元化되어 기록을 작성하던 것을 명칭을 會議錄으로 하여 양자를 통합 작성하게 되었다. 또한 國會法에도 明文으로 모든 會議는 速記法에 의하여 會議錄을 작성토록 규정하여 本會議 및 分科委員會도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특히 그간 民議院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되는 회의록이 활판이나 음쇄인쇄체제가 아니고 프린트로 납품되었으나 參議院이 구성되고 참의원에서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공판인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오늘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인쇄체제로 통일시키는 기틀을 잡게 되었다.

제7절 제2공화국과 5.16에 따른 속기계의 비운

1. 제2공화국의 출범과 붕괴

경무대로 돌진하는 4.19학생 시위대▶



第2共和國은 4·19혁명의 감격이 아직도 새롭던 1960년 8월 8일 출범했다. 이 날 第2共和國의 첫 국회가 열리면서 參議院 의장에 白樂濬, 民議院 의장에 郭尙勳이 각각 선출되는 한편 8월 12일 국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제2공화국의 대통령으로는 尹潯善, 국무총리로는 張 勉이 당선되어, 1次 張 勉內閣이 8월 23일에 구성되었다.

第2共和國 탄생을 가능케 한것은 4.19 學生義舉였고 4·19 學生義舉의 직접적인

동인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한 正·副統領 選舉와 자유당정권 12년의 폭압에 대한 民衆의 분노였다.

4·19 學生義舉 성공 이후 들어선 過渡政府인 許 政內閣에 의해 1960년 6월 15일에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한 憲法改正이 이 개정헌법에 따라 6월23일 다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7월 29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壓勝하였다. 그러나 수권정당으로서의 체제정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민주당의 黨內分爭은 날이 갈수록 심해 갔다. 그리고 당시 國會는 民主黨이 압도적 多數黨으로 군림할 수 있었으나 그 세력이 新·舊派 싸움 때문에 分裂되어 좀처럼 黨內外로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黨內 新·舊派의 분열로 민주당정권은 스스로 그 붕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으나 第2共和國이 존속하는 동안 韓國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할 수 있었다.

憲法面에서 보더라도 舊憲法의 50餘條文을 대폭 수정하여 民主主義의 理想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基本權의 수정, 法院 구성에 있어서의 選出制의 채용, 憲法裁判所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基本權에 있어서는 법률의 留保條項을 삭제하고 질서유지와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만을 두었고, 言論·出版에 있어서는 검열과 허가 및 集會·結社에 있어서의 許可는 法律로써 制裁를 받지 않게 하였다.

한편 政黨에 관한 규정을 憲法에 둬으로써 政黨의 자유가 憲法的으로 보장되었고, 政黨의 헌법기관적 성격이 뚜렷하게 되었다. 또한 司法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고, 憲法委員會와 彈劾裁判所 폐지하고 憲法裁判所를 상설기관으로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하였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제도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地方自治의 발전을 위하여 市·郡·面長만은 直接選舉制로 선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民主主義의 理想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第2共和國 憲法에서 가장 特徵의인 內閣責任制의 채택에 의해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고, 마침내 張 勉政府는 과도하게 주어진 민주주의적 자유의 난발 속에서 體力과 重力을 잃어 갔다. 특히 당내의 신·구파 싸움이 차츰 격렬해지면서 分黨의 회오리바람까지 몰아치게 되어 張 勉政府의 정치적 통제능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으며, 따라서 第2共和國의 기초는 크게 흔들렸다.

自由黨 집권 12년에 걸쳐 억압되었던 民權이 4월혁명으로 눈부시게 신장되자 自由民權의 물결은 성난 파도처럼 거리와 政街를 휩쓸었고 거기에서 오는 정치·경제·사회적 마찰은 극심하였다. 자유에의 욕구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은 가운데 重力을 잃은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 파묻히기가 일쑤였다. 거기에서 李朝의 朋黨을 방불케 하는 민주당 신·구파의 분쟁은 그칠 사이없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분당을 초래하였으며, 감투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국민의 환멸을 크게 샀다.

이리하여 張 勉政府는 한층 무력해졌고, 정국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가속화되어 갔다. 이틈을 타 第2共和國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5.16軍事革命을 일으킨 일단의 군인들이 바로 그들였다. 朴正熙소장을 주축으로 한 일단의 軍人들은 軍만이 가질 수 있었던 고도의 조직적 훈련을 바탕으로 마침내 지그재그식 국정운영으로 중심을 잃어가던 第2共和國를 하루아침에 전복시켰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軍部는 거의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정권을 접수하였다. 이리하여 9개월이라는 短命의 第2共和國는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는 5·16 다음날인 5월 17일, 쿠데타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革命委員會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 국무위원의 자진출두와 사무차관의 원직복귀를 명령하였고, 또 그 다음날인 5월 18일에는 張 勉內閣의 國務會議를 개최, 비상계엄령을 추인케 하고, 현 국무위원의 총사퇴를 의결케 하였다.

한편 尹潽善대통령도 어쩔수 없이 비상계엄령을 추인하고 혁명정부에 대한 협력을 전국민에게 호소함으로써 第2共和國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2. 5.16 직후 국회해산과 국회 속기사

1961년 5월 16일 軍事革命으로 民主黨정권이 무너지면서 布告令에 의해 民·參 兩院이 해산됨에 따라 100여명의 속기사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사태를 빚었다. 다만 혁명 직후 참의원 자리에 國家再建最高會議 企劃委員會가 들어와 일부 參議院 속기사들이 革命立法 과정의 기록을 담당하였으나, 이 기구는 바로 國家再建最高會議에 흡수됨으로써 解散하게 되었고, 그 後 最高會議에서는 현역군인이었던 申彦植을 速記 責任者로 하여 11명의 속기사가 1963년 12월 17일 민정이양시까지 고된 速記業務를 수행하였다.

3. 직장 잃은 속기사들 전직 사태

제2공화국의 양원제 실시로 활기에 차있던 速記界는 5.16군사혁명으로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혁명후 非常措置法의 공포로 國會는 해산되고, 民·參 兩院에 몸담고 있던 100여명에 달했던 속기사들은 일시에 직장을 떠나야 했고, 국회내에 있던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도 폐쇄되었으니 가히 速記界로서는 受難의 時代라 아니할 수 없다.

국회와 더불어 호흡했던 많은 速記士들은 대책없이 직장을 잃고 방황하였다. 民主主義가 중단되고 立法·司法·行政의 3權을 모두 군인들이 장악하여 좌지우지하는 삼엄한 분위기여서 언제 국회가 다시 구성될지 모르고, 또 국회가 구성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살길을 찾아 흩어졌다.

이들 중에는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국회가 구성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에 입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다른 직종으로 전직한 사람도 많았다.

국회의 해산중 速記界의 불황도 겹쳐 그나마도 몇 군데 있던 민간 速記學院 문을 닫는 비운을 맞았고, 이같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東邦速記學院이 경영상의 出血을 감수하면서 速記教育을 지속했는데 그 공적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4. 중앙정보부 속기사

5.16軍事革命 이후 民議院과 參議院의 速記士들은 모두 직장을 잃었으나 中央情報部 創設 要員으로 4명의 속기사가 신규로 채용되었다.

당시 革命勢力은 對共態勢를 강화하기 위하여 中央情報部の 창설을 서둘렀으며, 林來炫·朴明珠·崔鴻奎·裴滿永 등 4명이 5·16 직후인 1961년 6월에 속기요원으로 채용되었다.

다음은 당시 속기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직접 지도한 李康賢의 회고.

"5.16軍事革命 직후인 5월 20일 革命軍 완장을 찬 무장군인이 서울 종로1가 長安빌딩에 세들어있는 東邦速記學院으로 나를 찾아 왔었어. 사무원이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수업중인 나에게 알려주어서 나가보니까 정말 무장군인이 딱 버티고 서 있어서 나도 처음에는 놀랐어. 그런데 그 군인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兄님!" 하는 게 아닌가. 가만히 보니까 군 시절 같은 부대(H.I.D) 1기 후배로 그는 아직도 현역군인으로 있으면서 情報部 창설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형님이 형님 찾아요" 그래.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몇 년 전 H.I.D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革命主體인 金鍾泌씨가 나를 찾겠다는 거야. 나더러 최상의 대우를 해줄테니 속기일을 맡아 달라는 이야기야. 그러나 나는 이미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고 했지.

그런데 며칠 후 그 후배가 장교 한 사람과 함께 재차 방문하여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속기 능력을 갖춘 자 10명을 추천해 주면 심사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10명을 보내주었더니 그 중 전술한 4명이 합격했어. 이들이 中央情報部에 최초로 진출한 속기사가야."

5. 군사정권하에서도 사관으로서의 명맥 유지

5.16군사혁명으로 태어난 國家再建最高會議은 4명의 速記士를 채용하여 회의록을 작성케 했다. 그 후 62년 4월에 7명의 속기사를 보강하여 民政移讓時까지 근무케 하였다.

國家再建最高會議에는 本會議 및 常任委員會의 會議體가 있었는데, 당시 속기사가 수행한 업무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第5代國會(民·參 兩院)의 速記錄 제본이다.

軍事革命으로 미처 제본하지 못한 民·參 兩院의 회의록 부분을 정리하고 구분하여 保存用으로 20부씩 제본, 확보하여 두었던 것이다. 만약 그때 이 작업을 소홀히 취급하였으면 6.25動亂時의 결호처럼 記錄保存이 중단될 뻔 하였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國家再建最高會議 초창기부터 민정이양시까지 속기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초기에 군인으로서 申彦植·黃善明·崔光錫·朴大赫·李炳雲·崔吉吉·李宗燮 등이었고, 그 후 속기 책임자로 취임한 申彦植과 李炳雲·崔光錫·朴大赫 등 4명이 速記業務를 擔當하였다.

그러다가 업무량의 폭주로 속기사를 모집하여 李柱範·李東一·白廷鉉·崔孝燮·崔明淑·李玟煥·崔錫模 등이 채용되어 1962년 4월부터 근무하였고, 1963년 봄에 白廷鉉의 퇴직으로 徐皓正이 채용되어 上記 11명이 민정이양시까지 속기업무를 수행하였다.

◇陸軍 速記士 공채

5.16군사혁명 이후 陸軍高級副官學校 速記班이 해체됨에 따라 육군내 속기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966년 8월 육군본부에서는 속기사를 공개모집하였다. 이 때 80여명이 응시하여 5명이 합격하였는데, 陸軍士官學校에 1명, 6관구사령부에 1명, 그리고 陸軍諜報部隊에 韓國式的 徐正南, 서울式的 李甲洙, 東邦式的 韓東春 등 3명이 배치되었다.

다음은 韓東春의 회고.

"1966년 7월 어느 비오는 일요일 東國大學校에서 학과시험을 보았습니다. 응시자들이 많아서 여러 개의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받고 보니 너무 쉬운 객관식 문제들이라 시험시간은 1시간인데 문제를 다 푸는데 불과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함정이 있는가 하고 다시 검토해 보고 또 다시 검토해 보아도 틀린 곳은 하나도 없고, 시간도 1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보니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어려운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제지가 내것과 다른 줄 알았습니다. 체면상 한 5분 더 있다가 우리 교실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밖에는 다른 교실에서 시험 보던 사람들이 벌써 나와 있는데, 그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백지를 놓고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싶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職種の 응시자들이 같은 문제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사진·요리·이발·목공·운전·속기등 각기 다른 직종의 응시자들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大入考査에서 文科와 理科가 같은 수학문제를 푸는 격이 되었습니다.

시험관리가 이러니 실기시험은 어떻겠습니까? 넓은 강당에 한 80여명을 모아놓고 《전우신문》社說을 낭독하는데, 제목은 물론 소제목까지 하루치 사설을 다 불렀습니다. 한 10분 불렀나봐요. 그런데도 변문시간은 1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할수없이 변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험감독하는 군인이 다가와서 그만하라고 그래요. 나는 조금 남았으니까 더 하자고 비티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갔으니까 이제 그만 하고 내라고 성화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나 혼자였어요. 그래 速記原文 1줄 반을 남긴 채 검토도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아 낭패로구나. 내만에는 나도 속기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꼴지를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래 화가 나서 앞에다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속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속기시험을 실시하느냐고..., 그랬더니 먼저 나가 있던 응시자들이 몰려들어 와서 웅성웅성 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포기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채점은 변문을 많이 한 사람 順으로 했는지 제일 오랫동안 많이 쓰고 나온 내가 일등을 했어요."

徐正南은 그후 法務部를 거쳐 法務士로 일하고 있으며, 李甲洙는 개인사업을 크게 하였고, 韓東春은 新進自動車工業株式會社, 國會議員 비서관을 거쳐 東邦速記學院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제3장 민정이양과 제3공화국의 출범

제 1절 제3공화국 의정활동과 주요 속기록

1. 민정으로의 이행과 혁명의 정당성 논란

1) 제6대 국회개원

5·16 군사혁명으로 금지되었던 정치활동이 1년 7개월이 지난 '63년 1월 1일을 기해 다시 시작되었다. 이는 혁명정부가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였다.

정치활동 재개 허용과 함께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세력은 그동안 제재를 받고 있던 기성정치인이 아니라 金種必 중앙정보부장을 중심으로 한 혁명주체 세력들이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진작부터 신당창당작업을 진행시켜 왔던 것으로 후일 알려졌다.

1963년 2월 26일 혁명주체세력들이 창당대회를 가진 이 정당이 民主共和黨이다.

이 무렵 한편 구정치인들은 당시 沈野圀세력의 결집에 나서는 한편 잃어버린 정치적 입지를 되찾으려 동분서주하였다. 그러나 야권인사들은 뭉치지 못하고 제각각 흩어져 창당작업을 서둘렀다.

'63년 10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朴正熙 후보가 당선되고, 이어 11월 26일의 제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民主共和黨이 총의석 175석 중 110석을 얻었으며, 나머지 65석(民政黨)을 비롯한 4개 야당이 나누어 차지하였다.

제6대국회의 첫 회기인 제39회임시국회는 1963년 12월 17일에 문을 열었다.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등으로 원구성을 마친 국회 본회의는 12월 21일 처음으로 對政府 질문에 들어갔다.

의사일정의 제목은 <경제위기타개책과 민생고의 해결·물가양등 대책·한일외교의 저자세문제·오오노(大野) 망언문제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이라는 긴 이름이었다. 한마디로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 셈이었다.

2) 오오노(大野)망언과 대통령 출석요구

국회는 개회로부터 한일외교 저자세와 오오노 반모꾸(大野伴睦) 일본 자민당 부총재의 망언을 놓고, 진상규명 요구와 이를 위해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토록 해야 한다는 야당측의 공세로 파란이 일었다.

오오노 망언이란 일본 정계의 원로의 한 사람인 오오노 자민당 부총재가 朴正熙 대통령과

의 개인적 친분을 들먹이면서 양자간을 父子關係에 비유한 사건이다.

그는 朴正熙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한국을 방문하면서 "아들의 대통령취임식을 보기 위해 아버지가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이 한국 정계에 알려지자 그동안 軍事政府가 일본에 대하여 저자세로 임한 결과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 출석요구는 표결로 이어져 1963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민주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서 삼민회 소속 金俊淵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일본 경축사절 오오노의 발언과 관련 당시 야당지라고 할 수 있는 東亞日報와 여당신문인《서울신문》이 다같이 논평을 게재했다는 점과 공화당 정권의 제2인자였던 金鍾泌 "내가 李完用이가 되더라도 韓日問題는 타결하겠다"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對日 저자세외교가 오오노 망언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속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모두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볼 때에 존경하는 朴正熙 대통령, 또 이제 말하면 共和黨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韓日會談을 속히 종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善隣의 관계를 유지하고, 有無相通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希望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平和線問題 등등에 대해서 지나친 양보를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의 필요가 없다고……이 사람을 알보는 이 사람들……이 線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 가지고, 뭐니 돈푼 받아가지고 넘겨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恨을 千秋에 남길 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1년 5월에 日本《朝日新聞》 특파원이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나는 1951년 5월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朝日新聞》에 美國에서 특파원의 자격으로 기사를 써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美·日 라인, 美國 아닌 李·日 라인 平和線은 理由가 있다 韓國에서 平和線을 가지고 있다고 일본서는 야단 법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世界2次大戰後에 취한 그 태도로 본다 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李·日 라인이라고, 평화선이라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일본 사람 자신이 1951년 8월 《朝日新聞》 지상에 《朝日新聞》 특파원이 그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정부의 취한 태도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저 뭐니 뭐니 해가지고 그저 구실만 있으면 이것을 넘겨 버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비요. 그 언제……말하면 표현한 사람이 그렇게 高姿勢를 취해가지고, 저번에 일본 外相은 말하기를 뭐냐 하면 자기는 무슨 뭐 일본 정부로서는 오오노(大野)씨에게 뭘 맡기지 않았다고 하지마는 오오야씨 자신은 뭘 의논해 본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일본 外相이 물론 정부를 대표한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야말로 오오야씨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外相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같이 自由民主黨은 일본의 집권당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제 오늘 집권당이 된 것 아니에

요. 장구한 시일에 벌써 집권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야씨 아들벌이 되는 사람이예요. 일본의 외무대신이 무슨 소리를 했든 大野씨가 여기 와서 이야기해 가지고…와서 池田首相하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통할게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점으로 보아가지고 大野씨가 한국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볼 때에 朴正熙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金鍾泌씨가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점으로 볼 때에 공화당이 韓日問題에 대한, 또 共和黨정부가 韓日問題에 대한 태도가 너무 저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좋습니다 나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국회에서 한번 질문해볼까 했는데 마치 좋아요. 大野씨의 발언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동지가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국가의 百年大計, 민족의 萬年大計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시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朴正熙대통령과 崔斗善국무총리 丁一權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내가 무슨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또 金鍾泌의원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 김종필의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니, 그러니까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라도 있어야지 우물우물 우물쭈물 넘겨버리고……軍政은 지났습니다. 17일날부터 民政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朴正熙씨든지 金鍾泌씨든지 누구든지 다 이걸 알아야 돼요. 17일부터는 民政이라고 이걸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점을 충분히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韓日外交에 있어서 저자세를 고자세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욱 평등 자세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발언을 한 것이 옳시다." 金俊淵의원의 장황스러운 제안설명이 끝나자, 민주공화당의 이만섭의원이 등단했다.

"정치에는 아직 1학년생인 제가 정치계의 대선배인 朗山선생님이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려니 외람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로 운은 뎌 이만섭의원은 자기도 오오노가 朴大統領과의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격분하나, 그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일본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가십 기사로 난 것에 불과한데 국회가 대통령을 출석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하였다.

이어 의정단상에서 언론을 가리켜 여야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점, 김종필씨가 "이완용이 되더라도" 라고 말한 것은 韓日會談을 조속히 성사시켜야겠다는 충정의 표현이 그렇게 와전된 것이라고 옹호하였다.

"이것이 비록 유머라 할지라도 大野伴睦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불쾌하고 분개를 느낍니다마는, 하여간에 이'가십'이란 것이. 實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大統領을 불러낸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욱이나 第三共和國의 초대국회가 지난 日에 개원식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分科委員會 구성도 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물론 조그마한 문제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신문에 가십으로 났다는 의미에서 조

그마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보담 더 先決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 어른 선배의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大野伴睦씨가 그저께 떠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해명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고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인즉, "最大의 愛情表示다. 아마 그런 말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朗山선생님이나 또는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과거, 물론 일본에서 유학하신 여러분들이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에 大野伴睦氏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最大의 愛情表示다" 그렇게 표현되었노라고 진지한 사과도 하고, 해명도 했습니다. 그랬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을 불러낸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또하나 朗山선생님 지금 대통령이나 崔總理를 불러가지고 그분들의 태도를……분명한 태도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면, 여기에 나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大野伴睦씨로 하여금 부자지간이라고 얘기를 시킨 일도 만무한 것이고, 또 부자지간과 같은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무슨 태도……분명한 태도를 듣는다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출석시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朗山선생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東亞日報》가……野黨紙인 《東亞日報》나 與黨紙인 신문에서도 다 같이 분격을 했으니 여야가 일치될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大野伴睦씨의 그 말에 대해서 분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다같이 분격을 했을 것입니다. 《東亞日報》《서울신문》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문에 나기에 앞서서 전 국민이 분격을 했을 것이지마는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에……大野伴睦씨가 해명을 했고, 그것이 기사가 아니고 가십欄에 난 이상 이 문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제가 朗山선생님께 죄송합니다마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東亞日報》를 野黨紙라고 그했고, 《서울신문》을 與黨紙라고 자꾸 의정단상에서 강조를 하십니다마는 내가 볼 때에는 저도 《東亞日報》 출신입니다마는 《東亞日報》가 꼭 野黨紙는 아닙니다. 《東亞日報》는 옳은 것을 판가름하고 또 여당이 잘한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정성을 가진 것이 《東亞日報》라고 나는 자부하며, 또 과거에도 그리해 왔습니다. 《東亞日報》가 무조건 야당의원이 주장을 하고 야당이 내세우는 것은 다 지지하는 것이 《東亞日報》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신문을 이용해 가지고 야당지가 어떻다 여당지가 어떻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한가지 金鍾泌씨가 내가 李完用이가 되더라도 韓日會談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金鍾泌의원이 오늘 나오지를 안했

습니다마는, 金鍾泌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곧 올라와서 해명을 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그 분이 해명을 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특파원으로 日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이야기는 자기가 역적인 李完用이가 굳이 되고 싶어서 그런 말도 한일도 없고, 다만 韓日會談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 일념에서, 더욱이나 韓日會談을 우리가 빨리 성사토록 하는 것이 共産黨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굳은 신념을……그 사람은 생각하고 했고, 더욱이나 우리가 먼저 일본과 韓日國交를 수립함으로써 공산당에 기선을 제하고 우리가 공산당에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韓日會談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것이며, 그 사람이 "李完用이가 되더라도" 하는 이야기는 내가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韓日會談은 조속히 타결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렇게 와전된 것이 올습니다.

3) 대통령 연두교서와 야당 기초연설과문

제39회임시국회의 회기는 해를 넘겨 계속되었다.

1964년 1월 10일, 연말연시의 휴회를 끝내고 속개된 국회에서는 朴正熙대통령의 연두교서 낭독이 있었다. 최두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박 大統領은 자율적 정신혁신운동과 검약·증산운동을 통하여 조국근대화와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다시 2일 후인 1월 13일 민주공화당의 정책위원회회의장 이종극 의원이 연두교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행하였고, 14일과 15일에는 民政黨과 三民會의 기초연설이 이어졌다.

민정당은 윤보선 대표최고의원이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정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현실이 혁명을 정당화하는 사태냐고 물었다.

삼민회 박순천의원은 연두교서를 가리켜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추상적 질문에 불과하며, 냉엄한 현실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민주공화당은 윤보선의원의 혁명의 정당화 운운의 발언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민정당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주공화당은 윤보선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를 제출하고 야당이 퇴장하는 가운데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다음은 문제가 된 윤보선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벌써 삼년전 일구육일년 오월에 몇 사람의 군인들이 軍事革命을 일으킨 大義名分은 반공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고, 부패를 없애겠다는 것이었고, 不正選舉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었고, 民生苦問題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요"하는이 있음)

("조용해 조용해"하는이 있음)

그리고 民政移讓 때는 軍本然의 임무에 돌아 가겠다고 그들은 국내외에 엄숙히 서약했었던

것입니다.

本人은 이제 묻고자 합니다. 과연 그들은 民政移讓後에 軍本然의 임무에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특권집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民生苦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민생고는 더해가고 있고 국민의 신음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는 근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舊自由黨人士를 처형했던 사람들이 지능적인 수법과 엄청난 돈으로 파렴치한 不正選舉를 감행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腐敗는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四大 疑惑事件이 흐지브지된 것을 비롯해서 獵官運動과 賣官賣職은 政府樹立이후 어떤 때보다도 성행하고 있고, 부패의 냄새는 국민의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단 한 가지 反共態勢는 강화되었느냐고 본인은 묻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반공태세조차 강화되기는커녕 이것이 反共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朴政權이 이끌어 가는 大韓民國의 終着地가 어딘지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기간 중에 본인은 朴正熙씨의 과거에 불미한 기록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당선을 위하여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기 위함이 아니요, 또한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그러한 과거와 오늘날과의 사이에 어떠한 連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에게 묻고,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요, 의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본인에게 '매카시스트'니 또는 그 밖의 갖가지 비참한 모욕이 가하여졌습시다만 본인은 모든 것을 달게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참을 수 없는 것은 국가의 最高重責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國家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에 왜 시원스러운 해명을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시다. 본인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요구하고 기대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반공을 위해서 腐敗一掃를 위해서 부정선거근절을 위해서 민생고해결을 위해서 박정희씨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공태세는 식자간에 깊은 우려의 대상이 되어 있고, 특히 朴政權의 주변에는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의혹이 짙으며, 부패는 한층더 성행하고 있고, 부정선거는 판을 치고 있으며, 민생고는 유례없는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현상은 다시 반공을 위해서 腐敗一掃를 위하여 부정선거 근절을 위하여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朴政權을 타도할 革命을 정당화할 사태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본인은 朴政權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고맙습시다."

2. 삼분폭리사건에 관한 질문

1964년 1월에 소집된 제40회국회는 경제난 타개와 對日國交 교섭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벌이고, 대법원장(조진만) 임명동의, 군정시의 법령개정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재일교포재산반입 문제와 3분폭리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2월 5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재일교포의 재산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탈세가 정치자금화되고 있으며, 시멘트·설탕·밀가루의 이른바 三粉業者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李晶來의원 발언의 일부이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밝혀서 흑백을 가리고 시비를 가려 놓는 것이 우물쭈물하고 그대로 넘기는 것보다는 朴大統領의 統治權威를 위해서도 옳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與黨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제가 제의한 特別國政監查實施에 대한 決議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주십시오'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칭 三粉關係, 三粉이라고 하면 가루니까 밀가루·시멘트·설탕가루 등 세가지 관계인데 먼저 말씀드릴 바와 같이 삼분업자들이 전부가 다 개인의 업체야.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업체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제 자신도 잘 알 뿐아니라 어떤 분은 "할 수 있다"하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왜 이 문제를 상정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밀가루 하던은 첫째로 우리가 중요식량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 정부라는 말은 지나간 혁명정부올시다. 요전에 국무총리 崔斗善 선생 말씀과 같이 第三共和國 정부는 아직 탄생한지가 사십여일밖에 되지 않는 까닭으로 여기서 제가 정부라고 하는 얘기는 혁명정부를 지적한 것이올시다. 小麥을 7만톤을 들여왔는데 제1차로 5만톤을 가져다가, 美公法四八〇號에 제정이 되어 있기를 "釀造業者에게는 줄 수가 없다"하는 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적인 사람을 열거해가지고 김서방이니 박서방이니 없는 사람의 이름을 열거해가지고 3만 5천톤을 쥐서 양조업자들이 소비를 했다, 나머지 1만 5천톤은 정부가 매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향간에 떠돌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第2次導入 2만톤에 대해서는 다행일는지. 그분들로 보아서는 다행일지는 모르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마는 고시가격이 없다 하는 것을 기화로 삼아 가지고 壓麥을 만들어, 납작보리를 만들어 가지고 4할이나 되는 수량을 자유판매를 하게 해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굉장한 폭리를 취하도록 했다 이거올시다.

어떻게 되었거나 이와같이 우리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작금에 미곡과동을 겪고 급년에 들어와서는 여야할 것 없이 삼천리국민이 다같이 걱정을 하고 焦燥로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식량을 사실 이대로 만일에 소비가 되었다고 하면은 과거의 혁명정부가 저질렀든, 누가 저질렀든 이것을 좀 밝혀 가지고 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이 제안을 한 취지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설탕가루 문제인데 제당업자라고 하는 분이 수가 제가 알기로는 2개상사 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설탕가루를, 혹은 제가 농림위원회에서도 생활필수품이니 아니니 하는 얘기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한 文化人에게 대해서는 설탕가루도 생활필수품이라고 규정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중 략) 네차레를 고시가격을 올려가지고 설탕가루를 비싸게 팔아먹어라 하고 행정부가 허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 原糖에 대해서도 재고품을 네차레 설탕가루 값 올리라고 할 때마다 올려받았느냐,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국고에 대한 손실을 봤느냐 이것을 따져 보자니까 三粉이란 얘기가 나온 것이지 삼분업자 개인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따진다거나 우리가 폭리를 했다거나 하는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이올시다.

다음에 상공부 주관인 수입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 정부가 국내산업이 국제수준에 미달한 까닭으로 과도적 편법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별로 나눠서 명백하게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국민도 알고 업자들도 알고 하도록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 . (중 략)

다음에 재일교포재산반입문제는 이것도 무슨 까닭인지 전에는 "귀국을 한분에게 대해서 허용을 해준다. 따라서 시설재에 대해서만 허용을 한다" 이랬던 것인데 작년 7월 22일날 閣議를 개정할 해가지고 귀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허용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는 시설재가 아니라 인기품목에 속한 것을 함부로 마구 들여왔습니다.

3. 4대 의혹사건을 추궁한 1964년도 국정감사 및 그 기록의 보관상태

국정감사는 국회활동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다. 제도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기록에 남겨야 한다. 유신헌법에서 국정감사가 삭제되었다가 1988년 현행 헌법에 의하여 부활된 이후 그 기록은 빠짐없이 기록되고 발간되었다. 8대국회 이전의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은 하였으나, 발간을 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다행히 원고는 보존돼 있기는 하나 그 보존 상태도 불량하여 많이 유실되고 말았다.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은 감사에 앞서 지난 날의 감사 자료를 참조하기 마련인데 그 자료가 유인물로 남아 있지 군정 이후 처음 실시한 감사시에는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4년 군정이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는 5·16군사정권과 민주공화당 정부하에서 조장된 비리를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은 당시의 언론이나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정 직후 이른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4대의혹사건이다.

이 사건들로 인하여 군사정권이 구악을 일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민생고를 해결한다는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나면 민정이양후 군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식언하고 오히려 정치공작을 추진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정치정화법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놓고 뒤에서는 4대의혹사건으로 일컬어지는 부정행

위로 공화당 창당자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당시 야당과 언론의 시각이었다.

여기서 4대의혹사건이라 함은 증권파동, 워커힐사건, 새나라자동차, 빼쟁꼬사건을 말한다.

군정기간중에 일어난 증권파동은 중앙정보부의 자금이 증시에 투입되어 株價를 조작했다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먼저 중앙정보부 자금이 흘러들어간 대한증권 주식의 株價가 연일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 들었으며,

다음에는 중앙정보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일흥증권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 농협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전력주 12만 8,000주를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불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농협과 재무부에 압력이 가해졌고 株當 1만 6,000환 미만의 가격으로 사들인 韓電株는 6만환까지 올라 갔다. 이는 평균시세의 4배가 되는 가격이었다.

당시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주가조작에 의한 폭등사태를 수습하러 나섰다가 피한들에게 납치되고 끝내 그 자리에서 밀려났고, 새로 취임한 이사장은 주가조작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사들인 대한증권주식을 액면가의 28배에 이르는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주가시세를 조작해서 얻은 수익은 거의 중앙정보부로 흘러 들어갔고, 이 때문에 조작에 의해 매수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증권회사들에게 월말 수도결제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재무부는 증권거래소에 수도결제자금 부족분을 두차례에 걸쳐 융자해 주도록 조치하였으나, 결제지연을 막지 못하고 이때부터 株價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융자 금액 300억환의 규모는 당시 통화량의 10%에 달하는 돈이었다고 한다.

1962년 6월 10일에 단행된 통화개혁은 증권파동의 후유증을 줄이려는 방편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한증권주식은 폭락을 거듭하여 조작이전의 가격으로 되돌아 갔고 다시 휴지화되고 말았다. 주가폭등과 폭락으로 5천여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증권시장은 내자조달의 場이 아니라 투기장이 되었으며, 투자자들의 가정파탄과 자살소동까지 일어났다. 이 증권파동으로 마련된 자금이 무려 전체 통화량의 4%에 달했고, 그 돈은 집권세력의 사전조직자금으로 쓰였다.

당시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증권파동 관계자들이 증시조작 혐의로 일시구속되었으나 모두 무죄석방 되었다.

다음 워커힐사건은 워커힐관광호텔을 국가기관이 건설하면서 공사비와 건축자재를 빼돌린 사건이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外貨를 벌어들인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워커힐관광호텔은 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1961년 11월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현역 중령인 건설사무소장, 교통부장관, 재무부장관, 서울시장, 기획원차관, 한전사장, 산업은행총재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예산과 은행이 출연하여 65억원의 건설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962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사에는 건설부와 교통부, 군이 지원하여 기공 10개월만에 완공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공사자금의 일부가 유출되고 자재까지 빼돌린 사실이 나중

에 드러난 것이다. 건설사무소장과 경리과장이 구속되었다. 각종 부대공사를 맡기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서다. 이 사건은 개인적 비리뿐 아니라 공화당 사무실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자재를 위커힐공사에서 떼어내도록 중앙정보부 관계자가 조정했던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또 새나라자동차사건은 1962년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첫해에 블루버드라는 이름의 승용차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와 문제를 야기시킨 사건이다. 새나라자동차는 박노정이라는 재일교포 실업자가 투자하고 한일은행이 용자를 하여 설립한 자동차회사이다. 이 회사는 처음 일본의 닛산으로부터 블루버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해서 국내에 보급했다. 그런데 새나라자동차는 부품을 수입하기보다는 완제품 1,600여대를 외국인 관광용이라는 명목으로 관세도 물지 않고 들여와 100% 가까이 이익을 붙여 판매하고 남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돌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들여온 완제품자동차가 새나라 택시라는 이름으로 바뀌달고 일반 영업택시가 되어 길거리에 나와 돌아 다녔다.

그러나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는 1년만에 조업을 중단했다. 外貨不足으로 더 이상 수입을 할 수도 없었고, 부채가 쌓여 회사는 은행으로 넘어갔다. 공교롭게도 위커힐 사건을 배후로 조정했던 石正善이 이 사건에도 관련되어 구속되었다가 한달만에 석방되었다.

1964년 1월의 제40회국회에서는 '새나라자동차도입경위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끝으로 빠짱꼬사건이라 불리는 회전당구 사건은 일본으로부터 빠짱꼬 기계를 수입하면서 재일교포의 재산을 반입하는 것처럼 꾸며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범행관계자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 나고, 고위 공무원 관련설이 있었으나 끝내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밀수뿐만 아니라 빠짱꼬영업이 군사정부하에서 허가가 난 데 대한 의혹을 함께 제기하였다. 사행심을 부추기는 빠짱꼬 업소허가에 대하여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 군사정권은 갑자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년 10월 빠짱꼬 시설 전면폐쇄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30여개 업자들은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말았다. 특히 빠짱꼬 기계 수입에 있어서 일본의 현지 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그 중 일부를 커미션으로 고위층에 상납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사건의 내막이나 돈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당시 군사정권이 빠짱꼬 허가를 내주고 그 시설을 수입하면서 불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빼돌렸고, 이후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자 폐쇄조치를 내려 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 4대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1963년 2월 정부에 4대의혹사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보부장이 검사들을 지휘하여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결과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4대의혹사건은 다같이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부정을 획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구약을 일소하겠다는 혁명정권의 허구성을 드러낸 사건들이었다. 1963년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정상적인 정부와 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정권의 담당자들은 바뀌지 않았고 4대 의혹사건의 진상도 더 이상 밝혀지지 않은채 세월의 흐름 속에 덮히고 말았다.

4. 언론법 파동

1) 언론법 통과와 그 여파

국회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된 것은 제44회 임시국회 제15차 본회의(1964년 8월 2일)에서였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한국신문발행인협회는 규정에 의하여 언론윤리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하여 언론계로부터 격렬한 반발이 일었고, 특히 한국신문기자협회는 언론윤리위원회 소집이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준수치 않고 법시행에 협력을 거부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정부가 부여하는 일체의 특혜·협조 배제 및 정부기관의 구매거부를 골자로 하는 '언론기관에 관한 정부특혜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신문인협회가 "이러한 보복조치는 일제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니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咸錫憲·張利郁 등 재야인사들은 9월 3일 자유언론수호국민대회를 발의하고,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으며, 자유언론수호국민연맹(가칭)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언론대책에 대해서는 국외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미국관리들은 "한국정부가 언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예상보다 지나치다"고 논평하였고, 국제신문인협회(IIP)는 "자율 아닌 규제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다"고 항의해 왔다.

국회는 9월 3일 본회의를 열어 丁一權국무총리, 張基榮부총리, 李壽榮공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조치가 민주정치 앞날을 흐리게 한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둘러싸고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지자 9월 5일 박대통령은 언론대책 관련 국무회의의 의결을 취소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9월 10일 다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 유보하고 언론윤리위원회의 소집도 무기연기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함으로써 파동은 일단락 되었다.

2) 언론법 국회내 논쟁의 전개

언론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6·3사태 이후 朴正熙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표출되었다. 제43회 국회 제8차 본회의(1964년 6월 26일)에 출석한 박대통령은 시국수습에 관한 대통령교서를 낭독하였다.

이 교서를 통해서 박대통령은 당시 난국이 초래된 원인이 먼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의욕의 과잉으로 무리한 시책을 강행한 나머지 민심과 유리된 점, 경험의 미흡으로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온 점, 아래 사람들이 저지른 유감스러운 일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였다.

군정기간이던 1962년과 63년은 연속된 흉년과 미국의 원조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은 해였다. 박대통령은 교서에서 본의 아닌 실책은 다소 있었으나 그래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전력과 비료와 시멘트와 정유 등의 공장을 건설했고, 韓日問題도 國益을 위해 타결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자신은 신명을 나라에 바친지라 私心이 있을 수 없고, 양심을 속여가면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였다.

끝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데모를 비난하고, 이어서 언론에 대한 규제 of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교서를 마무리 지었다. "학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근본문제이기는 하지마는 입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또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초월하는 인간의 기본권이올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도 다른자유와 마찬가지로 무한정한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우리 헌법에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언론이 없는 시간부터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요 언론의 창달여부는 문화의 척도가 된다는 것도 진실이지마는 세상에 신문이 나라를 망쳤다는 소리도 있고 이 사회의 혼란은 신문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다만 하나의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신문은 지난 38년 동안 선의이건 악의이건 너무나 많이 국민들을 자극했고 선동적인 언사를 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상 그 수지는 맞았을는지 몰라도 국가 사회에 유익한 일만 해 왔다고 단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속으로는 "신문이 너무 심해! 신문이 이래서는 아니 되겠어!" 하면서도 아무도 감히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그것을 시정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과 언론의 무책임한 자유 왜곡된 자유 과잉된 자유를 방치한다는 것과는 스스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면 타인의 자유나 타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를 규제할 의무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육성과 조급도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朴正熙대통령의 시국수습에 관한 대통령교서는 계속되었다.

"한때 거리를 나가면 그것이 이북방송인지 또는 우리 방송인지 귀를 의심할 정도의 소리가

들렸으니 이려고야 무슨 반공태세의 완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격하는 마음이 어찌 난동군인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군인이나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위법자는 모조리 가차없이 처단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리인 줄로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홀이나 불공평이 있다면 기탄없이 여러분들이 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다시 다짐해 두고자 합니다. 계엄을 하루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일은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과 대책의 강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과 대책의 강구없이 무작정 계엄만 해제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시국수습방안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6·3사태의 그 옛날로 되돌아 가고야 말게 될 것이라는 나의 예언을 의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이같은 대통령교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 다음 회기인 제44회 국회 제2차 본회의(1964. 7. 8)에서 이루어졌다.

民政黨총재 윤보선의원이 시국대책에 관한 연설을 한 것이다. 연설의 벽두에 윤의원은 박대통령을 '박정희씨'라고 호칭하여 회의장이 한때 떠들썩해졌다.

그 부분도 가감없이 기록한 속기록은 다음과 같이 되어 당시의 생생한 장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오늘 여러분과 국민 앞에서 수일 전에 박정희씨가 이 국회에 와서 한 ...

(「대통령 보고 박정희씨가 뭐요」 하는 이 있음)

연설을 크게 비판을... 당면한 시국수습에 관한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안한 시국에 대한 걱정은 ...

(장내 소연) ""오늘의 이 사태를 단순히 학생들의 행동에 기인하다고 단정하고 그 행동의 원인이 학생들의 몰지각과 외부로부터의 선동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적응한 시책을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태가 박정권의 3년 비정의 누적한 그 책임의 소재의 그의 불분명... 그럼으로써 더욱 암담하기만한 장래를 그 이상 좌시치 못할 국민적 분노의 폭발이라면은 그 폭발점이..... 여러분에게 배부된 원고에는 조직적이라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고쳐주시지요..... 집단적인 대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책이 또한 여기에 대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지난 6월 26일 박정희씨의 시국수습에 관한 국회의 연설을 읽고 크게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 사태의 근본원인을 그릇 판단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씨는 오늘의 위

기가 학생과 신문의 무질제 또는 무계획한 정쟁에 있으며, 반면 그간의 실정으로 말하자면은 자신의 의욕과잉으로 인한 본의아닌 실수가 다소 있었으나 그 중요한 원인은 작년의 흉작과 또 외국원조의 감소, 그리고 자기 부하들의 과실에 있다고 그 책임을 이리저리 옮겨놓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위국을 이와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상 그에게 사태의 수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공약이라는 이 괴상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해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사전보장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박정권이 정상적인 憲政을 통해서도 아무일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자인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그들의 현정상 권리를 박정권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현정을 부인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입으로만 현정수호를 운운하는 것은 상투적인 기만술책의 재현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사전보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낱 자유만을 자랑삼아 살아오던 이 국민에게 그 자유마저 박정권에게 반납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의 생명선을 송두리째 팔아먹어도 항변 한 마디 하지 말라는 사전 다짐입니다.

부정 부패 등을 눈감아 주라는 사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총칼로 억압하고 정치의 사전보장을 요구하는 예는 본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치원리상으로는 인민의 합의에 의한 사전보장이라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보장이야말로 현대사회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 계엄방법으로 법률을 만들 수는 없고, 또한 헌법상 권리를 뺏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방금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원관계 입법이나 그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에는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중대한 입법을 계엄하에서 계엄해제를 조건으로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개월여의 계엄이 무엇을 위한 것인 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총재들을 그 배움의 보급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유언론을 억압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몇 가지 전제적인 시책이 그 동안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애국적인 선량한 우리 군인들을 일선에서 뽑아내서 그 부형들 앞에서 총검을 가지고 시위를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극은 무단정치의 19세기식 망둥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다음은 7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삼민회 대표 金度演의원이 연설한 시국대책에 관한 연설의 속기록이다."오늘 이나라의 집권자인 朴正熙씨는 설사 그가 집권에 이르기까지의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되었든 그의 과거가 어떻든 그가 젊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생사관이 분명하며 책임과

의무감이 뚜렷하여야 한다는 무인출신이라는 점에서 나는 한가닥의 희망과 기대를 걸어왔던 것이며, 또한 그를 믿어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군사정권 2년 반을 영도해 온 그의 정치적 자세와 言行, 民政移讓이라는 이름 밑에 그가 계속 집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은 그로 하여금 이제 젊었다는 점에 대한 기대도 생사를 건 책임감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없게끔 결론짓게 하였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의 집권3년간의 연쇄실정은 우리 삼민회의 기조연설 속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치·경제·외교·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이 나라를 파산 속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군림 정치 및 허언정치는 유례없는 부패와 극한상태의 빈곤 및 사회악을 초래하였고 민족적 분열과 불신은 물론 새로운 항거의 파동 속에 전국민을 ?기하게 하였으며, 순조로이 해결될 분위기까지 이르렀던 5·16 이전의 對日關係를 후퇴시키고 국민적 대립감도 악화시켜 그 결과 극동의 반공자유진영의 단합을 오히려 지연케 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노인의 정치' 는 들어야 할 것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모조리 보지 못한 탓으로 때로는 부패를 낳게 하고 부정을 예방치 못하여 기대한 것과 같이 유능치 못하였다는 손 치더라고 '젊은 대통령의 정치' 는 왜이렇게 갈수록 태산입니까?

왜 이렇게 '귀머거리 장님정치' 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까?

李承晩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항의를 곧 전국민의 여론이라고 판단할 줄 알았고 집권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임을 직시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임기를 포기함으로써 민주 정치인으로서의 大道를 늦게나마 분명히 하였거늘 오늘의 젊은 대통령의 자세는 군인답지도 못하며 정치인답지도 못한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교서를 통하여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수습방안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의 호소는 궁극적 책임을 거의 전부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도 민주성과 책임감이 희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자유롭고 용감한 이 나라에 대한 ?렬한 애착을 동결시키는 學園立法이없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며 현재의 비상사태의 수습책은 이점에서 찾으려 하는 동시에 굶은 비바람 속에서도 독립과 민주정치를 전취하며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는데 꾸준히 투쟁해 온 언론의 심장을 겨누는 새로운 규제가 있어야만 하겠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간의 이같은 야당측 연설에 대해 7월 10일에 개의된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공화당 의장 鄭求瑛의원은 반대로 학원과 언론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그러면 정구영의원의 발언을 기록한 속기록을 다시 보도록 하자.

"극소수의 야당 정치지도층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자기들만의 전매특허처럼 과장선전합니다마는 그러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벌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게습니까? 민주주의란 상대방... 상대적 선의 실현과정이며 결코 일방적인 독선만으로써 이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다반사에서부터 모든 의회의 운영 및 입법사항을 정권쟁취에 직결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극한적으로 이를 반대하

는 것을 곧 愛國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들은 극렬한 어투로 남의 인신 공격과 비방을 예사로 하며, 남의 애정과 노력을 왜곡하거나 외면하려 하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은 한번도 언급하는 바 없이 이를 애써 숨기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실이든 이미 우리가 겪어온 과정은 幸不幸간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것만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때인가 어떤 정치지도자가 "올 것이 왔다" 그러한 찬사를 보내고 '애국적 처사'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 마지않던 성명도, 그리고 5·16군사혁명의 合憲性和 國政이 合法政府임을 유엔을 통하여 전 자유세계의 승인을 받게 한 국제적 기록도 한구절 한구절 영원한 역사의 책갈피들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해방후 18년의 憲政史를 통하여 두 차례에 걸친 비정상적 정권교체만을 거쳐 바야흐로 제3공화국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정권의 평화교체에 대한 전통 수립과 정국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이 갈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정계 극소수의 지도층에서는 '후진국 정권교체는 정상적일 수 없다'는 계산 아래 표면으로는 헌정수호를 주장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비정상적 정권교체의 바탕 조성에만 골몰하고 있음은 일부 학생들의 철없는 난동을 우리 민족의 전진을 갈구하는 몸부림이라고 규정짓는 것만으로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상불 이것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건전야당의 진정한 모습이 못 된다는 것은 상당수의 야당 인사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으신 모당의원 한분은 '정치인들이 학생데모에 기대를 건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통탄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야당내에는 확실히 두 개의 정치적자세가 있다'는 말도 나는 들었습니다. 헌정질서와 대의정치수호를 다짐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정말로 눈물겨운 마음을 표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야당정치인이 어찌 이 한분뿐이겠습니까?

본의원은 헌정의 틀안에서의 여야협조에 의한 난국타개의 한가닥 희망이 여기에서 싹을 틔우 것으로 확신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권자의 정치권한의 행사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요체라면 우리 정치인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투쟁에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일 것입니다. 일찍이 모당의 영도자는 소위 有限政治를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 뜻은 결코 집권자의 有限性만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의 정치활동의 책임성과 정치투쟁의 유한성도 동시에 강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야의원들간의 치고 받는 과정을 거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월남과병동의안을 의결한

다음 날인 1964년 8월 1일 제1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날은 예정된 의사일정이 아닌 학원보호법이 민주공화당측에 의해서 추가되었으나 실제 상정되지는 못한 가운데 공화당의 白南億의원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제안설명을 하였다.

여야시국수습협회의회에서 채택된 합의사항중 언론의 자율적 규제를 정한다는 짝막한 제안이유 설명에 이어 그는 곧바로 조합별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쳤다.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온종일 계속하였다.

마침 이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자정을 넘기게 되자 공휴일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따로 의결하면서 마라톤회의를 계속했고, 다음날 새벽 3시30분에 일단 산회했다가 오전 10시에 본회의는 다시 열렸다.

여러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오후 10시가 지나 회의장이 극도로 소란한 가운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다. 본회의 토론과 정과간 협상과정에서 일부가 수정되었던 법안은 재석 149명중 96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반대표는 없었다. 야당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소란스런 장내분위기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의장(이효상)

착석 하십시오.

착석하십시오.

조용해 주십시오. 조용해 주십시오.

그것 너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좀 조용해 주십시오.

(장내소연)

그러면 본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트해서 많은 질의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로써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중소」 하는이 있음)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한 가지 모순성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진성하의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아셨든지 간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김익기의원 발언을 중지하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의장께 드렸습니다. 그뿐이올시다」 의석에서 - 윤제술의원)

(「잘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종결...

(「한 가지 모순성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 진성하의원)

의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토론종결을...

(「이의 있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소」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는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과 기타는 원안대로 일괄해서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소」 하는 이 있음)

(「중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별도로 표결하시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하시다 하는 분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요」 하는 이 있음)

수정안하고 수정안 외에 원안을 일괄해서 표결하는 데 대하여 가부를 묻습니다.

(기립 표결)

(일부 야당의원 퇴장)

재석 149명중 가 96표. 부는 없습니다. 본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올시다

그리고 가결된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주시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중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항해요」 하는 이 있음)

(「계속해요」 하는 이 있음)

이로써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0시 19분 산회)"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8월 3일과 4일 국회는 다시 학원보호법의 심의를 둘러싸고 파란을 겪게 된다. 야당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상정을 저지하였고, 의장이 안건상정선포를 한 다음에도 제안설명을 못하도록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며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정회 끝에 오전 1시가 지나 산회하였다. 오전 11시 본회의가 다시 열렸고, 제안설명을 하려고 등단한 閔丙權의원은 야당의 방해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다는 말만하고 들어갔다. 회의는 하루종일 공전하다가 오후 9시에 잠시 열렸는데 의장이 "국회가 피를 보지 않고 무사히 산회가 되는 것이 기쁘다" 며 산회를 선포했다.

5. 韓日會談 추진과 6·3사태

1964년 1월 10일 朴正熙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일본에서도 이케다(池田)수상이 한일국교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일회담의 타결에 가장 먼저 반대한 것은 평화선 양보에 민감한 어민단체들이었다. 이어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 3월 15일부터 전국 12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반대집회를 열었다.

집권당인 民主共和黨은 이에 맞서 한일회담 타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지방유세에 나섰다.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도쿄에서 元容奭농림부장관과 아카시로(赤城)일본농무장관의 회담이 진행되어 전관수역·기선문제·공동규제 구획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3월 21일에는 金鍾必 민주공화당 의장이 오오노(大野) 자민당부총재와, 24일에는 이케다(池田)수상과 회담하였다.

도쿄에서 김종필의원은 야당의 적극적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5월 초순에 한일협정이 조인될 것임을 밝혀 전국적 시위를 유발했다.

3월 24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8만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학생데모가 계속되고 정국이 극도로 긴장되어 가자 박대통령은 김종필의원을 귀국토록 하였다.

잠시 수그러졌던 시위는 三民會 소속 金俊淵의원의 韓日間 선거자금 수수 발언으로 다시 끓어올랐다. 한일간의 군사정권 정치자금의 파이프가 가동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 것은 이미 김종필·오하라 메모가 작성된 62년 11월 12일의 일이었다. 김준연의원은 그 발언으로 곧바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 뒤 67년 《동아일보》 3월 27일자에 또다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일본측으로부터 5개년계획의 자금으로 1억3천만 달러를 사전 수수했고, 이와는 별도로 공화당 활동자금으로 2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대통령은 5월 11일 정일권씨를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을 출범시킨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경향신문》 기자 4명이 체포되었고, 동아일보사에 공수부대원이 침입, 편집기자들에게 구타를 자행하기도 했으며, 학생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던 판사가 공수부대에 협박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권총과 카아빈총으로 무장한 공수단 소속 군인 13명이 군용구급차를 타고 서울지방법원 청사에 들러 숙직판사를 찾았으나 숙직판사가 퇴청한 것을 알자 종로경찰서 차량 3대에 형사를 분승시켜 이들을 대동하고 숙직 판사인 梁憲판사 자택을 찾아갔다.

이들은 종로경찰서에서 신청한 데모학생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양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데 대해서 견해를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제 42회 국회 제8차 본회의(1964. 5. 22)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생 데모 및 공수단의 일부 군인행동에 관한 사태에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정일권)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 사건은 몇몇 군인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육해공군은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확고부동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철저히 이 사실을 규명하고 엄격히 의법처단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학생데모에 대해서는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10만의 학생 가운데서 일부학생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서 선량한 학생들의 진리탐구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학원 외에 있어서 사회질서를 문란히 하는 행동에 관해서는 결단코 의법 처단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내무부장관(양찬우)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일부 소수 학생들로 말미암아 350만의 수도시민들이 밤낮 주야로 불안과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지낸다면 우리 경찰은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마는 이와같은 수도시민들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학생데모를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협조를 바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찰은 선량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고 조금이라도 그네들에게 학대를 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지금 날뛰고 있는 오열 간첩을 잡아야 될 것이고, 또한 날뛰고 있는 浮浪輩와 깡패와 盜賊을 잡아야 될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이외에 영국 구라파에 있는 여러 선진국가에 있어서 경찰병력을 조사해본 결과 미국에 있어서는 인구 450명 당 경찰1명, 영국에 있어서는 480명 당 경찰1명, 그리고 일본은 500명 당 경찰1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790명 당 경찰1명인 것입니다. 장비도 모든 것도 다 원시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단히 경찰이 그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가 아닌 데모를 막기 위해서 수도의 경찰이 전 신경을 거기에다가 집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미치는 폐단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이같은 보고에 이어 국방부장관(김성은)은 공수단 소속 군인들이 사법기관을 찾아간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고했다. 오히려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과 사법부의 미온적인 직무 처리에 분개하는 군장병의 분위기를 은근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지금까지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데모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경찰이 많은 부상을 당해 가면서까지 이를 제지하고, 또 체포를 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보아도 항상 기각처분만 당하고 그 학생들이 석방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도무지 법의 엄한 존엄성을 모르고 또 국기를 흔들리게 하는… 정부의 방침에 거역하면서 이런 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좀더 철저히 단속해달라 하는 얘기를 관계 관사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애로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서로 말을 하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앰블런스를 타고 검찰청에 직행해서 숙직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검찰청의 수위가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근무하던 그 무장한 복장 그대로 가니까 수위가 놀라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수명의 신문기자들이 몇 사람이나 구속영장이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있었는데 웬일이 생겼나 해서 굉장히 놀래가지고, 아주 이것이 큰 무슨 변란이나 난 것처럼 신문에 대단히 크게 보도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을 줄 압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가서 숙직하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담당판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판사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다가 바로 자기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수위로

하여금 그러면 담당판사인 양현씨 댁에다가 전화를 좀 걸어다고, 우리가 가서 면회를 하고 싶으니까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수위가 연락을 한 결과 양현판사가 「좋으니까 곧 집으로 오시오」 해서 이 군인들이 양현판사집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양판사를 만나보니 이 황대위와 양판사가 과거에 학교의 동창생이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웬일인가 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무엇 때문에 방문해 왔다고 하는 자기네들의 심정을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법원측에서 항상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국기가 문란하고 치안이 문란해지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불법학생들을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우리 젊은 군인들의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는 것을 호소하고 7시경에 돌아온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근무에 임했던 그대로의 복장을 해가지고 단지 그 순간적인 충동에서 취해진 행동이며 결코 이것이 계획적이었거나 또는 우리 군인이 사법부에 대한 모종 협박이나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태도는 추후도 없었던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또한 행동에 있어서도 시종 겸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당일 거기에 있던 숙직직원이나 또는 양판사 자신의 증언을 들어보더라도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결코 어떤 계획적인, 뭐 복선이 있다든지 위에서 어떤 지령을 해서 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몇몇 군인들이 순간적인 감정의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네들의 의사를 애원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기나 그 행동은 어떻든간에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간의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범했음으로 인해서 저는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이들을 엄중 문초하게 하고 진상이 드러나는 대로 군법에 의해서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은, “학생들이 5·16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현정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마치 이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공산당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언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5·16혁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작년 가을에 실시했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명백히 판가름났다고 주장했다.

발언이 여기에 이르자 야당 의석에서 야유와 고함의 터져 나왔다. 회의록에는 이 부분에 “(장내소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16혁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작년 가을에 실시했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장내소연)

명백히 판가름 한 바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러니 저러니 국가를 부정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또한 이 학생들의 데모의 양상을 볼 것 같으면 5·16을 마치… 마치 군인들을 역적인 것처럼 몰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5·16의 정당성을 명백히 국민들이 판가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순한 학생들 일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또 그뿐 아니라 이번엔 학생들이 한 그 데모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관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민족적민주주의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행을 했습니다. 학생들 머리 위에 두건을 쓰고 거기에 상복을 입고 목의 관을 메고 만장을 들고 「어이 어이」

하면서 행렬을 해서 대로를 걸어가는, 이것이야말로 학생다운 본분을 떠난 아주 정상적인 양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고가 끝난 직후 맨먼저 질문에 나선 朴漢相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헌법질서를 뒤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부인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였다.

“본의원은 야당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으로 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을 이 나라 정치의 부동의 신조로 삼고 있는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고 볼수 있는 작일의 일부 군인들의 난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중대한 도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에게 말씀드려줄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영장을 발부하는 재판사무에 완전무장을 한 군인들이 고요히 국민들이 잠든 새벽에 정적을 깨뜨린 예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월 20일 한국굴욕외교반대 대학생총연합회가 주최한 서울대문리대 교정에서 ‘민족적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5월 25일 전국 31개 대학의 학생대표에 의해 열린 ‘난국타개 학생총궐기대회’ 27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수습결의문 채택, 그리고 6월 2일에는 6천여명의 학생들이 성토대회를 갖고 독재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에 나와 경찰과 충돌하였다.

6월 3일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10만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데모에 가담했다. 데모대의 구호는 한일회담 반대의 수준을 넘어 정권타도로 돌변했다. 광화문 일대 3만여명의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중앙청 앞길을 통과하여 청와대 입구에서 수경사 병력과 공수부대를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가 학생들에게 둘러싸이자 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이 헬리콥터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 박대통령과 사태수습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박대통령은 그날 밤 서울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계엄하에서도 학생들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박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등 한일회담 반대의 소리는 높아갔고 그 동안 민주당·민정당으로 갈려져 있던 두 야당이 합쳐 민중당으로 세력을 결집하였다.

야당의 반대와 학생시위가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1964년 6월 22일 한일협정은 정식 조인되었다. 그리고 민중당 국회의원 16명이 이에 반대하여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그 해 8월 13일 윤보선·徐珉濠·鄭一亨·鄭成太·金度演·金在光 등 6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국회에서의 한일협정 비준동의는 1965년 8월 13일 제5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안건을 상징하여 한일협정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장 閔寬植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어 李東元외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 14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벌인 다음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11명중 1명의 기권을 제외한 110명 여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다.

6. 한비밀수사건과 국회 오물사건

1966년 9월 21일 제58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이 날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사건 그 자체는 憲政史에 남을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은 못된다.

그러나 하나의 헤프닝으로서 누구나 한번씩 언급하는 사건이다.

본회의의 안건은 특정재벌의 밀수에 관한 대정부질문.

특정재벌의 밀수사건이라 함은 삼성그룹 계열의 한국비료주식회사가 비료공장의 건설자재를 수입하면서 곁들여 수입 금지품인 사카린 원료를 다량으로 반입한 사건, 즉 이름하여 한비밀수사건이다.

오르트멘 슬폰아지트(OTSA)라는 사카린 원료 58톤을 건설자재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한 이 사건이 드러나자 국내 최고의 재벌기업이 국민을 배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밀수가 정당화된 때가 없었지만 당시에는 밀수행위를 가난을 벗지 못하고 있는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 범죄로 여기던 때였다.

군사혁명세력이 집권한지도 5년째, 경제개발을 지상과제로 삼아 외제품 배격과 국산품 애용을 애국적 차원에서 강요하던 시절이었다. 밀수범을 亡國의 원흉이라 하여 가차없이 처단하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로 혁명 직후 군사정부는 상습밀수범으로 악명을 떨치던 韓彌國이란 자를 사형에 처하며 밀수근절의 단호한 의지를 내보인 바도 있었다.

재벌의 밀수행위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국민들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관세당국이 밀수를 적발하고도 눈감아 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자 더욱 분노했다. 당시 법규정에 의하면 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적용하여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은 한국비료의 밀수사실을 알고서도 적법한 처리절차를 밟지 않은 채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가 재벌기업을 비호하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었다.

양담배 하나 피우고 감옥에 가는 세상에서 재벌의 밀수행위가 그토록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여론이 비화되자 검찰은 사카린밀수사건의 경위와 함께 세관당국의 결탁여부를 파헤치고자 수사에 착수하였다. 朴正熙대통령은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였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당초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대검찰청에 긴급구성한 '한국비료밀수산건특별수사반'으로 옮겨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한편 여론이 비등하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9월 22일 삼성그룹의 총수 이병철회장은 밀수사건에 책임을 느끼고 한국비료공장을 국가에 헌납하겠으며,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의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9월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민복기 법무부장관, 김정렴 재무부장관, 박충훈 상공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본회의의 의제는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질문.

야당 의원들은 삼성그룹의 총수 이병철씨의 구속과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재벌의 밀수를 비호하고 있으며, 삼성측이 정부로부터 대출 받은 차관자금으로 밀수품의 대금을 결제해 주었고, 이병철씨가 밀수사건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국무위원들은 한결같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지만, 정부가 재벌의 밀수사건을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해명했다. 재벌과 권력의 결탁 소문은 유언비어일 뿐이며, 밀수품의 결제는 삼성의 자체 자금으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재벌의 밀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고, 세관이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사카린 밀수사건에 권력의 개입은 없었고, 이 사건은 삼성의 밀수행위와 부산세관의 법적용 잘못으로 빚어진 사건이므로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의 공방은 지루하게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질문' 시작한지 이틀째가 되는 1996년 9월 22일 국회본회의 사회봉을 잠은 李相喆부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어느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줄 것인지 설명하였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공화당, 민중당, 무소속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정파에서 한분씩 질문을 하신 다음에 합쳐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 있습니다?"

그러자 의석에서,

"무슨 소리요?"

하는 고탐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두한의원이었다. 사회자는 이를 무시한 채 이의 없는 줄로 알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두한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이거 한번 부서지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탁자를 부서버릴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회의는 그냥 진행되었다. 첫 발언자가 이미 등단을 하고 있었다.

"그 따위로 하면 좋지 않아. 노인이니까 그냥 두지 장부의장 같이 유도캐나 쓰면 날릴테야."

김두한의원은 이렇게 한번 더 핏대를 올리고는 자리에 앉았다. 이상철부의장은 나이가 많았고, 장경순부의장은 비교적 젊고 체격도 단단한 유도의 유도자였다. 마침 그 순간 사회자가 나이 많은 이상철부의장이라서 차마 완력을 쓸수가 없었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회의는 흘러갔지만 김두한의원이 고탐를 친 것은 다음에 김두한이 벌인 거사(?)의 예고편이었음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어쨌든 권오석의원, 김대중의원의 질문이 이어졌고, 세 번째로 김두한의원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해서 아는 게 없고 말도 할 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할 줄 모르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한국비료와 이병철이 밀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범죄를 자행할 만한 환경을 정부가 조성했기 때문이다. 나는 교도소를 별장 삼아서 드나 들었다. 이번에도 감옥에 갈 각오를 갖고 말한다. 나는 공산당과 싸우다 미군정에 의해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오기나와 형무소에도 있었다. 아버지의 숭고한 피를 이어 받아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쳤다. 이제 분단된 반토막이나마 자유독립국가를 세웠다. 과거 이승만정권이 친일모리배들을 모아다가 헌정을 파괴하고 민족정기를 모독하기에 그 때 내가 투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속이고, 특혜조치로 재벌과 유착하는 부정한 역사를 되풀이 하는 현정권을 응징하고자 한다.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이를 합리화시키려는 당신들은 총리나 내각이 아니고 범죄 피고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선 너희들이 밀수한 사카린 맛을 보라.

말씀씨로 말하자면 연설을 할 만한 기본소양도 갖추지 못한 김두환의원이었다. 그래도 아무 말이나 조리가 닿긴 안닿긴 좃어 넘겼다. 어법도 맞지 않고, 뒤죽박죽이 된 장광설이었지만 오늘날 속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해독해 보면 위와 같이 훌륭한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는 연설이었다.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행해지는 의원의 정식 발언이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요령부득이긴 해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그저 듣고 있었다. 장관들을 피고로 다루겠다고 기세를 올리는 대목에서는 의석에서 웃음이 일기도 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감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카린 맛을 보여 주겠다고 말한 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김두환의원은 발언대에 나올 때 포장을 한 상자를 지니고 있었다. 그 포장을 풀고 거기에 담아 왔던 사카린을 장관들의 탁자에 고루 쏟아 부었다.

국무위원석에는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김정렴 재무장관, 민복기 법무장관, 박충훈 상공장관 등이 앉아 있었다. 이들의 탁자 위에 하얀 사카린 가루가 내려 앉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물큰 풍겨 났다. 사카린의 하얀 가루뿐만 아니라 깡통 밑에 담겨있던 오물이 뒤이어 쏟아져 나온 것이다.

김정렴 재무장관, 정일권 총리,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민복기 법무장관, 박충훈 상공부장관이 무방비 상태에서 오물의 파편을 맞고 있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김두환은 오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다.

"똥이나 치떡어 이 새끼들아!"

기록은 여기서 끝났다.

(장내소란)

(산회선포해요하는 이 있음)

이렇게 간단한 표현에서 아수라장이 된 그때 상황을 짐작해 볼 뿐이다.

사회를 보던 이상철부의장은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을 보면 발언대와 국무위원석이 한참 떨어져 있다. 김두한식 거사(?)를 벌이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셈이다. 태평로에 국회의사당이 있을 때에는 회의장도 작고, 국무위원석이 바로 발언대 원편에 배치되어 의원석을 마주 보며 앉아 있게 되어 있었다.

속기석도 발언대 가까이 붙어 있었다. 속기사는 오물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당시 김두한위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전략 ...

나는 어떻게 환경이 나빠서 교동공립보통학교 3년 동안에 2년을 낙제하고 1학년이올시다. 이래서 기본적인 기초상식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딴 다른 사람이 할줄 모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면 나는 '사카모도' 라는 놈이 밀수를 했다. 이 병철이, 한국비료가 밀수를 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 차원을 달리 하려고 생각합니다.왜냐. 모든 것은 벽돌짜이 하나에서 부터 올라가서 뉴욕에 제일인 엠파이어 빌딩이 되고, 태평양과 대서양도 산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가 가지고 위대한 바다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이룰 때에는 그 범죄의 요소에 대하여는 그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3 공화국에 있는 국회에서도 책임을 저야 할 것이고, 현 이 내각에서도 책임을 저야 합니다. 왜 국회라고 하는 곳은 국민의 복리민복을 위하는 복지사회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사명이고, 행정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과 불의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시키는 곳이 만고에 국회라고 할 때에 이 국회는 우리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김대중위원이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장시간을 잘 들었으니 나는 그 이상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국회의원에 대한 보궐선거가 되어가지고 당선되자 마자 서대문 형무소에 직행되어서 12월 눈보라치는 영하 20도에서 한달 동안 콩밥을 씹다 나왔습니다.

거기는 내가 늘 별장 삼아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뭐 한 40몇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상관은 없고, 나 또 들어갈 심정이니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히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정권이 수립되어서 이승만정권이 독재와 부정과 부패를 했기 때문에 장면 정권은 전체 국민에게 고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했던 것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정책을 하나의 선거공약으로 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것이 지나치게 정도를 ... 사회질서를 문란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국민이 60만이 있고 경찰이 7만 이상이 있고, 이 나라에 적어도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수만의 애국청년이 있는데, 하루밤 사이에 대한민국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위해서 내 목 뒤에는 한방의 탄알의 흔적이 있고, 맥아더사령부에 들어가 가지고 사형을 받아서 오기나와형무소에 가 있을 때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어서 그 영광된 시간에 나는 대사령으로 석방되었던 사람입니다. ... 중략 ...

김두한이 배우지 못했지마는 2년 8개월 동안이라는 것을 공산당에게 테러, 학살, 방화, 납치, 무자비한 하나의 공산당 이상의 투쟁을 해가면서 최후에는 사람이 많이 희생당했다고 그래서 군정령 505호에 의해서 하지중장 24군의 CIC에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 중략 ...

그러나 나에게서는 위대한 승고의 피가 흘렀고, 위대한 그분에 대한 사업을 나는 완수해야겠으며, 나의 아버님의 선배와 동지가 되시는 그분에 대하여는 백만 이상의 순국선열에 대하여는 그 영영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값없는 생명이나마라도 이 나라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값있게 바쳤던 것입니다. 나는 공산당하고 싸울 때 어떠한 명예를 앞세우든지 어떠한 하나의 부귀와 영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중략 ...

이래서 사형을 딱 당했다가 나와서 보니 역사와 국가는 모든 것이 달라 졌습니다.

당연히 독립국가가 되면 과거에 친일파 민족반역자하는 것은 일당의 하나가 되어 숙청은 공산당같이 잔인하다 하더라도 정치나 경제에 대한 참여권을 주지말아야 된다. 다만 시기적으로 15년이나 20년이라는 기간만 두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내가 전 이승만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이승만대통령은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최후에는 희생을 시켰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나는 일절 그분에게 대한 함구무언입니다.

나에게는 투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남에게 굴복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 중략 ...

이 나라의 헌정을 파괴하고 민족요인을 파괴하는 이승만정권을 파괴해서 나는 최후에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3대민의원적에 그때에,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4·19 후에 무서운 철퇴를 내려가지고 그 역사에 번복이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16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새벽 3시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강탈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그 정권까지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선의로 해석하나 과거의 자유당 이상으로 부정하고 부패하고 독점시켜서 전체 민족의 대다수를 빈곤에 몰아넣고 몇놈에게 특혜조치를 한다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부정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 했을 때에 이것은 건국을...

이승만대통령의 때와 무엇이 역사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는 대통령이 여기에 나왔으면 호되게 한번 따지고 싶지만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통령을 대리하고, 여기 장관이 나와 있으니 나는 이 사람을 내각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3년몇개월 동안 부정과 불의를 하는 것을 합리화를 시켜버린 하나의 피고로서 오늘 이 시간서부터 다루겠습니다.

(소성)

이것이 도적질해 먹는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해서 합리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이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국민의 사카린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고루 고루 맛을 보여야 알지...

똥이나 처먹어 이새끼들아!"

(장내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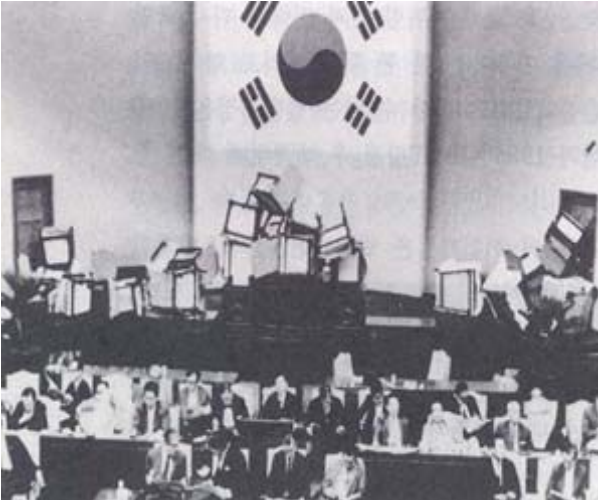
("산회 선포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이상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6분 산회)

7. 꼭두새벽 별관에서 통과시킨 憲法改正案



◀ 3선개헌 저지를 위한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 장면

우리 憲政史에서 아홉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은 그 동기에 있어서 크게 나누어 권력연장 및 강화를 위한 것과 권력을 다시 국민의 통제하에 두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 두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헌법개정은 1960년 4·19 후 내각제 개헌과 1986년 6·10항쟁후 대통령제 개헌 등 두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3선개헌으로 알려진 1969년의 헌법개정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과 마찬가지로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朴正熙대통령이 당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헌법개정을 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소문은 진작부터 향간에 떠돌았다. 그리고 1969년 새해 벽두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개헌의도는 노골화되었다.

1월 6일 民主共和黨의 吉在號사무총장이 개헌의 필요성 검토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다음날인 7일에는 尹致暎 민주공화당 의장서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3선개헌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개헌논의는 야권의 반발은 물론, 민주공화당내에서도 일부 반대를 가져왔다. 新民黨의 金泳三 원내총무는 공화당 尹議長서리가 개헌가능성을 제기한 그날 바로 성명을 발표했다.

"신민당은 어떤 형태의 개헌도 반대하며 개헌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은 한 덩어리가 되어 최대한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로부터 며칠 지난 2월 3일 공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改憲에 관한 黨論 모으기를 최초로 시도했다. 尹致暎당의장서리와 申東峻의원 등 개헌추진론자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경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치적 안정을 기하려면 박대통령의 지도력이 계속 필요하다. 따라서 박대통령의 집권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개헌은 박대통령의 업적을 훼손시킬 뿐이다. 민주적 정치질서를 존중하라" 李萬燮·申允昌·楊淳植의원 등이 개헌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자 공화당은 개헌가능성에 대하여 더 이상 논의를 확대하지 않았다. 개헌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당내외에 걸림돌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박대통령이 공식 논의를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2월 4일 연두기자 회견 석상에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개헌논의중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공화당은 사실상 개헌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나갔고, 신문에서도 "개헌은 박대통령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였다"고 분석하면서, 결국 그 해 안에 개헌이 단행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신민당에서는 개헌론이 박대통령에 의해 직접 제기된 것으로써 개헌의 가능성이 잠복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에 저지할 태세를 갖추었다. 마침 그해 2월 28일 전남 나주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이때 신민당은 선거전에서 "공화당이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공화당이 세운 후보가 당선되었다. 결국 잠시 중단되었던 개헌논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거져 나오게 된다.



◀ 태평로 의사당 제3별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외곽 단체를 중심으로 갑자기 개헌개최된 3선개헌을 위한 국회본회의 장면 중앙의 속기사 중 뒤돌아보는 사람이 채강희 속기사이고 맞은편이 송기철 속기사(1969.9.14세벽) 안 국민발의 서명운동이 등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 동안 정계를 은퇴했던 金鍾泌 전 당의장이 개헌 지지 발언을 하고 나왔다. 이에 따라 공화당내에서의 개헌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김종필 전 당

의장의 개헌지지 발언은 사실상 당내에서 개헌을 반대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보다 앞서 국회에서는 4·8항명파동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權五柄 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발의했는데 이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의원 40여명이 당명을 어기고 야당측에 동조한 사건이었다.

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 주모자 5명을 색출하여 제명하였고, 그후 이들이 겪은 곤욕은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말하자면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도록 여당내의 분위기는 잡혀 있었다.

공화당은 학자들을 동원한 토론과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책자의 반포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였고,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이 7월 27일 "꼭 개헌이 필요하다면 언말이나 언초로 늦춰라"고 언급함으로써 개헌일정을 제시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개헌의 절차를 밟으라는 뜻으로 풀이되었고, 8월 7일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야당은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본격화 하였고, 각 대학

에서도 여름 내내 개헌반대시위가 끊이지 않아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었다.

공화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야당인 신민당 소속 의원 3명이 함께 서명하였다. 成樂絃·曹興萬·延周欽의원 등이 그들이었다. 성낙현의원은 후에 공화당에 입당하여 의원생활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어린 여학생들을 농락한 사건으로 매장된 인물이고, 연주흠의원은 그의 사업체를 보전하기 위하여 권력의 회유를 물리칠 수 없었던 것으로 세인들은 짐작하였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 야당의 전열은 타격을 입었다. 야당은 이탈자 3명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자 남은 의원 44명 전원을 제명한 다음, 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토록 하였다. 이는 당이 해산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규정을 이용한 교육지책이었고, 한편으로는 兪鎮午총재의 말처럼 "당해산 결정은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신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노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개헌안은 9월 9일 제7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14일 새벽에 통과되었다. 야당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이었으므로 여당 의원 122명이 국회의사당 본관의 본회의장 아닌 태평로 길 건너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 은밀히 집결하여 통과시킨 것이었다.

제3별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헌법개정안 처리의 속기를 담당했던 채강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날 초저녁까지 본회의장은 회의 대기상태였다. 그러다가 오늘은 상황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전갈이 있어서 우리는 일단 사무실로 철수했다. 언제 다시 회의가 속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중 밤 12시경 2별관에 있는 전화교환실로 와서 대기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다. 거기서 새벽 2시를 넘겼을 무렵 속기과장으로부터 3별관 특별회의실로 가보라는 지시가 내렸다. 3별관 건물 전체는 불빛 하나 없이 캄캄했고, 회의장도 어두웠다. 프래시를 비추고 회의장을 더듬어 찾으니 "누구야!" 그래서 "속기사입니다"하고 들어갔다. 회의장 안은 희미했으나 커튼이 내려지면서 회의장이 밝아졌다. 회의장이 좁아서 여당의 중진의원들만이 앉아 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서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헌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어서 국민투표법안이 가결되었다. 회의는 그로써 끝났다. 의원들이 특별회의실을 빠져 나오는 순간 카메라기자 몇 명이 들이 닥쳤고, 줌 있으니 야당의원들이 달려왔다. 나는 과장의 배려로 며칠 쉬고 나왔다. 그동안 야당의 김은하부총무가 담당 속기사를 찾았다는 얘기가 있었다. "없다"고 했더니 그대로 넘어 갔다는 것이다.

8.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기록과 보존

제헌 이후 8대국회까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활동은 속기사가 수행하여 기록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발간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소관위원회에 인계하여 보관하였다.

소관위원회는 감사 및 조사의 기록을 받아 보고서 작성에 참고한 다음 보관하였는데 각 위원회별 문서보존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원고가 대부분 유실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이전하고 나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원고를 수집하여 속기과에서 지금까지 보존해 왔다.

현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기록보존상황은 다음과 같다.

국정감사속기록보존분

대 별	연 도	기록보존위원회수
제 3 대	1956년	1개 위원회분
	1957년	"
제 4 대	1958년	1개 위원회분
	1959년	"
제 5 대	1960년	1개 위원회분
제 6 대	1964년	4개 위원회분
	1965년	6개 "
	1966년	8개 "
제 7 대	1967년	9개 위원회분
	1968년	8개 "
	1969년	7개 "
	1970년	8개 "
제 8 대	1971년	9개 위원회분
	1972년	6개 "
계		71개 위원회분
총 매 수		17만 4,870매

국정조사속기록보존분

제 2 대	거창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 2개
제 3 대	장부통령피습저격범증언에관한특별위원회 등 9개
제 4 대	범칙물자처분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 4개
제 5 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등 12개
총27개 위원회 총매수 1만 4,652매	

한편 원고로 보관중인 속기록 외에 영구보존회의록에 수록된 14개 위원회특별국정감사속기록(총 인쇄면수 1862면)과 20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총 인쇄면수 7,343면)을 보면 특별국정감사속기록으로서는 제4대국회의 2개 위원회 소관 특별국정감사속기록, 제5대국회의 6개 위원회 소관 특별국정감사속기록, 제7대국회의 6개 위원회 소관 특별국정감사속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으로서는 제4대국회의 중부극장 허가 경위에 대한 조사위원회속기록 등 5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5대국회의 창녕유동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등 2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6대국회의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 7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7대국회의 한국알미늄회사의 자금부정유출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등 5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8대국회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회의 속기록이 보존속기록 및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다.

제7대 국회 특별국정감사 실시예

회 기	소 관
제 62회 (정기회) 69. 9. 1 ~ 12.29	법제사법·내무·재정경제 상공위원회 소관
제 66회 (임시회) 68. 6. 5 ~ 7. 4	내무·재정경제·국방·건설위원회 소관
제 69회 (정기회) 68. 9. 2 ~ 12.30	문교행정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제 73회 (임시회) 70. 5. 11 ~ 6. 9	내무·재정경제·국방·농림·상공·교통체신·건설위원회 소관

제2절 1970년대의 속기계 활동

1. 《速記界》의 창간



▶1970년 4월에 대한속기협회 창간한 속기계 창간호

1969년 4월 14일 大韓速記協會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은 지 1년만인 1970년 4월 30일 《速記界》를 창간하였다.

속기관련 전문지로서 《速記界》가 처음은 아니다.

그 전신으로서 과거에 잠시 발간되었던 《速記文化》가 있다.

1955년(단기4288년으로 표기) 《速記文化》는 大韓速記學術協會 刊으로 창간되었는데, 가로16cm 세로21cm 크기의 갱지에 활판인쇄로 46쪽 분량의 책자로 되어 있다. 이 책자의 표지는 '速記文化'라는 붓글씨 제호에 '創刊號, 大韓速記學術協會 刊'이라고 그림없이 인쇄체로만 되어있고, 내지 첫번째

면에는 '祝創刊, 民議院, 副議長 趙瓊奎'라는 붓글씨 휘호를, 그리고 다음 면에 목차, 그다음 면에 국회 민의원 사무처의 崔珽宇사무총장, 고려속기기술학원 金星漢원장,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의 崔珽宇원장 외 직원일동, 선광.한흥.남양인쇄소 명의의 축창간 광고를 실었다. 그 다음에 張基泰회장이 '協會發展의 要諦'라는 주제의 권두언을 썼고, 金天漢·金鎮基·金震熙·金宗弘·韓鍾瑛·李完福·柳虎龍·吳潤玉·金勳基·具聖伯·全範成·鄭源道 등 필자의 글을 실었다.

《속기문화》창간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速記文化》창간호 주요 목차

- 協會發展의 要諦 (張基泰)
- 速記文化의 創刊을 祝賀함 (葛弘基)
- 새로운 決意 (金天漢)
- 速記協會 創立과 우리의 使命 (金鎮基)
- 速記士의 處遇改善을 중심하여 (金震熙)
- 速記士의 隘路와 悲哀 (金宗弘)

- 速記錄 편집자의 辯 (韓鍾瑛)
- GENEVE紀行 (柳虎龍)
- 올챙이

速記士時代 (吳潤玉)

-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篇
-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案内
- 적당히의 因果 (金勳基)
- 忙人勿讀 (具聖伯)
- 명량한 速記課 (全範成)
- 韓國速記10年史 (鄭源道)

이듬해인 1956년에 발간된 제2호는 가로17cm 세로24cm 크기에 84쪽의 분량으로 크거나 지면이 창간호보다 크게 늘어났다. 표지와 지면 군데군데에는 삽화도 그려져 있다. 내용은 이사장의 권두사, 민의원 부의장 조경규와 민의원사무총장 최정우의 제언, 張惠根·黃圭鎭의 논단, 金震熙·鄭源道·柳虎龍의 연재물, 韓奎勳의 '협회에 대한 일고'와 고려속기기술학원 탐방기와 梁雲錫의 '속기입문소감', 金星漢의 '하기강좌를 마치고', 全範成의 '오토바이 타는 속기사'라는 풍트, 그리고 기타 朴淑卿·金惠姬·尹壽鉉의 수필과 시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싣고 있다.

제2호 발간 이후 중단되었다가 10여년이 지난 1967년에 다시 《速記文化》라는 이름의 책자가 창간호로 발간되었는데, 이는 앞서의 《속기문화》가 '大韓速記學術協會', 발간으로 된 데 반해 이번 것은 '大韓速記協會'의 이름으로 발간된 회지이기 때문에 題號를 창간호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속기문화》 제3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인쇄술의 발달로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지질에다 다양한 내용 및 편집체제를 갖춰 근래의 잡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즉, 크기는 4.6배판에 78쪽의 분량이며, 표지는 고급지로 2색칼라(빨강, 하늘색)에 원과 삼각형과 선을 사용한 도안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표지 안쪽에는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이하 각부 장관이 '축창간'으로 창간을 축하하였으며, 첫면에는 한솔 이효상 국회의장의 '記錄報國'이라는 붓글씨 휘호와 다음 면에는 다시 국무총리 정일권의 '千聰而不如鈍筆'이라는 휘호를 실었다. 기타 국회사무총장, 각 정당의 대표, 시중은행장들의 '축창간' 광고가 여러 쪽에 걸쳐 실렸다. 내용도 특집, 논설, 제언, 좌담회, 논총, 르포, 탐방기, 법식 소개 등 다양한 편집으로 꾸며져 있다. 이중 공병우박사의 '速記와 한글타자기'는 현대 기계속기의 원리와의 일치하는 아주 귀중한 글이다.

이 《速記文化》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더라면 우리 속기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터인데, 아쉽게도 이 《속기문화》는 창간호 한번으로 그치고 말았다.

1967년 창간호 이래 중단되었던 《속기문화》의 면모를 일신하여 1970년 4월 30일자로 창간

된 《速記界》는 속기학술의 연구발표, 회원 상호간의 자질향상과 회원의 동향 및 일반에의 PR을 발간목적으로 하여 국판 40면, 1회에 500부를 발행하였다.

題字는 당시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던 서예가 海汀 朴泰俊선생이 썼으며, 표지 그림은 金鍾壽 회원이 맡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자 협회 회장이었던 崔致煥회장은 ‘권두사’를 통해 記錄報國하는 속기사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었다.

다음은 최소한 회장의 권두사 내용을 전재한 글이다.

“언어가 있고 토론이 있고 회의가 있고 정치가 있는 곳에 속기사의 속기활동은 필수요건이 될 현대문명이다. 인류문명이 우주공간을 정복하고 있는 이 시기에 종래의 Long Hand로선 잡다한 인간생활에 뒤지고 만다. 1초에 6자를 적어내는 Short Hand가 가지는 그 가치는 모든 사무처리의 기민성.신속성.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오늘날의 인류생활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엉거주춤은 자멸을 뜻한다. 문화사에 비친 속기술의 공적은 이런 점에서도 실로 컸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현대인은 그들의 현대사회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현대생활의 템포에서 소외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꾸만 원심작용으로 소외권에서 자학을 하게 된다. 소외권에서는 대개 비굴해지지 않으면 소외왕국을 만들어 아웃사이드임을 자존하고 그를 소외시킨 주체를 빈축하게 되는 슬픈 현상이 나타난다. 아웃사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2백여 우리 협회회원은 그동안 국회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오늘날과 같은 각 분야의 핵심부에 굳건한 자리를 굳히게 되었음을 자랑하고 또 격려한다. 훌륭한 일꾼으로서 조국근대화 작업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흐뭇하기 이를 데 없다.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울이는 70년대- 우리 모두 역사적 사명감을 마음 속에 되새겨 기록보국의 자세를 재확립해야겠다.” 한편 申範植 문화공보부장관이 ‘속기계 창간에 즈음하여’를, 河在鳩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과학하는 자세’라는 격려사를 써주었고, 李東一 이사장이 ‘협회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각오’라는 글도 실었다.

창간호에는 발행인과 편집인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 편집은 당시 선전부장이었던 梁源龍회원이 수고를 하였다. 특히 1970년 3월 16일 速記界의 육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4분기 국고보조금조로 24만원을 수령하게 된 협회는 사뭇의욕에 찬 분위기였다.

이렇게 하여 창간된《速記界》는 향후 제11호(1972.9.30)까지는 계간으로 발간하다가 제12호(1973.4.30)부터 1970년대말까지는 6개월마다 한번씩 발간하였다.

2. 각급학교 및 사회단체에 대한 속기강좌와 속기무료강습

1) 속기강좌

1970년대만 해도 아직은 속기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다. 협회에서는 속기를 일반에게 홍보하고 보급한다는 목적하에 협회사업으로 각급학교 및 사회단체에 대한 속기강습을 실시하였다.

희망 학교의 요청에 따라 1차적으로 상명여자고등학교에서 고3학년 직업반 2개반 120명을 대상으로 1970년 4월 21일부터 주4시간씩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田興福회원이 逸波式을, 경신고등학교에서 고2학년을 대상으로 5월부터 주4시간씩 韓鍾烈회원이 高麗式을 강의하였으며,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는 孫弘基회원이 주2시간씩 1년간 일과식을 강의하였다.

다음해인 1971년에는 학교순회강습 프로그램으로 덕성여자대학에서 영문과 상경과 3.4학년 104명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42시간에 걸쳐 영어속기 강습으로 盧英民 외국어부장이 Gregg식을, 중등고등학교에서 1학년 70명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1개월간 42시간에 걸쳐 楊澈在회원이 일과식을 강의하였다.

이밖에도 1975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립부녀사업관에서 50명을 대상으로 金永春회원이 일과식을, 1975년 3월부터 12월까지 창덕여고에서 70명을 대상으로 金福童회원이 議會式을 강의하였다.

또한 국회출입 중앙기자들에 대한 강습회를 열어 1970년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석으로 구분하여 각자의 희망시간에 수강토록 하였고, 동아일보사의 수습기자들에 대한 강습회를 같은해 12월 14일부터 다음해인 1971년 2월 13일까지 열었다. 또 1972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경향신문사 기자 10명에 대한 실무강습도 실시하였다.

2) 속기무료강습

협회는 연례사업으로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한 단기무료 속기강습에도 힘을 쏟았다. 이 무료강습은 1960년대말부터 시작한 이래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1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3주간 실시되었던 제6회 무료동계속기단기강습회의 경우 수강신청인원 745명을 동방식 교육반(동방반)과 일과식교육반(일과반)등 2개 반으로 편성, 일과반은 건국대학교에서, 그리고 동방반은 협회지정학원인 동방속기학원에서 실시하였다.

협회의 본래계획은 단일법식만으로 강습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신청인원이 초과하여 2개 반으로 편성 실시한 것이다.

이후에도 1970년대말까지 매년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한 속기강습으로 속기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실시하여 속기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힘을 쏟았다.

3. 문화공보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1969년 4월 14일 대한속기협회는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은 지 1년만에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8만원을 지원받는 행운을 잡았다. 그러나 문화공보부의 자체 조정으로 11만원이 삭감된 97만원을 매분기마다 받았고, 1972년도에는 국가의 일류적인 민간보조금 20% 삭감원칙에 의해서 19만4,000원이 적은 77만 8,000원을 받았다가 1973년도부터는 아예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말기에 이르렀다.

4. 속기자격검정시험과 속기경기대회



▶ 제4회 전국속기경진대회 장면(1993.6.12)

1) 속기자격검정시험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速記士는 있어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인속기사는 없었다. 이에 速記文化의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한 大韓速記協會는 1970년 5월 17일 협회 주관 조선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 후원하에 제1회 속기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협회는 연례적으로 속기사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여 속기인의 자질향

상과 우수한 속기인을 발탁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속기경기대회

속기경기대회는 과거 대한속기협회의 전신인 대한속기학술협회 주관으로 1956년 7월 21일과 처음으로 실시된 데 이어 다음해인 즉, 대한속기협회를 대한속기협회로 기관명을 개칭한지(1957.4.27) 3개월만인 1957년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보안법 파동(1958.12.24), 4·19학생의거(1960.4.19), 5·16군사쿠데타(1961.5.16)이후 정국 혼란과 함께 속기경기대회가 장기간 중지되었다가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1969.4.14)다음해 1970년 5월 17일 제1회 전국속기경기대회를 실시했고, 이어 1971년 8월 31일 조선일보사와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국회속기사양성소에서 제2회 전국속기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속기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였다.

경기종목은 연설체와 논설체등 2종이었으며 속도는 正級은 연설체 1분당 320자에 5분간, 논설체 1분당 300자에 5분간, 準級은 연설체 1분당 300자에 5분간, 논설체 1분당 280자에 5분간이며 변문시간은 공히 속기시간의 10배인 50분이었다.

제1회 전국속기경기 대회 결과 수상자는 正級 1등에 高太伸(일파식), 2등에 金基英(동방식),

3등에 高隆繁(일파식), 장려상에 金致元(일파식)이었고, 準級 1등에 崔조정(동방식), 2등에 崔원일(동방식), 3등에 송혜경(의회식), 장려상에 金경자(의회식)가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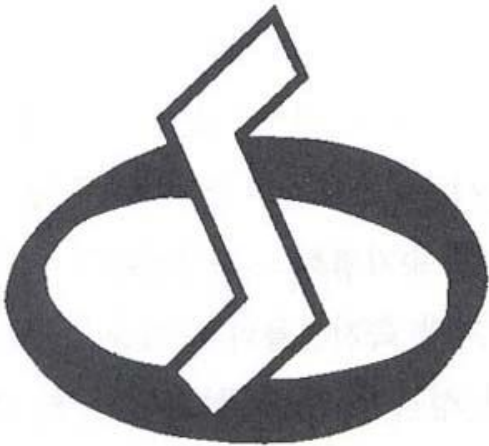
다음 1971년 8월 31일에 실시된 제2회 전국 속기경기대회의 조건은 제1회와 동일하고, 수상자는 正級 1등에 金仙玉(의회식), 2등에 高隆繁(일파식), 3등에 安喜榮(의회식)이었고, 準級 1등에 鄭盈澤(동방식), 2등에 李貞順(동방식), 3등에 金敬海(의회식)가 차지하였다.

특히 제2회 속기경기대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정급 1등은 3,100자 가운데 28자의 오자밖에 없어 정확도가 99.1%에 달하는 실력을 발휘했으며, 2등은 98.7%, 3등은 98%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또한 준급 입상자 1,2,3등 모두 정확도가 95% 이상의 성적을 내어 제1회 속기경기대회에 비해 정확도의 비율이 정급은 0.7%, 준급은 3% 이상 상승된 기록을 나타냄으로써 개인의 명예는 물론 속기술 향상에도 기여한 바가 컸었다.

제2회 경기대회 이후 1970년대에는 이 행사가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제3회 대회는 1981년에 개최되었다.

5. 협회마크의 제정



▶ 1973년 2월에 제정된 대한속기협회 마크

마크는 조직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때문에 마크를 보면 그 조직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마크를 대한속기협회 제정할 때는 1973년이었다.

도안자는 蔡康熙회원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 . 圓内の S자형은 우리나라, Shorthand, Speedwriting을 가리키며,
- . 圓은 360도로서 속기문자의 産室임과 동시에 地域사회, 세계, 우주, 무한대를 표시함과 동시에 하나로 뭉침을 의미하며,
- . 線은 모두 초록색으로 희망, 발전을 뜻하며,
- . 바탕은 흰색(타원색)으로 민족, 순결성을 의미한다.
- . 전체적인 의미는 地域사회(원)에 우리말 속기가 뿌리를 박고 머리를 들어 도약하려는 희망에 넘친 모양임을 상징한다.

6. 남북적십자회담과 속기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는 남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자주적 통일을 추구할 것에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달후인 1972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총재는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고통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재결합을 주선해 주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이 제의에 북한측이 동의함에 따라 그 해 9월20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당시 남북회담의 운영을 위해 새로 창설된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에 남북회담의 기록을 위해 국회사무처에 속기사의 과견을 요청해오에 따라 趙隅石,金秀旻,鄭應采회원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 수행원으로 참여하였다.

이어서 1972년 8월 30일 오전 10시 평양 대동강회관에서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열렸는 바 당시 9월 2일까지 4박5일간의 평양체류를 하는 동안 정응채회원이 수행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1972년 10월 12일에는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공동위원장회의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의 기록을 위해서 우리 측에서는 金仁寧,정응채회원이, 북측에서는 전금철 외 1명이 참석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기록은 녹음과 속기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남북조절위원회에서는 일체 녹음을 하지 않고 각기 속기만 하기로 하였다. 이는 회담에 참가한 대표에게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발언의 재량권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전해진 얘기로는 북한측에는 우리와 같이 부호에 의한 속기방식이 없고 주로 속필로 회의내용을 요지만 기록하는 듯했다고 한다.

1972년 10월 21일부터 1973년 6월 14일까지의 기간중 서울 迎賓館(현 신라호텔)과 평양 소재 모란봉초대소, 그리고 판문점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서 비공개로 치러진 남북조절위원회 3차의 위원장회의와 3차의 본회의, 동위원회 간사회에는 김인영,정응채회원이 파견되어 수행원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정응채회원은 남북조절위원회사무국으로 전직하여 근래에 이르기까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 수재물자지원을 위하여 재개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의 수행원으로 참여하여 남북기본합의서들을 비롯 여러 합의서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데 기여하였다.

7. 여성속기사의 증가

1970년대의 속기계에 있어 눈에 떨만한 변화는 여성속기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속기사의 영역은 거의 국회에 한정되다시피 한 데다 그나마도 남성의 전 유물이다시피 하였다.

예컨대 1969년도 국회사무처 속기직 채용시험 합격자가 하양배, 고용번, 현병고, 박대성, 김치원, 이영렬, 김창진 등 7명 전원이 남성이었던데 반해 1970년도에는 홍순관, 오준근, 양순희(여), 김명식(여), 이현희(여), 최성주, 정계영(여), 윤옥희(여) 등 8명중 5명이, 1971년도에는 안희영(여), 임명심(여), 김전옥(여), 차공순(여), 이세철, 전재곤, 한상구 등 7명중 4명이 여성으로 여성속기사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하여 《속기계》 제7호(1971년7월)에는 ……국회 속기과에서는 여성의 진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자 이러한 추세에 대비, 여성들의 신진대사에 원활을 기하고 직장의 꽃으로서 생기를 잃지 않게 하려는 궁여지책으로 금년부터 채용된 아가씨들에게 [결혼과 동시에 그 직을 사임한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고. 무엇인가 숨통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한데……”라는 촌평이 실리는가 하면 제11호(1972년9월)에는 손흥기회원의 ‘속기사에 대한 직업관-여성속기사의 현저한 진출을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중략) 원래 속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섬세한 감각을 요하는 점이라든지 비활동적이라든지 다소 여성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가 교사직과 더불어 가장 남녀의 차별이 없고 보수면에서도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는 정기국회때 이외에는 비교적 충분한 여가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의 직업으로서 손꼽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직업의 적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근년에 와서 국회 속기사의 채용시험 결과를 보면 여성속기사가 과반수를 넘는 실정으로 최근 3년간의 남녀별 채용관계와 전체 속기사중 여성속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상당하거나 이 상태대로 나간다면 수년내에 여성속기사가 반수를 차지하게 될 날이 머지 않은 듯하다”라고 전망한 데 이어 “여성속기사의 진출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속기사라는 직업전선에서 남성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속기사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각 분야에 있어서 뚜렷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경향에서 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속기사의 절대적 공급부족을 메꾸기 위해 1968년부터 국비양성기관을 국회 안에 설치한 이후로 줄곧 이에 관여해온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속기사에 대한 가치관의 변천에 기인한다고 판단이 된다. 즉 앞에서도 언급을 했거니와 많은 경쟁자를 물리쳐 선택을 받았다는 엘리트의식이라든가 산 역사의 기록자라는 자부심도 잠깐이고 승진이나 타직종에의 진출 등의 탈출구 없이 정체되어 있는 선배들을 볼 때 의욕을 잃게 되고, 그것이 속기를 배우는 또 배우려는 후진들에게 은연중 영향을 끼치게 되어 그 반작용으로 여성의 진출이 현저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라고 진단한 후 마지막으로 "여성속기사의 진출을 막을 생각은 없으나 이런 현상이 남성들의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어떤 비하현상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라고 끝을 맺었다.

이 글에서 보다시피 손흥기회원은 1970년대초에 이미 오늘날의 속기계의 모습을 예견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와 여성의 적성에 더욱 알맞은 직무인 점, 고도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남성들의 일자리는 점점 넓어졌고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추세여서 남성들의 지원률이 저조해지는 등 여러 요인들로 말미암아 여성의 사회진출은 세계적인 큰 흐름이었음에도 속기과에서는 인위적으로 여성의 진출을 막기 위하여 결혼후 퇴직한다는 '각서'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고조되어가는 여권신장운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서서히 잠들고 있던 여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속기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76년도까지는 여자는 살림을 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던 전통적 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또한 결혼후 사직을 은근히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개인적으로는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었던 사람조차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7년도에 접어들자 속기과에서 결혼 적령기에 달한 여직원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사회의 분위기 또한 여권신장운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가고, 때마침 은행 여행원의 퇴직각서 철폐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있을 때였다. 이무렵 결혼을 하게 된 여직원은 차공순, 김은숙, 김선옥, 안희영 회원으로, 이들은 1년만 봐줄테니 그만 두라는 압력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 압력이 속기과 내부에서 비롯되었지만 나중에는 사무처 고위층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1978년은 채용 각서대로 자발적으로 시직해달라는 설득과 압력과 회유 등으로 기혼여직원들에게는 참으로 고단한 한해였다. 그러나 1978년만 하더라도 속기과에는 여직원이 이미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때라 이들은 여성후배들의 무언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투쟁을 해나갔다.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도 하고, 총장.차장실을 찾아가 호소도 하고, 당시 유정희 국회의원이던 여덟분의 여성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호소하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그러던 중 10·26 사건이 일어나고 국보위가 들어서면서 사무처 간부들의 해직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기혼여직원 사직문제는 호지부지 일단락되었다. 그 후로 결혼하는 여직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각서제도는 일단 폐지되었지만 승진상의 불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8. 국회속기사의 법원 진출

1976년은 速記界의 오랜 숙원이었던 法廷에 있어서 재판속기의 영역을 넓힌 해였다. 법원 행정처에서는 주사급 속기사의 T/O를 37명으로 정하고 1차로 韓國速記士의 본산인 국회사무처에 인원을 요청해 음에 따라 1976년9월 20일자로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급 속기사 10명이 법원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법원에 있어서의 재판속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과 입법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에까지 속기사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각급 법원으로 전직된 10명의 속기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梁源龍, 金鍾壽

서울민사지방법원: 河大煥, 崔龍夏, 楊澈在, 鄭明吉

서울형사지방법원: 金謙善, 林來炫, 徐吉泉, 高太仲

이들의 전직 이후 76년 9월 28일 제96회 국회 제2차법제사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법정속기에 관해 金命潤委員과 李宅敦委員의 질의와 법원행정처의 답변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먼저 법원행정처기획담당관이 브리핑 과정에서 공판조서의 정확성 제고와 재판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속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1차년도인 1976년에는 우선 재경법원에 속기사 10명을 배치하고, 재판부당 1인의 속기사를 둔다면 385인의 속기사가 필요한 바, 이를 1977년부터 198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충원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김명윤위원과 남기정 기획담당관은 이렇게 서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

"○金命潤위원 現在 速記士가 10명이 배치된 것은 아는데 77년에는 몇 명이 됩니까?

○法院行政處企劃擔當官 南基正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命潤위원 37명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法院行政處企劃擔當官 南基正 우선 年次計劃으로서 81년까지 충원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질의과정에서 李宅敦위원은

"速記制度에 관한 것인데 速記制度가 현재 10명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앞으로 5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 300여명의 速記士를 양성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 5個年計劃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速記制度는 法院으로서의 速記化는 本委員이 매년 주장을 하고 바라고 한 것입니다마는 과히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손쉽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速記制度가 주는 신뢰, 그것은 속기제도를 법원에 도입하는 것 이상 몇 배의 실효가 있는 것이니까 되도록 이것을 단축할 수는 없느냐, 단축하는 데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金炳華 法院行政處長은 답변을 통해 "李宅敦위원께서 언급하신 速記制度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速記制度의 채용은 李委員께서 本委員會 석상에서 누차 강조한 것이,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좀더 短時日 안에 이것을 실천할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 산면이나 인원면에서 그렇게 부족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策定人員으로서는 381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국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속기사 열 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맞이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法院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 분들이 우선은 시험단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法院이 효율적이고도 필요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빨리 채용을 해서 速記制度를 법원에 도입함으로 인해서 裁判事務의 公正 등을 기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단시일내에 삼백수십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보충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얘기고, 國會와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은 우선 사람들이 현단계에 있어서 저희들 법원에서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결과를 봐서 단축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충원해 나가기로 한 법원의 이같은 계획은 그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76년 10명의 속기사들이 법원에 진출한 후 더 이상의 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그때 법원의 당초 계획대로 1977년에 30여명, 또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속기사의 채용과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속기인들의 입지가 한층 넓어졌을 뿐 아니라 속기계 또한 더욱 폭넓게 발전했을 것이다.

9. 속기전시회



▶ 속기문자로 그린 김종수의 박정희 대통령 초상화(왼쪽)과 채강희의 이효상 국회의장 초상화

국회에 재직중인 속기사를 중심으로 속기사들의 실무적인 면과 학술적인 면 그리고 국내외 문헌과 자료 등을 집대성하여 이를 국회의원과 정부요인 및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속기에 대한 인식제고와 속기의 대중화를 위하여 제헌국회 이후 수차례 걸쳐 속기전시회가 있었다.

제1회 전시회가 1950년 2월 중앙청에서, 그리고 제2회 전시회가 1958년 10월 태평로 국회의사당 의원휴게실에서 각각 개최된 바 있고, 1960년대에는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다가 1970년대에 접어들어 제3회와 제4회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1) 제3회 속기전시회

제3회 전시회는 광복25주년기념으로 협회 주최 문화공보부와 조선일보사의 후원으로 1970년 9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회의사당내 휴게실에서 개최한 데 이어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국립공보관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특히 이 전시회에서는 김종수의 박정희대통령 초상화와 채강희의 이효상의장의 초상화가 속기문자로 그려져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 밖에 30여점의 작품도 관심있는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2) 제4회 속기전시회

제4회 전시회는 국회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1978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국회의사당 3층 로비에서 열렸다.

제14회 속기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은 "속기란 쓰기 쉽고 읽기 쉬우며 외우기 쉬운 점.선.원.위치.방향.길이 등으로 구성된 문자부호로서 일반문자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의 속도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다. 속기는 필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말이나 생각을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류사회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속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속기란?' 이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전시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속기란? · 속기약사 · 속기원리도 · 속기의 기본문자 · 약자와 약법에 · 법식별 속기 문자 · 일반문자와 속기문자 · 국어속기 · 영어속기 · 일어속기 · 자.모음 받침의 사용 빈도 · 문자별 사용빈도 · 어휘의 사용빈도 · 속기의 활용 · 우리의 소원 · 속기록의 가치 · 국회본회의록 작성과정 · 국회회의록 배부처 · 회의록 체제변천 · 회의록 관계규정 · 회의록 자구정정절차, 참고문서 발언보충서 게재 · 절차, 회의록 복제절차, 녹음 복사절차 · 국회의원 성명과 속기문자 · 9대 국회의원 발언속도 분포도 · 역대국회 고속발언 의원 · 의정 30년의 회의록상 주요용어 · 본회의 회의일수 및 속기시간 위원회 회의일수 및 속기시간 · 총 회의일수 및 속기시간 · 역대국회 속기시간 도표 · 회의록 발간실적 · 속기사가 되는 과정 · 속기교육 과정 · 속기사양성기관의 현황과 실적 · 이상적인 속기석 · 수필속기와 기계속기 · 속기하기 어려운 경우 · 속기의 방해요소들 · 속기사의 과외활동 · 국회속기사 재직연수별 분포도, 국회속기사 연령별 분포도 · 국회속기사 법식별 분포도 · 속기사의 신조 · 각국의회 속기현황 · 역대의사당 사진 · 자수액자로 만든 헌법전문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사업실적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화보 · 에피소드 · 만화(신동우) 및 서예작품 · 속기문자에 의한 정일권국회의장 초상화 및 국회의사당 전경(채강희) · 회의록 및 속기관계서적의 현물전시

이상의 작품들이 전시되기까지는 많은 속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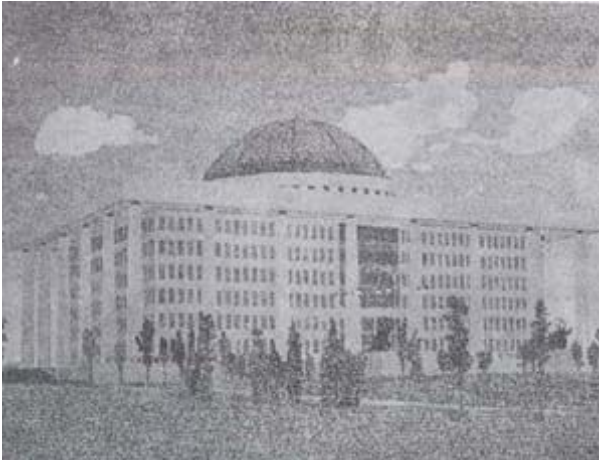
제4회 속기전시회는 길기상사무총장을 지도위원으로 하여 조종현 의사국장이 준비위원장을, 안인영 속기과장과 이동일 속기담당관이 준비위원을 맡았다.

기획담당에는 신세화·김인영·김윤수·송기철·최황수·황인하·강종원, 그리고 제작담당에는 김

기영·김경만·김선필·박경식·채강희·하양배·현병고·유성수 등 열아홉명이 기획에서 모든 준비 작업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시회의 준비기간은 기획에서 부터 전시회 개최까지 16개월이 소요되었다.

처음 사무처의 국회개원 3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77년 6월에 속기전시회 계획 구상을 시작으로 78년 1월말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부터 5월말까지 전시품 원고작성과 검토 및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 국회개원 30주년 기념 속기전시회에 속기문자로 그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채강희 작품)

그리고 78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시품 제작에 들어가 3개월반만인 9월 15일에 제작을 완료하고 총.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전시를 가졌으며, 몇 작품에 대한 보완작업을 마친 후 9월 23일 전시품의 배치 및 전시를 완료하였다.

전시회의 준비작업과정에서 요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과 함께 각

자 전문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기량을 발휘하였다.

판넬을 직접 만들고, 또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물표구방법을 이용하여 비싼 표구대를 절감했는가 하면 외주를 주었을 법한 많은 작업에 직원들이 동원되어 힘을 합침으로써 예산을 몇분의 일로 절감시켰다.

이 전시회에서 관람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눈길을 끈 것은 정일권국회의장의 초상화와 국회의사당 전경을 속기문자로 그린 채강희의 작품으로서 전시회의 백미라 할 수 있었다.

이 국회개원30주년기념 속기전시회는 글, 그림, 만화, 자료 등이 다채롭게 전시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속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속기가 그저 들리는 대로 빠르게 쓰는 것 이상의 고난도의 작업임을 이해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10. 속기과의 세대교체

70년대는 그 어느때보다 변화가 많은 시대였던 만큼 속기계에도 변화가 많았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10월유신과 더불어 등장한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에 송혜경회원이 속기사로 채용되었고,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국회사무처에 파견 요청이오면 속기과에서 출장.파견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평화통일자문회의로 바뀐 뒤에도 같은 형태의 속기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국회사무처 속기과에는 1970년대초 젊은 속기사들이 채용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군에 입대하는 인력의 업무를 대신하여 담당케 하는 기한부공무원제도가 있었다. 1970년도부터 1973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동안 6~7명의 기한부공무원이 근무하다가 정식 채용시험에 합격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회사무처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32직급의 법제관직(현 5급)을 신설하여 사무처내의 사무관을 대상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속기과의 사무관이던 金永善.崔錫模.全海成.徐秉運회원이 합격하여 각각 법제사법.내무.보건사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제관으로 전보를 하였다. 이로써 속기과에는 다소나마 인사적체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 후속으로 속기사무관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金允洙.宋基喆.崔滉洙.金基英회원이 각각 승진하였다.

제3절 국회속기사양성소 설립과 무료속기강습(홍기표)

1. 국회속기사양성소 설립

1) 설립배경

민정이양후 6대국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5.16군사쿠데타로 폐교된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는 부활되지 못했다. 더구나 당시 서울에 1개소뿐이던 사설 학원에서의 속기사 배출도 부진한 상태여서 국회속기사의 신규충원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직자마저 늘게 되어 국회속기사의 자체양성의 필요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당시 국회의사무처 권효섭 의사국장의 지도 아래 속기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연구·교수하며 장차 국회가 필요로 하는 속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하는 국회속기사양성소(이하 양성소)를 부활 설치키로 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8년 2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국회속기사양성소설치규정이 통과되었고, 국회의사무처 내에 다시금 국비로 운영하는 속기사 양성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2) 기구 및 운영

설립 당시 양성소의 기구는 소장 1인, 부소장 1인, 교무주임 1인, 속기학강사 6인, 교양과목강사 3인(국어, 경제대의, 법제대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국회속기사 채용시험 과목의 변동에 따라 국사·영어·수학 과목이 추가되어 한때는 강사진이 12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양성소의 임원 및 강사는 1968년 2월 설립 당시부터 1985년 8월 12일까지는 국회의사무총장이 국회 사무처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였으나 1985년 8월 13일부터 1994년도에 이르기까지는 소장과 부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기록편찬국장과 속기과장이 각각 겸무하고, 교무주임은 국회의사무총장이 속기과 사무관 중에서 위촉하였다.

수업연한은 1년이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만 20세 이하의 남녀로서 소정의 입학시험(국어·일반상식 등 교양과목과 논술)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1986년 이후 연령제한은 25세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업시간 또한 설립 이후 1985년까지는 17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교양과목 1시간, 속기학·술 2시간) 실시하였으나, 1986년도부터는 09시부터 13시까지로 변경하였다.

1994학년도부터는 속기강사 전담제가 실시되어 현직 속기사 2인(홍기표·박순필)이 속기학 강사로 위촉되었다. 전담제 실시에 따라 수업시간은 오전 2시간(09:30~11:30), 오후 2시간(13:30~15:30)으로 해서 1일 4시간으로 조정되었다.

3) 교육방식의 전환

국회속기사양성소는 설립 이후 27년간 국회의사무처 속기과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1994년에 국회의정연수원이 출범하면서 국회속기사양성소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1995학년도부터 국회의정연수원 연수과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소장은 연수부장, 부소장은 연수과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교무주임과 강사는 연수원장이 위촉하게 되었다. 국회사무처는 기존의 속기학 강사 2인을 파견하여 속기학.술을 강의하게 하였으며, 1996학년도에는 박순필에 이어 고석광을 속기학 강사로 파견하였다.

양성소의 연수원으로서의 이관은 양성소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입학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대체 되었으며, 교양과목은 전부 폐지되는 대신 주 1회의 전산교육과 年 2~3회의 특강(국어·영어·행정학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7학년도에는 속기학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기존의 수필속기에서 전산속기로 교육방식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연수부에서는 전산속기 채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토론과 국회사무처 속기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그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여러 전산속기 방식중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손속기워드(경영소프트 개발)를 정식 교육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속기과에서는 486급 컴퓨터 20대를 지원하였으며, 연수과에서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20set와 교육용 탁자 10족(2인용)을 구입하여 기계속기 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속기학 강사도 홍기표·손숙자 2인을 위촉하여 국회회의록 작성에 적합한 속기학 이론을 연구.교수할 수 있게 하였다. 빠른손 속기워드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양과목으로 실시해오던 전산교육은 자동 폐지되었다.

4) 국회속기사양성소동문회

국회속기사양성소 수료생들은 선후배간에 모교발전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문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1974년 12월 14일 당시 태평로에 소재해 있던 국회 제2별관 국회속기사양성소에서 1 ~ 6기 수료생 45명이 모여 국회속기사동문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회장에는 김치원(1기), 부회장에는 조영창(3기).이현희(2기)를 선임하였다. 이후 동문회에서는 매년 동양성소 수료식에 참석하여 수료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비정기적이지만 꾸준히 야유회를 개최하여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속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후배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이 있을 경우에도 후배 응시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면서 선배로서 후배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 김치원회장에 이어 2대 노희남(2기), 3대 하양배(3기), 4대 박순필(3기), 5대 김상기(4기), 6대 이태호(4기), 7대 김경중(3기), 8대 김재학(6기), 9대 박정호(3기)에 이르고 있다.

5) 규정 및 내규의 변천

양성소를 운영하기 위한 諸규정과 내규는, 1968년 2월 3일 설립시에는 국회속기사양성소설치규정, 국회속기사양성소학칙내규(1968. 2. 4), 국회속기사양성소임원수당지급내규(1968. 2. 14),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내규(1968. 5. 20) 등이 있었다.

1985년 8월 13일 국회속기사양성소규정과 국회속기사양성소학칙으로 통.폐합함으로써 全文改正되었고, 국회속기사양성소규정은 다시 2차의 개정(1985. 1. 9, 1994. 10. 20)을 거쳐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속기사양성소학칙은 1985년 1월 9일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운영시에는 졸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국회속기사로 무시험 임용되던 특전도 1968년 12월 16일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양성소 수료자도 일반 응시자와 같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국회속기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설립 이후 1997학년도까지의 수료생 배출 및 국회속기직 임용 상황과 합격자 명단은 <표 1, 2, 3>과 같다.

[표-1] 수료생 및 국회속기직 공무원 임용현황

기 수	연 도	응시인원			입학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	국회임 용인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68	429	251	680	46	14	60	18	10	28	46	9
2	69	385	263	648	63	37	100	17	13	30	30	9
3	70	271	145	416	67	33	100	17	16	33	33	13
4	71	408	220	628	70	30	100	17	12	29	29	7
5	72	501	337	838	72	28	100	25	16	41	41	3
6	73	627	430	1,057	68	32	100	14	20	34	34	8
7	74	478	368	846	69	31	100	18	18	36	36	5
8	75	512	402	914	40	20	60	18	17	35	58	10
9	76	560	416	976	32	18	50	8	14	22	44	5
10	77	204	180	384	41	19	60	12	12	24	40	5
11	78	252	287	539	35	25	60	13	12	25	41	3
12	79	48	97	145	25	35	60	2	25	27	45	1
13	80	133	181	314	30	30	60	8	17	25	41	
14	81	104	149	253	20	40	60	1	21	22	36	1
15	82	59	112	171	24	59	83	11	29	40	48	3
16	83	59	261	320	10	31	41	2	16	18	43	1
17	84	35	140	175	7	36	43	1	19	20	46	3
18	85	68	127	195	20	25	45	5	12	17	37	1
19	86	86	145	231	20	23	43	4	13	17	39	
20	87	71	126	197	15	37	52	4	21	25	48	7
21	88	48	112	160	7	36	43	6	21	27	62	3
22	89	28	72	100	14	29	43	8	22	30	69	
23	90	5	23	28	5	23	28	2	13	15	53	
24	91	19	58	77	13	30	43	6	24	30	69	1
25	92	26	147	173	8	49	57	4	20	24	42	1
26	93	22	130	152	4	39	43	5	16	21	48	
27	94	34	133	167	5	33	38		9	9	23	
28	95	9	40	49	6	29	35	3	13	16	45	
29	96	4	19	23	3	14	17	2	6	8	47	
30	97	7	19	26	4	16	20	교육중				

※ ① 68년부터 96년까지 수료율의 평균은 43.8%임

② 97년 현재까지 국회속기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총 99명임.(수료생 대비 13%)

[표-2] 양성소설립 이후 국회속기사 채용시험 현황

연도	1차시험	2차시험	속도(연)(논)		필기과목	응시자격	채용 공고 인원	합격 인원
69	5.	5.	310×5	270×5	국어 국사 경제대의 법제대의 일반상식		7	7
70	4. 24(실)	4. 25(필)	"	"	"		8	8
71	4. 15		320×5	280×5	국어 국사 경제대의 법제대의		7	7
72	4. 10(실)	4. 11(필)	330×5	"	"		7	7
73	5. 25(실)	5. 26(필)	"	290×5	"		10	10
74	5. 11(실)		"	"	"		6	6
75	5. 12(실)	5. 13(필)	"	"	"(영어 추가)		6	6
76	1회 5. 16(실)	5. 16(필)	"	"	"		5	4
	2회 9. 17(실)	9. 17(필)	320×5	"	"		10	6
77	5. 13(필)	5. 13(실)	"	280×5	"	1분간 300자 이상 속 기 가능자	6	6
78	5. 14(필)	5. 14(실)	330×5	290×5	"	속기학원 수료자 또는 속기강습소 수습자	약간명	10
79	6. 10(필)	6. 11(실)	"	"	"(수학 추가)	"	?	7
81	9. 27(필)	9. 27(실)	320×5	"	"	"	?	3
82	6. 13(필)	6. 14(실)	"	"	"	"	○명	3
83	5. 22(필)	5. 26(실)	"	"	"	"	6	7
85	6. 12(실)	6. 16(필)	"	"	"	"	○명	4
86	3. 4(실)	3. 30(필)	"	"	"	속기학원 수료자 또는 속기강습소 수습자로 서 수필속기 능력자	남2 여2	4
88	1회 3. 21(실)	3. 27(필)	"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국민윤리	"	○명	6
	2회 8. 28(실)	9. 11(필)	"	"	"	"	○명	15
90	3. 4(실)	3. 23(필)	"	"	국어 I II, 영어, 국사, 사회 I II, 국민윤리, 전자계산 일반	속기학원 수료자 또는 속기강습소 수습자로 서 수필속기 능력자	12	12
95	7. 23(실)	8. 13(필)	"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국민윤리	한글속기3급이상 자격 증을 소지하여야 함	수필○ 기계○	수필4 기계4
97	4. 20(필)	5. 2(실)	"	"	"	"	수필○ 기계○	수필3 기계2

[표-3] 양성소설립 이후 국회속기사 임용자 명단

년도	출신별	합격자
69	양성소(6)	고용번(1) 김치원(1) 박대성(1) 이영열(1) 하양배(1) 현병고(1)
	학원(1)	김창진(동)
70	양성소(8)	최성주(1) 윤옥희(1) 정계영(1) 오준근(2) 홍순관(2) 김명식(2) 양순희(2) 이현희(2)
71	양성소(6)	이세철(3) 한상구(3) 김선옥(3) 안희영(3) 임명심(3) 차공순(3)
	학원(1)	전재근(동)
72	양성소(7)	노희남(2) 박순필(3) 조영창(3) 장숙경(3) 이승철(4) 김은주(4) 최예숙(4)
73	양성소(10)	고석광(2) 김복동(2) 박정호(3) 김경해(3) 김채영(3) 김동수(4) 유승관(4) 김은숙(4) 이영애(4) 권영찬(5)
74	양성소(5)	김경중(3) 정대길(5) 이미해(5) 김학순(6) 손재옥(6)
	학원(1)	정명순(동)
75	양성소(5)	김종철(6) 조정구(6) 홍기표(6) 김란희(6) 류성수(7)
	학원(1)	이경식(동)
76	1차 양성소(4)	김주성(8) 윤희억(8) 박치명(7) 최길주(7)
	2차 양성소(6)	박기만(7) 이주성(7) 강수현(8) 김화자(8) 박미향(8) 박영수(8)
77	양성소(6)	김재학(6) 안순희(6) 김정덕(8) 오광웅(8) 이연희(8) 김혜석(8)
78	양성소(7)	박인혜(9) 윤상운(9) 이승희(9) 전난영(9) 조영기(9) 신건현(10) 이순영(10)
	학원(3)	나성수(동) 박병운(동) 양진숙(동)
79	양성소(6)	유희연(10) 정주현(10) 조신자(10) 이정구(11) 안기철(11) 허광현(11)
	학원(1)	고경효(동)
81	양성소(1)	정란(12)
	학원(2)	서일순(동) 이대숙(동)
82	양성소(1)	임희용(14)
	학원(2)	박정자(동) 정순화(동)

※()의 숫자는 양성소 기수, (동)=동방식, (고)=고려식, (의)=의회식, (기)=기계속기

2. 무료속기강습으로 속기인 저변 확대

1) 무료강습 - 협회의 연례사업

1966년 12월 10일 대한속기협회를 창립한 후, 협회 사업부에서는 협회의 첫 사업으로서 방학을 이용한 속기무료강습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일반 사회인들의 속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생 및 일반 대중에게 속기술을 보급시킴으로써 속기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회 차원의 목적사업의 하나였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의 위축된 속기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고자 하는 뜻도 있었다.

무료강습은 동계·하계 각기 3주간씩 年 2회 실시하였으며, 1967년 동계강습부터 시작하여 1990년 동계강습까지 24년간 45회에 걸쳐 실시한, 협회사업으로서는 가장 장기간에 걸친 큰 사업이었다.

처음 무료강습을 실시하면서 두 가지가 큰 관심사였다. 첫째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수강접수할 것인가, 또 하나는 3주간의 짧은 기간내에 과연 강습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3대 일간지(동아·조선·한국)에 단 한번, 그것도 2단 20행의 작은 광고를 냈을 뿐인데도 500여명의 수강 신청자가 몰렸던 것이다.

또한, 강습을 마친 후 수료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응답자가 84.8%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힘을 얻어 이후 속기무료강습은 협회의 연례사업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무료강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협회는 물론 강의를 담당한 강사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속기 초보자들로 하여금 속기에 흥미를 갖게 함과 동시에 3주간의 제한된 시간내에 기본문자를 완전소화케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약자·약부까지도 교수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전문직 교안을 3주간의 일정에 맞추어 수강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강의하였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이에 무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단기 강습용 교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1년 12월 30일 제4회 총회에서는 이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그 위원의 선임을 이사회에 일임하였다. 이사회에서는 김영춘·김선필·고태중·박광택·양원용·조우석·한상구회원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하였고(후에 김복동회원 추가), 이들의 노력에 의해 창안된 연구위원회법식은 14~16회의 무료강습에서 강의 법식으로 채택하여 강습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1회부터 6회까지는 국어속기반만 개설하였으나 7회 이후는 영어속기반을 개설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1~6회까지는 협회 단독으로 주관·실시하였으나, 7회는 문화공보부와 《조선일보》 후원으로, 8~11회는 《조선일보》 후원으로, 12~29회는 국회사무처와 《조선일보》의 후원으로, 30회부터 45회는 다시 《조선일보》 후원과 협회 주관하에 실시하였다.

1회 동계강습부터 무료강습을 마친 후에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 다음 번 무료강습에 이를 반영하여 왔다. 설문내용은, 매번 동일한 것이었으며, 응답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인 편이었다. 참고로 1971년 제 11회 하계강습을 마친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속기 무료강습은 수강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기타 협회에 대한 요망사항을 살펴보면 ①장기무료강습 ②적극적인 광고 ③속기사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록영화를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거둘 것 ④1개월 1회 무료강습 ⑤결강은 보충요망 ⑥TV 방송강좌 요망 같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협회로서 대단히 소망스럽고 연구.검토해 볼 만한 사업들이었으나 재정 등의 문제로 미처 시도해 보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속기의 대중보급과 저변확대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동.하계 무료강습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차츰 사회적으로 매력을 잃게 되고 협회의 재정에 큰 손실요인이 되어 1990년 45회 동계강습을 끝으로 중단해야만 했다.

<자료1> 무료강습 신문광고문안

第44回 國.英 速記 無料講習

접 수 : 7. 15 ~ 7. 17(각반 선착순)

강 습 : 7. 18 ~ 8. 5(3주간)

문 의 : 국회사무처 속기과(Tel 788-2472 ~ 6)

-접수 및 강의 장소-

종로 3가 765-4266 745-4288

영등포 679-7114~5

청량리 965-8222~3

서대문 392-5373 312-9489

교재대 : 국어 8,000원 영어 10,000원

主 催 :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後 援 : 朝鮮日報社

<자료2> 무료강습 수강신청시 배부한 안내문

第45回 速記講習案内(東邦式)

當 協會에서는 朝鮮日報社의 後援을 얻어 速記術의 大衆普及을 통하여 速記文化의 發展과 速記에 대한 一般社會의 認識을 새롭게 함은 물론 스피드時代의 筆記生活에 適應시키는 一人一技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아래와 같이 短期講習을 開催합니다.

1. 期 間 : 1990. 1. 15(月)~2. 3(土)(3週間)

2. 場 所 : 東邦速記學院(종로3가), 淸涼里東邦速記士養成所(청량리)

3. 教材代 : 國語 10,000원, 英語 12,000원(受講申請時 納入要)

종로			청량리			수원		
국어			국어			국어		
반	시 간	정원	반	시 간	정원	반	시 간	정원
가	08 : 30 - 09 : 30	60명	가	08 : 30 - 09 : 30	50명	가	11 : 00 - 12 : 00	40명
나	10 : 00 - 11 : 00	"	나	10 : 00 - 11 : 00	"	나	15 : 00 - 16 : 00	"
다	11 : 30 - 12 : 30	"	다	11 : 30 - 12 : 30	"	다	19 : 00 - 20 : 00	"
라	14 : 30 - 15 : 30	"	라	14 : 30 - 15 : 30	"			
마	17 : 15 - 18 : 15	"	마	16 : 00 - 17 : 00	"			
바	18 : 30 - 19 : 30	"	바	17 : 15 - 18 : 15	"			
사	19 : 45 - 20 : 45	"	사	18 : 30 - 19 : 30	"			
영 어			아	19 : 45 - 20 : 45	"			
반	시간	정원						
A	13 : 00 - 14 : 00	60명						
B	16 : 00 - 17 : 00	"						

※速記란 쓰기 쉽고 읽기 쉬우며 외우기 쉬운 點, 線, 圓, 位置, 文句, 길이 등으로 構成된 符號文字로서 一般文字로써는 記錄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 速度에 맞추어 빠짐없이 記錄하는 것이다.

[표-4] 속기무료강습연혁

회수	기간	장소 (학원명)	강의 법식	접수 인원	수료 인원	후원	교재비	비고
1	67. 1. 30 ~2.19	동방	동방	514	234			개강식:YMCA대강당 (67. 1. 31)
2	67. 8. 1 ~8. 20	동방	서울	450	218			
3	68. 1. 12 ~2. 1	동방	동방	420	228			
4	68. 8. 2 ~8. 21	명지대	고려	451	242			
5	69. 1. 13 ~2. 1	명지대	동방	854	540			
6	70. 1. 14 ~2. 3	건국대	일파	745	540	문화공보부 조선일보사		국고보조
		동방	동방					
7	70. 8. 3 ~8. 22	동방	동방	446	217	"		개강식:YMCA대강당 (70. 8. 3) 국고보조
		시사영어	그레그	124	88			
8	71. 1. 12 ~2. 2	동방	동방	812		"		개강식:YMCA대강당 (71. 1. 12) 국고보조 치사;유봉영조선일보부사장 임철순문공전문위원
		시사영어	그레그	245				
9	71. 7. 19 ~8. 7	동방 고려	동방 고려	440	136	"		국고보조
		시사영어	그레그	133	76			

10	72. 7. 19 ~8. 7	동방	동방	922	532	"		개강식:YMCA대강당 (72. 1. 17) 국고보조 격려사:김용태회장, 이호진국회사무차장, 권효섭의사국장
		시사영어	그레그	231	152			
11	72. 8. 8 ~8. 28	동방	동방	324	207	"		국고보조
		시사영어	그레그	80	43			
12	73. 1. 16 ~2. 4	동방	동방	621	413	국회사무처 조선일보		
		시사영어	그레그	145	115			
13	73. 7. 16 ~8. 4	동방한국	동방	237	141	"		
		동방	그레그	52	35			
14	74. 1. 11 ~1. 31	국회속기사양성소	연구위원회	550	316	"		
		동방	그레그	163	82			
15	74. 7. 29 ~8. 17	국회속기사양성소	연구위원회	213	136	"		
		동방	그레그	84	49			
16	75. 1. 13 ~2. 1	국회속기사양성소	연구위원회	697	423	"		
		동방	그레그	201	125			
17	75. 7. 28 ~8. 20	동방	동방	274	173	"		
			그레그	184	110			
18	76. 1. 12 ~1. 31	"	동방	478	340	"		
			그레그	184	130			
19	76. 7. 26 ~8. 18	"	동방	212	144	"		
			그레그	144	44			
20	77. 1. 11 ~2. 1	동방신세계	동방고려	585	429	"		
		신세계	그레그	304	234			

회수	기간	장소 (학원명)	강의 법식	접수 인원	수료 인원	후 원	교재비	비 고
21	77. 7. 25 ~8. 13	동방 신세계	동방 고려	236	159	국회사무처 조선일보		
		신세계	그레그	119	69			
22	78. 1. 13 ~2. 2	동방 신세계	동방 고려	410	298	"		
		신세계	그레그	340	150			
23	78. 7. 25 ~8. 14	동방 신세계	동방 고려	154	130	"		
		신세계	그레그	124	87			
24	79. 1. 11 ~1. 31	동방 신세계	동방 고려	481	302	"		
		신세계	그레그	253	145			
25	79. 7. 23 ~8. 11	동방	동방	188	139	"		
			그레그	114	66			
26	80. 1. 14 ~2. 2	동방 고려	동방 고려	479	352	"		
		동방	그레그	160	105			
27	80. 7. 31 ~8. 16	동방 고려	동방 고려	167	126	"		
		동방	그레그	64	48			
28	81. 1. 12 ~1. 31	동방 고려	동방 고려	337	261	입법회의사무 처 조선일보	국어;4,000 영어;5,000	고려식 ; 서울 부산
		동방	그레그	160	98			
29	81. 7. 30 ~8. 14	동방 고려	동방 고려	187	134	국회사무처 조선일보	국어;5,000 영어;6,000	"

		동방	그레그	97	53			
30	82. 1. 11 ~1. 30	동방 고려	동방 고려	393	300	"	"	
		동방	그레그	167	105			
31	82. 7. 19 ~8. 7	동방 고려	동방 고려	246	185	"	국어;5,000 영어;7,000	
		동방	그레그	125	68			
32	83. 1. 11 ~1. 29	동방 고려	동방 고려	543	370	"	"	
		동방	그레그	155	118			
33	83. 7. 18 ~8. 7	동방 고려	동방 고려	228	127	조선일보	"	
		동방	그레그	68	56			
34	84. 1. 11 ~1. 31	동방 고려	동방 고려	714	452	"	"	
		동방	그레그	231	121			
35	84. 7. 18 ~8. 7	동방 고려	동방 고려	157	115	"	국어;7,000 영어;10,000	
		동방	그레그	67	46			
36	85. 1. 14 ~2. 2	동방 고려	동방 고려	681	578	"	"	
		동방	그레그	163	112			
37	85. 7. 22 ~8. 10	동방 고려	동방	547	410	"	"	
		동방	그레그	119	69			
38	86. 1. 13 ~2. 1	동방 고려	동방 고려	681	578	"		
		동방(종로)	그레그	163	112			

회수	기간	장소 (학원명)	강의 법식	접수 인원	수료 인원	후 원	교재비	비 고
39	87. 1. 12 ~1. 31	동방 고려	동방 고려	547	410	조선일보	국어;8,000 영어;10,000	동방식 ; 종로 청량리 수원
		동방(종로)	그레그	119	69			
40	87. 7. 20 ~8. 8	동방 고려	동방 고려	302	223	"	"	동방식 ; 종로 청량리 수원
		동방(종로)	그레그					
41	88. 1. 11 ~1. 31	비고란 참조	동방 고려 의회	582	366	"	"	동방식 ; 종로 청량리 수원 한일 고려식 ; 서대문 의회식 ; 부산 청주
		동방(종로)	그레그					
42	88. 8. 1~ 8. 20	비고란 참조	동방 고려 의회			"	"	동방식 ; 종로 청량리 수원 한일 고려식 ; 서대문 의회식 ; 부산 청주
		동방(종로)	그레그					
43	89. 1. 9~ 1. 30	비고란 참조	동방 고려 의회			"	"	
		동방(종로)	그레그					
44	89. 7. 18 ~8. 5	비고란 참조	동방 고려 의회			"	"	동방식 ; 종로 청량리 고려식 ; 영등포 서대문 의회식 ; 부산 청주
		동방(종로)	그레그					
45	90. 1. 15 ~2. 3	비고란 참조	동방 고려 의회	230		"	국어;10,000 영어;12,000	동방식 ; 종로 청량리 수원 고려식 ; 영등포 서대문 의회식 ; 부산 청주
		동방(종로)	그레그	19				

2) 그 밖의 무료강습

속기무료강습은 동.하계 무료강습만이 아니었다. 속기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속기를 강의함으로써 속기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속기보급활동도 계속하였다. 협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속기무료강습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바라는 공문을 발송, 이에 답신을 받아 무료강습을 요청하는 기관과 사회단체가 있으면 협회에서 강사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순회속기 보급활동은 각급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강습과 언론인을 위한 강습,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강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활동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표-4] 속기순회보급활동상황

기간	대상	수강인원	강의법식	강사
70. 4. 12~7. 14	상명여고생	120명		전흥복
70. 9. 1~10. 23	"	"		
70. 6. 21~11. 3	경신고교생	70명	고려	한종열
70. 11. 3~12. 2	국회출입기자			
70. 12. 14~71. 2. 13	동아일보수습기자			
71. 1. 5~2. 20	동아일보 기자			
71. 6. 21~7. 21	덕성여대생	104명	Gregg	노영민
71. 6. 28~7. 28	중동고교생	70명	일파식	양철재
71. 9. 2~9. 21	법원 및 검찰서기			
72. 1. 5~1. 15	경향신문기자	10명		
75. 3. 6~	서울시립부녀회관		협회 단기강습용	김영춘
75. 3. 22~	창덕여고생	70명	의회식	김형근
76. 3. ~76. 8.	서울시립부녀회관	50명	협회 단기강습용	김영춘
76. 3. ~76. 12.	창덕여고생	70명	의회식	김형근
77. 3. ~77. 8.	서울시립부녀회관	50명	협회 단기강습용	김영춘
77. 3. ~77. 12.	창덕여고생	70명	의회식	김형근
79. 3. 6~8. 31	시립부녀사업관	55명	협회 단기강습용	김영춘
81. 3. 13.	보성여고생 홍익여고생	190명 90명		
83. 3. ~83. 12.	배화여자전문대학	100명		

3.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 설치와 의회속기법식 창안 발표

1)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 설치

1968년 국회속기사양성소를 설립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내의 여러 속기법식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여 교수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초년도에는 당시 국회에 가장 많은 속기사를 진출시키고 있는 일파식과 고려식 2개 법식을 채택하여 1개 학급씩 교수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2차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의회기록에 적합한 새로운 속기법식을 창안하여 이를 교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연구작업을 위하여 양성소 내에 1968년 5월 20일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장에 권효섭 의사국장(소장), 부위원장에 유용규 속기과장(부소장), 자문위원에 이호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길기상 총무국장, 하재구 위원국장, 김옥진 설비국장, 연구위원에 김진기 속기계장(간사), 정원도 속기계장(간사), 안인영 속기계장, 이동일 속기계장, 김영선 속기계장, 정우용, 최진수, 김경만, 이용수(이상 속기학 강사)가 위촉되었고, 후에 최석모가 보강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속기법식은 해방 후에 일본어속기를 하던 분들이 급조한 것이어서 어학적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점점 빨라지는 발음속도에 대비하고 의회 전문용어를 제대로 회의록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말 어법에 맞는 새로운 속기법식의 창안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당시 국회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발효된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내규는 아래와 같다.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내규(1968. 5. 20. 총장 결재)

제1조(목적) 의회속기법식의 제정과 속기학 및 속기기술향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국회속기사양성소(이하 '양성소'라 한다)에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양성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소부소장이 된다.

3. 위원은 국회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약간명 두며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계의 권위자를 참고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3조(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掌理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한다.

1. 의회속기법식의 제정 및 개량 향상에 관한 사항

2. 속기학 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속기기술향상 및 속기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대상) 위원회에서 통합 연구할 속기법의 대상은 양성소의 교수법식으로 한다.

제6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6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 설치와 의회속기법식 창안 발표

2) 의회속기법식 창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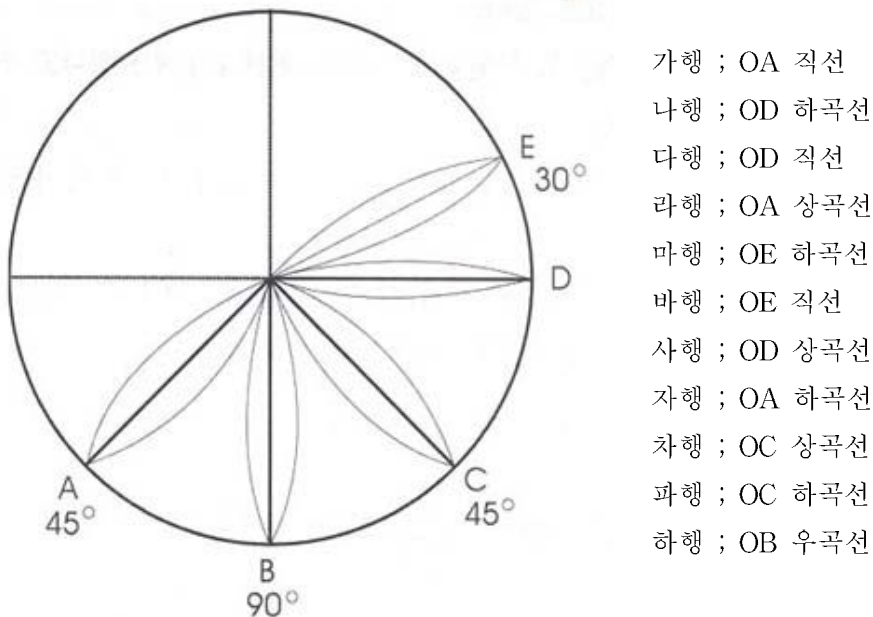
① 창안과정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는 먼저 기초조사에 착수하여 음절과 단어의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가능한 부호와 결합부호의 상대적인 편의성에 관해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문교부의 음자빈도 통계표 및 어휘빈도 통계표, 수도여자사범대학 강사인 徐廷國씨가 국어교재를 중심으로 조사작성한 각종 통계 그리고 의회속기법식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의회의록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자음과 모음 및 받침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일파·고려·동방·세종·한국·서울 등 당시의 각종 국내 속기법식과 일본의 와세다(早稻田)·나까네(中根)·참의원속기사양성소 교재, 미국의 피트맨·그레그 등 29개 속기법식의 기본문자 자료를 토대로 기록 가능한 선을 조사하였다. 거기서 얻어진 결론은 오로지 직선과 단순 곡선의 반월형만이 기록 가능한 선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는 기본문자의 선을 정원파(기하선)로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원리도를 작성하고 기록 가능한 15개 선을 도출하였다.

<원리도>



다음으로 연구위원회는 현직 국회속기사를 대상으로 원리도 각 선의 기록편의도를 조사하고, 자음의 수를 ㄱ(ㄱ.ㅋ), ㄴ, ㄷ(ㄷ.ㅌ), ㄹ, ㅁ, ㅂ(ㅃ), ㅅ(ㅆ), ㅇ, ㅈ(ㅉ), ㅊ, ㅍ, ㅎ 12개로 축소 검용하여 기록 편의도에 따라 빈도수가 많은 자음순으로 원리도에 자음을 배열, 확

정하였다.

자음의 결정에 이어, 현용 21개 모음중 사용 빈도수가 낮거나 유사한 음으로 발성되는 모음을 겸용토록 하여 ㅏ(ㅑ.ㅓ), ㅓ(ㅕ.ㅡ.ㅖ), ㅓ(ㅗ), ㅓ(ㅓ), ㅓ(ㅕ.ㅖ), ㅓ(ㅑ.ㅓ)의 7개로 축소하여 모음의 수를 확정하였다.

우리 한글에 쓰이는 받침 27개중 음성학상 유사한 성가를 지닌 받침은 유사음끼리 겸용토록 하고, 음성학상 발성은 상이하더라도 병용 가능한 것을 합용시킨 결과 의회속기법식의 받침은 ㄱ(ㄱ합용), ㄴ(ㄴ합용), ㅇ, ㅅ, ㅈ 5개의 받침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의회법식의 기본문자가 완성되었으며, 우리말 어휘 가운데 사용빈도수가 높은 문자는 특수문자를 고안하여 변자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본문자 가운데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더라도 혼용의 우려가 없는 문자를 변용하거나 다른 속기 자료들을 참작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조사나 부사에 활용할 수 있는 문자를 제정하였다.

동사나 형용사, 존재사의 다양한 어미변화를 체계적으로 통일시켜 속기학습이나 실무가 편리해지도록 하였다.

의회속기법식이 다른 법식과 뚜렷이 다른 특징의 하나는 數詞의 기법이다. 다른 속기법식에서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회법식은 다획의 아라비아 숫자를 단획화하여 운필의 속도를 도모하였다.

이상 간단히 의회속기법식의 창안과정을 서술하였으나, 그 창안 과정에 연구위원들이 고심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신속한 운필과 정확한 번문이 가능한 문자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자료들과 씨름하고 고심해야만 했다. 때문에 연구위원회는 무려 104차에 걸친 회의를 열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비로소 의회속기법식의 완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69년 1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사무총.차장 이하 사무처 및 도서관 각 국.실장 임석하에 의회속기법식 창안발표회를 가지게 되었다. 발표회를 마친 자리에서 이 새로운 속기법식을 1969학년도부터 양성소에서 교수기로 의결하고, 동일자로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었다. 이날 창안 발표회에 앞서 연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는 아래와 같다.

의회속기법식창안의결서

의결주문

현재 국내에서 실용되고 있는 속기법식은 일파·고려·동방·서울·한국·세종·중앙·남천법식인 8개법식이 있는바 국회속기사양성소가 1968년도에 발족됨에 따라 동양성소에서의 교수를 위한 의회속기법식을 별첨 의회속기법식연구자료에 의하여 창안 실용할 것을 의결함.

1969년 1월 10일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

위원장 권호섭

부위원장 유용규

위원 김진기, 정원도, 안인영, 이동일, 김영선, 이용수, 정우용, 김정만

자문위원 이호진, 길기상, 하재구, 김옥진

특기할 것은, 의회속기법식의 창안으로 그때까지 연설체 1,550자(310자×5분), 논설체 1,350자(270자×5분) 속도로 시행되던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의 수준이 1971년도에는 연설체 1,600자(320자×5분), 논설체 1,400자(280자×5분)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972년도 이후부터는 연설체 1,650자(330자×5분), 논설체 1,450자(290자×5분)으로 다시 상향조정되어 실시되어 오게 되었다(연설체는 1981년 이후 다시 1,600자로 하향조정). 그후에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일반적으로 1분당 기록속도가 340 ~ 350자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한속기협회 주최 속기경기대회에서는 매년 1, 2, 3등을 대부분 의회속기법식의 속기사가 차지한 것으로도 그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제4절 국회의정사의 기록과 속기(김선옥, 손재옥)

1. 1년 3개월만에 해산된 제8대 국회

1) 1970년대초의 국회와 속기계 개관

(1) 배경

1970년대초의 국회는 1969년의 3선개헌파동으로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술한 사건으로 점철된 제7대국회가 막을 내리고 1971년 4월 27일 제7대대통령선거에 이어 1971년 5월 25일 제8대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어 몇 차례의 국회공전 끝에 1971년 7월 27일 제8대국회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1971년 12월 6일 朴正熙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주요내용은 앞으로 국가시책을 안보위주로 하며 안보의 취약을 가져오는 사회불안을 제거하고 언론의 자숙을 바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자유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1971년 12월 29일에는 이른바 국가보위법 파동이 있었다.

제8대국회는 1972년 10월 17일의 대통령특별선언으로 임기중인 1년 3개월만에 해산되었다. 따라서 국회기능을 대행하게 된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 1972년 12월 27일 공포·시행되었으며, 이것이 이른바 ‘유신헌법’이다. 같은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10月維新’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2) 速記界 概觀

우리나라의 速記界는 제헌국회부터 시작한 憲政史의 기록이라는 속기초창기의 기틀 마련과 1960년대 속기정착기를 거쳐 1970년대 들어서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사단법인 대한 속기협회의 문화공보부 인가(1969.4.14)의 힘을 얻어 일시적이거나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도 받게 되었고, 협회사업의 일환으로 각급학교에서 속기강습을 실시하고 방학을 이용한 속기무료강습과 속기전시회 등을 통하여 속기를 일반에게 널리 홍보하기도 하였다.

한편 속기사자격검정시험과 속기경기대회를 통하여 속기실력의 검증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1976년 9월 20일 국회사무처에서 법원으로 10명이 진출하여 재경 각급법원에 배치됨으로써 의회속기위주의 速記界가 裁判速記의 영역에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7.4공동성명(1972.7.4)과 남북적십자회담(1972.8.30)을 계기로 하여 속기사가 수행원으로 참가하게 되어 각종 합의서들이 채택·발효되기까지 남북접촉의 경과를 생생하게 기록하였으며, 이후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한편 19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장회사가 늘어나면서 주주총회에서의 속기록 작성도 속기영역의 한 분야가 되었으며, 속기협회의 다각적인 홍보로 인하여, 70년대에는 속기

의 영역이 넓어져 속기학원도 호황을 누렸다.

국회속기사의 性別 분포도에도 변화를 가져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남성의 고유영역이던 국회사무처 속기과에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일반사회의 여성 진출에 비례하여 여성속기사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도 특기할만 하다.

2)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 출범

(1) 제7대 대통령선거

1971년 4월 27일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는 1969년에 단행된 3선개헌으로 民主共和黨의 朴正熙 대통령후보 지명전에서 金泳三후보에 극적으로 역전승한 新民黨의 金大中후보가 나선 양자 맞대결이었다.

선거결과는 박정희후보가 총투표수 1,241만 7,824명(79.8%)중 634만 2,828표를 얻어 金大中후보의 539만 5,900표를 94만여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이로써 박정희대통령은 1971년7월1일 중앙청 광장에서 제7대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3기 집권을 하게 되었다.

(2) 제8대 국회 출범

제7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실시된 1971년 5월 2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유권자 총수 1,555만 1,985명 가운데 유효표의 52.45%를 얻어 지역구 86석(전국구 27석), 신민당은 유효표의 47.55%를 얻어 지역구 65석(전국구 24석)을 획득함으로써 8대국회 총의석 분포는 민주공화당 113석, 신민당 89석, 국민당 1석, 민중당 1석이 되었다. 이로써 민주공화당은 원내과반수선인 103석을 넘는 안정세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했고 신민당은 재적 3분의 1이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이상적인 의석분포를 보여 제8대국회는 均衡國會로 출범하게 되었다.

총선거 2개월만인 1971년 7월 26일 오후 2시 박정희대통령, 민복기대법원장, 김종필 국무총리, 주한외교사절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白斗鎭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회는 우리나라 의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의 균형을 이룬 만큼 대화와 협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한 후 "국내외로 산적한 이슈들이 많은 만큼 중지를 모아 이를 해결하고 국회운영도 변칙이나 극한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버리고 여야간 서로 의사를 존중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자"고 피력했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1월 17일 연두교서 발표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식에 참석, "이번 국회는 내외 여건에 비추어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고, 또 국민들은 큰 기대와 관심을 걸고 있는 만큼 여야협조 속에 국사를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다음 "아시아에는 평화지향의 새물결이 일어나고 있으나 불행히도 한반도에는 아직도 긴장의 떡구름이 감돌고 있으며, 우리 주위와 환경은 화해와 긴장이 엇갈리는 이중적 흐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을 강요하고 있다"는 요지의 致辭를 하였다.

① 의장.부의장 선거

개원식에 앞서 1971년 7월 26일 오전 10시 제77회 임시국회 제1차본회의를 열어 의장.부의

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최연장자인 劉鳳榮의원(민주공화당.전국구)의 사회로 국회의장에는 백두진(민주공화당)의원이 재석 200명중 125표로, 부의장에는 張炯淳(민주공화당)의원이 재석 200명중 117표로, 鄭海永(신민당)의원이 재석 199명중 174표로 각각 선출되었다.

② 상임위원장 선거

제7대국회말에 있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 따른 의원 29인의 증원과 국회법개정에 따른 법사위원 겸직 등으로 국회 각상 임위원회의 정원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1971년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법사위16명, 외무위15명, 내무위20명, 재무위24명, 경과위16명, 국방위16명, 문공위14명, 농림위24명, 상공위24명, 보사위14명, 교체위16명, 건설위20명
국회운영위16명이며, 7월 28일 제3차본회의에서 실시된 13개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모두 민주공화당 소속의원이 선출되었다.

각 상임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 高在珽, 외무 李東元, 내무 車智澈, 재무 金昌權, 경제과학 金鍾哲, 국방 閔機植, 문교공보 楊燦宇, 농림 全焦相, 상공 吳學鎭, 보건사회 吳俊碩, 교통체신 張承台, 건설 徐相濤, 국회운영 文太俊

(3) 중요사건과 국회

① 10.2抗命波動

신민당은 폐회중인 1971년 9월 30일 3부장관(金鶴烈 경제기획, 吳致成 내무, 申植秀 법무) 해임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71년 10월 2일 제78회국회 임시회 제19차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오치성 내무부장관의 해임안을 재석 203명중 可 107, 否 90, 無效 6표로 가결시키고 김학렬, 신직수 두 장관 해임안은 각각 재석 201명중 可 91, 否 109(김경제기획), 재석 202명중 109 可 91 무효 2(신법무)로 부결시켰다.

박대통령의 행동통일(부결) 지시로 민주공화당은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결할 방침을 세운 바 있으나 표결 과정에서 당 방침을 어기고 찬표를 던진 의원이 상당수 있어 이른바 10.2항명파동을 일으켜 국회가 근 20일간이나 공전하였다. 이 사태는 집권당내의 역학관계를 균형에서 붕괴로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이 결과로 항명을 주도한 吉在號, 金成坤 두 의원은 공화당을 탈당,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자료1)

(자료1) 제78회국회회의록 제19호 1,3~6,8쪽

② 국가보위법과동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인 이 법안은 1971년 12월 21일 具泰會의원(민주공화당)의 110인으로부터 발의되었다. 제안 이유는 1971년 12월 6일 박정희대통령이 "앞으로 국가시책을 안보 위주로 하며, 안보의 취약을 가져오는 사회불안을 제거하고 언론의 자숙을 바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자유까지 유보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비상 사태 선언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격

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협을 사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북괴의 무력남침 도발을 예방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헌법 제68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에 관한 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부여하기 위함에서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71년 12월 22일 제78회국회 정기회 제35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포한 의장(백두진)이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신민당 의원들이 일제히 단상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탈취,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끝내 보고를 하지 못하였다.(자료2)

같은 날 오후 8시경까지 신민당 의원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의장은 부득이 본회의 보고를 생략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시에 다음 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양당대표의원에게 공한으로 통지하였다.

신민당은 1971년 12월 22일부터 이 법안의 심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과 제2별관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차 동년 12월 23일 박정희대통령은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案이 국회에서 通過 안 되면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요지의 공한을 의장에게 보냈다.

국회는 1971년 12월 24일 의장(백두진)의 제의로 여야총무회담을 열고 이 법안의 처리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양당간의 현격한 견해 차이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여야 간부들간에 다각적인 접촉을 하였지만 끝내 해결책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민주공화당은 회기내(1971년12월29일) 처리방침을 정하고 신민당은 실력저지방침을 고수하였다.

신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계속 농성중인 1971년 12월 27일 새벽 3시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제4별관에 있는 외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공화당 소속 위원 9인과 속기사 4인만 참석한 가운데 제15차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법안을 상정하고 회의장 변경에 관한 양해를 구한 다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자료3)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한 직후 동일 장소에서 의원 113인(민주공화당111인 무소속 2인)이 출석한 가운데 의장은 제36차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하고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본회의 장소를 변경한 것과 국회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 개의를시간을 오전 3시로 변경하였다는 보고를 한 다음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자료4)

이날 회의장 주변에는 약 6백여명의 기동경찰이 동원되어 철통같이 막았기 때문에 회의장에는 113명의 의원과 사무처 총장을 제외한 속기사 4명과 3명의 공화당 출입기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자료2) 제78회국회회의록 제35호

(자료3) 제78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5호

(자료4) 제78회국회회의록 제36호

③ 국회공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변칙통과 소식을 들은 新民黨은 즉각 간부회의와 의원총회

를 열고 이 법의 의결절차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고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특별조치법의 변칙통과에 따른 야당의 투쟁으로 제78회 정기국회는 회기말로 예정되었던 중요의안처리를 하지 못한 채 폐회되고 말았다.

金弘壹 신민당 대표위원은 1972년 1월 11일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위에 관한 긴급조치법은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동 법을 철회,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점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신민당은 1972년 1월 21일 제79회임시국회(1972.1.21~2.19)와 제80회임시국회(1972.3.7~4.5), 제81회임시국회(1972.5.8~6.6)를 단독으로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화당의 불참으로 공전되었다.

결국 국보위법 파동으로 인해 국회는 6개월간이나 공전, 세차례의 임시국회 개최식을 제외하고 국회본회의는 한번도 열리지 못하였다. 상임위원회는 제79회 1회(外務委, 1월26일), 제80회 2회(外務委, 3월31일, 國防委, 3월17일)등 안보,국방관계 상위만 열렸을 뿐이다.

3) 제8대국회의 해산

(1) 10.17대통령특별선언

朴正熙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이 시각을 기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박대통령은 이 특별선언을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②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③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④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킨다"고 밝혔으며, 동년 10월 27일 열린 국무회의는 10.17대통령특별선언을 '10月維新'이라 부르도록 했다.

(2) 1972년도 일반국정감사실시와 중단

10.17대통령특별선언에 앞서 국회는 1972년 10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25일간 1973년도 예산안심의자료수집 등을 위한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초 감사는 각 위원회별로 수개반씩 편성하여 대략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경까지는 지방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0일경부터 중앙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사반이 지방감사의 종반에 접어들었던 1972년 10월 17일 국회가 해산됨으로써 중앙감사는 착수하지 못했다. 지방에서는 10.17대통령특별선언으로 국회가 해산된 줄도 모른 채 17일 오후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중이던 감사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속기업무를 수행중이던 속기사들도 감사기간 중 철수하여 귀경하였다.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이른바 '유신헌법' 종래 우리 헌법에서 인정해왔던 국정 전반에 걸친 일반감사권을 의미하는 그러한 국정감사권은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국회활동 과정에서 그것이 남용되는 등 폐단이 많았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도록 했고, 이어서 1973년 2월 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폐지법률'과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이 의결.공포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는 폐지되었다.

(4) 10월유신과 속기계

10.17대통령특별선언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의사당 앞에는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였으며, 국회사무처 또한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중단되었다.

국회기능을 대행하게 된 비상국무회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 제7차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유신헌법'이라 불리워진 이 개정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공포, 시행되었다.

당시 국회사무처는 개정헌법에 의해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의 직원과견 요청에 따라 속기와 직원을 포함한 국회사무 처직원 대부분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파견되어 제8대 대통령선거 및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와 제9대국회의원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10.17특별선언이 발표된 다음 날인 10월 18일부터 국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단체들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10.17특별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은 연일 신문의 광고란을 메웠으며 거리에는 각 기관 및 단체들의 지지표어들이 나붙었다.

당시 대한속기협회 회장은 민주공화당 원내총무인 金龍泰의원이었다. 그는《速記界》12호 권두언 '10월유신으로 새로운 각오를'이란 제하의 글에서 "급변하는 세계의 진운 속에서 국력을 배양하고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국민총화의 결의 이것이 바로 10월유신"이라 강조했고, 협회에서는 1972년 10월 27일자 서울신문에 '10.17 대통령특별선언에 대한 지지성명발표'를 게재하였다.

2. 체육관 대통령 탄생과 제9대국회

1)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체육관대통령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다. 후보자합동연설회와 선거공보 발송, 벽보첨부 등을 각각 1회씩 허용하는 공영제로 실시된 이 선거에서 2,359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당선되었다.

동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첫 집회를 갖고 개원식에 이어 제1차회의에서 유신헌법이 규정한 임기 6년의 제8대대통령에 단일후보인 朴正熙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 날 재적 대의원 2,35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투표는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 규정에 따라 대의원들의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성명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개표 결과 박정희후보 2,357표, 무효 2표로 박정희후보의 당선이 확정, 선포되었다.

3. 제9대 국회 출범

1) 중요사건과 국회

우리 정치사상 유례없는 선거방식의 대통령선거를 치룬지 4일만에 유신헌법이 공포되고, 이를 계기로 10·17일 대령특별선언에 의해 71일간 중지되었던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각 정당은 제9대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준비에 나섰다.

제9대국회의원선거는 1973년2월27일 유신헌법과 국회법을 바탕으로 실시되었고, 지역구는 1區2人制였다.

2개구 무투표 당선구를 제외한 전국 71개 선거구의 1만10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80명, 민주통일당 57명 등 정당공천자 224명과 무소속 115명(이중 2명은 등록 무효)으로 총 339명이 출마한 가운데 전국 73개 선거구에서 민주공화당 73명, 신민당 52명, 민주통일당 2명 무소속 19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그리고 1973년 3월 7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朴正熙대통령이 추천한 임기 3년의 국회의원후보자 73명과 예비후보자 14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대의원 2,359명중 2,354명이 참석, 찬성 2,251표, 반대 82표, 무효 21표로 박대통령이 추천한대로 73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지역구에서 선출된 146명을 포함, 219명의 국회의원이 확정되었으며 대통령의 집회요구에 의해 1973년 3월 12일 제85회임시국회가 집회됨에 따라 10·17 이후 145일만에 제9대국회가 구성되었다.

제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민이 직접 뽑은 직선국회의원은 1973년 3월 12일부터 1979년 3월 11일까지 6년이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 이른바 유정회 국회의원은 3년이였다.

대통령의 집회요구로 개최된 제85회임시국회는 제1차본회의에서 최연장자인 鄭一亨의원(신민당)의 사회로 의장.부의장선거부터 실시하였다. 정원 2명 중 야당몫인 부의장 1인은 신민당 측의 인선이 늦어져 선출하지 못한 채 의장과 부의장(1인)선거를 실시한 결과, 의장에는 총투표수 215표중 200표를 득표한 丁一權의원(민주공화당)이, 부의장에는 총투표수 215표중 199표를 득표한 金振晩의원(維新政友會)이 각각 당선되었다.

① 金大中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오후, 일본 도쿄의 그랜드파레스호텔에 체류하고 있던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金大中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에 의해 강제 납치, 실종된 지 5일만에 일본이 아닌 서울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국회는 1973년 9월 20일 閔丙權의원(유신정우회), 金龍泰의원(민주공화당), 李敏雨의원(신민당), 梁正圭의원(무소속) 외 127인으로부터 金大中事件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있어 9월 21일 제88회국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국무총리, 외무부.문화공보부장관을 출석시켜 9월 22일 제2차본회의부터 9월 25일 제4차본회의까지 3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② 박정희대통령 狙擊事件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23분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 29주년 기념식에서 朴正熙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는 도중 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나 대통령영부인 육영수여사가 운명했다. 범인은 북괴의 지령을 받아 재일 조총련에 의해 조종된 文世光으로서 그는 일본인 공모자의 도움으로 일본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한 때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으나 9월 19일 일본 정부의 陳謝特使인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가 다나카수상의 친서를 가지고 대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1974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8·15와 관련된 한.일관계교섭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즉, 일본정부는 1974년 9월 19일 우리나라에 파견한 시이나 특사와 일본 수상의 친서를 통해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진사를 했다. 정부는 일본 수상의 친서와 특사의 구체적인 설명을 기록한 문서로서 받아야 할 약속은 일단 일본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로써 양국 문제가 완전 타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일본이 앞으로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깊은 우려와 관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들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 정부는 시이나 특사의 방한으로 한.일관계의 어려운 문제가 일단 수습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한.일간의 참된 우호.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③ 개헌특위안과동

신민당은 개헌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1974년 10월 21일 金炯一원내총무 등 57명의 이름으로 憲法改正起草審議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改憲起草特委는 여야의원 10명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1974년 10월 30일부터 2개월로 하되 이 기간에 초안작성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60일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토록 되어 있다.

신민당은 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현행헌법은 비상계엄하에 국민투표에 부쳐졌던 것이고 국회가 해산, 정당활동이 금지된 채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이 봉쇄된 가운데 무언의 찬반만을 강요받았던 것"이라고 지적,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트기 위해 현행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그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개헌특위구성결의안은 10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여당측의 반대로 김형일 신민당 원내총무로부터 제안설명만을 들었을 뿐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듯 개헌특위안은 신민당이 이를 최대 정치이슈로 내세워 집중적인 대외공세를 벌인 것에 못지 않게 여당측 역시 개헌 운운만은 여하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자세로 맞서 이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협상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잇따른 원내총무단을 통한 여야협상도 실패하고 정일권 국회의장이 제시한 절충안도 신민당에 의해 거부되었다.

金泳三 신민당총재는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위한 원외투쟁을 선언한데 이어 15일에는 신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개헌만이 살 길이다" "유신체제 철폐하라"는 등의 휘장을 어깨에 두르고 시위를 벌인 신민당 의원들은 여당측 의원들

의 저지에 밀려 국회 소속의원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같은 신민당의 원외투쟁에 자극을 받은 여당측은 11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를 긴급소집, 신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헌특위안을 토론없이 4분만에 전격적으로 폐기시켰다.(자료 5)

(자료5) 제90회국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④ 法改正案波動

1975년 3월 18일 朴浚圭,李道煥(민주공화당),具泰會,韓泰淵(유신정우회)의원 외 78인으로부터 國家冒瀆罪를 신설한 형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유신하에서 반체제인사들의 언행을 자제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구체적인 제안이 유에 대해 이 법률안의 발의자는 "작금 일부 국민의 國內外에서의 言動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지너온 역사적 병폐라고 말할 수 있는 事大의 根性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外國人이나 外國團體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나아가 우리 大韓民國과 헌법상의 國家機關을 誹訪 侮辱하는가 하면 사실을 왜곡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국가를 모독하는 사대적 행위를 서슴치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 友邦과의 離間을 획책하고 심지어 外勢를 등에 업고 우리의 독립과 안전마저도 위태롭게 할 우려있는 言行을 자행하는 등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임에 비추어 차제에 刑法을 改正하여 이러한 國家冒瀆 등 事大行爲를 처단함으로써 일부 고질적 事大風潮를 뿌리뽑고, 自主獨立國家 國民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드높여 국민윤리와 도의를 양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保全하고자 하는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1975년 3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신민당 위원들이 이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였으므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다.

이날 오후 8시30분 여야 위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측(민주공화당,유신정우회)은 여야의 입장을 감안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만 듣고 다음날인 3월 19일부터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자고 제의하였으나 야당측은 이 법안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우방 국민과의 대화를 봉쇄하려는 신판 쇄국주의"라고 단정, 수정안을 낼 여지조차 없는 악법이므로 상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3월 19일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태평로 국회도서관 2층에 있는 의원열람실에서 여당측 위원만으로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 채 權 逸위원(유신정우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1분만에 수정의결하였다.(자료6)

한편 야당의원들이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하자 여당의원들은 의원휴게실에서 제91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포함한 25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전격 통과시켰다.

이렇게 위원회는 의원열람실에서, 본회의는 의원휴게실에서 회의를 여는 비정상적인 회의 운영으로 속기업무를 담당한 속기사들은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라 가슴을 조이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자료6) 제91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자료7) 제91회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⑤ 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이전

1975년 9월 1일 여의도 새 국회의사당이 준공됨에 따라 국회는 태평로시대를 마감하고 여의도시대의 막을 올렸다.

국회의사당은 제헌국회 이후 10번째였다. 1948년 제헌국회는 중앙청홀을 의사당으로 사용했으며, 6.25동란중에는 대구문화극장, 부산문화극장을 전전하다가 서울이 수복되자 다시 중앙청홀을 사용했으며, 1950년 12월 8일 태평로의사당으로 잠시 옮겼다. 그러다가 국회는 1·4후퇴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극장과 경남도청 武德殿으로 이전했다. 그 후 한 때 중앙청홀을 다시 사용하였고, 1954년 6월 9일(제3대국회)부터 1975년 8월 31일(제9대국회 제93회임시회)까지 21년간 태평로의사당을 사용하다가 마침내 여의도로 이전한 것이다.

⑥ 김옥선과동

1975년 9월 22일부터 열린 제94회 정기국회에서는 이른바 김옥선과동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즉, 신민당의 金玉仙의원은 1975년 10월 8일 제7차 본회의 사회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다섯 번째 질문자로 등단하여 질문을 시작하였다.

김의원은 정치학 분야의 석학인 뉴만과 브레진스키 등이 분석한 독재체제의 특징을 "첫째 전쟁심리조성, 둘째 사이비 민주주의적 제도, 셋째 경찰의 테러, 넷째 커뮤니케이션 독점 즉 매스컴의 통제, 다섯째 안정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여섯째 지도자원리의 강조"라는 여섯 가지 특징을 열거하면서 강도높은 질문의 포문을 연 후 이어 다음과 같이 발언을 계속하였다.

"전쟁심리조성은 독재자의 영구집권욕에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되는 방편입니다. 전쟁이 끝 일어날테니까 국민들은 무조건 단결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구실하에 국민에게 맹목적인 복종만이 강요된다는 것이올습니다.

히틀러가 이러한 수법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했는가 하는 것은 역사가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의 여부와 전쟁발발 가능성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오로지 독재자의 전유물이 되어 독재자의 판단에 이견이나 반대의사를 제기하는 일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독재자의 온갖 失政과 또 그로 인한 민생고는 국가안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아래 깔려 묻히게 됨으로써 국민은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사병이 되고 국민들의 생활은 끊임없는 독재와 같은 상황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이르자 장내소란으로 회의장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사회를 보던 김진만부의장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수차 종용했으나 의석은 소란상태가 계속되고 그 가운데 또 다시 김옥선의원의 발언은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물론..... (장내소란)

물론 북괴의 남침위협을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극에 달한 전쟁위기조성은 이면에는 남침대비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 지난 한여름 전국을 뒤흔든 각종 --. 민방위대 편성, 학도호국단 조직, 요즘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軍歌, 그리고 정부의 끊임없는 전쟁위협 경고발언,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 실로 안보를 앞세운....."

이때 장내는 더욱 소란해져서 아수라장 분위기가 되었고, 마침내 사회를 보던 김진만부의 장은 정회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 부분은 의장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 '관제안보궐기대회' 운운의 발언이 있어 여당측은 이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고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일제히 들고 일어나 김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킨 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金玉仙의원의 발언을 이적행위로 단정,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10월 10일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議員(金玉仙)懲戒要求의 件을 상정하고 비공개회의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명을 결정했다.

金玉仙의원은 자신의 징계안이 처리되기로 예정된 본회의 예정시간 한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나의 징계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지는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아 의원직을 사퇴하며, 신민당의원들은 국회에 남아 계속 투쟁해 주기 바란다" 면서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여당측은 당초에 김의원을 제명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10월 13일 제8차 본회의에서 國會議員(金玉仙)辭職의 件을 상정하고 신민당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53표중 가 153표로 김옥선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 김옥선파동의 후유증으로 국회는 한동안 공전되고 또한 신민당 내부에서는 이 파동이 선명성 논쟁으로 이어져 극심한 갈등과 내분을 가져왔으며, 이로써 원내활동은 물론 대외투쟁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⑦ 야간국회 한번도 없었던 1976년

1976년 한해동안의 국회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한차례씩만 열림으로써 소집 회수면에서나 회기면에서나 외면적으로 비교적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졌다.

1976년 3월 12일에 열린 제95회국회(임시회)는 12일의 회기 동안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내요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1976년 9월 20일에 개최하여 12월 18일 폐회한 제96회국회(정기회)에서 여야는 대정부질문, 지방세법개정안 등 많은 난제들을 처리하면서 한번도 격돌이나 일방강행 없이 타협 내지는 표결로 국회운영에 임했다.

특히 여야가 새해예산안을 국회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지난 70년 제75회 정기국회 이후 처음있은 일이다.

모든 주요쟁점의안이 여야의 막후협상을 거치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처리되어 역대국회중 가장 국회법에 충실한 국회로 부각되었다. 또 단 한번도 야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도 우리 議會史上 새로운 기록이다.

따라서 야간국회가 있을 때마다 교통편 때문에 동문서주해야 했던 속기사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한해였다.

4. 1년 8개월만에 막 내린 제10대 국회

1) 제10대 국회와 속기계

(1) 백두부터 순탄치 못한 출발

제10대 국회는 1979년 3월 12일부터 1980년 10월 27일까지 1년 8개월의 임기중 2회의 정기회와 3회의 임시회를 합하여 5회의 회기를 갖고 총회기 186일동안 28차의 본회의와 13개 상임위원회가 총 162차의 회의를 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가 총 28차의 회의를 열었다.

10대 국회는 첫 관문인 제101회 임시국회에서 유정희 출신인 백두진의원의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립으로 백두부터 순탄치 못한 출발을 했고, 10.26사태의 여파로 결국 백두진의장이 사퇴하는 데서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단적으로 72년 이후의 획일적이고 정형화 되어온 유신국회상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변모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 또한 격렬하고도 복잡다난했다.

공화당의 박준규의장서리와 신민당의 김영삼총재는 7월의 임시국회에서 여야대표질문으로 맞 대결, 유신체제에 대한 공방을 벌였고 김영삼총재는 체제도전 발언을 이유로 여당 단독국회에서 의정사상 최초로 제명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김총재의 제명을 초래한 10.4파동은 여당의원 전원의 의원직사퇴서 제출이라는 또 하나의 의정기록을 가져왔고, 제103회 정기국회는 이같은 여야의 극한대립의 후유증으로 90일의 회기중 23일밖에 열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그 후 18년간의 1인체제에 막을 내린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은 입법부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서 국회는 동년 11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원들의 사퇴서를 일괄 반려키로 결의하는 한편 그 동안 금기시되어온 개헌문제를 다루기 위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이 신민당 주장에 따라 여야동수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또한 여야 만장일치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해제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의 횡포와 독단이 주도해온 기존 의정체제가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변화를 보인 획기적인 국회활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개헌특위는 동년 12월 3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다음해인 1980년 5월 14일 제22차 회의를 열기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6차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개헌시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마무리 단계에서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중단되고 그 후 별도의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고, 1980년 10월 27일 개정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 헌법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대국회는 주어진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8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제10대국회는 민관식국회의장대리가 제105회국회(정기회)의 개회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나라 의정사상 일찍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변혁의 역사적 조명"이 집중되는

시기에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2) 제10대 국회의 주요사건과 회의록

① 제10대 총선과 白斗鎭과동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1978년 12월 12일은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77.1%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유신정권의 철권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듯 전체 득표율면에서 新民黨은 共和黨을 1.1% 앞섰다. 이는 총선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민심은 태풍전야의 분위기를 경고하고 있었다.

이같은 총선을 거쳐 10대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소위 백두진과동이 불거졌다. 신민당은 직접선거에 의해서가 아닌 대통령이 지명하여 선출한 유신정우회 소속의 白斗鎭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할 수 없다 하여 투표시 퇴장을 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백두진과동이다.

신민당의 퇴장방침이 백두진과동이라는 여야의 극한적인 긴장관계로 발전한 것은 개원을 하루 앞둔 1979년 3월 14일 저녁 공화당이 신민당의 퇴장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10대국회를 개원하지 않겠다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개원식날인 15일 오전 양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숙의를 계속했으나 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다가 3월 17일에야 의장.부의장선거를 하고 3월 19일에 개회식을 거행하였다.

3월 17일 제1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장자인 민주공화당 이효상위원의 사회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의장에는 재직의원 231인 중 155표를 득표한 유신정우회의 백두진의원이, 부의장에는 176표를 얻은 민주공화당의 민관식의원과 177표를 얻은 신민당의 고흥문의원이 각각 당선되었다.

오랜 진통끝에 이른바 백두진과동을 겪은 후 당선된 백두진의장의 본회의에서의 당선인사는 참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다.

“ 먼저 연일 노고를 거듭하여 주신 원내총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 자체가 대단히 일 자체가 難産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과거 제가 45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나이는 지금 만 70입니다. 그 동안에 아이도 많이 낳어요.

그런데 難産을 한 아이는 낳아가지고 발육도 잘 되고 가슴도 더 넓고 키도 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친구네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 내 생각해 보니까 그 얻기 어려운 생명을 얻었으니 어떻게 내가 夭折하랴. 그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은 계속해서 날을 두고 서로 공식 비공식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같은 사람을 의장에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인사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백두진과동은 당시의 국회와 정당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일그러진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겨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백두진국회의장은 10.26사태 이후 야당의 거부로 국회본회의의 사퇴를 말지 못하고 있던 중 1979년 12월 3일자로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 國會議長辭任의件은 1979년 12월 17일 제103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182표중 가 158표, 부 9표, 무효 3표, 기권 12표로 가결되었다.

당선인사에서 난산한 아이의 비유를 들어 “어떻게 내가 夭折하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9개월만에 그 어렵게 얻은 의장직을 사임하게 된 것이다.

② 金泳三총재 제명과동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탈환한 金泳三총재는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의 톤을 높이던 중 9월 16일 뉴욕타임스와 기자 회견을 가졌는데, 이것이 김영삼제명과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기자회견에서 김영삼총재는 “미국은 국민과 끊임없이 유리되고 있는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다수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미국관리들에게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만 그를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그들은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3만명의 지상군을 두고 있는 것은 국내문제 개입이 아닌란 말인가” 라고 주장했다.

이 회견으로 정국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기 시작했고, 정부와 여당은 사대주의발언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김영삼총재에 대한 제재수단을 찾기 시작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김영삼총재의 뉴욕타임스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1979년 10월 4일 현오봉의원(민주공화당), 최영희의원(유신정우회)의 156인명으로 김영삼의원징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안이유는 “국회의원(김영삼)은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하여 국헌을 위배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복을 현저히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을 모독하여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이 징계동의는 1979년 10월 4일 제103회국회(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신민당 소속의원들

이 본회의장 단상과 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본회의장 한구석에서 변칙상정, 발의시켜 동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위원들에게 개의를 통고도 하지 아니하고 여당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 후 金泳三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법사위가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걸린 회의시간은 40초에 불과했다.

이 정계안의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 태세를 갖추자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300여명의 사복경찰과 국회경위들로 하여금 출입구와 복도를 차단케 하고 국회의사당 146호실에서 여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제103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재석의원 159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의원(김영삼)을 제명하기로 의결 한 것이다.

그날의 회의록을 보면 필요없는 시간표기라든지 점선표기가 유난히 많아 그것을 기록한, 소위 특공대라 불리는 속기사가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렇게 金泳三총재가 의원직에서 제명됨으로써 우리 의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역사적인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을 남겼다.

물론 법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제명정계안이 통과된 적은 이전에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6대 때인 66년9월 오물투척사건의 장본인인 金斗漢의원과 75년 8대때 金玉仙의원이 법사위에서 제명이 결정되었으나 이들은 본회의 통과 이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金泳三총재는 이날 고별의총 및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을 시작해 7선이란 행운을 누렸다. 후회는 없다"면서 담담한 심경을 토로한 뒤 "오늘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弔鐘이 울렸다고 하나 종소리는 더 강하게 국민 속에서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金泳三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은 곧이어 10.18 부마사태와 10.26으로 이어져 유신시대의 막을 내리는 길로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野黨議員 전원 사직서 제출

新民黨은 金泳三총재의 제명에 항의하기 위하여 무기한 등원 거부결정을 내린데 이어 1979년 10월 13일 신민당 소속의원 66명 전원과 통일당 소속의원인 김녹영의원, 김현수의원, 양일동의원등 3명도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야당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 또한 의정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당시 신민당 鄭在原 임시대변인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성명에서 "치욕스런 의회를 지키기 보다 영광스런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떳떳이 서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말하고 "당총재가 불법과 변칙으로 강제추방된 국회에 남아 역사의 공범자가 되느니보다는 의회를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과 유정회는 야당의 사직서 제출을 당리당략, 유권자와 구민에 대한 배신, 반이

성적 선택이라는 문구를 들어 격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공화당과 유정회 합동 회의후 발표를 통해 "야당의원들의 상당수가 헌정체제를 부인한 金泳三 신민당총재의 제명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유신국회상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이들의 사직서를 일괄반려한다면 제명의 논리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야당의원들의 사직서를 선별수리하는 쪽으로 돌아붙였다.

그리고 1979년 10월 16일 제103회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의 사직서 제출을 보고, 발의시켰다.

그러나 여당은 10.26사태 발생으로 선별수리론을 후퇴시키고 1979년 11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國會議員辭職의 件(69건)을 상정시키고 국회의원 사직서 69건을 일괄반려키로 결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인사문제는 무기명투표로 처리토록 한다는 국회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議員職 辭職書 返戻에 관한 動議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키는 형식으로 사직서를 반려한 것이다.

④ 10.26사태와 헌법개정특위 구성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김재규부장에 의한 궁정동에서의 대통령저격사건은 온국민을 경악하게 함과 동시 유신정권의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 대변혁기를 맞게 하는 불씨가 되었다.

국회는 1979년 11월 26일 제103회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憲法改正審議特別委員會構成에관한決議案을 상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28인으로, 여당 14명(공화 7, 유정 7), 야당 14명(신민 13, 통일 1)으로 여야 동수였다.

제1차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1979년 12월 3일 위원장에 金澤壽委員·간사에 崔致煥·李海元·朴海充·金東英위원 등 선출하고, 1980년 5월 14일 제22차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170여일 동안 활동을 계속하면서 권력구조소위와 기본권소위, 경제·사회·기타문제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980년 1월 16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어 1980년 1월 18일에는 대전시민회관에서 제2차 공청회를 가졌으며, 1월 19일에는 광주시민회관에서 제3차 공청회를, 1월 22일에는 부산시민회관에서 제4차 공청회를, 1월 23일에는 대구에서 제5차 공청회를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29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제6차 공청회를 열어 10명의 공술인으로부터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국회 개헌특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여섯 차례의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의 특색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모든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으며, "그동안 시행착오 속에서 터득한 역사의 교훈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 땅에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외침이었고, 권력구조 등의 문제도 모두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통령의 선출방법은 직

선제를 찬성하는 자가 많았으며, 임기는 4년에 1차연임만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한 공술인 중에는 내각책임제에 호감을 가지면서도 우리의 여건상 대통령중심제를 지지하였고, 순수한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국회 구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공술인들이 권한강화를 주장했는데 대부분이 임기 4년의 단원제를 주장했다.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해서는 행정단위별 소선거구제 주장이 우세를 보였으며, 국회 국정감사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하면서도 과거의 폐단은 없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그 실시범위와 시기 등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보여 서울·부산 등 대도시부터 먼저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인 반면 시·군·구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은 적었다.

이렇게 1979년 11월 26일 제103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제1차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작업에 착수하여 각 지역공청회 및 정당시안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무리지어가던 과정에서 국내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18일 새벽 1시를 기해 계엄포고 제10호 발표로 모든 정치활동이 중지됨으로써 1980년 5월 14일 제2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헌법전문을 제외한 개헌초안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참고문헌

《격랑의 34년 한국국회》李鎬賑

《국회관계법규집》

《국회법해설》

《국회사》(제헌~제10대국회)

《국회사무처38년사》

《국회선례집》1996년도

《국회회의록》(제헌~제15대,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회의록)

《국회회의록작성편람》

《대한민국의정사》

《동아연감》1970~1980년도

《속기계》(창간호~제34호)

《속기개관》

《속기총람》

《위원회편람》

《의회대사전》

《합동연감》1970~1980년도

제4장 시대적 전환기에 처한 속기계(장미경)

제1절 정치적 혼란기와 속기계의 대응

1. 속기사의 강제해직

1980년은 그 어느 해보다 격변과 충격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5.17을 분수령으로 정치의 滿開와 정치의 零點時代를 겪었고,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

1979년 10.26과 12.12사태로 인해 1人 장기집권이 끝나면서 民主化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희망속에 출발했던 80년의 정국은 글자 그대로 '안개정국'이었다. 1980년 2월 29일 尹潁善 前大統領과 金大中 등 維新體制에 항거했던 재야인사들의 復權措置를 기화로 전국은 정치열풍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정치열풍은 학원가의 시위, 노사분규 등으로 이어져 급기야 사회 전체가 극도의 혼란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이 거듭되자 5월17일 24시를 기해 非常戒嚴全國擴大措置가 취해짐과 동시에 정치활동이 전면 중지되었고, 이 때부터 이른바 정치의 大恐慌이 시작되었다.

5.17비상계엄조치가 내려진 다음날 光州에서는 계엄군과의 마찰로 유혈사태가 유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개혁주도세력이 표면으로 등장, 곧바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가 발족되었다.

한편 국회는 1979년 11월 26일자 與野 同數인 45인의 憲法改正審議特別委員會(위원장 金澤壽)를 구성하고 1980년초부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1월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첫 공청회를 가진 후 1월 29일까지 대전·광주·부산·대구 등지에서 6차에 걸친 공청회를 끝낸 뒤 곧바로 권력구조·기본권·경제사회 및 기타 등 3개 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헌법시안작성에 착수하였다.

4개월여에 걸친 활동 끝에 特委는 5월 15일 국민직선, 임기 4년, 1차중임의 대통령중심제를 골격으로 하는 전문 121조 부칙7조의 國會憲法改正案 작성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5.17조치로 인해 일체의 정치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特委 역시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참고로 특위의 구성배경을 담고 있는 1차 회의록과 중요 공청회 일부를 소개한다."憲法改正審議特別委員會가 과거에는 없었던 合議制로서 구성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로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요, 이것을 온 국민이 바랐던 소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동시에.....중략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憲政은 불과 31년입니다. 이 짧은 憲政의 연륜이 흐르는 동안에 이 나라의 헌법은 일곱 차례 改正이 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연륜 동안에 많이 헌법에 손질을 했다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우리 들로서는 명예스럽지 못한 과거가 아니었느냐 하는 自省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헌법헌법에 있어서는 첫째로 국민의 基本權이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미흡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憲法에서는 이러한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미흡하게 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서 국민의 基本權伸張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국민의 정치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통제하에 있고 국민과 위화감이나 그 어떠한 거리감이 없는 권력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록-공청회)

1979년 10·26 사건으로 당시 국무총리직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崔圭夏대통령은 다음해인 1980년 8월 16일 신군부 세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야하게 된다. 최규하대통령의 하야 이후 統一主體國民會議는 제11대 대통령으로 全斗煥 國保委常任委員長을 선출했고, 이어서 정부는 개헌심의위원회가 성안한 대통령임기 7년 단임과 間選制에 의한 대통령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 10월 22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압도적인 지지율로 확정, 10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의 확정으로 기존의 정당들은 해산되었다. 제10대 국회도 제105회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으며, 대신 국회의 권한을 대행할 기구로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가 확대 개편된 國家保衛立法會議가 10월 29일 발족되었다.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제11대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당초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구로 설치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는 救國이라는 명분하에 全斗煥상임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난제들의 해결을 위한 각종 단안과 조치들을 내리기 시작했으며, 뒤이어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는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인 개혁조치가 단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공직사회가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광범위하게 정화작업이 단행되었으며, 국회 역시 이같은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國家保衛立法會議事務處라는 이름으로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시대의 전환기에서 인사행정·관리운영·기구 등 모든 면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게 된 국회사무처는 10월과 11월 일부 사무처직원을 강제면직시켰다.

속기과 역시 이같은 영향을 받아 당 협회의 金鎭基 지도위원 (당시 건설위행정관), 鄭源道 부회장 (당시 자료편찬과 사료담당관), 安仁榮 이사 (당시 속기과장), 韓鍾烈회원, 徐萬福회원, 高隆繁회원, 高錫光회원, 金京中 회원, 金銀淑회원 등 9명의 회원들이 강제해직당하였다.

현직을 떠나면서 鄭源道 부회장은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중략.....

이러한 변동의 소용돌이는 우리 협회 운영에까지도 밀려와 대망의 80년대에는 여러모로 더욱 熱과 誠을 다해 보고자 했던 노력의 마음가짐에 아무런 결실도 없는 아쉬운 한해가 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協會 창립이래 노고를 아까지 않았던 몇몇 회원과 함께 봉직하던 일터를 떠나게 되어 그로 인한 착잡함과 서운한 마음 그지 없으나 유능한 젊은 분들과 임무를 교대케 된 것을 한편 다행한 일로 자위하는 바입니다。」라고 ○○○를 통해 밝혔다.

2. 10년만에 재개된 전국 속기경기대회

제5공화국의 출범과 그에 이어진 정비작업의 해였던 1981년은 유신체제 등 구체제의 철저한 청산 속에 새질서를 여는 정치구도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제5공화국은 民主主義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라는 4대 國政指標를 내세워 국경전반에 걸쳐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大韓速記協會도 朴權欽 의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朴權欽 회장은 한때 速記人으로 활동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여 속기의 발전과 속기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속기인을 회장으로 맞이하는 협회로서는 기쁨과 기대가 컸었다.

새시대에 그것도 속기인을 회장으로 맞은 협회는 사뭇 활기에 넘쳐 있었다. 1971년 제2회 전국속기경기대회를 끝으로 중단됐던 전국속기경기대회(3회)를 10년만에 다시 개최하였고, 속기인 상호간의 연락과 유대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속기인주소록》을 발간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공식 이사장배정탈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성취의욕을 드높였다.

특히 당시 매스컴의 각광을 많이 받았던 제3회 全國速記競技大會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1981년 10월 9일,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전국적으로 속기에 가장 자신이 있다는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이날의 경기는 정확도 부문(1분당 320자)과 속도 부문(1분당 400자)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정확도 부문에서는 議會式的 趙正 회원이 정확도 99.4%로 1등을 차지하였고, 속도부문 역시 議會式的 李蓮姬 회원이 정확도 90%로 1등을 차지하였다.

제3회 속기경기대회는 출제상의 문제점과 채점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몇 가지 개선, 보완해야 할 소지를 다소 안고 있었지만 사람의 속기능력 한도측정의 일환으로 속도 부문의 경기종목을 추가 실시함으로써 현존 속기술의 능력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을 거둔 대회로 평가되었다.

또한 제3회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1회(1970. 5. 17)와 제2회(1971. 8. 31) 대회 때보다 수상자들의 기록이 월등히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속기의 능력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게 음지에서 묵묵히, 꾸준히 성장되어 왔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때부터 점차 다가오는 컴퓨터시대에 대비하여 속기의 기계화, 컴퓨터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 대회는 1981년 10월 10일 KBS TV 2. '상쾌한 아침입니다'라는 대담프로와 81년 10월 14일 KBS 제2 라디오 '아침의 로터리'라는 프로에 소개되어 당시 일반인들에게 '속기'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도 한몫 하였다.

제3회 전국속기경기대회 수상현황(수상부문중심)

3. 속기사자격검정업무 정부로 이관

1969년 大韓速記協會가 발족된 이래 속기사자격검정업무는 본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기능은 速記人의 자질향상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한 바 매우 컸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속기사자격검정업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1969년 5월 1일 제정된 資格審査 및 檢定規定附則 제1조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5년 이상 속기실무에 종사한 자 중 資格審査委員會의 심사를 거쳐서 152명에게 1급자격을 경과조치로서 인정한 다음 1970년 5월 17일 제1회 전국속기사자격시험을 시작으로 1982년에 이르기까지 20회에 걸쳐 속기사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동안 협회는 국어 속기사 668명, 영어 속기사 167명을 합격시켜 속기인의 저변확대와 속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던 중 韓國技術檢定公團이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기술자격에 관한 업무를 勞動部長官이 일괄관리하도록 하고, 기술자격검정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술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1년 12월 31일 國家技術資格法의 개정과 1982년 4월 29일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 개정으로 그동안 대한속기협회에서 시행해 왔던 자격검정업무는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에 이관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속기사자격검정시험은 1983년 12월에 개정된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위탁에 의해 大韓商工會議所 주관으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의 광역시에서 지금까지 동시 시행되고 있다.

한편 협회는 1997년 3월27일자로 資格基本法,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 國家技術資格法中改正法律이 공포됨에 따라 민간전문기관이 자격검정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속기사자격검정업무를 당 협회로 이관해 올 것을 검토중에 있다.

4. 협회, 인터스테노 가입

대한민국의 속기계를 대표하고 있는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는 1983년 7월 21일 인터스테노(大學)에 National Group으로 정식 가입했다.

INTERSTENO(International Federation for Stenography and Typewriting)란 國際速記打字聯盟으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UNESCO에 가입된 민간단체로서 UN헌장정신에 따라 속기, 타자분야에 관계되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 관한 연구보고를 행함과 동시에 전세계 속기인의 결속과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와 속기인의 권익신장을 강구하는 국제기구이다.

회장직은 총회가 열리는 나라에서 맡고 있으며, 1887년 런던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진 이래 1997년 현재까지 제41회의 총회가 열렸고, 중앙위원회는 매년, 총회는 2년에 한번씩 열리

고 있는데 총회시마다 속기 및 타자의 국제대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협회는 동 국제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1980년부터 인터스테노 사무국 및 임원을 비롯하여 미국·일본 등 각국의 속기계와 서신연락 등으로 한국의 가입문제를 교섭하여 온 결과 1982년 8월 인터스테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의 가입안을 제35차 총회에서 제안할 것을 滿場一致로 결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후 1983년 3월 동 연맹 조직위원회로부터 총회 참석초청장과 프로그램을 받아 1983년 7월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한 제35차 총회부터 참석하게 되었다.

대한속기협회가 인터스테노에 가입한 목적은 첫째, 세계 24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同 국제민간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다수 회원국간에 전문분야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우리 나라의 속기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둘째, 동 기구의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세째, 동구권 국가를 포함한 회원국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민간외교활동의 일익을 담당하여 속기인으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데에 있었다.

1998년 현재 우리 나라는 1983년 가입 이후 7차례에 걸쳐 참석하였다.

5. 속기업무용어집 발간

1) 速記業務用語集 발간의 배경과 목적

현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격변의 시대로 표현되고 있다. 이같은 현대사회는 모든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생소한 낱말과 專門用語·新造語들이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용어들은 새로운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현대인들은 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48년 5월 31일 制憲國會가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 국회의회의록에 나타난 용어들을 보면 代를 거듭할수록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방 이후 6.25사변을 전후한 국회의회의 과정에서 사용되던 용어들이 현재도 사용되는가 하면 그 시대상황에 따라 사용빈도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변천에 따른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속기사들은 날로 전문화·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각종 용어를 헤득하기 위하여 깊은 연구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했고, 이것이 협회가 《속기업무용어집》을 발간하게 된 배경이다. 속기사들이 실무를 함에 있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회의록이 발간될 수 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變轉하는 각 용어의 의미와 그 안에 함축된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속기사로서는 필수조건이기에 그간 수집해 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자기지식화해 놓아야 할 각종 시사용어나 전문용어들을 모아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넓은 시야와 올바른 시각을 갖추어 급변하는 현실에 보다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속기사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 해야 한다는 것이 《속기업무용어집》 발간의 목적이다.

2) 速記業務用語集의 발간과정

평소 국회 속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회의석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문용어나 시사용어들을 수집, 정리된 《專門用語集》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국회 속기사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를 기화로 자체교육과 병행해서 《속기업무용어집》의 발간작업이 1986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발간작업의 기획과정에는 속기과의 관리직이 전부 참가하다시피 하였다. 수차에 걸친 토론회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면서 힘쓴 결과 87년도 중반에 와서야 이 책의 완성을 보았다.

자료수집정리방법은 그전부터 용어수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의가 끝날 때마다 각자 새로운 용어들을 수집해 놓은 것 게다가 1986년 여름 속기과 자체교육에서 사용된 교육용 자료와 회의석상에서 새로 나온 단어들을 모아서 카드화한 다음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식이었다.

수집과정에서 담당자들은 각 행정부처나 전문기관에 최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부득이 빼야 하는 아쉬운 점도 많았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東亞日報社에서 나온 《現代時事用語辭典》과 每日經濟新聞에서 나온 《經濟新語辭典》 日本辭典도 많이 활용하였다.

정리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앞으로 실무를 하는데 있어 활용될 만한 것들, 알면서도 혼동되기 쉬운 용어들, 한자표기상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능한한 많이 살리고 매번 토론을 하면서 용어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발행된 《속기업무용어집》은 예산과 시간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수준의 업무용어집은 못되었지만 협회 발족 후 처음으로 속기사들에게 필요한 백과사전식 업무용어집의 발간이라는 점에서 한국속기50년사의 한장으로 꼽을 수 있다.

제2절 국정감사 부활에 따른 기록업무의 활성화

1. 도입·폐지·부활과정 거친 국정감사제도

國政監査는 국정의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立法活動과 豫算審議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사·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직발·시정함으로써 憲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권한인 立法權 豫算審議權 및 國政統制權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제헌국회 때부터 國政監·調査制度를 채택하였다. 특히 제헌헌법 제43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정전반에 걸친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국정감사는 제헌국회 때부터 관련법규에 따라 제8대국회 때까지 해마다 실시해오다가 유신체제하인 1973년 2월 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國政監査法廢止法律과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廢止法律이 의결, 공포됨으로써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가 그로부터 16년만인 1988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2. 시대별 국정감사 개요

1) 制憲國會부터 第8代國會까지의 國政監査

제헌국회 때부터 제8대국회 때까지의 국정감사는 一般國政監査와 特別國政監査 2종류로 대별된다. 일반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감사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1회씩, 주로 본회의에 대한 심사자료의 획득을 목적으로 정기국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것을 예로 하였고, 특별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의결한 특정한 부문에 한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로 國政監査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일반국정감사와 특별국정감사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범위, 감사반의 구성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감사의 실제방법과 그 처리과정은 별다른 상위점이 없었다.

당시의 국정감사활동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정감사는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실시될 수 있었으며,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면 국회는 감사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일반국정감사는 의원 전원을 班으로 나누어서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것이 특징이었고, 하였는데 흔히 전원반, 중앙반(1.2반등), 지방반(1.2반등) 등으로 편성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특별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다.

실제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출장감사활동이 주로 행해졌으며, 감사활동은 보고의 청취, 자료제출의 요구, 질문·답변, 증인·참고인에 의한 증언의 청취, 기록의 검토 및 감정, 현장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같은 방법은 현재의 감사방법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감사활동에는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등이 보조요원으로 참가하였고, 의원비서관도 동행하였다.

제헌국회~제8대국회까지의 국정감사실시상황

2) 第13代國會부터 第15代까지는 國會(1997년 12월 현재까지)

국정감사제도는 1972년 국정감사 도중 維新宣布로 중단되었다가 1988년 2월 25일 헌법개정으로 무려 16년만에 부활되어 현재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 제도는 명실상부하게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제129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法律과 국회규칙에 근거해 매년 국회가 주체가 되고 대상기관은 각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선정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할 수 있는 '본회의승인대상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정감사의 시기는 매년 정기국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행하며, 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대상현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새로이 부활, 시행된 국정감사제도는 제헌국회 때와는 달리 특별국정감사는 시행되지 않고, 일반국정감사의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감사방법은 전과 비슷하였다.

우선 감사반의 편성은 상임위원회 전원반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감사를 할 적에는 1반, 2반으로 나뉘어 편성되기도 한다.

질차는 먼저 被監查機關의 보고서항을 청취한 다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질문·답변을 벌인 다음 증인·참고인에 대한 訊問과 진술을 청취하게 되어있다. 그런 다음에 감정인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문서 또는 현장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사실확인 및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모든 절차는 非公開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13대국회부터 제15대국회까지(1997년 12월현재까지)의 국정감사실시현황

※ A :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B: 본회의가 승인한 기관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實速記時間과 原稿枚數로 통계를 산출함

3. 歷代國會의 주요 국정감사 활동과 속기업무

1) 1988년도 국정감사

1988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 法律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 집회기일 다음날부터 실시하지 못하고, 제144회국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최관계로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988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앙과 지방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실시하였다.

이 해의 국정감사는 16년만에 부활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20일간의 실시간중 16개 상임위원회별로 무려 564개 기관을 피감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三淸教育隊의 사망자 등 前시대의 비리 등이 수없이 지적·발견되어 행정부의 독선·탈법·부정부패·편의주의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새삼 절감케 하였다.

국회 속기과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속기사 4명씩을 배치하여 기록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배치된 속기사 거의가 처음 國政監查業務를 수행하는 관계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위원회에 따라 연일 밤늦게까지 회의가 계속되어 무리한 강행군을 하는 곳도 있었지만 속기사들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좌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감사결과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량이 심한 불균등 현상을 보여 이는 나중에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2) 1990년도 국정감사

1990년도의 국회는 연초 갑작스레 이루어진 민정.민주.공화 3당의 합당으로인해 파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제149회, 제150회 등 두 번에 걸친 임시국회 운영이 변칙으로 이루어지면서 의회정치는 이후 11월까지 실종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여·야는 계속 內閣制改憲과 地方自治制問題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151회 정기국회는 야당의원들의 등원거부로 70일을 허송세월한 뒤 불과 30일만에 국정감사, 새해예산안 등을 줄속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도 국정감사는 제151회국회(정기회) 제10차본회의에서 감사준비일정과 교섭단체간 합의에 의한 본회의 일정조정 등을 이유로 각각 그 실시시기를 변경기로 의결함에 따라 1990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중앙과 지방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일간 실시하였는데, 촉박한 일정 탓으로 자연 1990년도의 국정감사는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갔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한편 국정감사시 동행하여 기록업무를 수행하던 속기사들은 좀더 빠른 회의록 발간을 위하여 89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현장에서 피감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PC로 1차 번문을 시도하였다.

3) 1995년도 국정감사

1995년도 국정감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계속되었다.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161개 기관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175개 기관을 합하여 총 336개 기관이었으며, 실제 국정감사일수는 감사기간중 공휴일 3일을 제외한 17일간이었는데 여야 4당은 비교적 성실하고 조용하게 국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1995년도 국정감사는 그 동안의 감사가 統一外務委員會 해외공관 감사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발간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의정사상 최초로 속기사가 해외공관 국정감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해외감사도 국정감사의 일종이므로 마땅히 회의록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예산문제 때문에 속기사가 수행할 수 없어서 언론으로부터 간간히 속기사 없는 海外國監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던 차에 1995년부터 해외감사 활동을 속기사들이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전례에 없었던 획기적인 일로서 議政文化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은 민주적인 의회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그 동안의 해외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기록을 통해 밝혀져 국민의 알권리 제공이라든가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1995년도 海外國政監査는 統一外務委員會 전원이 美洲班, 亞洲班, 歐洲班 등 세 반으로 편성되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10일 동안 해외공관에 대한 직접 감사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국회 속기과에서는 미주반에 安基喆회원, 아주반에 孫淑子회원, 구주반에 簡燦基회원 등 3명의 속기사가 동반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제3절 의회활동과 속기업무

1. 국정조사 활동

국정조사제도는 국회가 국정실태를 파악하여 입법자료를 확보하고 정부시책을 감시, 비판하며 정부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정감사가 그 대상을 국정 전반이나 특정분야를 포괄적으로 삼는 데 비하여 국정조사는 의혹이 있거나 비위가 노출된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와 구분된다.

국회가 갖고있는 국정조사권은 制憲憲法에선 국정전반에 대한 근거규정만 두었을 뿐 직접적인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제헌국회 초기부터 국정조사권은 법적 뒷받침 없이 국회의 의결로써 발동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1948년 10월 2일 공포된 制定國會法은 국회가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고, 국회가 조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정부를 비롯한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며 이밖에 국회가 증언 등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도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국정심사 또는 조사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국회가 국정심사와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정확한 증거의 수집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기 위하여 제3대국회인 1954년 9월 23일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法律을 제정함에 따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의 출석, 서류의 제출 또는 감정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국가기관도 이에 응하도록 하여 증거수집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고,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는 선서의 의무를 지워 성실한 증언 또는 감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간의 내용변경이 있었을 뿐 종래의 國政調查制度가 실시되어 오다가 1973년 2월 7일 비상국무회의에서의 제15차 개정국회법에서 국정조사의 근거로 삼았던 규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국정조사와 안건심의상 필요한 증언감정절차법인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法律이 폐지됨에 따라 종래의 국정조사권의 법적 근거는 모두 폐지되었다.

그러던 중 제9대국회 초부터 법적으로는 국정조사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그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비롯하여 재정에 관한 권한과 국정통제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므로 법률상 명문규정의 유무를 떠나 당연히 국회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과 야당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1975년 7월 26일 제18차 개정국회법에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이어서 1975년 11월 29일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法律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다시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이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法律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법률의 체계와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계수한 형태의 것이었다.

그 후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헌법에서 국회의 國政調查權을 명문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1981년 1월 29일 제20차 개정국회법에서는 국정조사의 발의, 의결, 위원회구성,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조

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게 되었다.

국정조사의 실시방법은 일단 본회의에서 동의, 긴급동의 또는 특별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의 형태로 발의·의결되었으며, 조사기관으로는 數人の 의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거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는데 조사위원회는 ‘...事件真相調查特別委員會’ ‘...調查特別委員會’ ‘...調查處理特別委員會’ 등의 명칭을 붙였다.

다음으로 실제 국정조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조사기간을 미리 의결로 정하기도 하고, 미리 정함이 없이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조사활동은 현지출장조사, 보고의 청취, 증인·참고인의 증언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의 요구, 기록의 검토·검증 및 감정, 현장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조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조사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사활동이 종료된 경우 조사반 또는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사보고를 행하였으며, 본회의는 보고를 청취하거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질의·토론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정부로 보고서를 이송하였다.

국정조사시에도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國會 速記課에서 기록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속기사들은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함께 회의보조요원으로 참가하였다.

2. 역대 국회의 주요 국정조사활동과 속기업무

1) 制憲國會부터 第4代까지의 國會

制憲國會에서는 首都廳拷問致死事件, 檀民黨事件, 農林 및 商工部長官의 비행, 반민족행위자, 국회내빠라살포사건배후관계, 대한정치공작대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두 15건에 대하여 국정조사권 발동이 있었다.

第2代國會에서는 국민방위군 의혹사건, 거창사건, 국회자숙에 관한조사, 국회의원 필화사건, 국회의원 소환설 진상, 보결선거 실시상황, 포로실정, 식량사정, 국회의원 국제공산당 관련사건, 행운호 침몰사건, 인권유린, 산청지구 치안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두 41건의 국정조사가 있었다.

第3代國會에서는 張副統領被襲事件, 외국도입 진상조사, 대구매일신보사피습사건, 국립박물관국보관리상황, 불은문서배포사건, 金聖柱事件, 대구시부통령선거개표지연진상, 시계밀수사건, 晋州市長선거부정사건 등 모두 65건의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第4代國會에서는 탈모비누부정사건, 범칙물자처분, 금융오직사건, 양민학살사건, 마산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두 16건의 국정조사 의결이 있었다.

2) 第5代國會

兩院制로 운영된 제5대국회에서는 民議院에서 태풍피해, 부정정치자금유출설, 부정선거조사, 노동조합분규, 不正蓄財特別處理法에 대한 經濟團體의 聲明書糾明, 창령난동사건, 중석수출계약진상 등 11건의 국정조사의결과 14회의 조사보고가 있었으며, 참의원에서 경북노동조합분규, 군관계부정, 대한주택영단 및 문교서적주식회사의 운영상황 등 5회의 국정조사의결과 조사보고가 있었다.

3) 第6代國會~第12代國會

5.16혁명 후 國家再建最高會議의 시대를 거쳐 새로이 출발한 第6代國會에서는 관광객납북사건,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사건, 일본자금사전수수설, 무장군인의 범원난입 및 학생사형사건, 지리산도벌사건, 의원 및 기자테러사건, 특정재벌밀수사건, 정치테러사건 등 모두 1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

第7代國會에서는 6.8선거부정, 언론탄압 및 학생데모사건, 국회의원검직사실유무, 한국알미늄회사의 자금부정유출, 괴벽보사건, 의원피습사건, 남영호침몰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두 8건의 국정조사의결과 2회의 조사보고가 있었다.

第8代國會에서는 司法部波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 決議案과 입법부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고 實尾島 난동사건진상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의결과 조사보고가 있었다.

그 후 제9대국회, 제10대국회, 제11대국회, 제12대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못하였다.

4) 第13代國會~第15代國會(1997년 12월현재까지)

第13代國會에서는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光州問題真相調查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18광주민중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3개안만이 처리되었고, 朝鮮大生李哲揆君變死事件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

第14代國會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12.12사태, 울곡사업 비리, 평화의 댐 건설의혹 등 5.6共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요구가 여론의 지지를 얻자 민자당과 민주당이 총론에서 합의함으로써 14대 국회 들어 처음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

상무대공사대금일부정치자금유입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은 세부일정을 위한 논란을 거듭하다가 3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시행하였고, 공직자세금부정사건과 삼풍백화점붕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

第15代國會에서는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야당으로부터 요구되었으나 조사 범위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시한을 마감했으며, 1997년 3월 45일간의 일정으로 한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

다음은 제2대국회의 거창사건과 제14대국회의 12·12사태 속기록 일부이다.

① 居昌事件調查報告에 대한 처리의 건회의록

「○徐二煥의원 : 지난 번 居昌事件 여기에 대한 조사는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에 대해서 아무런 처리가 아직 규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바이며, 또는 국제적으로도 알려져있느니만치 그 처리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보는 까닭에, 또 더 이상 시일을 지연할 것 같으면 자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되는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긴급하게 上程을 해가지고 議事日程을 변경하기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徐二煥의원 : 그러면 이 居昌事件調查處理에 關한.....

○李圭甲의원 : (議席에서) 올라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徐二煥의원 : 이 居昌事件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보답도 거기에 속기사가 따라갔었음에 그 속기한 것을 먼저 읽고서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報告다했소」 하는이 있음)

(「報告가아니고 報告에 對한 處理요」 하는이 있음)

○副議長(曹奉岩) 보고는 지난번에 다 받았습니다.

○徐二煥의원 (계속) 보고가 다 끝났으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처리에 관해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며 그 종합된 의견이 大體歸一케 된 까닭에 그것을 여러분의 의견에 의해가지고서 본의원이 여러분의 의견으로서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해두는 것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는 생각입니다.」

(제2대국회 제10회 국회 76차 본회의 회의록에서)

② 12·12사태 및 율곡사업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회의록

「○姜昌成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상

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일부 학자들은 12.12사태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 許議員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12.12사태는 세계에서 가장 긴 6개월간에 걸친 5단계 군사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1단계는 10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쿠데타 음모단계를 제1단계로 한다. 12.12사태는 軍權을 장악하는 단계다.

그 다음에 5월 15일 중앙정보부장을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검무한 것은 民權을, 行政權을 장악하는 단계다.

제4단계는 5.17과 5.18을 통해서 군인이 정치를 장악하는데 있어서 명분을 세우는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 제5단계는 80년 5월 30일을 통해서 國保委를 설치함으로써 6개월간에 걸친 군사쿠데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본인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許議員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許三守 12.12사태는 어떤 정치적인 시각이나 의미를 가지면 여러 가지 측면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는 12.12사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사실 깊이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참여했던 행위 자체는 그 행위하고는 사실 별개한 하나의 內亂陰謀事件에 대한 종결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쪽 순수한 軍生活을 했기 때문에 정치의 政字도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만약에 어떤 음모가 있다면 저는 목숨을 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12.12軍士쿠데타事件및栗谷事業國政調查國防委員會 제8차 회의록에서)

3. IPU(國際議員聯盟) 제70차서울총회



▶ 제70차 IPU서울총회 개막식(1983.10.4)
1983년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IPU제70차서울총회에는 북한의 끈질긴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68개 회원국 대표 793명과 13개 옵서버기구대표 19명 등 총 897인이 참석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 회의가 우리 역사상 최초 최대규모임과 동시에 IPU 사상 가장 뜻깊은 회의가 되게 함으로써 국위선양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세계 각국의회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결정적인 막후지원을 하였다.

제70차 IPU대회는 3차 투표까지 거쳐 서울을 제70차총회의 개최지로 결정한 제69차 로마총회에서부터 집요한 저지 공작을 펴온 북한에 의해 총회 개최 직전까지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한 방해공작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몽고를 비롯한 일부 공산권 국가들이 서울총회 참석의사를 제네바에 있는 IPU사무국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표시,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들까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총회에 앞서 발생한 KAL기 격추사건으로 동서 양 진영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됨으로써 공산권의 참석은 무산되었다.

국회는 IPU제70차총회 개최의 주체로서 IPU 한국의원단이사회의장을 총회준비위원장으로 하는 IPU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국회사무처는 IPU총회준비위원회사무처(실시단)를 맡아 사무총장의 진두 지휘 아래 전직원을 총동원하여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제1사무차장 밑에 구성된 부서중 의사부에 속해 있던 국회 속기과는 연구위원회 및 비공식 그룹지원반 일을 맡음에 따라 당시 국회 속기과에 근무하던 협회회원 10여명이 IPU총회 개막 전부터 참가회원 관리 등 준비업무를 비롯하여 각국 회의의 준비 집행 보조, 연설시간 기록, 연설등록 발언자등록보조, 회의안건준비 및 배부보조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다.

4. 청문회 활동

1) 청문회 제도의 역사적 의의

1988년 2월 25일 盧泰愚 제13대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출범한 제6공화국은 숙명적으로 큰 숙제를 안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민주화의 진전이었다.

民主化는 사실 6共의 출범 전, 그러니까 1987년 6월에 있었던 국민대항쟁과 6.29선언 등으로 이미 국민적 합의에 이른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한 정부는 그를 거스릴 힘은 물론 의 사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1987년 6월, 도도하게 밀려든 '민중의 힘'에 의해 권위주의 독재는 종말로 치달았고, 그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民意改憲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새헌법에 맞춰 구성된 정부는 민주화라는 민의를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 민주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구시대 비리와 비행의 청산, 즉 5공단절에 대한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청문회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聽聞會制度는 제13대국회법(1988년 6월15일) 전문 개정시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위원회로서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앞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계자나 이해관계인, 기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 출석시켜 증언.진술토록 하여 청취된 증거를 채택하며 불출석.증언거부.허위증언을 했을 경우 처벌을 함으로써 증언을 강제하여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國會法에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발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국회법제65조제1항, 국정감.조사법제10조제2항)

이같은 청문회제도는 1988년 11월 20일 당시 文教公報委員會가 1980년 言論人解職에 관한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聽聞會를 시작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國政調查權 발동, 언론사상 최초의 국정생중계라는 환경 속에서 진행된 '5共非理', '光州問題', '言論問題' 청문회로 온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1997년 2월에 실시된 韓寶聽聞會는 어떤 의미에서 대의정치시대를 직접민주주의시대로 되돌려 놓은 듯한 감을 들게 한 작품이었다.

그만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정적인 국회기능, 행정부의 시너로 비하되던 의사당의 이미지를 보다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부각시켜 놓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고,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88년에 시작된 청문회는 영원히 은폐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비리와 음모, 밀담들이 부분적으로나마 폭로되고, 密室政治를 公開政治로 유도, 대중의 정치참여를 드높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만한 것이었다.

더욱이 TV 생방송은 그 매체가 종래 정치권력의 장악하에 집권층의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달한다는 불명예를 털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도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켰다. TV가 매체의 의제와 일반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중의 의제를 동시에 일치시킴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도 얻었다.

그와 동시에 청문회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연일 밤을 새워가며 현장에서 시종일관 기록업무를 담당하던 국회 속기사의 모습도 TV로 전국에 생중계되어 당시 속기사의 위상을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속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던 일반인들에게 '속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논리정연한 신문, 충실한 자료분석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몇몇 의원들과 함께 속기사는 청문회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한 일꾼으로 스타 못지 않은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2) 회의록을 통해 본 주요 청문회



▶ 국회의사당 145호실에서 열리고 있는 5공비리청문회(1988.11.7)

(1) 日海財團聽聞會

11월 4일부터 닷새동안 진행된 일해재단청문회(5共非理特委)는 그 자체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것도 TV생중계라는 독특한 조건하에서 펼쳐진 시금석과 같은 것이었다.

특히 국가안전기획부장, 대통령경호실장을 지낸 張世東씨, 역시 경호실장을 지낸 安賢泰씨, 全斗煥 前大統領의 출신학

교인 대구공고 출신으로 체신부장관을 지낸 崔順達씨, 이 나라 재계의 상징으로 불리는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정.재계의 내로라하는 거물급 인물들이 처음으로 생중계 카메라 앞에 얼굴을 내미는 계기가 된 일해청문회는 재단설립 및 운영과정의 비리를 어느 정도 국민 앞에 가시화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日海財團聽聞會의 직접적인 성과로는, 첫째 기금모금의 강제성과, 둘째 청와대의 기금관계 및 운영주도, 셋째 전두환씨의 재단 사저화, 넷째 정경유착의 분위기, 다섯째 청와대.경호실.보안사 등 권력기관의 전횡을 국민 앞에 여과없이 내비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光州民主化運動聽聞會

1988년 11월 18일, 당시 金大中 平民黨總裁와 李燾性 전 계엄사령관을 출석시켜 1차 청문회를 시작한 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5.18光州特委)는 이듬해인 1989년 2월 24일까지 제18차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였다.

金大中 평민당총재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은 광주항쟁과 관련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조작을 폭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민정당의원들은 김씨의 80년 봄 당시 학원 강연을 학생선동이라고 몰아세우는 등 韓民統과 관련한 사상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11월 30일에 있는 鄭昇和·鄭東年·鄭基用·沈載哲·金宗培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12.12의 불법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군 사조직인 하나회에 대해서 성토를 하였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는 광주항쟁 당시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광주진상규명에는 지극히 미흡한 내용으로 막을 내려야 했다.

다음은 광주 민주화운동청문회 관련 회의록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위원장 : 文東煥 ()

변해가는 세계 안에서 우리 한국 정치도 국민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날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청산하고 새 내일을 맞이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래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 무겁게 눌러 있던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새 民主化의 시대, 통일의 시대로 전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大

和解를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심층에서의 대화해가 이룩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룩되자면 우리 모두가 사실을 다 버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 앞에 밝히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심껏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國會가, 그리고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업무를 수행, 완성할 수 있도록 피차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43회-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제2차회의록에서)

“○李海瓚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일 國회가 개원이 되어서 계엄을 해제를 했더라면 광주와 같은 그 처참한 학살은 우리 역사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학생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戒嚴解除를 요구했습니다. 오로지 하나 소수의 政治軍部만이 계엄해제를 거부했습니다.

()

광주에서 21일부터 발표가 이루어졌고, 처참한 살상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계엄이 해제가 되었으면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계엄을 해제를 못하도록 戒嚴軍이 憲法機關을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참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증인 李燾性 전적으로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1개 말단의 병사가 그 때 당시 한 순간의 잘못이 전체의 일같이 말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李海瓚위원 당시에 국회에는 여러 대의 탱크를 진주해 놓았었습니다. 약 300여명의 의원과 보좌관과 보도진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군인들이 막았습니다. 그것을 증언해 줄 증인들은 이 현장에 10대의원으로서 많이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가 國憲을 문란하는 엄청난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5.17계엄확대조치가 “사실상의 軍部の 쿠데타였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증인 李燾性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李海瓚위원 바로 증인께서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증인 李燾性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李海瓚위원 그러면 증인이 당시 정황을 이끌어가는 實勢였습니까?

○증인 李燾性 실세, 비실세 그와 같은 문제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44회-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제7차회의록에서)

(3) 言論聽聞會

1980년의 ‘언론학살’로 불리우는 언론인 900여명에 대한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조치에 대한 국회 문공위의 청문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두 5일간에 걸쳐 열렸다.

言論聽聞會에서는 1980년 여름 언론인 대량해직이 신군부에 대한 저항을 극소화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 예로써 첫째, 언론인 숙정작업이 保安司 權正達 정보차장과 그의 지시를 받은 李相宰 준위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졌고, 둘째 그 대상자는 개혁주도세력에 의한 기준과 언론사 자체의 판단으로 가려졌으며, 셋째 그같은 사정이 대외적으로는 언론사 자율에 의한 것처럼 치밀하게 위장된 사실 등이 밝혀졌다.

(4) 韓寶聽聞會

1997년 제183회 임시국회에서는 韓寶事件에 대한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7년 3월21일부터 5월4일까지 45일간의 국정조사기간중 21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 3개 기관에 대한 현장검증 및 15개 기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鄭泰守 총회장과 金賢哲씨 등을 비롯한 38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다.

韓寶特委는 한보철강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공장 건축사업, 코렉스공법 도입 등 각종 인허가문제, 한보그룹 거액대출 부도처리 및 사후수습과정문제, 한보그룹 대출금 유용 및 비자금 조성과 사용문제, 한보그룹과 관련한 부정비리, 권력 외압여부, 행정감독사항문제, 金賢哲씨의 전반적 국정개입의혹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펼쳤다.

한보특위도 청문회방식에 의해 TV로 생중계되었으며, 청문회에 쏠린 엄청난 국민적 관심에 비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었다. 특히 한보특혜 배후, 대선자금, 김현철씨 문제 등은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있고 증인들의 출석거부, 의원들의 질의태도, 의원들의 자료확보 어려움과 준비 소홀, 위증에 대한 처벌장치 미비 등 청문회의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 앞으로의 청문회가 진실규명의 장으로서 정착되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보의 부도과정과 배후, 김현철씨 국정·이권개입, 김현철씨 사법처리, 대선자금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유도한 것은 그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한보청문회 관련 회의록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崔洛道위원 ()

증인이 오늘 형무소에 가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어서 형무소에 가 있는 것입니까?

○증인 金澈鎬 저는 지금도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17년 2개월 형을 받을 만한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죄가 있다면 地下金融을 써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준 사람도 없고요. 은행에서 저렇게 난리를 떨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서 제가 담보로 맡겼던 刑事責任이 수반되는 1,121억원이나 되는 당좌수표 또는 토지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아마 채권단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고, 또 明星의 주력이 관광레저산업이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擔保社債制度를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저렇게 은행이 이율배반적으로 刑事問題에 있어서는 이것은 예금이다. 그러면 大法院에서는 사체로 판결을 했음에도 쉬쉬 뒤에 가가지고는 해결해 주고 왜 이렇게 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통탄할 일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치는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法治國家에서 자본주의 나라가 이럴 수가 있었느냐? 도대체 벌은 벌이고, 가령 제가 백보를 양보해서 횡령을 했다 그러면 횡령금에 대한 추후조치를 해가지고 횡령을 반환토록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내 재산을 사건날 때부터 사겠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빚진 사람이 자기 물건 팔아가지고 빚 갚겠다는데 빚을 못갚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죽겠는 거예요.

(제145회-非理調查特제28차회의록에서)

(당시 신문에 속기사와 관련된 기사내용과 속기사진 삽입)

5. 公聽會 活動

공청회제도는 制憲國會法에서 채택하여 제헌국회 이래 운영되어 왔으며, 국회법이 31차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제도 자체의 기본취지는 변동됨이 없었고, 운영절차상의 규정이 보완되어 왔다.

제헌국회법 제24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설정되는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중요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측의 의견이나 일반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청회 개최 대상안건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개정안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법·한일회담·통일관련문제 등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 민법, 상법, 병역관계 등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 노동관계법, 저작권법, 조세관계 등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공청회의 운영상황을 보면 총 97건에 대하여 120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역대국회의 공청회 개최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제2대 3건, 제3대 1건, 제4대 6건, 제5대 2건, 국가재건최고회의 1건, 제6대 9건, 제7대 4건, 제9대 1건, 제10대 1건, 제11대 7건, 제12대 1건, 제13대 20건, 제14대 27건, 제15대(1997년 12월말현재) 14건에 이르고 있는데, 갈수록 민의의 직접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무성한 것은 의회의 활성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공청회 개최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나 헌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토통일문제 등에 관한 공청회는 당해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공청회 회의록업무 역시 국회 속기과에서 담당하였다. 특정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속기과 전체가 돌아가며 담당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해당 속기담당계에서 기록업무를 수행하였다.

歷代國會 公聽會 개최상황(대별 및 안건별)

대 별	헌법개정안		법 률 안		중요정책		청 원		계	
	건수	회수	건수	회수	건수	회수	건수	회수	건수	회수
제 헌										
제2대	1	5	2	3					3	8
제3대			1	1					1	1
제4대	1	1	5	5					6	6
제5대			2	2					2	2
국가재건최고회의			1	1					1	1
제6대			6	6	3	5			9	11
제7대			4	4					4	4
제8대										
제9대					1	1			1	1
제10대	1	6							1	6
제11대			5	5	1	2	1	2	7	9
제12대			1	2					1	2
제13대			11	12	9	14			20	26
제14대			9	9	18	19			27	28
제15대			9	10	5	5			14	15
계	3	12	56	60	37	45	1	2	97	120

제4절 속기사 파견 회의업무

1. 大統領 年頭記者會見 속기



▶ 서울환도 직후 경무대 (현 청와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매주 하던 기자회견시 공보처에서는 국회속기사에게 속기를 의뢰하였다. 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두 번째가 김진기 국회속기사(1953.12.16)

1981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자 靑瓦臺에서는 대통령이 1월초에 내.외신 기자들을 청와대에 모아

놓고 그 해의 施政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때 청와대에서는 연두기자회견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좀더 신속히 배부하고자 국회 속기과에 속기사 파견의뢰를 해왔다.

국회에서는 10여명의 속기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여 속기업무를 수행케 했는데, 속기과에서는 실무에 능숙한 직원을 중심으로 파견하였다. 속기방법은 당시 속기사들이 전부 수필속기 방식이었으므로 좀더 빠른 기자회견문의 산출을 위하여 순서를 정해 1인당 1분씩 속기를 하고 번문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속기사 1명당 약 1분 가량의 속기를 하고 나서 번문을 하면 담당계장이 내용을 검토한 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원고를 넘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고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타자수에게 빨리 치게 하여 회견내용을 기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은 문민정부들어 중단되었다.

2.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속기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는 우리나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헌법 제92조)으로서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인 이상의 국.내외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발족 당시의 명칭은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였는데, 현재는 民主平和統一自問會議로 바뀌었으며, 평화통일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와 상임위원회를 두어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는 국회에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개최에 따른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속기사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오며 따라 국회 속기과에서는 2명의 속기사를 파견하였다.

때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속기사 없이 회의를 하고, 대신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보내오기도 하였는데, 이 때에는 속기계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며 속기록 작성을 하였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이 속기록 작성에 적극 협조한 국회사무처 속기과 직원을 표창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시 국회 속기과에서 속기사가 파견되지 않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회의록 작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韓·日議員聯盟 속기

韓·日議員聯盟은 韓·日관계의 발전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韓·日 양국의 국회의원들이 매년 상호 방문하여 회합하는 기구로서 1972년 5월 韓·日의원간친회로 발족하였다. 1975년에 韓·日의원연맹으로 개칭함으로써 그 기능이 확대, 개편되었다.

두 나라가 번갈아가면서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때마다 韓·日議員聯盟에서는 국회에 속기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국회 속기과에서는 담당계장과 속기사들을 파견, 회의에 대한 속기록 작성업무를 수행하였다.

韓·日議員聯盟의 회의는 총회 본회의와 안보외교, 경제, 사회문화, 법적지위 등 4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4개 상임위원회 중 안보외교위원회에서는 동북아정세와 韓·日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였고, 경제위원회에서는 주로 韓·日 양국간 무역의 균형적 확대추구 및 산업과학기술협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학술·문화·스포츠 등 인적·지적 교류의 증진에 중점을 두었고, 법적지위위원회에서는 在日韓國人の 법적·사회적 지위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조치와 在韓原爆被害者 및 사할린교포문제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주제로 하여 회의를 하였다.

속기업무는 총회 본회의시에 파견된 속기사 전체가 돌아가면서 10분씩 속기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에는 2명의 속기사가 상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번갈아가며 속기 업무에 임했다.

제5장 지방의회제도 실시와 속기계의 중흥

제 1절 지방화시대와 속기계

1. 地方議會의 구성

1990년 정기국회 회기말인 12월 15일 국회본회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 등 지자체관련 3개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된 地方自治制가 만 30년만에 부활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지방자치제법안은 1991년 상반기중에 지방의회선거를, 그리고 다음해인 1992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였는데, 특별시·직할시·도 등 광역지방의회 의원수를 866명, 시·군·구 등 기초지방의회 의원정수는 4,287명으로 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 기초의회의원선거가, 6월 20일에 시·도 광역의회의원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는데, 이 두 차례의 선거는 지방자치제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불거졌던 水西事件 등 정치권 관련 비리 때문에 국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치러진 것이 가장 큰 흠이었다. 하지만 30년만에 주민의 직접선거로 260개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개원되고, 시·도의회가 구성된 것은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地方化時代의 실질적인 개막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출범한 地方議會는 민주발전이라는 제도적 진전을 이룩한 것만으로도 값진 것이지만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규범을 일상생활 구조 속에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地方議會會議錄의 필요성과 作成方法

지방의회 회의록은 지방의회의 회의에서 의사의 진행상황을 회의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기록한 회의록이자 회의 경과 및 내용을 주민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문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회의록은 지방의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의 경과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증거서류가 된다.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의회사무국에서는 회의운영과 그에 따른 회의록 작성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회사무처 속기과의 협조로 회의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지방의회 회의록 작성방법도 국회 회의록 작성과 거의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국회 회의록은 의원의 발언 등 의사의 내용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는 동

시에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수, 의안의 제출 및 회부, 부의안건과 그 내용, 위원회의 보고서, 의원의 발언보충서, 서면질문과 답변서, 기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게재, 작성, 발간하여 국회의 會議公開原則에 따라 의원과 일반에게 배부한다.

이러한 회의록은 사실행위를 전제로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요소가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회의록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리고 회의록은 회의체에서 결정한 일정한 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현재시점에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속기변에 의한 회의록은 엄밀한 의미에서 속기사가 청취할 수 있는 범위의 것만을 기록한 것이므로 반드시 회의실체의 완전한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회의록 작성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회의 주체가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폐쇄적 단체의 회의록은 내부의 목적이 주가 되고, 개방적 단체의 회의록은 내부의 목적에다 외부의 목적이 추가된다. 내부의 목적은 회의체 구성원을 위해 장래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를 제공하고, 외부의 목적은 회의체 구성원 이외의 사람에게 회의내용을 공개, 회의내용에 대해 비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은 목적 아래 작성된 회의록은 앞으로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의사에 관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해결의 유력한 증거가 되며, 또 발언자가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연 발언을 신중히 하게 된다는 점에 效用價値가 있다고 하겠다.

3. 地方議會의 速記界 현황

1991년 4월 15일 전국 238개 시.군.구의회가 일제히 개원되면서 속기인의 활로가 넓어지게 됐다는 기대감으로 속기계는 사뭇 들뜬 분위기였다. 지방의회 회의록을 담당할 속기사가 대거 지방의회에 근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크게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구분되고, 지방의회는 다시 廣域議會와 基礎議會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 지방의회는 둘 다 회의체로 구성되어 있어 속기사가 회의내용을 속기하여 회의록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도 없이 속기업무로 담당하게 된 지방의 속기사들은 지방의회 구성시부터 국회 속기사제도와 다른 제도하에서 출발하여 담당업무인 속기업무 외에 많은 양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행하고 있는 업무량과 질에 비해 책임과 권한은 많이 축소되어 있다.

지방의회 개원 당시 속기사 부족현상과 지방의회급의 급속한 출발로 인해 3급 이상 속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1급과 2급은 9등급, 3급은 10등급에 특별임용하였다. 이것은 현재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속기사들이 1급 속기사 자격을 가진 것

과는 달리 속기사 부족으로 인해 3급 속기사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쉽게 지방의회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속기사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속기사 자질론이 계속 대두되었다.

1) 技能職 職制

내무부에서 발행한 《1992년도 地方議會 白書》에 따르면 91년 1월 현재 전국 속기학원은 69개소이고, 수강중인 자가 2,539명, 자격증 소지자가 1,771명중 서울이 920명, 지방이 251명이었다. 때문에 서울은 속기사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지방은 600여명의 소요인력이 필요하여 속기사 태부족현상을 초래했고,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DS제(Dictation System)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회의록을 그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기록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내무부는 속기사가 속기를 한 후 번문해서 원고가 나오는 시간과 DS방식으로 녹음을 한 후 타자수가 원고를 만드는 시간 및 인건비 등을 비교하여 최종안을 확정,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통해 속기사 채용이 가능한 지역은 속기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속기사 채용이 어려운 회의에서는 DS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되 군과 자치구 의회에서는 속기와 DS방식을 병행하도록 하며, 시·도의회에서는 속기방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다.

2) 速記士 定員 부족

지방의회 근무하는 속기사의 정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 지방의회 개원 당시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1991년 3월 8일자로 시행하고 사무기구는 의회구성일로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사무직원의 정원은 의원정수별로 책정하였는데 시·군·구의회의 경우 의회의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16명, 21명에서 30명은 13명, 20명 이하의 의회는 10명으로 하였다. 그리고 속기사는 2~3명으로 책정되었다.

지방의회에서의 속기사 필요성은 개원 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개원 당시 속기사 비채용의회가 82개 였다가 97년 10월말 현재는 43개로 줄어들었다.

97년 10월말 현재 지방의회 숫자는 기초 234개와 광역 16개이며, 속기사 채용의회는 207개의회이고, 속기사수는 640명이다. 이 수치는 한 지방의회당 속기사가 평균 2.6명으로 전체 지방의회의 평균수치로 따진다면 112명의 속기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히 현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회의 일수가 늘어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감과 동시에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회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속기사의 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속기업무는 국회와는 달리 속기와 번

문뿐만아니라 회의록의 교정·편집·인쇄·배부까지 속기사가 담당해야 하므로 비록 회기는 광역 120일, 기초 80일이라고는 하나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속기사의 증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4. 地方議會 速記士들의 노력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으로 돼 있는 地方議會 速記士制度는 당초부터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당면 문제로 대두되어 일찍부터 각 지역별 속기사들이 자체 모임을 결성하여 자기계발과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방의회 속기사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大韓速記協會가 중심이 되어 매년 실시하고 있는 速記學術세미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중앙과 연계한 지방의회 속기사들만의 교육도 여러 번 실시되었고, 지역별로 회의록 전산화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회의록 발간의 시간단축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회의록을 만들고, 속기사가 더 많은 일을 부담하여 회의록 발간 경비를 절감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이같은 노력들이 97년 5월 하나로 결집되어 地方議會 速記士들에 의한 '全國地方議會速記士協議會'가 발족되어 보다 체계적인 地方速記界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

'全國地方議會速記士協議會'는 大韓速記協會를 중심으로 하여 速記文化의 발전과 地方議會會議錄業務 전반에 대해 개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결하는데 그 설비 목적이 있다. 또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는 각 의회마다 수범적인 기록업무를 발굴, 전파하고 회의록 업무의 획기적인 발전과 속기사가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7년 10월말 현재 몇몇 속기사들을 제외하고는 교육위원회, 법원 속기사까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地方速記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5. 地方議會 速記의 發展方向과 課題

기능직으로 돼 있는 속기사의 직제를 일반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 速記士制度의 개선은 지방의회 구성 당시부터 제기되어 현재까지 관계부서에 끊임없이 건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속기사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컴퓨터의 발달로 인한 속기술의 희소가치 하락과 업무의 단순성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大韓速記協會와 地方議會 速記界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예컨대 각 지역별 속기사들이 자체 모임을 결성하여 지방 속기계의

발전을 꾀하고 대한속기협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속기학술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속기사로서의 자기계발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한편 97년 8월에는 內務部地方行政研修院에서, 97년 10월에는 國會 議政研修院에서 지방의회 속기사들을 대상으로 회의록 작성 관련법규와 교정실무, 행정실무, 편집실무 등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힘썼다.

1) 職制의 改正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당면과제는 직제의 개정이다.

현행 기능직군에 속해있는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직제를 행정직군 速記職 또는 行政職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 구성 당시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과제로서 속기업무가 지방의회 사무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낮은 직급으로 말미암아 회의록의 질적 저하는 물론, 발간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컴퓨터의 발달로 워드와 속기의 구분이 없어진다고는 하나 地方議會 速記業務는 단순히 속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교정·인쇄·배부 등 회의록을 만들고 배부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대에 인력의 효율적 운용 측면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볼 때 회의록 작성업무는 속기사가 전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제도가 업무량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국지방의회 속기사협회의 주장이었다.

이 문제는 大韓速記協會의 97년도 중점 추진과제중의 하나로 채택하여 현재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광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와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각 시·도 대표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여 관계부서에 계속 건의해 오고 있다.

2) 業務의 電算化

地方議會의 회의량이 늘어남에 따라 회의록 발간에 있어서도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 중앙과 마찬가지로 기존 지방议회의 속기사들 역시 대부분 수필속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느니만큼 변문시간이 길어 회의록 발간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속기는 수필로서 하되 변문시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활용함으로써 입력시간을 단축하고 입력된 파일은 회의록 전산화에 대비한 형태로 보존할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會議錄 電算化는 시대적 요청이며 앞으로 몇 년 내에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회의록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간될 것이며, 동시에 많은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 速記人力의 보장

국회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방의회의 회의록작성내규예를 보면 '임시회의록'이란 용어가 나온다. 하지만 임시회의록은 국회에선 발간이 가능하나 지방의회에서는 속기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정보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臨時會議錄 발간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속기인력과 장비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地方自治法施行令에는 회의가 끝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집행부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속기인력의 부족으로 이 기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업무가 전산화되면 인력이 줄어든다고는 하나 지방의회도 회의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의록 업무의 특성상 속기인력을 증원 하는 한편 업무방식의 개선으로 경비절감효과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속기사의 自己啓發

지방의회 개원 당시 속기업무를 단순히 기록차원에서만 보는 시각이 팽배하여 개원에 대비한 준비도 없이 속기사들이 채용되다 보니까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속기사들이 채용되어 '속기사 자질론'이 많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는 매년 大韓速記協會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와 內務部 주최로 지방의회 속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개원부터 현재까지 6년여에 이르는 현장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 속기사들은 속기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회 정기회 기간중 일반행정직의 인사이동시 생기는 행정공백 상태를 메꾸는 역할을 속기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속기사는 속기사 역할 뿐만 아니라 會議錄 發刊業務 전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행정가로서의 역할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제2절 속기업무의 전산화

1. 國會會議錄 全文支援시스템

세계는 지금 컴퓨터의 폭넓은 보급과 통신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internet)의 보편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술과 정보의 교류 속에 각 나라들은 국경을 초월한 無限競爭時代에 돌입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의 활용만이 다가오는 21세기 情報社會에 뒤쳐지지 않게 한다는 판단 아래 情報化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면적인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각 분야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색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다른 어떤 매체의 홍보수단보다 효과적임을 인식한 국내외의 기관들은 기관 및 개인 홈페이지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 첨단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立法情報支援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과 보다 가까운 '열린 국회'를 지향하며 情報化促進事業에 적극 참여, 국가정보화를 선도함으로써 범국가적 정보공동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立法情報化를 서둘고 있다.

이의 필요성은 국내외 정보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정활동지원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이용자 확대 및 고객위주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의 능률화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있다.

國會業務의 電算化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속기업무와 관련된 것으로는 국회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이나 회의록 색인, 국정감사회의록 색인 등이 있는데 그중 국회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1) 시스템의 開發背景

국회에는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의내용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작성한 국회회의록이 보존·관리되고 있다.

국회회의록은 발언자의 발언 전문, 의사일정,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서면질문·답변서 및 보고서, 각종 참고문서, 시간 및 회의상황 표기, 의안의 제출 및 회부내용, 기타 회의관련사항 등 국가경영에 관한 정보가 총망라, 수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情報源이자 명실상부한 史料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회의록은 국회의 활동상황 및 국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생동감 있는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의록이 책자 형태로 한정된 부수가 발간·배포되기 때문에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그 활용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의 寶庫가 사장되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議員은 물론 관료·학자·연구원 기타 일반국민이 보다 쉽게 국회회의록에 접근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國會會議錄 全文支援 시스템'이 개발되게 되었다.

2) 시스템의 필요성

국회회의록은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며 口語體의 발언내용이 사실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최근 의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비례하여 회의록의 양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며 향후 이러한 추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의 양이 방대함에 기인하여 현행 책자형태의 회의록 체제는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이 소요되어 발간, 배포가 지체되며 자료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체계적 보관, 관리 및 활용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국회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한 색인이 없이는 필요로 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없으며 회의록 내용을 검색,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국회회의록 색인은 색인어의 추출과 이를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회의록 발간후 통상 1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 출간되므로 회의록을 발간 즉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뿐 아니라 추출된 색인어간의 통제 및 색인어의 정확성·신뢰성·관련성 유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밖에 책자 형태의 특성상 그 수명에 있어 물리적 한계 점과 한정된 부수를 발간하는 데서 오는 정보 접근의 제약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적,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적시성·정확성·신뢰성·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발간, 배포, 보존, 관리, 활용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시스템의 내용

‘國會會議錄 全文支援시스템’은 국회회의록의 전문 데이터베이스(Full Text)를 구축하여 회의록 전문을 자동 색인하며 온라인을 통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제헌국회부터 제14대국회까지의 회의록전문은 이를 이미지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제15대국회 이후의 회의록 전문은 Full Text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회의록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행과 병행하여 국회내에선 이미 우선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이 정비, 완료되는 대로 행정부, 사법부, 주요 도서관 및 공공기관에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국회회의록 전문 지원시스템’은 검색기능·관리기능·편집기능·등록기능·보기기능·설정기능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4) 기대효과

국회회의록 전문을 전산입력하여 자동색인 및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할 경우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1) 會議錄의 신속한 배부

회의록 발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인 인쇄,제본,우송시간이 생략되어 회의록의 신속한 배부가 이루어진다.

(2) 會議錄의 正確性 확보

모든 회의내용을 전산입력 즉시 임시회의록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발언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열람케 하고, 誤聽.誤記 등 회의록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과정을 두어 회의록 내용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3) 신속한 情報檢索 및 會議錄 활용의 多樣化

자동색인 및 검색시스템을 활용, 온라인 검색이 이루어지므로 1년 이상 소요되던 색인어 추출기간이 생략되어 신속한 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여러 종류의 검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회의록 이용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情報源으로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4) 人力 . 豫算 및 시간절감

국회회의록 전문지원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국회회의록색인집 발간이 필요없게 되어 향후 책자 형태의 회의록 발간 부수도 대폭 축소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인력 및 豫算節減 효과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회의록 보관장소를 왕래할 필요없이 자료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시간과 노력이 절감된다.

(5) 他 媒體로의 전환 가능성

전산입력된 국회회의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CD-ROM등 타 매체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타매체가 갖는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保管空間 및 보존상의 문제점 해소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되면 별도로 방대한 양의 회의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관장소 확보 및 관리문제가 해소된다. 또한 책자형태의 회의록은 그 수명이 한정적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반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7) 국민의 알권리 보장

國會會議錄 全文 데이터베이스를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일반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한 차원 높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국가내 모든 부문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 國會會議錄 작성 . 편집 . 교정업무의 전산화 추진

‘국회의록 전문 지원시스템’이 立法情報化의 일환으로 추진되자 속기과에서는 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會議錄業務 電算化를 좀더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 지금까지의 速記業務 電算化 추진과정

우리 나라에 手筆速記가 개발, 실용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필속기방식으로써 방대한 국회 의정사인 회의록을 기록하여 의원과 일반에게 배부, 반포하여온 지도 벌써 45년이 경과하였다.

국회사무처에선 회의록 작성업무를 재래적인 수필속기, 수필번문방식에서 탈피하고 회의록 작성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발간하기 위해 기계속기·기계번문을 위한 기계의 연구.개발을 정부(과학기술처, 상공부)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科學技術處는 연구수행기관인 生産技術研究院(상공부 산하기관)에 의뢰하여 1990년 타당성조사 후 1991년 10월 공업기반기술과제로 채택되어 동 연구소에서 개발을 추진하던 중 연구책임자의 유고(사임)로 1993년 6월 30일부터 동 과제의 연구.개발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회의록 발간업무 전과정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會議錄 作成業務의 일부 電算化 추진배경

또한 개인이 개발하여 시중에 선진, 판매하고 있는 속기타자는 회의록 작성상 기록속도·실용성 등에 대해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기록업무에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속기업무 전과정의 전산화에 적합한 기계가 개발될 때까지 이에 대한 代案으로서 속기는 수필로 하되 번문과정과 편집과정을 전산화하여 번문시간의 단축과 편집.교정과정을 일부 생략함으로써 보다 더 신속하게 회의록을 발간키 위해 우선적으로 PC를 도입하여 회의록 작성.발간과정을 일부 전산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3) PC의 教育訓練 및 作業施行

(1) PC교육.훈련계획 및 실시

PC가 도입되자 이를 이용하여 번문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조作的 숙달과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서 國會事務處 速記課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반을 편성하여 PC의 입력, 출력, FD보정 등 각 단계별 시행상의 문제점을 적출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2) 業務電算化研究班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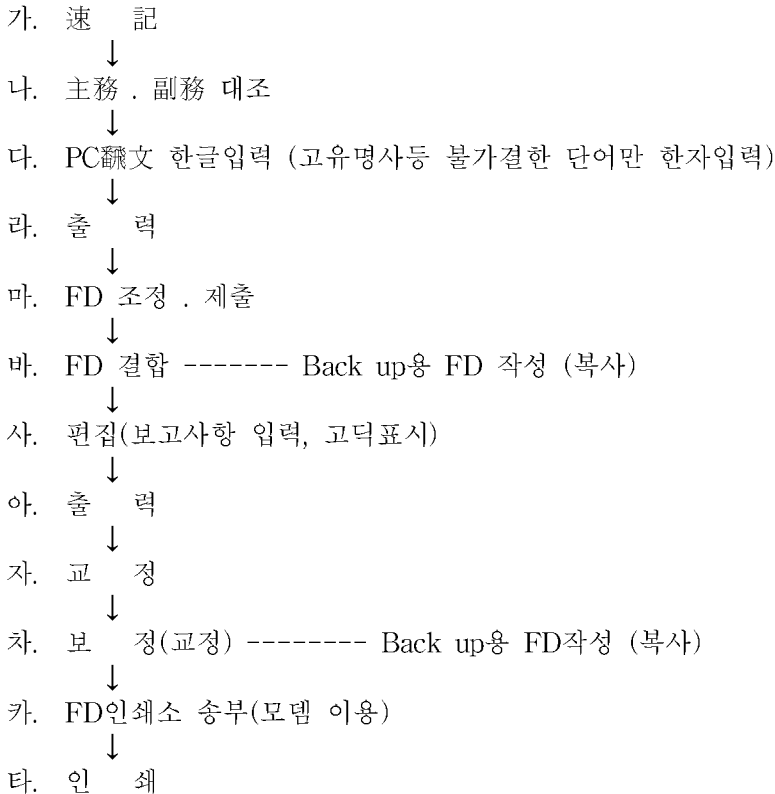
PC에 대한 교육훈련 및 숙달과정을 거친 후 실제 회의록 발간작업 전과정에서 PC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속기에서부터 PC입력(번문), 출력, FD보정, FD결합, 편집 및 한자변환, 인쇄소 FD 송부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 방지책의 일환으로 PC에 관심이 많은 직원으로 업무전산화연구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꾀해 오고있다.

(3) PC번문 및 회의록 발간 소요일수

업무전산화연구반에서 회의록 원고작성 및 편집업무에 대한 전산작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PC변문의 실제활용 및 숙달 반복훈련을 거쳐 작업과정을 표준화한 후 전면 PC작업을 실시하여 회의록 발간업무를 수행하자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PC조작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회의록 발간업무 기간은 점차 줄어들었고, 현재로서는 수필변문방식 때보다 속도가 배 정도 빨라졌다.

4) PC 이용 會議錄 發刊作業 과정도



5) PC도입의 효과와 고려사항

(1) PC도입의 효과

회의록 작성과정에 PC를 도입, 사용함으로써 신속.정확한 회의록을 발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인쇄단가의 인하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보았으며, 회의록검색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발전에의 대응에도 유용했을 뿐 아니라 회의록 원고가 인쇄소에 송고된 후 회의내용 문의시 속기원문을 다시 변문하거나 인쇄소에 송고된 원고를 복사하여 제공했던 종래의 수필변문 방법과는 달리 미리 복사해 둔 FD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2) 고려사항

會議錄 발간작업의 전산화에 따라 매일 장시간에 걸친 PC작업 등 새로운 노동이 수반됨으로써 오는 두통, 시력저하, 어깨결림 등의 VDT증후군(Visual Displasy Terminal Syndrome)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회의록 발간의 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대책이 시급하다.

3. 國會會議錄 작성에 기계속기의 도입

현대를 일컬어 정보화시대라 한다. 정보화시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원한다. 회의록 발간도 시대에 발맞추어 종전보다 더 빠른 신속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속기업무도 종전까지 해오던 수필방식 번문시 과다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PC를 도입하여 번문시간을 단축하였다.

하지만 이 방식도 한계가 있어 기계에 의한 직접속기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계속기는 일찍이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지금은 널리 속기실무에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기계속기의 활용이 쉽지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고안한 한국형 속기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있는 사람들이 모여 3년여의 연구와 투자 끝에 한국형 속기기계인 CAS속기를 개발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의 기억력이 거의 무한대라는 점에 착안, 기억부분은 전부 컴퓨터에 맡기고 입력방법을 속달시키는 방식의 빠른손워드(일명 스테노워드)가 개발되었다. 이는 기존의 워드프로세서에 속기기능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식 속기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입력하는 동작의 속달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들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방법 중 CAS속기법이 기존의 PC키보드와 자판배열이 전혀 다른 하드웨어식이라면, 빠른손워드 속기법은 기존의 PC키보드와 자판배열이 동일한 소프트웨어식이라 할 수 있다.

1) CAS速記

CAS속기는 Computer Aided Steno-machine의 약자로 컴퓨터의 자동번문프로그램과 속기기계를 이용하여 속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속기기계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타자하면 컴퓨터의 속기프로그램이 한글로 자동변환시켜 주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CAT시스템(Computer Aided Transcription System)이란 것을 개발, 널리 보급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가 1992년경 수필속기의 翻文作業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뜻있는 속기인들에 의해 한국인의 체형과 한글의 구조에 알맞는 한국형 컴퓨터速記機械를 개발하게 되었다.

(1) CAS속기기계의 특징

CAS속기기계의 특징은 양손의 손목과 손가락의 형태를 원래대로 유지시키면서 타자할 수 있게 키보드 양쪽키의 각도를 25도 정도 벌어지게 만들었다. 키의 배열은 각 글자의 빈도수와 각 키를 조합해서 약자를 만들 때의 편리성, 학습성의 제고에 바탕을 두어 배치하였다.

또한 키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바(BAR)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럽게 처지며 소리가 나지 않아 회의를 방해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장점이 오랜 작업에도 손목과 손끝에 충격을 주지 않아 장시간 사용시 우려되는 직업병의 염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키보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자판을 익혀야 하는 부담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CAS속기의 활동현황

1995년 8월 국회 속기사 모집 공개경쟁시험에서 최초로 CAS속기사 4명이 채용되어 기계속기의 실무가능성이 처음으로 입증되었고, 1997년 속기사 채용시험에서도 2명의 CAS속

기사가 채용되어 현재 근무중에 있다. 그리고 1994년에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32개 의회에 CAS속기사가 채용되었거나 기존 속기사에게 CAS속기를 재교육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기존 속기사 20명에게 재교육을 시켜 연습중에 있다.

또한 법원에도 많은 수의 CAS속기사가 진출하고 있고, 대기업과 정부기관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SBS 9시 뉴스를 유니텔을 통하여 문자방송을 하고 있다.

2) 빠른손워드速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필속기가 과다한 번문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속한 회의록 발간에 문제가 있자 가장 과중한 업무량인 '번문'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계속기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되어 활용중인 기계속기는 새로운 약어를 등록시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든지, 또는 별도의 속기입력용 기계가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하드웨어의 가격이 비싼것이 단점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빠른손워드속기는 워드프로세서에 속기기능을 구현한 속기프로그램으로서 순수 소프트웨어식 접근방법으로 새로운 컴퓨터速記方式을 창출하였다.

(1) 빠른손워드속기의 특징

빠른손워드속기의 접근방법은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일반 컴퓨터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속기용 하드웨어로 수용하면서 소프트웨어만 새로운 컴퓨터환경에 맞는 발전된 속기프로그램으로 보다 용이하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빠른손워드속기사는 이 프로그램 디스켓만 휴대하면 어디에서나 일반PC를 사용하여 속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빠른손워드속기는 별도의 하드웨어에 대한 교육 없이 PC 또는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만 깔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만이 필요한 약법.약어를 자유로이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통신에플레이트 기능이 있어서 2인 이상이 나누어 칠 수 있을 뿐아니라 즉시 자동연결이 되고, 또 일부 자동떠어쓰기 외에도 입력과 동시에 떠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편집.교정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윈도우용 빠른손워드속기가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에서 곧바로 빠른손워드속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최첨단 속기프로그램이다.

(2) 빠른손워드速記의 活動現況

1996년도에 국회 수필속기사 60명에 대한 교육과 자체 연습을 통하여 1997년 현재 약 15명 가량이 빠른손워드로 번문작업을 하고 있으며, 國會 議政研修院內에 설치되어 있는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20명의 학생에게 빠른손워드속기를 교육시키고 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된 국회 한보사건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전 과정을 PC통신·유니텔을 통하여 문자생방송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YTN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및 '세계는 지금' 등을 PC통신 유니텔을 통하여 문자생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53개의 상업 및 공업고등학교에서 빠른손워드교육을 시켜 앞으로의 타자교육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3절 속기학술세미나 및 속기실무교육

1. 제1회 속기 실무워크샵

大韓速記協會는 발족 이후 지금까지 국회·지방의회 및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속기인들의 자기계발과 상호친목 도모 및 자질향상으로 기록업무 전반에 걸쳐 체계성과 능률성을 확보하여 발전된 기록문화를 창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지방의회 구성을 전후하여 속기에 관한 과대·허위광고로 대국민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速記界의 올바른 현황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1993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회사무처·문화체육부·한국방송공사의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국회종합운동장에서 제1회 속기실무워크샵을 가졌다.

1) 實務워크샵

첫번째 주제발표는 당시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姜天求회원이 '의사진행 원리와 회의보좌직원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였다.

姜天求회원은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업무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사진행의 원리와 회의의 일반적인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會議補佐職員으로서 필요한 근무자세에 대해서 자신의 공직생활을 통해 직접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후배 속기사들에게 앞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찬란히 빛나는 의회사를 기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두번째 발표자로 강단에 오른 金基英회원(당시 국회사무처 의사과장)은 '우리 나라 속기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였다.

먼저 속기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속기의 역사와 의 태동, 속기의 전망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속기계의 발전방향으로는 현 지방의회속기사들의 직급과 처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고무적인 말과 함께 더욱 더 속기인들이 단합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번째 주제발표는 趙隅石회원 (당시 국회사무처 속기사무관)의 '會議錄作成實務'였다.

▶ 제1회 속기실무워크샵에서 김기영 국회사무처 의사과장이 '우리나라 속기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1993.6.12)

회의록의 개념과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 회의록 작성상의 문제에 대해서 30년이 넘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나감으로써 이제 갓실무를 시작한 후배 속기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어서 열린 회의록 作成實務의 토론시간에는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실제 업무를 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많은 질문과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시간관계상 중도에 마감해야 했다.

한편 제1회 속기실무워크샵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본 행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협회에 바라는 점으로 속기사의 지위향상과 정보제공의 요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일의 성격이 결코 단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速記業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단순직 내지는 技能職으로 대우를 받는데 대한 불만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에 주력해 달라는 의견,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치우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대책 및 제재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2) 速記競技大會

한편 이날 제4회 속기경기대회가 열렸다. 속기경기대회는 3부로 나뉘어 각각 실시되었는데 1부는 연설체문장 1,650자를 5분간 낭독(1분당 330자)하였고, 2부는 연설체문장 1,500자를 5분간 낭독(1분당 300자)하였으며, 3부는 연설체문장 1,350자를 5분간 낭독(1분당 280자)하였다.

총 103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합을 벌인 가운데 치뤄진 경기에서 1부의 금상에는 국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던 李美靜이 당선되었고, 2부의 금상에는 華城郡議會의 崔在君이, 3부의 금상에는 서울동방속기학원의 金雪英가 당선되었다.

한편 속기경기대회가 열리는 동안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국회참관순서를 마련함으로써 주최측의 짜임새 있는 진행이 돋보였다.



3) 速記人體育大會



▶ 1976년 5월 2일 한국산업은행 연수관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속기인체육대회 개식장에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선서 장면

이튿날인 6월 13일에는 제15회 전국속기인체육대회가 康祐赫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350여 속기인 가족의 참여 속에 국회종합운동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체육대회는 30여년만에 다시 열린 지방의회

의 속기사들도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속기인

체육대회가 되었는데, 회원 및 가족들 모두가 한 번은 참여하도록 진행을 하여 회원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평소 어렵기만 하던 원로 속기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한데 어우러진 만남의 장이 되었다.

2. 제2회 속기 및 회의록작성실무세미나

1996년 11월 6일 경상북도 도청 강당에서 대한속기협회 주최,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후원으로 열린 제2회 속기 및 회의록작성실무세미나는 교재정리 및 인쇄, 참가자 접수, 행사장 준비 등이 대구·경북지역 속기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처음으로 지방에서 주도한 세미나라는 점에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1) 실무중심의 강연회

협회 임원들을 비롯한 234명의 회원들이 참석가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주로 地方議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오전 시간에는 黃寅河 前 이사장이 '速記士의 사명과 자세'라는 주제로 속기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의 순간순간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관임을 자부하면서 천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당부한 후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려면 건강관리, 시간관리, 금전관리, 재능관리, 정신관리 등 인생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오후 첫 시간에는 '地方自治法規 및 議會運營'이라는 주제로 國會議政研修院의 徐宇善 연수부장의 강의가 있었다. 이 시간에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시간관계상 결국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이어서 '會議錄 作成'에 관한 洪淳寬 국회 속기사무관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내용은 96년도 국회회의록의 변화된 내용이었고, 참석자 대부분이 회의록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대구 중구의회에서 속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尹泰源씨의 '정보화사회와 PC통신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정보화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보의 바다라 일컫는 PC통신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속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는 '속기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였다.

2) 情報化社會에 걸맞는 세미나

세미나가 열린 경상북도 도청 강당의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중앙에는 컴퓨터와 프리젠테이션을 설치, 입장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아 정면 화면에 나타나게 하여 세미나 분위기가 한층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세미나 중간중간 휴식시간에는 대한속기협회의 역사와 그 동안의 활동 내용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기도 하였다.

지역 속기사들의 세심한 배려 속에 진행되었던 이 세미나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획일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배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회 速記및會議錄作成實務세미나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성공적인 세미나였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 동안 국회내에서만 개최되던 세미나가 중앙을 탈피, 지방에서 개최됨으로써 지역속기계의 발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속기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속기사들에게 협회업무를 분담해 줌으로써 협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임과 동시에 협회 회원 확보 및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제3회 速記學術세미나

우리 나라 憲政史와 그 궤를 같이 하는 속기계의 50년을 되돌아보고 당면 속기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여 협회의 활동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속기의 발전과 능력을 제고하며, 회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1박2일로 전북 무주군에 소재한 무주리조트에서 大韓速記協會 주최로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가 열렸다. 池大燮 신임회장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는 제주도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원 및 27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1) 地方議會 운영과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

세미나 첫날 임원 및 회원 소개가 끝난 후 국회 의정연수원의 徐宇善 연수부장이 '지방의회 운영과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徐宇善부장은 '지방의회의 운영요체'를 회의체의 특성에서 살펴보면서 회의체의 특성은 그 규정이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인 회의규칙에 맡겨야 지방의회의 운영에 자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지방의회 운영의 전제조건으로는 지방의 설정, 정부의 방향 그리고 국회의 경험을 꼽으면서 회원들 각자에게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 습득'을 역설하였다.

이 강의는 지방의회 속기사들에게 속기사는 의회의 산증인으로 의회인답게 지방의회 운영 원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속기사들에게 참지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2) CAS速記와 빠른손워드速記의 현황 및 발전방향

세미나 2일차인 6월 15일에 국회사무처 속기1과 1담당 사무관으로 재직중이었던 廉德薰 이사가 'CAS속기와 빠른손워드속기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속기라는 업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위치와 위상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속기의 개념 및 이상적 속기환경의 조건과 외국속기계의 발전과정, 우리 나라 속기계의 발전과정, CAS속기와 빠른손워드속기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의 순으로 강의했다.

3) 地方議會의 속기업무와 개선방안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경상북도 도의회 속기사로 재직중이었던 송효곤이 '지방의회의 속기사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공동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울러 그것이 머지 않은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시작된 이 강의에서 발표자는 지방의회 출범자료 및 현황, 지방의회 속기실무 실태, 지방의회 속기업무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하여 총력매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후 모든 회원이 협회를 구심점으로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힘있는 단체를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바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자고 말해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일순간 자신의 위치를 잊은채 오로지 지위향상만을 고집하던 사고를 바꾸어 놓았다.

1박2일에 걸쳐 열린 제3회 속기학술세미나는 대한속기협회와 지방의회속기사들간의 유대가 강화된 대회였다. 池大燮회장은 이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속기사들의 일반직화에 대해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지방의회 속기사들 또한 속기직은 속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 수행능력까지 갖추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몫을 챙기려 들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일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4. 제4회 速記學術세미나

21세기의 地方化.情報化時代에 대비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 속기계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가인 속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함양함과 더불어 회의록업무 및 회의록 전산화 등 실질적인 속기업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여 속기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제고하고 대한속기협회의 회원으로서의 권익을 신장하고자 '지방화.정보화시대 속기사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1997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소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 세미나 主題發表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특강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전에는 '21세기의 議會事務職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韓國地方行政研究院 책임연구원인 이수만박사의 강의를 있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의회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속기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관계로 인사상 애로점이 많다는 것과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승진에 대한 배려와 집행

부서에서의 보직순환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오후에 들어서는 첫번째로 문화체육부 정보화추진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덕준장사가 '정보화의 동향과 회의록 문헌검색'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한국 프로토콜스쿨의 대표인 서자원장사 '공직자로서의 예절'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는 다음 마지막으로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근무하고 있는 채홍호사무관이 '지방자치 2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지난 2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민선 2년의 성과와 과제, 문제점으로 나누어 평가한 다음 향후 정책과제로 자치의식의 함양,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재조정,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간의 갈등해소, 지방자치의 기본틀 개편, 내무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예로 들었다.

또한 채홍호사무관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세미나에 참여한 속기사들을 한껏 고무시켰다.

2) 全國速記競技大會

이번 세미나는 제5회 전국속기경기대회가 함께 개최되었는데 중앙에서는 국회 정기회 일정으로 속기사들이 전혀 참가를 못하였고 각 지방의회별로 3명씩의 참가자를 신청받아 31명의 수필속기사가 참가하였다. 대회 결과 금상은 경상북도의회에 근무하는 변성수가 수상했으며, 은상은 충북청주시의회에 근무하는 조영선이 수상했고, 동상에는 충북청주시의회의 장미남과 경남합천군의회의 이정선이 각각 공동수상하였다.

제4회 速記學術세미나는 예전의 세미나와 달리 속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빠지고 지방의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속기사의 자세와 공직자로서의 예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방향, 회의록 전산화에 관한 내용들로 꾸며진 점이 큰 특징이었다.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프로젝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의 활용은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능력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또한 세미나장 바깥 접수대에도 컴퓨터를 설치, 비디오 카메라를 연결하여 세미나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번 세미나의 문제점으로는 개최장소가 대구여서 너무 대구에만 세미나가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중앙의 속기사들이 국회 정기회 일정으로 전혀 참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또한 내무부교육,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 등과의 연계도 너무 잦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는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6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행정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끔 탈바꿈해야 한다는 요청이 전반적으로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머지 않아 지방의회 속기사들에게 신분상의 변화가 올 것임을 예시해 주는 세미나였다.

제4절 속기협회 활성화 및 속기환경의 변화

1. 대한속기협회의 새로운 출발

1997년 2월 22일 대한속기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신임회장에는 대한속기협회가 국고보조를 타는 데 있어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었던 池大燮 의원(현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이 추대되었고, 부회장에는 權龍太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申世華 전문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지대섭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제헌국회 이래 묵묵히 역사의 사관으로서 일해 온 속기사들에 대한 위로의 말과 함께 "앞으로 협회와 속기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972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고보조금을 池大燮 신임회장과 權龍太 부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다시 탈 수 있게 되자 협회는 그 동안 예산만 배정해 놓고 실천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협회는 1997년 6월과 11월에 전북 무주와 대구에서 제3회, 제4회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7년 9월에는 벨기에 리에즈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중앙집행위원회에 池大燮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이 참가하였고, 《速記界》의 증편발행과 2년 사업으로 계획된 '한국속기50년사'의 편찬사업, 기계속기 연구, 제5회 전국속기경기대회 개최 등 그간 대한속기협회가 역점사업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되었다.

2. 대한속기협회 기관지 발간

속기에 관한 소식지는 1954년 11월 13일 大韓速記學術協會가 발족되면서 해방 이후 10년간 지속되어온 속기발전의 발자취를 정리함과 동시에 당시 주변에 가득한 사이버속기법과의 구별을 두고 그간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 나라의 속기계를 개척하고 우리 記錄文化에 이바지하고자' 취지에서 기관지격으로 《速記文化》를 창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때의 《速記文化》는 창간호부터 5호까지 간행되다가 중단되었고, 1967년에 또 다시 《速記文化》가 창간되었으나 이것 역시 중단된 뒤 1970년에 《速記界》로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速記界》는 속기학술의 연구발표, 회원의 자질향상, 상호회원간의 정보교류와 함께 일반인에게 속기를 선전하는 성격의 會誌로서 국판 40면 내외로 발간되었다. 처음에는 季刊으로 발행되었다가 그 후 속기계의 浮沈에 따라 간혹 한 두번의 缺號가 있기는 했으나 매년 한 번씩은 발행하여 1997년 현재까지 34호가 발행되었다.

한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속기사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던 속기협회의 무대가 전국적으로 넓어지게 되자 협회는 중앙과 지방의 속기사들을 단합시키고 회원간의 친목증대를 위해서 학술지 성격의 《速記界》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대한속기협회소식》을 발간하게 되었다.

1997년 6월 14일에 창간된 이 소식지는 회원들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이론개발을 통해 새로운 속기환경에 적응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권익옹호 등 회원들의 지위향상과 함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발간 형식은季刊으로 매 分期마다 1회씩 발간하고 있으며, 판형과 지면은 A4, 12면 내외이다. 편집은 대한속기협회 홍보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편집 기본방향은 협회의 일정이나 회원들의 소식을 3개월에 한 번씩 전함으로써 회원간의 긴밀한 유대감 증진과 신속한 정보 교류에 두고 있다.

3. 女性 速記士의 의한 진출

오늘날 속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속기사들중에는 여성 속기사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고엔 그렇지 못했다.

제헌국회 이후 의회에는 줄곧 남자 속기사들만 채용되다가 1954년에 정병숙, 박귀순이 최초 여성속기사로서 진출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56년에 다시 최명숙·이윤환 등이 이어서 들어온 이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속기사의 의회진출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남녀의 차별이 심했던 시대라 공직사회에서도 당연히 남녀의 차별이 심하여 1960년대, 70년대에 채용되는 여성 속기사들은 입사할 때 '결혼하면 사직하겠다'는 覺書를 쓰고서 입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결혼한 여성속기사들을 국회 속기과에서 기피하였을까? 당시 속기과 관리직에 근무했던 金鎭基 대한속기협회 고문이 전하는 이유로는 첫째, 여자 속기사들은 결혼하면 家庭事 때문에 결근율이 높아지고 둘째, 당시 수행하던 국정감사 출장도 갈 수 없었으며, 셋째 야간회의시 남자속기사와 같이 근무를 할 수 없었고(당시에는 通行禁止時間이 있었다), 넷째 출산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속기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결혼한 여성속기사들을 기피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혼 후 辭職하는 관행은 1978년 들어 몇몇 여성속기사의 눈물어린 투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결혼하면 사직하겠다는 약속 아닌 약속을 어기고 계속 근무를 하자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퇴직할 것을 강요해 왔다. 이에 여성 속기사는 당시 여성 국회의원이었던 윤여훈·김정렬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일이 있는 뒤로 '覺書 쓰는 慣行'은 없어지게 되었으며, 점차 속기를 배우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 여성 속기사들의 채용숫자는 늘어났다. 여성 속기사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유연함을 장점으로 살려 점차 곳곳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1994년 7월에는 드디어 국회사무처 사상 최초로 국회 속기과에서 여성사무관(현 대한속기협회 홍보이사 金仙玉, 속기2과2담당)이 나왔으며, 1997년에는 두 번째로 사무관(현 대한속기협회 자격심사위원장 孫在玉, 속기2과 3담당)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1997년 말 현재 속기사의 남녀비율은 1960년대, 70년대와는 정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더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같은 현상은 속기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타 부서로의 이전이 쉽지 않으며 비교적 다른 일반직에 비해서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것과 대우면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에 주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속기인구의 7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성속기사들의 역할도 그만큼 크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속기사들은 이제까지의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협회나 속기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일처럼 참여하고 또한 자기의 능력발휘를 위해 자기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진정 속기사다운 속기사가 된다는 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제6장 INTERSTENO 가입과 원외활동

제 1절 Intersteno와 대한속기협회

1. Intersteno의 현황

(1) Intersteno의 조직

Intersteno는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Stenography and Typewriting으로서 우리 말로는 「국제속기타자연맹」이라고 한다.

근래에는 속기와 타자 외에 워드프로세서 등 여러 정보분야를 흡수 수용하기 위하여 연맹의 명칭을 INTERINFO로 변경할 것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Intersteno의 회원국 현황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국 현황

Intersteno는 1887년 출발 당시 11개국의 135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회원을 국가단위(National Group)로 하여 25개국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즉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중국,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자메이카, 일본, 한국, 네델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그리고 미국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그룹이 형성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오스트레일리아, 보츠와나, 카메룬,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우루과이, 짐바브웨는 의회속기사들과 법원속기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나. 총회(The General Meeting)

총회는 단체회원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연맹의 최고기관으로서 통상 국제대회시 소집된다. 총회는 최소한 3월전에 소집통보되어야 하며 의제는 소집통보시 알려 주어야 한다. 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되어야 하며 결정사항은 문자로 기록되어야 하고 이 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한다. 결정사항은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각 단체회원은 3명의 대표를 보낸다. 다만 단체회원의 국가가 5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500만명당 1명씩 최고 12명까지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상기 대표의 단체회원은 기타의 대표를 총회에 보낼 수 있으나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표 1명당 한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는 대표의 출석인원에 관계없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규약 제16조(규약개정)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 단체회원을 구성하지 못한 국가의 대표들도 총회에 참석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조건하에서 연맹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총회는 매 2.3년마다 회원국 중의 하나에서 열리게 되며 총회중에 열리는 강좌의 문서정보와 음성기록, 현대 비서직, 의회와 법원속기에 관해서 회합이 열리고 워크샵에서는 토론이 벌어진다. 타자와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속기국제경기가 벌어지며 총회의 공식언어는 영어, 독일어, 불어이다. 매스컴이 총회를 보도하고 총회 후에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출간되어 전 세계에 배포된다.

다. 중앙위원회(The Central Committee)

중앙위원회는 단체회원에 의해서 선출된 1개국당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단(Board)이나 5개국 이상의 단체회원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가능한 한 해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총회를 준비하고 연맹활동을 계획하고 경연대회의 규칙을 만들고 의장단을 감독,보조하며 연맹의 모든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을 연구키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예: 비공식적인 정간물의 편집)

총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의장단의 임원을 지명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라. 의장단(The Board)

의장단은 의장 1인, 5인의 부의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연맹의 집행기관이다. 의장단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의사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사망,질병,은퇴의 경우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의장단은 후임자를 선임한다. 의장은 다음 총회 개최지의 단체회원의 회원중에서 선출되며 그곳에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의 개최지의 단체회원의 회원중에서 선출된다. 만일 단체회원이 의장직을 거부할 경우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마. 사무국(The General Secretariat)

사무국의 임무는 연맹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행정적인 임무수행, 연맹의 재정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의장과 상의하여 중앙위원회와 총회의 의제를 작성한다. 사무국은 중앙위에 사무국의 활동사항을 알려준다.

바. 회계감사위원회(The Auditing Committee)

총회는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의장단에 속하지 않는 3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위원은 연속하여 재임될 수 없다.

사. 의회속기사부(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

의회속기사부(IPRS)는 1993년 터어키 이스탄불 제40차 총회에서 결성된 Intersteno의 기관으로 국제의회속기사들의 모임이다.

(2) 목적 및 성격

Intersteno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각국의 속기사와 타이피스트 결속
- ② 전문적 성격의 정보의 취합, 교환, 홍보
- ③ 회원간의 개인적인 단결과 대회 개최
- ④ 국제적인 속기대회와 타이프경연대회 개최
- ⑤ 전문적인 공동연구의 추진
- ⑥ 직업적 단체의 정신적, 물질적인 이익의 옹호

본 연맹은 여하한 정치, 종교적 성격을 띤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결성된 Intersteno는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적으로 말을 문서화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국제적인 모임이며 전자고속도로와 같은 이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발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직업인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를 해나가며 국제적인 접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Intersteno는 UNESCO의 산하기구이다.

2. Intersteno의 발전과정

속기인의 국제적 조직이 태동한 것은 1887년 근대 속기법식의 시조로 불리우는 영국인 티모디 브라이트(Timothy Bright, 1550-1615)박사의 근대화된 최초의 속기저서인 「기호 : 기호에 의한 . 간략 . 신속 . 비밀속기법」(Character : an Arte of Shorte . Swifte & Serete Writing by Character)의 발간(1588년) 300주년 및 현대 속기법식의 시조로 불리우는 이삭 피트만(Isaac Pitman)의 피트만식 창안(1837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런던에서 제1회 국제속기회의가 11개국의 135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며 이어 국제속기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뒤 이 위원회가 1931년에 만국속기자연맹으로 개편되었다가 1955년에는 다시 국제속기타자연맹(INTERSTENO)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 성격이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속기와 타자의 불가분성을 인정하여 속기직과 타자직을 망라한 기록분야의 유일한 국제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속기 및 타자」라는 명칭에서 풍기는 인상과는 달리 Intersteno의 간부들은 거의가 속기관계자들 뿐이고 이 기구에 타자가 끼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속기업무의 보조적 기능으로써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근래에는 속기와 타자 외에 워드프로세서 등 여러 정보분야를 흡수 수용하기 위하여 Intersteno의 명칭을 INTERINFO로 변경할 것을 논의하는 것도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ntersteno의 발전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기

국제속기인 대회가 처음으로 1887년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몇몇 영어속기 법식의 창안을 축하하기 위해 영국인 Westby Gibson박사에 의해서 구성된 이 회의는 11개 나라에서 135명이 참석했다. British Press에 의해서 크게 보도된 회기 1주일의 이 회의는 세계의 속기계를 고무시켰다. 그들은 의회속기, 속기교수법, 속기이론의 문제

점 그리고 속기의 역사나 문헌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Gibson 박사는 원래 회의를 한번으로 끝낼 예정이었으나 참석자들은 매 2년마다 회합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열릴 회의들을 조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887년부터 1923년 사이에 열한번의 회의가 열렸다.

두번째 회의는 1889년 파리에서 열렸는데 에펠탑이 건립된 만국박람회 기간과 같은 때였다. 세번째는 1890년 뮌헨에서 개최되었고 한번은 역시 만국박람회가 열린 1893년에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이것은 Intersteno 사상 유일하게 미국에서 개최된 회의이다.

이러한 초기 회의들은 속기이론에 관한 정보나 생각이 교환되는 토론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속기는 여러 나라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적용법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속기법식들이 아직도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고 아직 조직화 되지 못하였다. 몇몇 속기인 대회는 이들 새로 개발된 법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속기경진대회의 특색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16년 알제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취소되었다.

(2) 제2기

Intersteno의 두번째 기원은 스트라스버그의 1920년 회의에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의 속기인들이 의도적으로 제외됨으로써 상서롭지 못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2조직위원회라 불리운 그 대회동안 불행하게도 어느 그룹이 다음 번 대회를 소집할 것인가로 원래의 위원회와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전문속기에 대한 유용한 공헌이 많이 있었지만 비록 두 그룹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둘 사이의 라이벌관계로 말미암아 조직체의 힘이 상당히 상실되었다.

193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조화와 통일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런던에서 개최된 1937년 대회와 함께 Intersteno의 제2기원도 끝나게 되었다. 왜냐 하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미래의 계획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제3기

마침내 1955년 모나코회의에서 Intersteno의 세번째 기원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 속기 및 타이프의 국제연맹(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horthand and Typing)이 설립되어 Intersteno 사상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 지속되는 기간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최근 30년동안에 속기 및 타자의 세계챔피언 경기가 Intersteno 대회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챔피언 경기의 결과가 모든 대회에서 가장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 경기에 젊은이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속기 및 타자의 속도나 정확도가 보다 더 높아짐과 함께 회의 참석률도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Intersteno의 황금기에 기여하고 있지만 특히 스위스 베른의 Marcel Racine와 그의 부인 Roselyn에게 명예가 돌아가고 있다. 이탈리아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와 독어까지 능숙한 M. Racine은 Intersteno가 진정으로 국제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4대륙으로 뻗어나간 기간동안 즉 1955년부터 1983년 한국이 가입하기까지 제3기의 28년간 Intersteno의 사무총장으로 봉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독일의 Karl Gutzler박사께서 현재까지 사무총장으로

로서 계속 수고해 주고 계신다.

이상의 발전과정을 요약해 보면 Intersteno는 1887년 런던의 국제속기회의에서 출발하여 1931년 파리의 만국속기자연맹으로의 개편 그리고 1955년 모나코에서의 Intersteno 규약제정과 더불어 오늘날 명실상부한 국제속기인의 모임으로 발전하여 왔는 바 실질적인 Intersteno의 역사는 1955년 모나코회의에서 Intersteno의 규약이 제정된 때부터라고 볼 수도 있다.

Intersteno의 역대 총회 개최지는 다음과 같다.

< Intersteno 총회 개최연혁 >

차수	연도	개 최 지	비 고	차수	연도	개 최 지	비 고
1	1887	런던	회원 11개국	22	1957	마일란드	
2	1889	파리		23	1959	빈	
3	1890	뮌헨		24	1961	비스바덴	
4	1891	베를린		25	1963	프라하	
5	1893	시카고		26	1965	파리	
6	1897	스톡홀름		27	1967	베를린	
7	1900	파리		28	1969	바르쇼우	
8	1905	브뤼셀		29	1971	브뤼셀	
9	1908	담슈타트		30	1973	발렌치아	
10	1912	마드리드		31	1975	부다페스트	
11	1913	부다페스트		32	1977	로테르담	
12	1920	스트라스버그		33	1979	벨그라드	
13	1922	드레스덴		34	1981	만하임	
14	1924	로잔느		35	1983	루체른	한국가입
15	1926	마일란드		36	1985	소피아	
16	1927	브뤼셀		37	1987	플로렌스	
17	1928	부다페스트		38	1989	드레스덴	
18	1931	파리		39	1991	브뤼셀	
19	1934	암스텔담		40	1993	이스탄불	IPRS 가입
20	1937	런던		41	1995	암스테르담	
21	1955	모나코	규약제정	42	1998	로잔느	회원 25개국

3. Intersteno의 가입 및 활동현황

대한속기협회는 Intersteno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던 중 1980년7월15일자로 Intersteno 회장으로 부터 대한민국국회 사무총장앞으로 의회속기사의 지위, 속기록 작성방식, 속기사의 봉급 수준 등을 포함한 장문의 양케이트가 오고 이어서 1981년4월27일 대한민국국회의 속기사대표가 당년 7월 서독 만하임에서 열리는 34차 총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협조조건이 수신되어 이후 우리 협회는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서신교류를 갖게 되었다.

1981년5월8일 우리 본협회는 가입절차, 활동상황, 규약 등에 관해서 문의한 바 5월26일 규약(Covenant)을 비롯하여 Intersteno 전반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과 34차 대회에 참석해 달라

는 요망을 실은 답장을 보내왔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 기구에의 가입과 34차 대회에 참석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신중히 심의한 결과 시기촉박 등을 이유로 34차 총회는 불참하고 이듬해에 가입하며 다음 대회 때는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982년5월24일자 대한속기협회를 Intersteno의 국가그룹으로 가입시키기를 희망한다는 서신을 발송 1982년8월8일 사무총장으로부터 중앙위원회에서 한국의 가입안을 제35차총회에 제안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통지와 총회 프로그램이 도착하였다.

1983년3월7일 스위스 Intersteno 조직위원회로부터 35차 총회 초청장과 프로그램이 도착하였다. 이러한 중 미국, 일본속기협회와도 수차례 서신교환을 통해 가입협조의 약속을 받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1983년 제35차 Intersteno(스위스 루체른)총회에 朴權欽會長외 2인의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7월16일 중앙위원회는 朴權欽會長을 중앙위원으로 선임하고 7월16일 총회에서 한국의 Intersteno 가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는 바 이로써 우리나라는 Intersteno의 National Group으로서 25번째 회원국이 된 것이다.

그 후 1990년의 동독과 서독의 통일 그리고 1993년의 중국가입으로 회원국은 여전히 25개국이다.

1983년 7월16일 우리 대한속기협회가 Intersteno에 가입한 이래 연맹의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한국대표단 연맹회의 참석현황 >

차 수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주요의제	비 고
35	1983. 7	루체른 (스위스)	박권음회장 신세화이사장 조영창회원	규약개정 중앙위원 선임 회장 등 선거	한국가입
36	1985. 7	소피아 (불가리아)	박권흥회장 김주성부장	규약개정 연구논문발표 등	
중앙 위원회	1986. 6	Bruge (벨기에)	이동근지도위원 김기영이사	경기대회규칙 개정 등	
37	1987. 6	플로렌스 (이탈리아)	김인영이사장 이정구부장	100주년기념각종 대회 및 행사 등	
38	1989. 7	드레스덴 (동독)	박권흥회장내외	회장 등 임원선출 1990년중앙위원회 의 건	
40	1993. 7	이스탄불 (터키)	김은숙부장	강우혁회장 중앙위원피선	IPRS가입 중국가입
중앙 위원회	1997.9	리에즈 (벨기에)	지대섭회장 권용태부회장 염덕훈이사 조영기부장	경기대회규칙 개정 등	
42	1998.7	로잔느 (스위스)	김진기고문 성천영이사장 황인하감사 이경식이사	43차총회 : 2001.7 독일 하노버 99. 9 : 중앙위 오스트리아 비엔나 99. 7 : IPRS 미국 보스턴	

4. Intersteno의 의회속기사부(IPRS) 가입

IPRS라는 약어를 쓰는 이 부서는 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ers' Section(의회속기사부)으로 1993년 제40차 이스탄불 총회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한국은 그 해 40차 총회에 참가하여 가입하게 되었는데 의회속기사부는 모든 민주국가들의 의회속기사, 법원속기사들로 이루어진 영구적인 접촉기구로서 그 설립목적은 직업의 품위를 높이고 각 나라의 기록국 운영방식에 관하여 배우고 현대의 발달된 기술사용에 대해 지식을 교환하는 데 있다.

IPRS의 설립동기는 로테르담에서 1977년에 열린 제32차 Intersteno 총회에서 의회에서의 기록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후 의회관계자들이 격년제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1981년에는 앞서 우리나라 국회에도 온 바 있는 앙케이트를 통하여 22개국 의회기록부서의 조직과 업무방식에 대한 보고서가 출간되고 그 이래로 더욱 규칙적이고 전문적인 접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부서에는 모든 나라의 의회기록국에서 총회의 회원국이든지 아니든지 또한 수필, 기계, 녹음을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다.

의회기록국이 IPRS의 회원이 되면 규칙적으로 연구성과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규칙에 의하여 IPRS의 회원이 되려면 1995년부터 300DM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회비는 부서의 경비 즉 우편요금, 출판비용에 소요된다. 회비가 DM(도이치마르크)인 것은 국제연맹사무실이 독일의 본에 있고 사무총장이 회계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IPRS의 회비는 오로지 그 부서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인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 40차 Intersteno 총회에서 IPRS가 창설될 시 의회속기사 대표를 보낸 국가의 목록(알파벳 순서)은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보츠와나, 불가리아, 카메룬, 중국, 체코, 에이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일본, 대한민국,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우루과이, 짐바브웨 등이다.

한국대표단은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회에 여섯 차례 참석, 중앙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 등 도합 여덟 번 참석하였다. 열리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총회일정은 매년 유사하다.

오전에 1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대개는 규약개정, 신규가맹국 등을 소개하며 오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회식 때는 각국 대표들의 모국어 연설이 있다.

다음 날 2일차에는 속기 및 타자워드프로세싱 경연대회가 있고 각국 의회속기사 회의가 있으며 다음 날 A(전문부문), B(비전문부문)그룹 속기경연대회가 있고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환영리셉션이 있다.

3일차에는 제2차 중앙위원회가 있게 되며 거기에서 전번 총회의 의사록이 통과되고 경연대

회의 심사위원장보고와 조직위원회 보고가 있게 되며 Intersteno 활동보고가 있게 되는데 회장과 사무총장이 하게 된다. 다시 규약개정을 하며 회계감사보고를 하고 가맹국에 대한 보고를 한다. 그런 다음 2년후에 열릴 다음 번 총회지를 결정하고 다음 해에 열릴 중앙위원회 회의장소를 결정한다.

4일차에는 각종 연구발표회가 있게 되는데 의제는 총회마다 다르다. 그러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속기사의 훈련과정이나 과학적 기술발전에 따른 속기의 변화, 의회속기록 작성의 자동화 등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각국의 연구사례를 발표하게 된다.

5일차 이후에는 연구발표회 후 오후에 총회가 있게 된다. 총회의 의제는 각국의 대표자 호명, 사무총장 보고, 회장보고, 보고서 토의 및 승인, 신입 중앙위원 소개, 회장과 부회장 선출, 회계감사, 사무총장 선거, 규약개정, 가맹국 통과, 다음 해에 있을 중앙위원회 안건통과, 2년 후에 있을 총회 개최안건 통과, 신입회장 및 임원인사, 전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 순으로 이어진다.

6박7일로 이어지는 이런 회의와 경기대회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이 있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한다. 물론 비용은 자기부담이다.

5. Intersteno의 가입의의와 나아갈 방향

1983년 제35차 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가 한국을 대표하여 Intersteno에 가입한 지도 어언 15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나간 속기계를 살펴 보면 1970년대에도 Intersteno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속기계 제2호(1970.9.30) 19면을 보면 협회에서는 1971년도에 벨지움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Intersteno 제29차대회 참가여건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 브뤼셀 주재 문덕주 한국대사에게 현지 정보조사통보를 회장의 명의로 요청하였다고 나와 있다.

속기계 제4호(1970.12.30)에서는 일본 중의원 기록부에 Intersteno 정식가입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있으며 그 때 당시에도 일본은 제28회 총회에 3명의 옵서버를 보내고 제29차 총회에 십수명의 옵서버를 보낼 것으로 나와 있다.

제5호(1971.3.31) 4면에는 Intersteno 일정표가 나와 있고 제6호(71.6.29) 22면에는 브뤼셀대회의 참가국이 32개국으로 그 중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국가가 영국 등 8개국이며 옵서버는 일본 등 4개국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이 70년대부터도 즉 관심을 가져 오다가 앞서 가입 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드디어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바 속기계 23호(1983.1.31)에 나와 있는 가입당시 우리 협회의 가입목적은 되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첫째, 세계 24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제 민간기구에 가입

함으로써 다수 회원국간에 전문분야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우리나라의 속기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둘째, Intersteno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셋째, 동구권 국가를 포함한 회원국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민간외교활동의 일익을 담당하여 속기인으로서 국가에 봉사코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력의 신장이 Intersteno 가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싶다.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려면 우선 여비가 있어야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협회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여진다. 당시의 朴權欽會長께서는 국회 문화공보위원장으로서 맹활약하셨고 후임 康祐赫會長님과 또한 池大燮會長님의 역량에 의하여 협회의 Intersteno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10여년을 이처럼 우리가 노력해오던 중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 협회가 문화관광체육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되었다. 물론 池大燮會長님과 權龍太副會長님 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기는 했지만 그간에 꾸준히 협회를 꾸려 오느라 애쓰고 힘들었던 분들의 노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전 세계속기인들의 잔치인 Intersteno에 참가하여 선진 속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민간외교사절로서 국위선양에 힘쓸 기회 또한 갖게 되었다.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세계의 친구들, 내가 Intersteno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꺼번에 그 많은 다양한 나라의 수준급 사람들과 그렇게도 잡자기 친밀하고 다정하게 사귄 수 있었겠는가" (속기계 32호 1995.2.25)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세계를 배우는 세계속의 속기 . 타자인의 잔치, Intersteno..... 나는 그곳에서 속기를 배운 것이 자랑스러웠었고 그들의 교양과 기품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에 경의를 표했었다"(속기계 32호) 이는 필자가 Intersteno에 참석하고 난 후 쓴 소감에서 인용한 글이다.

요즈음 프랑스 월드컵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ntersteno도 전 세계 앞에 한국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는 그 월드컵에 못지 않다.

각국에서 Intersteno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자국홍보에 힘쓰는데 그 중에서도 1993년에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40차 Intersteno에 중국은 5명(남3, 여2)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天安門事態 후의 경직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보츠와나, 짐바브웨, 카메룬 등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다수 의회속기사를 국비로 파견, 선진 의회속기업무의 현황을 귀담아 청취하는 등 그 열기가 가히 부러울 지경이었다.

우리 대한속기협회는 이제 국회 속기과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것에서 벗어나 그 범위를 넓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법원속기사나 사설속기사무소의 회원들과도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속기사들이 Intersteno 총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회원들 개개인 또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 공부에 열심을 내어 명실상부한, 교양과 학식있는 속기인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

제2절 속기사 법원진출(김점동)

1. 裁判速記 도입의 필요성 대두

재판속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速記文化》창간호(1967년 5월, 大韓速記協會 發行)에 실린 특집1(法廷速記篇)에서 당시 法院行政處長이었던 全禹榮이 쓴 '法廷速記의 전망'에 상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다. 다음은 《速記文化》창간호에 게재된 내용이다.

" 1. 法廷速記를 전망하려면 우선 法廷이란 무엇인가부터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대저 法廷이라고 칭하는 경우에 그 뜻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속적으로 말하는 法廷으로서 法院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法廷이라고 명명되는 실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법률상으로 말하는 法廷으로서 법관이 民.刑事 등 裁判事件을 심리 裁判하는 장소를 말한다(例事事件 외에는 法廷에서라야 한다는 명문 없음).이 장소는 보통은 法院 내에 설치되어 있는 廷이란 곳이나(法院조직법 제52조 I) 法院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외의 장소인 경우도 있다.(동상 조문 II)

법정에는 그 처리되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民事法廷(民事訴訟法 第124조) . 刑事法廷(刑事訴訟法 第275조) . 家事審判廷(家事審判法 第25조)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公開 여부에 따라 非公開法廷 公開法廷으로(法院組織法 第53조), 혹은 재판관의 수에 따라서 합의법정. 단독법정으로 구분하는 수도 있다.

民事法廷에는 民事本案訴訟으로 다루는 것(民訴法 第124조)과 行政訴訟의 本案訴訟을 다루는 것(行訴法 第14조 . 民訴法124조)이 있으며, 家事審判廷과 더불어 다 같이 꼭 법정에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刑事法廷에는 刑事公判事件을 審理裁判하는 法廷(刑訴法 第275조)과 卽決審判廷(卽決審判法 第7조)이 있어서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법정이 있지만 그 각 법정에 공통된 점은 法院書記나 書記官(이하 書記라 약칭함)이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서 작성의 한 준비 단계로서 법정에서 속기를 할 필요는 없겠는가? 한번 연구해 볼만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研究하려면 우선 現行 制度面을 일단 훑어보고 외국의 예는 어떠한가를 알아본 후에 장차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하여야 할 것이다.

2. 法院書記의 직무는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심판참여는 그의 주된 사무이며(法組法 第10조 V), 또 심판에 참여하여 작성하는 公判調書나 家事審判調書 또는 辯論 調書 등은 각종 재판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함은 공지의 사실인 바 現行법상의 서기의 조서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民事訴訟에 있어서는 準備節次(民訴法 第254조) . 證人訊問(同法 第275조) . 鑑定(同法 第336조) . 檢證(同法 第356조) . 和解(同法 第356조) 등에는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民訴法 第141조).

刑事訴訟에 있어서는 被告人 . 被疑者 . 證人 . 鑑定人 . 通譯人 . 또는 翻譯人 등의 訊問調

書(刑訴法 제48조)와 檢證 . 押收 . 搜索 등 調書(刑訴法 제49조)와 公判調書(刑訴法 제51조) 등이 있다.

家事審判에 있어서는 調整調書(家事審判規則 제11조) . 審判調書(家審法 제9조 . 刑訴法 제13조 . 民訴法 제141조) 등이 있다.

이상 열거한 외에도 行政訴訟法 . 競賣法 등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법정 등에서 이상의 각종 조서를 參與書記가 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자.

參與書記들은 대개의 경우 "法廷錄"이라고 하는 백지로 된 용지를 철한 공책을 가지고 법정에 입회하며 裁判長의 신문이나 피고 또는 피고인의 대답, 기타 소송 관계인의 진술과 심리 진행 과정 등을 전술한 法廷錄에 기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문자는 한글 또는 한자 임은 공통되나 많은 訴訟관계인이 말하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도 빠지 않고 기록할 수 없는 결과 중요한 골자만을 간추려 기입하거나 또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약자나 부호를 쓰거나 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정의 소송진행 상황을 기록해 가지고 나와서 이에 근거하여 法律條文이 요구하는 각종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신이 아닌 고로 한 개정에 수십 건씩 사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장시간에 걸쳐 많은 사건의 많은 형형색색의 訴訟關係人들의 진술이나 소송진행 과정을 錄取기록해야 하는 관계상 머리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또 미처 다 기록을 못하는 경우도 上程할 수 있으며 잘못 기록했거나 시일이 경과된 후에 法廷錄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썼으면서도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애매한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다. 중요하고 복잡하고 큰 사건일수록 그러하리라.

여기에 速記의 필요성을 때때로 느끼게 되며, 따라서 법에도 규정들을 두고 있는 바 예를 들면 民事訴訟法에 있어서 法院은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速記者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하여 錄取할 수 있게 하고 이를 調書의 일부로 하는 규정(民訴法 제148조)을 둔 것을 볼 수 있다(刑事는 刑訴法 제56조의 2 참조). 이것은 서기의 法廷錄 작성의 하나의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각도를 달리하여 速記의 필요성을 法으로서 규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

3.사건이 날로 폭주해 가고 또 그 內容도 복잡미묘해짐에 따라 법정녹취의 속기화 또는 기계화가 요구되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 요청을 어떤 방향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외국의 예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고로 우선 隣邦 日本國 裁判所의 예를 들어보자.

그 나라는 裁判所 書記官 외에 速記官이라는 직종이 있어 1966년도의 定員은 935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승진 경로는 速記官補→速記官→主任速記官→次席速記官→首席速記官으로 되어 있고 昇任方法은 각 其職級에 해당하는 昇任試驗에 의하여 재판에 관한 속기 및 이에 관한 사무를 그 직무로 한다. 그런데 그들은 일찍이 1950년에 速記制度를 도입하여 同 51년에 裁判所書記官研修所에서 그 양성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췌 52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성에 착수하였다.

그 대상은 재판소 직원 중 고졸자(또는 동등 이상자)로서 入所試驗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

2년간 연수를 행하는 바 速記理論 . 法廷速記 . 速記技術 외에 법률과목과 일반교양과목까지 가르치고 있다. 1952년 이래 速記官의 확보를 위해 매년 100명 씩 입소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速記의 機械化도 연구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참고할 만한 사실이다.

4. 그러나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제반 여건은 전술과 같은 외국의 제도를 당장 도입하여 실천에 옮기기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 경우의 문제점은 후술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현재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생각나는 것은 현재의 參與書記 390여명에 대하여 속기기술을 습득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되지만 한다면 이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직무에 매일 매일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인지라 시간적 여유가 문제 되겠고 또 教育施設이나 그 운영도 문제가 되겠으므로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되도록 권장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둘째로 參與書記와는 별도로 速記士를 채용하여 參與書記와 더불어 법정에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日本이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현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거의 實現可能性이 희박한 안이다. 적어도 현 서기 수의 반인 300여명은 채용해야 되겠는데 그런 예산도 없고 또 인적자원도 문제일 것이며 그 수용 역시 생각할 문제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런 제도만을 마련해 놓고 1년에 몇 명씩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문제는 한번쯤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성싶다.

셋째로 이 글의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 마지막 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錄音器의 사용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 역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으며, 또 할 필요도 그리 느껴지지 아니한다.

5.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재판에 있어서의 各種調書 작성상 생생한 법정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할 필요는 절감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각 방안을 나열해 놓고 그 장단점을 검토해 볼 때에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묘안이 없으므로 우선은 現 參與書記들에게 가능한 한 속기기술을 습득토록 권장하고 점차적으로 속기사 제도를 채택하여 그 인원수를 늘려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겠다.

본인으로서의 여러모로 그 실현이 가능하고 보다 합리적인 안을 예의 研究 검토중임을 마지막으로 부언해 둔다.

위의 글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裁判速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 도입에 있어서는 약간 주저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速記士를 채용함에 따른 인적자원의 문제

둘째, 速記士를 채용함에 따른 예산의 문제

셋째, 速記외의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가의 문제

넷째, 기존 立會參與書記와의 위상관계에 대한 우려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현직의 參與書記에 대한 속기교육과 점진적인 속기제도의 도입을 들고 있다.

2. 法院書記 속기교육과 문제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裁判速記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절감하면서도 실제 도입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인원과 예산의 확보, 교육과 자질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法院 參與書記에 대한 속기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975년 法院立會參與書記에 대한 교육요청이 國會速記課로 왔다.

그래서 국회속기과에서는 당시 國會速記士였던 ○○○을 法院으로 출강케하여 1주일간 강의시켰다.

그러나 처음에는 速記文字에 대한 호기심과 法院의 인센티브로 인하여 참여 열기가 높았으나 폭주하는 業務에 시달리는 法院 직원들의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된 것이다.

그해 法院에서는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法院 一般職 公務員數中 改正規則'을 내놓았다.

"法院一般職 公務員數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조(公務員數)의 별표중 2. 1급 내지 5급 公務員數欄의 "調査官補(4급갑)" 다음에 "速記主事(4급갑) 37명"을 삽입하고...또한 大法院規則 제612호로 '法院公務員規則中 改正規則'에 "法院公務員 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별표1중 직군 "司法行政事務"란 중 직렬 '司書'란 다음에 '速記'란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의 2중 직군 "司法行政事務"란 중 직렬 '사서' 다음에 '速記'란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또한 '法院人事 事務規則中 改正規則'에 "法院人事 事務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별지 제29호 서식중

一般職欄의 '司書(4갑)'란 다음에 '速記主事(4갑)'

'司書(4을)'란 다음에 '速記主事補(4을)'

'司書(5갑)'란 다음에 '速記書記(5갑)'

'司書書記(5을)'란 다음에 '速記書記補(5을)'을 각각 삽입한다.

附則

이 規則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채용 및 승진(전직)에 필요한 시험과목도 구체화하였다.

職群：法院行政事務 速記

5級採用試驗

1次試驗：1. 憲法 2. 民事法 3. 刑事法 4. 行政法 5. 國語 6. 國史

配點으로는 1. 憲法(10%) 2. 民事法(30%) 3. 刑事法(30%) 4. 行政法 (10%) 5. 國語(10%) 6. 國史(10%)이며

2次試驗：速記實務

4級特別採用 競爭昇進 및 轉職試驗

1. 民事法(40%) 2. 刑事法(40%) 3. 速記實務(20%)

5級 特別採用 轉職試驗

1. 法制大義(70%) 2. 速記實務(30%)

또한 76년 9월 20일 제96회 國會 法司委 第2차 會議에서는 速記主事 37명을 채용하여 서울 高法, 서울民事地法, 서울家庭法院, 春川地法, 淸州地法, 大田地法, 光州地法, 全州地法에 각 2명씩, 서울刑事地法에 4명, 大邱地法, 釜山地法에 각 3명씩, 大邱高法, 光州高法, 濟州地法에 각 1명씩, 보류 8명을 배치하겠다는 것이 보고, 제안되어 法司委를 통과하였다.

法司委員들의 速記士 관련 주요발언을 본다.

○金命潤委員 현재 速記士가 10명이 배치된 것은 아는데 77년에는 몇 명이 됩니까?

○法院行政處企劃擔當官 南基正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命潤委員 37명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法院行政處企劃擔當官 南基正 우선 연차계획으로서 81년까지 충원예정입니다.

○李宅敦委員 速記制度에 관한 것인데 速記制度가 현재 10명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앞으로 5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한 300여명의 速記士를 양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구태여 5개년계획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速記制度는 法院으로서 速記화는 본위원이 매년 주장을 하고 바라고 한 것입니다마는 과히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손쉽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速記制度가 주는 신뢰, 그것은 速記制度를 法院에 도입하는 것 이상 몇 배의 실효가 있는 것이니까 되도록 이것을 단축할 수는 없느냐? 단축하는 데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法院行政處長 金炳華 이택돈위원께서 언급하신 速記制度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이 速記制度의 채용은 이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석상에서 누차 강조한 것이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좋은 의견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좀더 단시일안에 이것을 실천할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산면이나 인원면에서 그렇게 부족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책정인원으로서 385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國會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速記士 열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맞이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法院으로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 분들이 우선은 試驗段階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法院이 효율적이고도 필요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단시일내에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빨리 채용을 해서 速記制度를 法院에 도입함으로 인해서 裁判事務의 공정 등을 기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단시일내에 300수십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보충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얘기이고 國會와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은 우선 이 사람들이 현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 法院에서 試驗段階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결과를 봐서 단축해서 처리를 하겠습니까. (끝)

그 외 속기에 관련된 이런 발언도 있었다.

○김명윤위원 아까 速記士 얘기가 10명이 갔는데 이 速記士는 어떻게 활용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번에 尹前大統領 事件을 速記士가 裁判長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法院行政處장 김병화 그 때는 速記士가 아직 배치 안된 상태입니다.

○김명윤위원 며칠부터 왔습니까?

○法院行政處장 김병화 9월 5일경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高等法院에 4명(註: 실제로는 2명), 地方法院에 6명(註: 실제로는 8명; 刑事 4, 民事 4) 이렇게 배치해서 중요한 事件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第96回 法司 第2次 速記錄

(法院現況報告中)

9. 制度의 改善

가. 裁判事務

(1)速記制度 導入: 公判調書の 正確

裁判의 迅速處理

(民訴法 제148조)

(刑訴法 제56조의 2)

裁判部當 1인 - 385인

1976년.....10명(在京法院 배치)

1977년~1981년(5개년) 충원예정

3. 국회속기사 법원으로 전직(76.9.20)

이에 따라 法院行政處에서는 國會에 10년 이상 유경험자로 우수한 速記士 10명을 할애해 달라는 협조요청에 法院行政處의 할애요청에 의해 國會速記士 10명이 1976년 9월 20일자로在京 各級法院에 전보되었는 바 서울高法에는 양원용(梁源龍) . 김중수(金鍾壽) (2명), 서울民事地法에는 하대환(河大煥) . 최용하(崔龍夏) . 양철재(梁澈在) . 정명길(鄭明吉)(4명), 서울刑事地法에는 김겸선(金謙善) . 임래현(林來炫) . 서길천(徐吉泉) . 고태중(高太仲)(4명)이 전보되어 裁判速記를 담임케 되었다.

여기에서 《速記界》 17호(1976년 12월)에 실린 서울高等法院 刑事과에 배치된 梁源龍이 소개한 大法院裁判연구관 朴英植관사의 강의내용을 인용한다.

“裁判速記를 담임케 됨으로써 새로 개척된 分野에서의 裁判速記의 법률적 성격문제가 대두되었다.”...

2. 변론調書

調書라 함은 訴訟절차진행에 관하여 사실이 시행되었는가를 공증하는 서기가 작성하는 서면이며, 또한 期日(裁判)에 무엇이 시행되었는가를 보고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法院書記는 하나의 공증機關인 것이며 그가 작성하는 調書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있고 調書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부분은 절차가 공정히 시행되었다는 것을 담보하며 공증력이라는 訴訟法상 특별한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法廷증거력이라고 한다.

공증력 있는 사실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보고문서로서의 증명력이 있는 것이다. 訴訟절차는 기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일에 있어서의 모든 절차가 공정히 시행되게 하기 위하여 심판기관과 더불어 공증기관인 서기가 참여하는 것이며, 참여한 서기는 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參與書記의 調書에 관한 규정을 보면

民事訴訟에 있어서는 준비절차 調書, 증인訊問調書, 감정調書, 검증調書, 화해調書 등에는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刑事訴訟에 있어서는 피고인 . 피의자 .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등의 訊問調書와 검증 . 압수 . 수색 등 調書와 公判調書가 있다.

가사심판에 있어서는 조정調書, 심판調書 등이 있다.

이상 열거한 외에도 행정소송 . 경매법 등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절차는 원칙으로 반드시 변론을 경유하여 또 변론에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써 채용하여야 한다.(民訴 제124조)

변론의 경과에 관하여서는 法院書記가 기일(裁判)마다 조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에 편철하

여야 한다.(民訴 제141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速記者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錄取할 수 있다.(民訴 148조 1)

被告人, 증인 또는 기타자의 訊問에 있어서 法院이 필요한 때에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하여 이를 錄取할 수 있다(刑訴 제56조 2)

이 速記錄과 錄音帶는 조서의 일부로 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民訴 제148조 2)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속기를 아주 소극적으로만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재판업무의 근대화작업에 따라 보다 완벽한 변론조서작성으로서 당사자의 진술내용이 충분히 현출되어 신속.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억울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沿革

裁判과정에 速記를 도입한 나라로서는 오스트리아인 바 1895년 오스트리아 民事訴訟法 제 280조는 "모든 증거조사에 있어 速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의 근대화를 시도한 첫 케이스이다.

1924년 독일연방국 民事訴訟法도 그 제 163조의 A서 速記制度를 도입했으며, 日本도 大正 15년 日本의 民事訴訟法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昭和 32년(1957년)에는 裁判速記法이란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同法에서 速記관제를 두었다.

한편 昭和 35년(1960년) 日本은 民.刑事訴訟規則을 개정하면서 위 裁判速記法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때 日本도 처음으로 速記와 더불어 근대전자문명의 총아인 錄音장치를 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45년 日本의 古物을 받아들여 고유의 訴訟法은 창출되지 않았지만 民訴 148조와 刑訴 56조에 速記와 더불어 錄音장치를 日本보다 먼저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재판과정에 있어서 速記이용률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

그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비용문제

고도의 기술과 장시간 翻文소요시간 때문에 시간당 25,000원의 속기료가 비교적 소송당사자에 부담스러운 가액인 경우가 있어 이 비용문제 때문에 애당초부터 速記의 이용을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었다. 그동안 訴訟물가액이 고액인 民事의 경우와 정치적 거물의 刑事事件에만 速記가 이용되었을 뿐이다.

능숙한 速記者의 부족

裁判速記는 고도의 기술과 지구력과 정확, 신속, 공정을 요한다. 訴訟當事者(被告, 原告)나 證人·參考人·鑑定人 訊問에 있어 裁判長(또는 陪席判事)·辯護人(

原 . 被告측) 또는 검사의 빗발치는 일문일답식의 訊問型에 速記者는 숨쉴 틈도 없이 두세 시간, 어떤 경우는 6시간 동안을 불꽃을 튀겨야 한다. 오른팔이 거의 마비되고 정신적으로는 졸도 일보직전이다. 그러나 기록 하나하나가 당사자들에게는 신체적, 그리고 물질적 흥망에 직결된 것이므로 그 속기함에 있어서 한자라도 빠뜨릴 수 없는 장시간의 외롭고 괴로운 速記에 감내할 수 있는 체력과 인내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따라서 장시간 속기의 병폐인 자포자기식 속기로 자칫 빠지기 쉬운 심성에서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 裁判速記者의 필요적 자질이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法院의 결정이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과연 裁判速記하려 할 때 그 능숙한 속기자의 초빙이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는 것이 당무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에 의하면 그동안 裁判速記에 단골로 초빙될 정도의 速記者는 5명 내외인 것 같다. 앞으로 초빙케이스의 裁判速記者는 民.刑事訴訟法을 반드시 읽어두어야 할 것이고, 公判調書 작성요령을 체득해 두면 錦上添花라 하겠다. 이 요령을 알고 들어가면 그 기록에 있어 훨씬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서면

民事의 경우 대부분의 裁判과정에서 原告의 공격에 대해 被告의 방어가 공판정에서의 변론을 통한 것이 아니고 주로 서면을 통해 "××을 반환하라" 공격하고 "××을 반환할 이유 없다"하고 방어하는 준비서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로 사실상 速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된다.

要旨主義

현행법은 변론의 외부적 경과의 기재사항인 ㄱ. 本案判決의 신청 ㄴ. 이송의 신청 ㄷ. 법관 또는 書記의 제척 ㄹ. 담보공여의 신청 ㅁ. 訴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하는 주장 ㅂ.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시기에 늦은 것이라는 주장 ㅅ.준비절차의 결과 또는 종전변론의 결과 변론에 의 上程 ㅇ.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 責問權포기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변론의 내용은 속기식으로 그 내용 전부를 기록치 않고 변론의 외부적 경과의 요지만 기록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속기의 필요성이 실무면에서 배제되어 왔다.

지금까지 실무예로서는 速記者가 속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速記錄은 다만 참고자료로 소송 기록철에 첨부했을 뿐이었다.

宣誓明文

현행소송법상 초빙속기의 경우 다른 증인이나 감정인처럼 "法廷에서 速記함에 있어서 허위 기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翻文된 速記錄에 대해 어느만큼의 공증력 입증력이 있느냐가 문제시되고 있다. 法院 당국이 녹음 같은 것으로 일일이 대조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소송 당사자간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그 速記錄 내용을 어느 만큼, 또 어떤 방법으로 受認하겠느냐이다. 결국 參與書記의 간단한 메모는 설혹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결정적인 調書로서 裁判長도 그 수정을 명할 수 없는 강력한 공증력이 있는데 반해 裁判 전모를 완벽하게 기록한 速記錄은 그 참고자료에 불과해 왔다는 데서 速記의 이용이 소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法院職員으로서의 速記일 경우는 그 速記錄 자체가 公判調書가 됨은 당연한 일이다.

4. 필요성

裁判 과정에 속기가 필요함은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다.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裁判 내용도 날로 복잡다양하게 됨으로써 옛날과 같이 간단한 요지주의로서는 재판의 신속·정확·공정을 기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문일답식의 交互訊問制度下에서는 속기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충실히 기록할 수 없다.

더더구나 서류심을 위주로 하는 大法院의 상고심의 경우 그 判決의 기초를 1심, 2심의 公判調書에 두는데 그 공판조사가 당사자들에 극히 불안한 요지주의에 입각한 調書이고 보면 여기에서 速記의 필요성은 자명해지고 만다.

5. 결점

위와 같이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실무면에서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확도의 보장이 없다.

이는 법률상 소양이 갖추어지지 안했을 경우의 위험성과 소란한 법정에서 혼자서 3시간 내지 4시간씩의 장시간 기록의 경우 신체적으로 범하기 쉬운 오류의 가능성을 뜻한다.

이 경우 參與書記의 노련한 요지주의의 간단한 메모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작성과 閱讀에 시간이 걸린다.

參與書記의 메모는 메모 그것으로서 끝나지만 速記일 경우는 翻文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작성된 速記錄을 열독하는데도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재판부로서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단조롭다.

參與書記 메모가 중점적 사건의 핵심을 파헤쳐 그것을 강조하는 조서의 성격을 띠는데 비해 속기는 일문일답 그대로 寫實化했기 때문에 소설적이고 단조롭다는 것이다.

6. 절차

"法院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速記者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錄取할 수 있다"(民訴 제148조 1)

"被告人, 증인 또는 기타자의 訊問에 있어서 法院이 필요한 때에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하여 이를 錄取할 수 있다(刑訴 56조 2)"

라고 하여 "速記에 부치기로 한다"는 法院決定이 내려지는데는 첫째 法院職權으로 하는 경우와 소송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나 또는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특정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또한 진과정을 속기시키거나 아니면 미리 속기시키고자 하는 범위를 정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의 속기자 선임결정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초빙 速記의 경우)

한편 속기자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적용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의 공정, 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특정속기자를 초빙하기로 선임결정하는데 대해 만일 그 속기자가 불출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때의 속기자는 반드시 그 초빙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겠지만 한번 응했으면 그 다음 기일에도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해석한다. 즉, 임의로 속기를 거부하거나 사임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속기자가 불출석했을 때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빙속기는 법원결정형식으로 속기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지휘에 관한 절차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결정은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취소·변경할 수 있다.(208조)

또한 法院은 결정으로 속기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7. 速記者의 의무

速記자는 速記원본과 速記錄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속기자는 현행규정에 선서의무가 없으므로 선서를 안해도 무방하다. 타국례로는 오스트리아 법정은 속기자에게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속기자는 자기가 느끼고 들리는 대로 속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甲이라고 들었다 해도 速記자가 乙로 들었으면 乙로 기록한다.

速記자는 속기할 때 있어서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도 안 되며,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 速記는 언어에 의한 표현의 기록이므로 행동에 의한 표현은 기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괄호를 열고 "被告人 손을 흔들며" 등 행동의 상태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필자가 구체적으로 괄호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하였는 바 判官사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附記함)

速記한 원문은 당해기일(裁判)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보통 3일이내) 翻文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 : 48시간내, 서독 : 지체없이)

速記원본은 調書의 일부가 될 수 없고 속기록이 조서의 일부가 된다.

또한 속기자에게 개시의무가 있다. 즉, 속기원본이건 속기록이건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開示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속기자는 速記원본(복)낭독요구, 速記원본(복)열람청구, 速記錄등본 청구, 速記錄초본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속기원문보존기간에 대한 명문은 없으나 상고심이 끝날 기간까지는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8. 速記錄의 訂正

參與書記가 작성한 公判調書에 대하여 조서인증권자인 裁判長이 調書의 일부 정정을 명할 수 있는데 대하여 속기록의 정정도 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參與書記의 法廷錄(메모)이 요지주의인데 대하여 속기록은 전문주의로써 그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속기록의 정정은 명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參與書記가 속기록의 틀린 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異議 정정을 할 수 없고, 다만 그의 調書에 틀린 부분이 있음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參與書記는 변론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반드시 速記에 부쳤다고 기재해야 한다.

民訴 제148조 2항에 의하여 폐기된 速記錄이라 할지라도 그 速記錄은 소송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9. 速記錄의 폐기

"이 速記錄과 錄音帶는 調書의 일부로 한다. 다만 法院은 당사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民訴 제148조 2항)"라고 하여 訴訟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미 만들어진 속기록도 폐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民事訴訟에서만 있는 일로서 당사자가 소송을 해 나감에 있어 서로 利益이 될 경우 폐기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승인이 法院職權으로는 폐기할 수 없다.

다만 폐기의 시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직 速記하지 안 했으면 면제될 것이고, 이미 했다면 폐기되지만 일단 調書의 일부로 速記錄이 완성된 후 당사자가 이를 폐기하기로 승의했을 경우 이를 법원 직권으로 당연히 폐기할 것이나 아니면 당사자의 항변, 異議를 받아들여서 할 것인가 하는 이견이 있으나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미 폐기하기로 합의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변론종결시까지의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0. 비용문제

속기록도 소송비용으로 보는 일반적 해석론에 입각, 모든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民事訴訟비용법에 따라 당연히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오스트리아 : 速記를 신청한 쪽이 부담).

그러므로 설혹 작성된 속기록이 폐기가 되더라도 그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速記錄의 등본이나 초본의 청구비용은 당연히 청구자가 그 실비를 부담할 일이다.

이러한 많은 난제가 法院에서의 裁判速記를 담당하는 速記士들이 業務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裁判速記는 일단 정상적인 첫걸음을 걷기 시작하였다.

4. 안정기의 裁判速記 실제

《速記문화》 창간호(1967년 5월, 大韓速記協會 發行) 특집2(法廷速記편)에 실린 서울地法 刑事과에 速記士로 근무하던 盧元鎬의 '法廷速記의 실제문제' 내용을 보면 당시 법원 속기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인 등이 처음 法院에 왔을 때를 회고하면 회의가 있거나 까다로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호출을 당하여도 생소한 곳이라 거절하기가 곤란하고 이력서에 '速記'라는 두 글자를 써넣은 것이 원망스러웠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反文(飜文)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며, 정상집무 이외에 한두 시간 속기를 하면 그 부담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어 다행한 일이지는 하였다. 그 당시만 하여도 소송관계인(검사, 피고인, 변호인)들이 기록의 정확을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錄音을 허가하여 줄 것을 종종 裁判部에 신청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지금은 녹음을 하자는 예는 극히 드물고, 웬만하면 속기를 하자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범조계 인사들이 速記를 이해하고 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裁判 때 속기를 하려는 의도가 첫째는 어디까지나 기록의 정확을 기하하는데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자들이 혹시나 위증을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거짓말을 못하도록 못을 박자는 점에도 있다. 그 실례로 작년(1966년) 여름 서울高等法院 特別部에서 속기를 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급히 가본즉 모 전직 고관이 政府를 상대로 하는 行政訴訟이었는데 審計院 직원 수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原告측에서도 전직 모 고급관리 2.3명을 대동하고 경청하고 있었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한 마당이었는지라 선과 점으로 記錄을 하는 곳에서 증인들은 그 분위기에 휘말려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때의 공기가 하도 심상치 않아 본인도 그 익일로 錄取한 그대로를 번문하여 가지고 갔을 때 마침 原告측 대리인이 그 자리에 있다가 증인들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었으니 간단히 요점만 적어주어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전신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감이었다.

이제까지 본인의 경험담을 적었거니와 法院에서의 速記의 필요성을 말한다면 公判調書는 진술의 요점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刑事事件에 있어서 被告人이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나오는데 速記術이 아니고 속필로 기록하여 증거로 내세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본다. 또한 民事裁判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증인의 증언내용을 速記術로서 완전히 記錄하여 判決의 자료로 삼는 것이 능률적이며 정확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으로 진출한 속기사들은 속기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에도 불구하고 速記業務가 없을 때나 혹은 있을 때에도 행정적인 업무도 겸하는 데서 오는 업무의 과중함과 速記士가 볼 때는 남보다 특출한 한 분야를 더 할 줄 아는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速記'라는 단어에 얽매어 2중의 업무를 하면서도 대우 및 승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法廷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판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문서화될 뿐만 아니라 요약되어 정확하고 공정한 裁判官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과는 달리 飜文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한계, 인원의 부족에 늘 速記는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실무에서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세간의 주요관심사가 되는 몇몇 裁判에서만 활용되게 되었다.

제3절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및 기업의 속기록 작성

1. 기업공개에 따른 株總速記錄 작성

速記의 필요성은 사회 각계로 번져 速記라고 하면 거의 國會를 연상할 정도의 수준에서 國家機關이나 국영기업체를 필두로 일반사회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速記士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실례가 늘어나는 한편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면서 주주총회 속기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다.

1972년부터 불기 시작한 企業公開은 1975년 정부의 企業公開촉진법 제정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현재 상장된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速記士에게 速記錄 작성을 의뢰하는지의 여부를 설문하였는 바, 1996년 3월 31일 현재 상장회사 727개 중 설문에 응답한 248개사의 약 절반가량이 速記士를 활용하여 주주총회 速記錄을 작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주총회 速記錄의 작성이 법적 작성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速記錄 작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速記錄은 거의 영구보존을 택하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소수가 10년 정도의 문서보존연한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주총회 관련, 특히 會議錄이라는 관점에서 그 보존의 가치가 상당하고, 社史를 편찬할 때는 株總速記錄에 기록된 대표이사의 인사말씀과 발언내용들이 활용되고 있다.

상장법인이 速記士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첫째 능력있는 速記士는 단순히 기록기술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주주총회에 경험이 많은 會議 전문가로서 대접하고, 會議의 준비에서부터 의안의 상정여부에 대한 상의, 시나리오의 작성의뢰, 검토, 주주총회 리허설 및 의장의 會議진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주주총회장에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速記士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기까지는 速記士가 단순히 기록기술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회의에 관련된 전문컨설턴트의 소양이 있어야 한다. 먼저 速記는 필수이고 경제상황에 관련한 지식, 주식, 상법, 증권거래법,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 보는 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그 외에 회의진행법, 주총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알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둘째, 速記士만 할 줄 아는 속기사는 기록기술자 취급을 한다. 속기사를 맞이하는 태도는 정중하지만 속기록 작성 외에는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또 속기사에게 지급하는 요금도 줄여서 지급하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속기사가 상대하는 직원의 직급은 말단사원에서 대리 정도이고 기껏해야 부장 정도이다. 그러나 회의전문가 수준의 速記士는 회사의 임원들이 먼저 친해지려고 애쓰고 최고경영자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장회사의 速記錄 작성은 속기록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첫째요, 速記士는 회의의 전문가이므로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 둘째다. 우리 速記人들은 회의 전문가로서의 길을 정해놓고 업무를 대하고 성심을 다한다면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멋진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도 드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속기사에게 속기록 작성 이외에 다른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초창기에 株主總會를 담당했던 速記士들은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速記錄 작성 전달후 즉시 요금을 내지 않으면 速記錄을 회수하거나 주어진 速記業務만 당일 참석하여 처리하는 등의 과감성을 보이기도 하여 현 시점에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회사의 많은 부분이 처음에는 速記錄 작성의뢰를 하였지만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속기사가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速記人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다음은 1997년 현재 개정법률을 반영한 株總速記錄 사례이다.

會 順

1. 開 會
2. 國 民 儀 禮
 - 國旗에 대한 敬禮
3. 出席株主 및 株式數 報告
4. 開 會 宣 言
5. 議 長 人 事
6. 報 告 事 項
 - (1) 監事報告
 - (2) 營業報告
7. 議 決 事 項
 - 第1號議案：第〇〇期 (1997年 1月 1日~1997年 12月 31日)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承認의 件
 - 第2號議案：定款 一部 變更의 件
 - 第3號議案：理事 選任의 件
 - 第4號議案：監事 選任의 件
 - 第5號議案：理事報酬限度 決定의 件
 - 第6號議案：監事報酬限度 決定의 件
 - 第7號議案：外部監查人 選任의 件
8. 閉 會 宣 言
9. 閉 會

(午前 10時 開會)

○進行 (總務팀長〇〇〇) : 株主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株式會社 第 期 定期株主總會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株主總會는 當社 定款 第18條에 의거 代表理事이신 〇〇〇 사장께서 의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代表理事 ○○○사장 議長席에 등단)

그러면 會順에 따라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모두 壇上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나는 자랑스러운 太極旗 앞에 祖國과 民族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忠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一同着席)

다음은 會順에 따라 出席株主 및 株式數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年 12月 31日 현재 當社の 株主總數는 34,849명이며 發行株式 총수는 686萬株입니다.

금일 오전 10시 현재의 出席株主數는 委任狀에 의한 代理出席을 포함하여 124명으로써 그 所有株式數는 570萬 2,898株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는 當社가 발행한 議決權 株式數 686萬株의 83.13%에 해당하는 株主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議長께서 開會宣言을 하시겠습니다.

○議長 ○○○: 안녕하십니까?

定款에 따라 今日 株主總會의 의장을 맡은 代表理事 사장 ○○○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附議案件 審議와 決議에 필요한 議決權을 가진 株主님께서 출석하셨으므로 □□株式會社 第 期 定期株主總會의 開會를 선언합니다.

(議事棒 3 打)

進行 (總務팀長 ○○○) : 다음은 議長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議長 ○○○: 尊敬하는 株主 여러분!

항상 저희 □□株式會社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바쁜신 가운데도 오늘 우리 會社의 第 期 定期株主總會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證券去來所에 上場한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1997事業年度 經營成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中 략)

아무쪼록 株主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任職員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회사의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年 月 日

□ □ 株 式 會 社

代表理事 社長 ○ ○ ○

(株主 一同拍手)

○進行 (總務팀長 ○○○) : 다음은 報告事項으로서 먼저 監査報告가 있습니다. 商法 第 413條에 의하면 監事는 理事가 株主總會에 제출할 議案 및 書類를 조사하여 株主總會에 보

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營業報告書를 포함하여 總會에 제출될 서류가 適法·適切하게 작성되었는지의 보고를 먼저 하는 것이 順理라고 생각되어 監査報告를 營業報告보다 먼저 하고자 합니다.

○議長 ○○○: ○○○ 監事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監査報告 해주십시오.

○監事 ○○○: 안녕하십니까? 監事 ○○○입니다.

監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4期 營業年度에 있어 理事의 職務執行 전반에 대하여 監査를 실시하였으며 그 監査方法과 감사 결과는 營業報告書 18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監査報告書의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會計에 관하여는 外部監査인 英和會計法人과 협조하여 監査를 실시한 결과, 會社가 작성한 財務諸表는 關聯事項을 적정하게 表示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會計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도 부정행위 또는 法令이나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는 중대한 사실은 發見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株主總會에 提出된 議案 및 書類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監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年 月 日

□ □ 株 式 會 社

監 事 ○ ○ ○

○議長 ○○○: 다음은 營業報告가 있겠습니다.

(「議長!」 하는 株主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株主 ○○○: 반갑습니다. 저는 株主 ○○○입니다.

먼저 오늘 本 株主가 □□株式會社가 企業을 공개한 후 첫 번째 개최하는 株總에서 첫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會社를 알차게 경영해 주셨고, 오늘 株總 準備를 위해서 많은 努力을 해주신 議長 이하 會社 任職員 여러분께 株主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營業報告書 順序입니다. 營業報告에 관한 사항은 조금 前에 議長께서 인사말씀에서 대략적인 설명이 있으셨고, 우리 株主들에게 배부해 주신 油印物에도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 株主는 油印物에 있는 내용을 의장께서 다시 설명하시기보다는 營業報告書는 油印物로 갈음할 것을 提議하는 바입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動議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議長 ○○○: 지금 株主님으로부터 營業報告를 油印物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異議 없습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商法 第44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事項은 油印物로 代替하도록 하겠습니다.

(議 事 棒 3 打)

○進行 (總務팀長 ○○○) : 다음은 決議事項 審議에 들어가겠습니다.

第1號議案 : 第○○期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案) 承認의 件

○議長 ○○○: 그러면 第1號議案 第○○期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承認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3 打)

간략히 提案說明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資産總計는 前期對比 52% 증가하여 6,584億 1,000萬원이 되었고, 負債는 前期對比 56.2% 증가하여 4,921億 4,000萬원이 되었고, 資本總計는 前期對比 40.9% 증가하여 1,662億 7,000萬원이 되었습니다.

當期賣出額은 8,601億 1,000萬원이고 經常利益은 158億 2,000萬원, 當期純利益은 129억 3,000만원을 示顯하였으며, 利益配當을 28억 1,000만원으로 提案하고 있습니다.

(「議長!」 하는 株主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株主 ○○○: 株主 ○○○입니다.

오늘 □□株式會社 定期株主總會에 株主로서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定期株主總會가 期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8월에 공개를 하고 불과 6개월만에 이렇게 많은 株主들을 모시고 첫 공개적인 定期株主總會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定期株主總會를 준비하시느라 여러 임직원들이 수고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株主와 執行部가 합심하는 뜻에서 박수로 축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株主一同拍手)

저의 提議에 호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本論으로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따라서 株主들이 執行部를 격려하는 뜻으로 執行部가 提示한 第1號議案을 原案대로 승인할 것을 正式으로 動議하는 바입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좋습니다」 하는 株主 있음)

○議長 ○○○: 原案대로 승인하자는 動議와 再請이 계셨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次期 15期에는 기필코 좀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第1號議案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承認의 件은 原案대로 滿場一致로 통과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 打)

참고로 株主님께서 결의해주신 配當金은 금년 3월 30일부터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年度の 配當性向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달성하도록 最善의 努力을 하겠습니다마는

國家經濟狀況의 전망에 따라서 多少의 변동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第2號議案：定款 一部 變更의 件

○議長 ○○○: 다음은 第2號議案 定款 一部 變更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 棒 3 打)

本 案件은 證券去來法의 改正 內容을 반영하고 理事의 任期를 2년으로 연장하여 業務執行의 持續性을 확보함과 아울러 國際化時代에 부응하기 위해 英文商號를 併記해 주고 向後 新株 上場時에 대비하여 有價證券上場規程에 따른 新舊株 併함에 관한 內容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株主 여러분의 意見을 말씀해 주십시오.

(「議長!」 하는 株主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株主 ○○○: 株主 ○○○입니다.

이미 배부해 주신 油印物을 충분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議長께서 방금 제안하신 定款 一部 變更의 件은 改正된 證券去來法이나 商法의 內容에 附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議長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現在와 같이 급변하는 經營環境 속에서 企業經營活動에 꼭 必要한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本 株主는 原案대로 통과할 것을 正式으로 動議하는 바입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좋습니다」 하는 株主 있음)

○議長 ○○○: 지금 原案대로 통과하자는 動議와 再請이 계셨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第2號議案 定款 一部 變更의 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 棒 3 打)

第3號議案：理事 選任의 件

○議長 ○○○: 다음은 第3號議案 理事 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 棒 3 打)

저희 執行部를 구성하고 있는 理事 全員の 任期가 이번 株主總會 終了時에 滿了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理事 일곱 분을 選任코자 하오니 商法 第382條 및 當社 定款 第20條의 規定에 의거하여 本 株主總會에서 理事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하는 株主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株主 ○○○: 안녕하십니까? 株主 ○○○입니다.

지금 議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本 案件은 理事 일곱 분을 새로이 選任하는 案件입니다. 株主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狀況下에서도 會社는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理事 選任 方法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부를 잘 이끌어 오신 議長께서 腹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株主가 박수로 받아들여 理事로 選任할 것을 動議하는 바입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議長 ○○○: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今年度 法改正에 의해서 社外理事 한 분을 포함해서 일곱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新任理事로는 ○○○·○○○·○○○·○○○·○○○·○○○·○○○씨 일곱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 理事候補는 ○○ 大學 化工學科를 卒業하고 同大學에서 工學博士學位를 받으셨으며, ○○○의 專門委員과 ○○大 ○○研究所 所長을 歷任하셨고 現在 ○○ 大學 工科大學 教授로 활동하면서 ○○에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有價證券上場規程에 부합하는 社外理事 候補입니다.

여러분께서 박수로 選任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主 一同拍手)

(「좋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第3號議案 理事 選任의 件은 滿場一致로 앞서 말씀드린 ○○○·○○○·○○○·○○○·○○○·○○○·○○○씨, 이상 일곱 분이 理事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 打)

새로 選任되신 理事분들을 株主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新任 理事, 人事)

(株主 一同拍手)

第4號議案 : 監事 選任의 件

○議長 ○○○: 다음은 第4號議案 監事 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 打)

當社の 金夏洙 監事が 이번 總會를 끝으로 任期가 滿了됩니다.

따라서 商法 第409條 및 證券去來法 第191條의 11, 當社 定款 第20條의 規定에 의거, 常勤監事 한 분을 포함하여 새로이 監事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本 株主總會에서 選任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하는 株主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株主 ○○○: 株主 ○○○입니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企業經營에 대해서 透明性이 요구되고 있어 監事의 選任이 상당히 重要的 事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獨立性과 專門成을 갖추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을 監事로 選任해야 하

는데 證券去來法에서 정해진 資格要件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會社에서 그간 適任者를 물색해 두셨다면 議長께서 그 腹案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株主들이 拍手로 받아들이는 方法으로 選任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議長 ○○○: 지금 動議와 再請이 계셨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株主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執行部の 腹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監事에는 ○○○, ○○○, 두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 常勤監事 候補는 第○回 ○○考試에 合格하여 ○○○部 등 國家機關에서 年以上 奉職하였으며 ○○○ 를 거쳐 當社의 監事와 理事職을 두루 거친 분으로 會社의 내용을 尙상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證券去來法에서 定하는 常勤監事로서의 資格要件을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 監事 候補는 ○○○에서 監查關聯 分野의 일을 오래 맡아 보신 분으로서 現在 ○○○로 在職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상 두 분을 監事 候補로 推薦하오니 異議없으시면 拍手로 選任해 주시기 바랍니다.

(株主 一同 拍手)

(「좋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第4號議案 監事 選任의 件은 앞서 말씀드린 ○○○, ○○○씨, 두 분이 監事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 棒 3 打)

새로이 監事로 選任되신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監事께서는 公務로 인해 不參하셨습니다.

(新任 監事, 人事)

(株主 一同 拍手)

第5號議案 : 理事報酬 限度 決定의 件

○議長 ○○○: 다음은 第5號議案인 理事 報酬限度 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 棒 3 打)

前期에는 理事와 監事の 報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億원을 任員報酬로 策定해 주셨는데 이중 理事의 報酬로 億 〇萬원을 집행하였고, 監事に 대하여는 非常勤인 關係로 報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期의 理事 報酬限度로 〇億원을 책정해 주시면 그 範圍內에서 적절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意見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하는 株主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株主 ○○○: 株主 ○○○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수고해 주신 議長 이하 여러 任員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 株主가 會社의 여러 實績들을 면밀히 檢討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任員 여러분이 쌓으신 業績에 비하여 집행된 報酬實績을 보면 節約하신 흔적이 역력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期의 理事 報酬限度를 〇億원으로 提議하셨는데 그 정도면 合理的인 水準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 株主는 議長을 비롯하여 여러 任員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절히 잘 執行해 주실 것으로 믿고 理事報酬는 〇億원을 限度로 하여 그 執行은 理事會에 委任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議長 〇〇〇: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第5號議案 理事報酬 限度 決定의 件은 滿場一致로 原案대로 通過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 打)

第6號議案 : 監事報酬 限度 決定의 件

○議長 〇〇〇: 다음은 第5號議案 監事報酬 限度 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 打)

이번에 當社도 常勤監事を 새로 모셨으므로 이번 期에 監事에게 支給할 報酬限度로 저희 생각에 〇億 〇,〇〇〇 萬원을 策定해 주시면 監事間 協議에 의하여 適切하게 執行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하는 株主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株主 〇〇〇: 監事が 獨立性を 확보하고 공정한 監査業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報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本 株主는 監事の 報酬를 별도로 정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〇億 〇,〇〇〇 萬원이 적당한 水準이라 생각되어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動議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議長 〇〇〇: 방금 原案 通過 動議와 再請이 계셨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第6號議案 監事報酬 限度 決定의 件은 監事の 報酬를 〇億 〇,〇〇〇 萬원 限度로 정하고 그 執行은 監事間의 協議에 委任하는 것으로 通過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 打)

第7號議案 : 外部監査人 選任의 件

○議長 〇〇〇: 다음은 第7號議案 外部監査人 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 事 棒 3 打)

株式會社の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 第4條의 規定에 따라 會社가 外部監査人을 選任함에 있어서는 監事の 提請에 의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監事께서 第 期부터 第 期까지의 財務諸表를 監査할 外部監査人으로 會計法人을 選任할 것을 提請하셨습니다.

參考로 會計法人은 1982年 4月 1日 設立되었고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25-15番 地에 所在을 두고 있으며 資本金은 12億 7,000萬원이고 代表社員을 包含하여 183名의 公認會計士를 保有하고 있는 堅實한 會計法人입니다.

株主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議長!」 하는 株主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株主 ○○○: 株主 ○○○입니다.

마지막 議案에 發言權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外部監査人을 選任하는 데 있어서 株主總會의 承認을 받도록 한 것은 會社の 恣意를 排除하고 外部監査人의 任期와 地位를 保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會計法人은 제가 알고 있기로 國內 屈指의 會計法人으로서 우리 會社の 財務諸表를 監査할 外部監査人으로 選任하는 데 아무런 異議가 없습니다.

따라서 本 株主는 執行部の 原案대로 承認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株主 있음)

○議長 ○○○: 방금 動議와 再請이 계셨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株主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第7號議案인 外部監査人 選任의 件은 株式會社の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 第4條에 의거, 滿場一致로 會計法人이 外部監査人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 事 棒 3 打)

○進行 (總務팀長 ○○○) : 이상으로 附議案件 審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議長께서 閉會를 宣言하시겠습니다.

○議長 ○○○: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企業 公開후 처음 모시는 株主總會인데 株主님의 적극적인 協調는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도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以上으로 第 期 定期株主總會의 閉會를 宣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 事 棒 3 打)

(株 主 一 同 拍 手)

(午 前 時 分 閉 會)

2. 錄音器의 대중화에 따른 錄取錄 작성

錄音器가 출현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제 速記가 필요없게 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錄音器가 발명되던 해인 1837년에 現代速記의 출발인 피트맨식이 發表되었으니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錄音器의 출현으로 速記錄은 매우 믿음직한 보조수단을 갖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전문용어의 홍수 속에서 녹음기는 速記士에게 정확한 速記錄을 작성하기 위한 확인작업에 필수적인 보조기기역할을 하고 있다.

錄音器가 이처럼 速記錄의 정확성에 보탬을 준 공이 있는 반면 현직速記士의 지나친 錄音器 의존에 따라 눈을 반짝이고 귀를 기울여 전심전력으로 速記하는 습관은 점차 사라지고 速記士들은 점점 錄取士로 변신해 가는 감이 없지 않다.

한편 錄音器의 등장으로 5.16군사정부하에서는 速記無用論이 등장한 적도 있다. 그러나 소리로써 보존되는 錄音器와 문서화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速記錄의 특성으로 인해 速記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서 재미 있는 것은 아직도 速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계층에서는 速記의 사양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와는 달리 녹음기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速記수요가 發生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錄取錄 작성분야이다.

녹취록의 주된 용도는 녹음만 해 두려던 목적에서 문서화할 필요가 있을 때인데 일반인들이 녹음을 듣고 문서화하려다가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못하고 1시간짜리 테이프를 녹취하는데 2, 3일을 허비했다. 만약 녹취자가 상당한 고급인력이라면 시간적인 낭비는 물론 물질적인 낭비도 수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爭訟에 관련된 錄音내용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경찰·검찰·法院에선 錄音테이프 速記錄 즉 錄取錄 작성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어 각급 法院의 주위에는 한집 건너 하나씩 速記事務所가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는 錄音器가 가져다 준 速記業務 需要로서 녹음기 등장으로 인한 속기무용론에서 도리어 속기 필요론으로 뒤바뀐 셈이다.

이렇게 작성된 法廷提出用 錄取錄(錄取書)은 증거의 일부분으로서 결정적 역할을 할 때가 많아 뚜렷한 문서적인 증거가 부족한 訴訟당사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錄取를 권유받기도 한다.

한편 이 錄取는 소송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녹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말한 부분 이므로 전화를 錄取하거나 일반 대화를 錄取하였다 하여 도청에 관련된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法廷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錄取錄 작성을 의뢰하는 이들 대부분이 문서를 주고 받지 않을 정도의 순수함을 지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速記士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分野이다.

3. 기타 會議錄 및 速記錄 작성

그외에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금융기관, 總務處·內外通信·平統事務所 서울시教委 등이 있다.

한편 일반사회에서의 速記術 활용사례는 그 폭이 넓으나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례로서는 言論의 좌담회, 학술단체의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速記가 있고,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의 活性化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速記士가 速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처음에는 주로 國會速記士가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하였다가 차츰 私設 速記事務所가 생겨나면서 그런 곳에서 속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실 速記事務所는 자영업 내지는 프리랜서의 영역으로 왕성한 活動을 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速記錄의 신뢰성 내지는 教育機會의 부족으로 速記士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사례도 빈번히 속출하고 있다.

또한 言論社에서도 속기사 활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언론사는 들리는 대로 받아 적는 속기록이 아니라 기사화 할 수 있는 수준의 원고작성을 요구하므로 속기술만 가지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제4절 할로 모색하는 속기계(1986년 - 1996)

1. 地方議會 실시(1991년)와 速記熱風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방자치제의 여건이 점점 성숙되어 감에 따라 政府는 내부부를 중심으로 地方自治制 실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45년에 광복을 맞고, 1948년에 政府를 수립한 우리나라는 地方自治制를 이미 실시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議會事務局의 構成에 있어서는 新生 獨立國家 수준의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

國會라는 커다란 집단에서 會議體에 관한 모든 法令과 制度, 우수한 인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地方議會 개원으로 생기는 자리를 確保하는 것이 關心事의 대부분이었다.

會議을 주관하는 부서의 責任者를 비롯한 핵심요원들이 會議體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의사봉은 왜 쳐야 하는지, 速記錄은 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한 채 1991년 4월 15일에 기초자치단체인 市.郡.區議會, 동년 7월 8일 市.道議會, 동년 9월 2일 教育委員會가 개원되었다.

速記士는 필수요원이고 會議體의 결과물을 生産하는 인력인데 國家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던 速記士 國家資格試驗은 매년 봄, 가을 2회 실시하던 것을 速記士 응시인원이 다른 자격종목에 비해 적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년에는 되레 1회로 줄여 速記人들의 강한 반발을 샀고, 급기야는 速記士를 확보하지 못하는 議會가 속출하여 궁여지책으로 錄音을 하여 打字手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지금도 速記士 定員의 타자수 잠식으로 어쩔 수 없이 타자수가 速記 業務를 담당하는 地方議會가 있을 정도이다.

당시 내무부의 자료를 보면 '速記士 需要 判斷'이라는 제목하에 " 1991년초에 검토한 '地方議會 會議내용 速記방안'에 의하면 1991년 1월말 현재 전국의 속기학원은 69개소이고, 수강 중인 자가 2,53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資格證 소지자 1,171명중 서울이 920명, 지방이 251명이었다. 서울은...문제점이 없었으나 지방은 速記士 소요인력이 600여명인 반면 資格證 소지자는 251명으로서 速記人力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速記資格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2~3개월의 수련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速記人力 대처방안이 필요하였다"고 記述하고, 그 對策으로서 디터폰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물론 빈약한 재정을 감안하여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각 基礎議會당 무조건 2명 내지 3명을 채용(市道議會 8명내외)하여 速記士는 회의도중에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고 참아야 하고 고도의 集中力이 필요한 記錄業務를 한 사람이 하루종일 速記하게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速記士들이 여성인력으로서 기존에 있던 "여성 = 급사"라는 등식으로 速記士인지 차 심부름 하는 사람인지 분 간이 가지 않는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速記士를 운용하는 상위직급에 速記業務 내지는 會議 관련 경험자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의사진행에 웃지 못할 事件들이 많았다.

議會에서만 살아가야 할 速記士를 技能職(필기)으로 채용하여 앞길을 막막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위직급에 國會에서 근무하던 고참 主事級이나 退職者 또는 외부에서 인력을 公採하는 성의도 보이지 않은 채 회의록은 발간되었다. 이 회의록은 대한민국 政府 수립시에 애국심 하나로 速記錄을 만들어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튼 1995년 7월 7일 현재 전국적으로 速記士의 定員수는 市·道議會 154명(현원 147명), 市·郡·區議會 478명(현원 453명)의 방대한 인원이 速記業務에 종사하고 있게 되었다. 市·道議會는 濟州道가 4명으로 가장 적고 대부분 8명에서 13명, 市·郡·區議會가 4명에서 5명이 速記業務를 맡고 있어 전국의 地方議會 速記士 定員은 632명에 이르고 있는 바 전국 議會從事 定員중 市·道議會 定員 1,078명 대비 14.28%, 市·郡·區議會 定員 3,764명 대비 12.69%로써 전국 평균으로는 13.05%에 이르고 있다.

議員의 정수와 會議시간의 장단이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또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며 地方議會에 근무하던 인력은 대부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면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발령에 따라 議會에서 執行機關으로 인사발령되고 다시 새로운 인력이 보충된다. 한편 速記士는 계속 같은 자리, 같은 業務를 맡게 되므로 '신입사원을 가르치는' 일이 생긴다. 또한 '速記士가 速記業務만 하면 되지'하는 편리함보다는 당장 회의를 준비하고 會議록을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회의준비-회의-속기-속기록 작성-교정-편집-인쇄-배포의 전과정에 간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한 業務의 폭주로 인해 '議會는 會議 있을 때만 일하고 나머지는 논다'는 말은 速記士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國家 발전은 물론 地方自治를 통한 지방발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議會에서 살고 議會에서 뼈를 굶어야 할 速記士들, 의사진행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速記士들에게 議會 全般에 대한 教育기회를 부여하고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議員들의 의사진행을 도울 수 있는 '地方自治 會議전문가'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경륜이 쌓이면 '會議場에 앉아 있는 速記士'에서 '速記業務 및 의사, 의정業務를 총괄하는 會議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 아래 열심히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는 速記士의 권익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地方自治 會議專門家'라는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원의 난립과 通信교육의 문제점 대두

우리나라에서 전통있는 사설학원들이 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학의 正式과목으로 채택될 때 그 학원 출신의 강사들이 맥을 잇게 한 것은 그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기존 速記士 양성에 진력하던 전통있는 학원들은 '돈벌이'보다 '기록보국'의 정신으로 소수 정예의 수업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가면서 速記士 1명을 더 양성하는 데 몰두해 왔다. 그런데 地方自治制 실시를 빌미로 速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速記 장사꾼'들이 판을 치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원수의 증가와 통신판매조직의 난립이다.

처음에는 전통있고 우수한 법식으로 평가받았던 '高麗速記'의 창안자 金天漢 선생의 實弟인 김성한이 《고려速記 통신강의》를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큰 지면으로 신문광고를 하였다. 이때까지는 速記界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날이 갈수록 그게 아니었다.

뒤이어 '議會식' '한글식' '정통한글식' 등이 나왔고, 판매업체도 한국고시원, 와이제이 직영 한국속기연수원, 한국속기연구원, 국가고시연구학회등이 판을 치다가 심지어는 社團法人大韓速記協會를 사칭하여 대한속기연구원, 대한속기연수원 등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대한속기협회의 요금표를 싣고, 엉뚱한 사람을 합격자로 둔갑시켜 소감까지 써 광고를 하였다.

이들 판매업체 중 일부는 매월 廣告費로 1億원 정도를 지불했을 만큼 전국 신문광고면을 장식했으며, 販賣員에게는 50%의 수당을 보장하는 등 정상 速記人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저질렀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합격자가 전무하자 사무실에 강의실을 차려놓고 "연중무휴, 저자 직강, 시간.장소 자유선택, 특별회원 특전, 우리만 정통"식으로 속기사 지망생을 유혹했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정통 속기학원들의 진정으로 교육청에서 신문광고지의 장소로 찾아가면 유명사무실 처럼 텅 비어 있고, 있다 하더라도 업체를 출판사로 하여 교육당국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는 허점을 이용했다.

또 결제수단도 가능한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하여 할부를 하더라도 업체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시불로 결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종전의 할부방식이겠거니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던 수강생들이 "아, 이게 아니로구나"하고 깨닫고 교재대의 반환을 요구해도 이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시일을 끌었다.

대부분의 速記士들이 1년 내지 3년씩 자신의 키높이보다 많은 양의 연습지를 소모해 가며, 그것도 資格試驗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1명~100명 내외의 1, 2급 합격자들이 나오는 바늘구멍 같은 試驗을 通過한 자부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3개월에 3급, 6개월에 1급 내지 2급에 합격할 수 있는 쉬운 속기를 학원에 다닐 필요없이 집에서 錄音 테입 20~30여개, 교재 4권~11권만으로 배울 수 있다. 교재대는 19만원대에서 30만원이므로 학원비용, 교통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고소득(월수입 200만원~300만원)을 보장한다"며 사회진출에 첫발을 내딛는 미진학청소년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신문광고, 지역신문, 텔레마케팅, 피라밋 등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마치 "이 좋은 통신速記를 배우지 않으면 바보"라는 식의 공세를 펼쳤다.

따라서 1995년 후반까지 '速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대유행'을 했고, 그 피해자는 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소비자고발창구에 몰릴 듯이 피해사례가 제기됨으로써 기존 정통 速記人들은 부당하게도 같은 부류로 몰려 피해를 당했다. 여기에는 당시 大韓速記協會의 미온적인 대응도 한몫을 했다. 그러한 상황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비자보호원 등에 미온적으로 어필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범도 없고 뜻도 없는 세상에 '速記'는 거의 6년간 방치되었다.

이러한 '速記장사꾼'들의 지나간 자리에는 수십년씩 速記士를 양성해 내던 우수학원들의 폐원이라는 잔해만 남았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速記人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手筆速記교육의 침체와 컴퓨터速記 등장

手筆速記는 정통의 速記方式으로서 모든 면에 있어 결코 늦지 않다. 翻文의 지연을 말하던 당시는 타자기나 컴퓨터가 速記士에게 보급되지 않았고, 그저 原稿紙에 翻文하는 시스템이어서 속기시간의 약 10배를 소요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제는 1시간 속기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3시간 정도를 소요하면 교정된 原稿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런데 통신강의가 기승을 부릴 때를 전후하여 국어 機械速記도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1) 美製 速記機械의 보급과 헤크닥 출현

종로 2가에서 고려속기학원을 운영하던 허현이 1985년 美國制 速記打字機인 리포터 마텔을 國內로 도입하여 영문打字速記 교습에 실험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機械는 打字機 方式로서 1927년 프랑스인 고노가 발명한 고전적이고 실험적인 'Machine Tachygraphive'를 거쳐 1911년 美國人 와트 스톤 아일랜드의 'Stenotype'에 이르러 부호체계 速記方式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고, 당시 美國에서 速記方式으로 널리 쓰이던 수동식 美國機械로서 키를 동시에 누르면 롤로 된 종이에 먹끈으로 인자한 후 그 자모를 보고 手筆翻文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허현은 이 리포터 마텔에다 한글打字機의 도입에서와 같이 영문글쇠를 한글글쇠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한글 速記打字機'를 선보였으나 실질면에서는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다가 1986년 3월 손석련·박해동이 동 학원에 입학하여 速記打字를 배운 후 부산에서 허현·손석련·박해동이 학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이후 1988년에 박해동이 釜山速記학원을 인수하고 88년말 釜山 지역에서 실시된 國家資格試驗에 2급과 3급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고, 1989년에 손석련이 처음으로 1급資格을 取得하였다.

이 方式은 이때까지만 해도 '速記打字'라고 명명했다.

그 후 1990년초 허현이 미제機械인 스마트 라이터(Smart Writer)를 도입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미국에서도 速記打字機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速記打字機로 입력하면 速記부호가 컴퓨터에 찍혀서 자동번문이 되는 方式(RS232方式)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허현은 대우통신에 근

무하던 은동기에게 美國에서 가져온 영어 프로그램을 한글 프로그램화하는 용역을 의뢰하여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다. 이때부터 허현은 '打字速記'를 '컴퓨터速記'라고 명명하고 機械(프로그램)가격으로 520만원을 책정하면서 미제기계를 한국에서 사출하여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헤까닥이다.(헤까닥+프로그램, 헤까닥 :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헤까닥 같 것이라 하여 헤까닥으로 이름짓고 영문명으로는 헤크닥이라고 함.)

허현과 부산지역 속기학원의 마찰로 부산지역에 수험용 기계 공급을 하지 않자 부산지역 학원(박해동, 손석련, 정규민)이 미국기계 수입원인 동미산업에 의뢰하여 직수입하자 마찰이 더욱 커졌고 이 과정에서 '감퓨터'로 불리는 안문학이 개입하게 되었다.

2) 國會電算速記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착수

國會電算速記시스템의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경제신문》 1991년 5월 27일(월)자에 비교적 상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다.

"速記 겸용 컴퓨터 나온다

컴퓨터를 활용, 문서나 회의내용을 속기할 수 있는 고속문서처리시스템의 기본기술이 개발됐다. 분당 320음절까지 기록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실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生産技術研究院은 電子情報센터 鄭喜盛박사팀이 고속문서처리 시스템을 제작하는 기본기술개발을 완료, 6월부터 다음 단계인 製品化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박사팀이 속기용으로 개발중인 고속문서처리시스템은 國會議員이 발언하는 內容 등을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다. 國會議員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분당 320음절 이내의 속도로 말한다. 速記시스템으로 불리는 고속문서처리시스템은 빠르게 받아적기 위해 일반컴퓨터 키보드가 아니라 압축된 자판을 채택하고 있다.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ㅇ ㅂ ㅅ ㅈ ㅊ ㅋ ㆁ 등 10개, 모음도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 10개만 사용한다. 이같이 構成된 키보드를 눌러 축약어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30만자의 한글전자사전을 바탕으로 문장으로 해석, 記錄하게 되며 프린트를 사용할 경우 발언내용이 즉시 인쇄된다.

정 박사는 「미국식 速記打字機가 2,500개의 룰에 의해 記錄하는 데 비해 이 한국형 速記시스템은 25개의 단순화된 룰에 의해 速記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익히기 쉽다」고 설명한다. 「한국말을 배우자」는 말을 記錄할 경우 왼손으로 'ㅎㅅㅇ 一'를 동시에 누른 뒤 오른손으로 'ㄷ ㅌ ㅓ'를 한꺼번에 치면 된다. 각 음절의 초성을 누르되 토씨는 모음만, 초성이 ㅇ이면 모음을 친다는 등 기본룰에 따라 키보드를 조작하면 입력이 끝난다. 한국형 速記시스템은 이처럼 독자적으로 設計된 키보드, 기호화된 입력문을 문장으로 바르게 고치는 지능형 飜文시스템, 한국어전자사전인 보조시스템 등 세 가지 요소로 構成되어 있다. 입력된 축약어를 문장으로 자동번역하는 飜文시스템은 여러 가지 오류를 검색, 가장 적절한 말을 찾아내는 지능을 갖는다. 또 한자 변환도 가능하다. 전자사전의 경우는 30만 단어를 수용하게 되며 국회전문용어와 인명부가 함께 수록돼 축약어의 번역에 활용된다. 정박사팀은 현재 7만여자의 사전을 완성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23억 5,000여만원의 개발비를 들이면 한국형 速記시스템인 고속문서처리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속입력용 키보드 제작엔 5억 2,000여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금형제작 및 성능 측정이

끝나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공급가격을 기존 컴퓨터 키보드와 비슷한 30만원 안팎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능형 翻文시스템의 개발비는 9億 9,000여만원으로 잡고 있다. 이 비용에는 고속입력시스템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 개발비도 포함된다. 전자사전의 경우는 8억 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日本의 전자사전개발연구소가 일본어 전자사전을 개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日本은 100억엔을 개발비로 잡는 데 비해 우리는 무척 낮다. 이는 우리의 전자사전이 速記라는 한정된 기능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박사는 「한국형 速記시스템이 내년 上半期 중 상품화되면 그 파급효과가 기대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본다.

國會速記業務의 자동화뿐 아니라 地方自治制 실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에서 이를 활용하면 議事錄 처리 및 業務능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사법부 및 행정부의 수요도 큰데다 신문사·방송사·인쇄소·교육기관 등에서 이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의 수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력에 의존해 온 速記業務를 機械化, 電算化 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基礎議會가 構成된데다 廣域議會의 출범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은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國會 및 議會의 경우 본회의·상임위원회의·國政監査 등에서 速記業務가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속기기술과 체계로서는 이미 감당키 어려운 한계에 부딪쳐 있기 때문이다. 速記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 작성에도 애로가 많다.

88년도 國政監査 회의록은 89년 5월에야 나왔고, 89년도분은 90년 4월에야 완성됐을 정도로 작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議員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보통 3주에서 4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회의록 작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손작업속기에 의한 速記錄 작성 및 翻文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다 편집과 인쇄과정도 분리돼 있는 등 작업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速記業務의 機械化나 電算化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國內外의 기술현황과 기술개발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美國 및 유럽식 機械化速記 기술은 우리와 언어의 구조, 速記시스템의 차이로 인해도입이 진전되지 못했다. 반면 國內의 컴퓨터전문기술인들은 끊임없이 한국형 速記시스템의 개발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다양한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고속문서처리시스템의 실용화 시기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지난 8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완성한 기본기술을 시스템 제작으로 연결, 성능이 우수한 한국형速記시스템을 만드는 일만 남아 있다. 대수요처인 國會와 政府는 물론 企業 및 관련기관과 전자업체가 모두 한국형 속기시스템인 고속문서처리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盧三錫기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의 速記翻文의 지연에서 그 일차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시점은 허현의 速記機械가 나오고 위에 서술한 機械速記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사설 연구 활동을 자극하고 위기감을 불어넣어 광고와

홍보를 통한 열전을 불러 일으킨 원인도 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보면 그같은 조짐을 쉽게 알 수 있다.

”生技源 정희성 박사의 보고서 內容

國會 電算速記 시스템 開發을 위한 사전조사연구
(A Study on Korean Language Stenotyping System)

최종연구보고서

수행연구기관 : 生産技術研究院(과학기술처)

책임연구자 : 정희성(생기원 수석연구원)

연구원 : 김종현(생기원 研究員)

연구원 : 윤근수(생기원 研究員)

연구원 : 박용욱(생기원 研究員)

연구원 : 조석환(대한타자교육협회)

연구원 : 석두수(國會기록편집국장)

연구원 : 김인녕(國會速記1과장)

연구원 : 이승철(國會速記1과 3계장)

1991년 6월

목적 : 사무자동화를 통한 生産性提高

장점 ; 인적자원의 效率의 運用, 豫算절감, 速記錄의 즉시성

소요기술수요 :

1. 國會會議錄 速記技術
2. 國會速記錄 보관 관리기술
3. 國會速記錄 인쇄 기술
4. 國會速記錄 컴퓨터 교환 기술관련 세부기술 :
 - 가. 인텔리전트 키보드
 - 나. 電子사전 시스템
 - 다. 한국어 구문이해 시스템

研究開發결과 : - 速記기술의 情報처리 모델의 構築

- 세계 각국의 速記 및 議事錄의 작성에 따른 자동화 기술현황
- 한국형 인텔리전트 키보드 설계를 위한 평가, 설계 모델
- 한국어의 형태소 처리 및 구문이해 시스템의 이론 및 처리기술
- 電算 速記를 위한 電子사전 시스템의 구성
- 速記錄의 영구보관 기술
- 速記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기술
- 速記錄 流通을 위한 컴퓨터 通信技術과 방법
- 오자 입력을 정정하기 위한 사전구성법 및 실험 데이터

技術의 활용 : 개발되면 입법·사법·행정의 사무자동화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되면 혁신적인 사무생산성의 향상으로 社會的·經濟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신문사 등의

CTS(Computer Typesetting System)으로 전용 가능하고, 또한 기계 번역 시스템을 위한 核心技术로 원용 가능, 教育用 시스템으로 開發, 보급하여 한국형 OA시스템의 代表的인 기기로 활용하여 한국인의 문서 생산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각각의 응용영역 시스템 전용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꿈의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단되었다. 지속적인 研究開發費도 문제가 되었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懷疑論도 일조를 하였을 것이며, 개인 연구자들의 치열한 방어전략도 가세하였을 것이다.

3)컴퓨터速記 機械 및 프로그램 開發

1994년초에 정상덕·최광석·손석련 등이 ‘워드픽처’를, 안문학이 ‘감퓨터’를, 박해동이 1996년에 ‘모아치기’를 내놓았다.

이들 方式의 특징으로서는 워드픽처가 애초부터 독자적 速記用機械(램상주방식)를 지향한 반면, 감퓨터는 일반자판을 이용한 속기가 가능한 기계지향으로 출발했다가 후에 독자적 速記用機械로 돌아섰으며, 모아치기는 램상주방식으로 독자적인 워드프로그램 없이 일반자판을 이용하는 것과 병행한 速記用機械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으로 ‘速記 빠른손워드’가 株式會社 經營소프트(대표 정상모)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는 처음 速記業務 개념보다는 문자방송을 위한 고속입력에 착안한 것으로서 그 원리는 일반자판을 이용하여 동시에 모아친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순수 소프트웨어 방식을 이용한 램상주 프로그램을 지향하면서 독자적인 워드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아치기와 차이가 있다.

이들 컴퓨터를 이용한 속기기기 중 실무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CAS와 ‘속기빠른손워드’이다. 일반용(스태노픽처), 전문가용(스태노픽처 3000)은 CAS(Computer Aided Steno-machine)이라는 이름으로 1995년 國會速記士 채용시험에 4명, 1997년에 2명이 합격하여 國會로 進出하였으며, 1996년 각급 法院에 119명이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SBS 9 뉴스”를 PC통신 유니텔을 통해 문자중계하기도 하였다.

한편 經營소프트는 문자방송으로 1993년초 한보청문회를 PC통신 유니텔을 통해 문자중계한 후에 “YTN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등을 PC통신 유니텔을 통해 문자중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國會 速記2課長인 홍순관(洪淳寬)의 눈에 띄어 그의 제의를 수용하여 1996年度부터 國會速記士 60명을 대상으로 1개월씩 教育을 실시하였고, 그 중 林熙容이 會議場에서 직접 速記業務를 시도하는 등 눈에 띄는 약진을 하고 있다. 또한 1997년 4월 18일부터는 國會速記士養成所 敎習科目으로 채택되어, 1998년 양성소가 폐소될 때까지 1년과정으로 20명을 교습시켰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초창기에 機械速記를 도입하는데 앞장 섰던 허현의 해크닥은 1994년 서울시의회에 2명의 속기사를 합격시켰으나, 그들은 후에 CAS로 재교육받았고, 1992년에도 法院에 최초로 機械速記를 선보였으나 지금은 보급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반면 그를 거쳐간 대부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벌인 치열한 法廷訴訟 등은 速記界 초유의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있어서도 안될 모습들이다.

4) 國會에 컴퓨터 速記士 畵 進出

國會速記課는 계속하여 議員들로부터 빠른 速記錄의 제출을 요구받아 오면서도 變문 과정에서 P.C를 활용하는 선에 머물렀을 뿐,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여기에 機械速記가 신문에 '컴퓨터速記'라는 廣告로 "치면 바로 翻文되어 나온다"고 廣告를 하고, 국회 고위층에 서신과 面담을 통해 채용시험에서 '컴퓨터速記'도 응시하게 하여 줄 것을 緊요하게 요청하고 기계를 들고 직접 시연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채용담당부서인 총무과 인사담당자는 速記課에 이에 대한 意見을 구하면서도 기존 手筆速記士들의 논리가 자기 방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면서 速記課의 意見보다는 '컴퓨터速記'의 응시를 허용하는 方式을 택했다.

1995년 8월 채용시험 당시 '컴퓨터速記士'들의 실력은 솔직히 보장 것이 없었으나 채용인원을 8명으로 정하면서 手筆 4명 機械 4명을 각각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 결과 手筆로는 片茂昌·崔倫楨·李惠汀·李時姬, CAS로는 李奉璇·鄭英熙·姜志侑·鄭淑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1997년 채용시험에서는 마찬가지로 機械速記를 따로 뽑기로 하여 手筆로는 吳根順·劉美亨이, CAS로는 柳點任과 鄭香仁이 채용되었다.

이로써 CAS는 6명의 速記士를 國會로 진출시키게 되었다.

公採試驗에 있어서 5분 낭독에 手筆速記는 原稿紙 翻文方式으로 15배 시간을 주었고 機械速記는 4배를 주었다. 여기서 수필속기를 고집하는 속기인들에게 아쉬웠던 점은 手筆速記는 翻文도 手筆에 의존하도록 한 점이다. 만약 이들에게 워드를 이용케 하여 4배 내지 5배의 시간을 주었다면 애초에 打字에 숙달된 手筆速記士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CAS方式이 國會에 1995년 9월 4일자로 발령을 받은 다음해 2월 하순부터 빠른손워드(스피드워드)를 기존 速記士 60명을 대상으로 교습시켰다는 사실과 1997년의 公採에서 2명의 CAS方式의 速記士가 채용된 이후에도 스피드워드는 업무능률 향상과 소프트웨어방식으로서 잘만 하면 직접 速記도 가능하다는 전망 아래 계속 교육되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내린 한편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도 기존의 手筆速記 敎育은 병행하지 않고 빠른손워드를 채택, 교습하였다는 점이다.

速記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주무기로 문자화하는데에 가장 빠른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速記界도 이제는 정통적인 手筆速記만 진정한 速記라고 하고 기타 方式은 "速記다. 아니다"하는 논란에서 벗어나 速記業務를 하는 모든 方式, 즉 手筆이든 機械든 錄音方式이든 音聲認識이든 速記士라 명명하여 速記界를 構成하지 않으면 速記界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手筆速記와 CAS, 빠른손워드를 혼용하되 필수적으로 시스템적인 호환성을 가지게 하고 공식적인 資格試驗, 競試大會 등에 문호를 開放하여 거기에서 우수함이 검증된 方式은 協會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제7장 의정사의 사초 국회회의록

제1절 국회회의록의 의의

1. 국회회의록의 개념

代議制 하에서의 의회의 議事는 다양한 민의를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조정.통합하고 정부를 견제.감시.비판하는 과정으로서 이는 會議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회의록은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나타나는 발언이라는 사실행위의 기록이므로 회의장에서 행한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전부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회의록은 국회의 회의에 관한 공식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회의 경과에 대하여 寫實的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의회대사전(1992.국회사무처)에서는 회의록의 정의를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逐語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 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회의록에의 게재'에 대하여 "게재란 일반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글이나 그림을 실는 것으로 단순히 글자만을 실는 기재와 구별된다. 회의에 관한 공식 기록인 국회회의록에 게재한다는 것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逐語적으로 기록한 속기원고를 비롯한 당일회의의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각종보고서.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회의록에 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였다.

2. 국회회의록의 종류

1) 회의체에 따른 종류

(1) 본회의회의록

본회의회의록이란 국회본회의회의록의 약칭이다.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115②). 국회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개회식에 관한 사항, 의원의 이동, 의석의 배정과 변동,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부의안건과 그 내용,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서, 의사, 표결

수,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의원의 발언보충서, 서면질문과 답변서,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본회의회의록 게재사항 중 당일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각종 보고서나 참고자료 등 별도의 부록으로 작성.발간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회의회의록은 본회의 다음날에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을 발간하고 있다.

(2) 위원회회의록

위원회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위원회의 의사도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비밀회의시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69②). 국회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심사안건명, 의사, 표결수,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국정감사회의록

국정감사의 감사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班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의 감사활동 내용도 국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감사록은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국회법§118①), 당해 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4) 국정조사회의록

국정조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회의가 아닌 조사활동내용의 기록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현재 회의록에 준하는 조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으며, 공개된 조사회의의 회의록이나 활동기록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에게 공표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나 활동내용의 기록과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 해당 증언.감정인.참고인에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외에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조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문서 기타자료는 해당 위원회가 관리·보존하며, 다만 조사특별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료한 때에는 이를 국회사무처에 이관해야 할 것이다.

2) 발간특성에 따른 회의록의 종류

(1) 臨時會議錄

임시회의록이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임시로 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본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하여 임시회의록이 발간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하도록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다.

(2) 配付會議錄

배부회의록이란 국회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배부회의록은 의원, 행정부, 사법부, 헌법기관, 정당, 언론기관, 공공도서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 배부하고 일반에게는 국회간행물센타를 통해서 유상으로 반포하고 있다.

(3) 保存會議錄

보존회의록이란 국회법 제69조 제3항 또는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위원장) 등이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으로서 배부회의록의 불게재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이 게재되며, 보존회의록의 개념에는 비공개회의록도 포함된다.

(4) 非公開會議錄

국회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보존한다.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록은 비밀유지상 원고로서 보관하고 있으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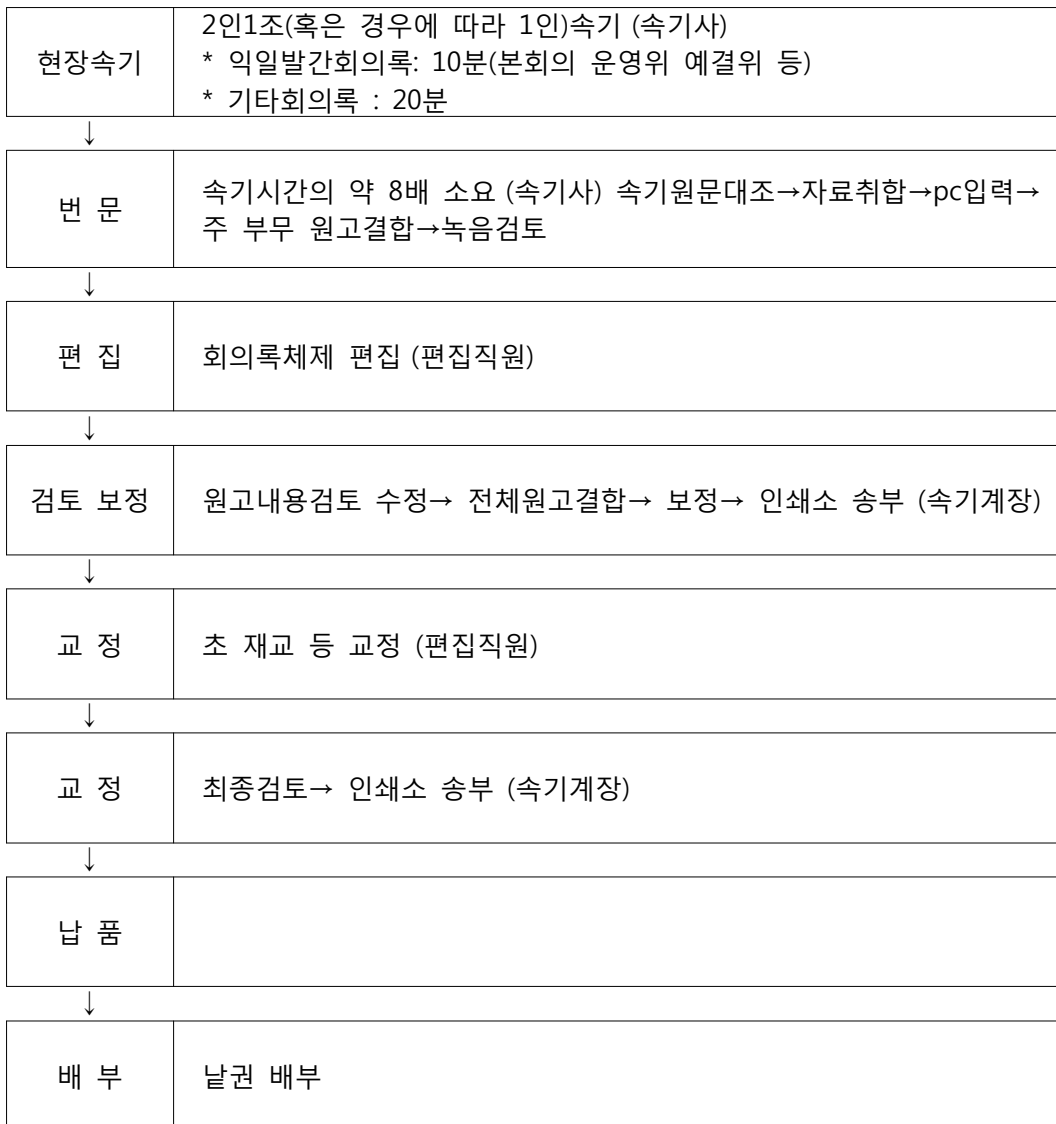
또한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공개회의록의 내용은 국회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국회밖으로 帶出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 국회의원회의록 발간과정

국회의회의록의 발간과정은 회의장(현장)에서 속기사가 속기를 하여 사무실로 돌아와 번문을 한 것을 편집직원이 회의록 체제에 맞춰 편집을 하고, 속기계장에게 제출하면 속기계장은 원고내용을 검토,수정하고 전체 원고를 결합하여 디스켓에 보정한 후 인쇄소에 송부한 다음 편집직원의 초,재교 등 교정을 거쳐 속기계장에게 교정지를 제출하면 최종검토를 한 후 교료(OK)를 하여 인쇄소에 송부한 것을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납품하면 배부선에 따라 날권으로 배부한다.

이를 흐름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의회의록 발간과정의 흐름도)



4. 회의록의 보존 관리

국회회의록은 국회법 제1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이 게재된 회의록과 원고로서, 보관되는 비공개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 발간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12).

이렇게 보존되는 회의록중 보존회의록은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고 비공개회의록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국회밖으로 帶出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국회법§62,§118②③,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6,§7,§12).

제헌국회부터 제4대국회까지는 회의요지만을 기록한 회의록에만 서명하였고 속기록에는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회의록은 6.25동란 전 제본하지 않은 채 관리한 관계로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속기록은 전부 보존하고 있다.

제5대국회 이후의 회의록은 5.16혁명으로 인하여 서명 날인을 받지 못한 채 보존하고 있으며, 제6대국회 이후의 회의록은 의장 등이 서명 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하고 있다.

제헌국회와 제2대국회의 속기록은 6.25동란으로 인하여 국회가 대구·부산 등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였다. 9.28 수복후 제헌국회속기록을 국회사무처에서 신문 광고에 의하여 수집하기도 하고, 당시 근무했던 속기사로부터 또는 도서실 등에서 수집하였다. 그 후 1.4후퇴로 서울을 다시 철수할 때에 속기록을 국회 중요서류와 함께 후송하였으나 후송을 담당할 직원의 관리소홀로 일부가 분실되었다.

속기록을 비롯한 중요문서 일부의 분실 문제는 1951년2월3일 제10회국회임시회 제21차본회의에서 진상규명론이 제기되어 사무처 일반행정상의 비리까지도 함께 감사를 하기 위한 국회사무처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1년 3월 27일 제10회국회임시회 제52차본회의에서 보고한 사무처감사보고 가운데 서류 분실부분에 관한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다.

國會書類遺棄事件 監查報告要旨

戰勢가 차츰 惡化됨에 따라 이미 水原에 疏開시켜두었던 중요서류 20개상자의 釜山移送의 責任者인 厚生課長(安斗濩)은 12月26日 庶務課職員 李鶴九를 移送責任者로 任命하고 추력 1 臺를 出發시켰으나 李鶴九는 水原에서 國會書類 20箱子중 10箱子만 싣고 10箱子는 放棄한 채 自己집과 速記課長인 金奎浩의 집을 싣고 떠나 버렸다.

同 추력이 떠난 후에 水原에 到着한 安斗濩는 應急措置로 放棄된 書類等屬中 重要な 書類는 거의 釜山으로 移送措置함으로써 危難은 免했다.

本 事件의 遠因으로서는 事務處首腦層의 一部가 往往公私를 混同한 處事가 惡例가 되어 所謂 上濁下不淨으로 部下職員들의 先公後私의 觀念이 極度로 麻痺되었다는 點이며, 直接 原因으로서는 李鶴九의 重大한 犯罪와 金奎浩가 그 사정을 알면서 自己 짐을 실었다는 點, 또 輸送責任者로서 安斗濩가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못했다는 點에 있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重要書類는 釜山까지 輸送되었고 比較的 輕易한 一部書類와 什器等 4 5點이 天安에 遺棄되었음에 不過하고 過誤를 犯한 職員들은 이미 引責 辭職함으로써 本件은 一段落된 것으로 認定된다.

제3대국회부터 제5대국회에 이르는 동안 국회속기록은 태평로 국회의사당(현 서울시의회) 속기과 회의록 창고 등에 보관하였으나 5.16혁명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와의 인수인계가 불명확하여 관리가 소홀하게 되었다. 다만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근무했던 속기사들이 제5대국회 민.참의원회의록의 未製本된 부분을 정리 제본하여 보존용으로써 10부씩 확보하였다.

제6대국회 이후에도 속기록을 계속 정리하여 1971년경에 태평로의사당 제2별관 속기과장실에 진열하기는 하였으나 缺本速記錄이 있는 등 관리상태가 미흡하였다. 1975년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이전된 후 1977년에 종합적으로 회의록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속기과 직원이 국립도서관·서울대학교규장각·동아일보조사실에 출장 조사하고 부산의 동아대학교서관 등에 서한으로 문의 조사하였으나 보존 관리상태가 미비하여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79년 결본된 속기록을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대출하여 총 12冊 9,295面을 複製함으로써 비로소 제헌국회 이래 全 會議錄 1帙을 속기과장실 木製書架에 보존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발간한 지 30여년이 되어 지질의 破質 破本으로 영구보존이 곤란한 제1회부터 제28회 국회의 속기록 총 30冊 2만9,990면을 1985년부터 연차적으로 복제하였다. 국회회의록(속기록) 원본은 속기과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배부용회의록은 국회도서관(3帙, 1帙은 마이크로필름化)과 총무처문서보존소(1帙)에서 보존하고 있다.

5.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

1) 개발배경과 추진목적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은 국가초고속망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 공공용서비스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개발된 시스템으로 국회회의록 전문 데이터베이스(FULL Text DB)를 구축하여 국회와 정부 공공도서관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공중망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까지 서비스를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서는 입법참고자료로서, 그리고 학계에서는 학술자료로서 국가의 사초자료로 인식되어, 제한된 장소내에서 점점 낡아 보기 어려운 배부회의록을 전산화하여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정보처리국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추진목적은 국회본회의,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조사시 회의내용이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회의록의 내용을 발인자, 안건명, 피감사기관, 주제명 등으로 구분하여 향후 초고속통신망구축 완료시 전국민으로 서비스확대를 통하여 산업정보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대상 DB 및 검색방법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의 대상 DB는 본회의·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의 회의록이며, 회의록 데이터는 제헌국회부터 1994년도분까지는 이미지로, 1995년도분부터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검색방법은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이용자가 큰 타이틀부터 한단계씩 찾아들어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메뉴검색형태와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특정주제어를 가지고 찾고자 하는 DB를 선택한 후 주제어를 조합하여 결과를 검색하는 색인어검색방법과 이용자가 회의종류·회차·발인자 등의 자료형태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에 직접 자료를 찾아주는 조건검색방법은 물론 주제어와 비슷한 용어까지 찾아주는 동의어검색 등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지원해주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3) 자료의 출력

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은 다양한 출력양식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이미지자료는 원본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화면에 출력된 결과를 이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확대.축소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의 형태에 따라 회전하여 볼 수도 있다. 프린트 출력도 차수 전체는 물론 원하는 페이지를 지정하여 출력할 수도 있다. Text자료의 경우는 일반적인 프린터 출력은 물론 문서편집기를 자동으로 호출하여 이용자의 PC로 Download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로 편집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 국회회의록 담당부서의 업무분장(1997.12.31현재기준)

국회사무처 사무분장내규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기록편찬국 속기1.2과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속기1과

속기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집담당.속기1담당 내지 속기4담당의 분장사무중 위원회 분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편집담당

- 가. 속기업무의 기획
- 나. 본회의, 국회운영 . 특별위원회 회의록 편집 발간
- 다. 회의록 배부.반포
- 라. 회의록 원고열람 및 복사
- 마. 보고사항
- 바. 조사 . 통계
- 사. 보존회의록의 관리
- 아. 국내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속기1담당

본회의, 통일외무 . 보건복지위원회 속기 . 번문 및 회의록 편집 . 발간

(3) 속기2담당

본회의, 국회운영 . 건설교통 . 정보위원회 속기 . 번문 및 회의록 편집 . 발간

(4) 속기3담당

본회의, 교육 . 환경노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 . 번문 및 회의록 편집 . 발간

(5) 속기4담당

본회의, 국방 . 통상산업 . 특별위원회 속기 . 번문 및 회의록 편집 . 발간

2) 속기2과

속기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속기1담당 내지 속기4담당 중 위원회분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속기1담당

- 가. 본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속기 1 번문 및 회의록 편집 . 발간
- 나. 회의록원고 열람 및 복사
- 다. 회의록 제본

(2) 속기2담당

본회의, 국회운영 . 법제사법 .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속기.번문 및 회의록 편집.발간

(3) 속기3담당

본회의, 재정경제 . 통신과학기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번문 및 회의록 편집.발간

(4) 속기4담당

본회의, 내무 . 행정 . 특별위원회 속기 . 번문 및 회의록 편집 . 발간

제2절 국회의회의록의 변천

1. 국회의회의록의 발간실태

1)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속기과는 1948년 5월 31일 개최된 제헌국회 제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회의록(속기록)을 발간하고 있다.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초인 제37회정기회(민의원 제21차본회의, 참의원 제15차본회의, 1960년9월26일)까지는 회의내용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전부 기록하여 수록하는 '속기록'과 회의의 경과와 결과만을 요약하여 수록하는 '회의록'의 두가지로 작성하였다.

1960년 9월 26일 제9차 개정국회법에서 '회의록'은 폐지하고 1960년 9월27일 제5대국회 제37회정기회 민의원 제22차본회의 및 참의원 제16차본회의부터는 '속기록'과 통합하여 '회의록'으로 발간하였다.

제헌국회부터 제2대국회까지는 속기사의 부족과 인쇄시설의 미비로 본회의속기록만을 발간하였으며, 회의후 1주일 내지 10일이 경과한 후에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었다. 회의의 경과와 결과만을 요약한 '회의록'은 의사과에서 따로 작성하였으며 다음 회의 개의선포후 의사과장이 낭독한 다음 의장이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고 통과시킨 다음에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속기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25동란시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국회사무처 내에 대속기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양성한 후 제3대국회초에 상당수의 속기사를 충원하였고, 1955년 2월 21일 제20회국회부터는 국회본회의속기록을 철야근무로 작성 발간하여 익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 개의전에 의원에게 배부하기 시작하였다.

제헌국회와 제2대국회는 본회의속기록만 작성 발간하고 위원회는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요약하는 회의록만 작성하였다. 그런데 제2대국회말 예산결산위원회 신설 당시 동 위원회 초대위원장인 吳緯泳의원이 동 위원회 소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속기록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속기록을 작성한 것이 위원회속기록 작성의 효시이며 이후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속기록을 작성하였다.

제3대국회도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속기록을 작성하였으나 속기사의 부족으로 위원회속기록의 배부가 지연되었고, 정기국회시에는 임시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제3대 및 제4대국회의 위원회속기록은 예산의 제약 등으로 인쇄하지 못하고 筆耕으로 유인하였으며, 제5대국회(참의원)부터 위원회회의록을 孔版인쇄하기 시작하여 그 후 活版을 거쳐 현재는 전산으로 인쇄발간하고 있다.

본회의회의록을 익일 발간하는데 비하여 위원회회의록의 발간은 15일 내지 30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제6대국회부터는 본회의회의록과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타 필요한 경우(청문회등)의 회의록은 회의 익일 발간하고 있다.

제헌국회 제1차본회의부터 속기방법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오고 있으나 불행히도 6.25동란으로 인하여 일시 발간이 중단된 기간이 있었다.

제2대국회 제7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부터 제6차본회의(1950.6.22~6.27)까지 6.25동란을 전후한 4일간의 본회의속기록은 속기는 하였으나 그 원고가 인쇄소에서 소실되었고, 제8대국회 제1차본회의에서 제31차본회의(1950.7.27~10.1)까지의 대구·부산 등 피난국회에서는 속기사를 동반하지 못하여 속기를 하지 못하였고, 제8대국회 제32차본회의에서 제37차본회의(1950.10.7~10.12)까지의 還都국회에서는 피난한 속기사들의 연결두절로 국회에 재집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속기를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난지로부터 8인의 속기사가 복귀하고, 부족되는 속기사를 신문에 공고(1950.10.21)하여 긴급채용함으로써 제38차본회의(1950.10.30)부터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속기록발간을 하지 못한 부분중에서 제8대국회 제1차본회의부터 제37차본회의까지는 회의 경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한 회의록이 속기과에 보관되고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헌국회부터 제8대국회까지는 국정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속기사가 수행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였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쇄발간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해당위원회에 인계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는데 그쳤다.

각 위원회에 보관하던 국정감사 원고는 대부분 유실되고 잔여분을 여의도국회의사당으로 이전후 속기과에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1992년도에 복제를 하였다. 제13대국회부터 16년만에 부활된 일반국정감사부터는 위원회회의록에 준하여 국정감사회의록을 발간하고 있다.

복제한 국정감사회의록의 발간상황은 다음 <표> 와 같다.

또한 보존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않고 원고 또는 필경으로 유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은 제2대국회의 居昌事件真相調查特別委員會速記錄 등 2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3대국회의 張副統領被襲狙擊犯證言에 관한 特別委員會速記錄 등 9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4대국회의 犯則物資處分真相調查特別委員會速記錄 등 4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5대국회의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에 의한 國會審査委員會速記錄 등 12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한편 원고로 보관중인 속기록 외에 영구보존회의록에 수록된 14개 위원회특별국정감사속기록과 20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을 보면 특별국정감사속기록으로서는 제4대국회의 2개 위원회소관 특별국정감사속기록, 제5대국회의 6개 위원회소관 특별국정감사속기록, 제7대국회의 6개 위원회소관 특별국정감사속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으로서는 제4대국회의 中部劇場許可經緯에對한調查特別委員會速記錄 등 5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5대국회의 昌寧亂動事件真相調查特別委員會速記錄 등 2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6대국회의 國公有地等不正拂下真相調查特別委員會速記錄 등 7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7대국회의 韓國알미늄會社의 資金不正流出等에 대한 調查特別委員會速記錄 등 5개 조사특별위원회속기록, 제8대국회의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關한 緊急命令審査特別委員會會議錄, 제13대국회의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朝鮮大生이 兇殺變死事件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兩大選舉不正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地域感情解消特別委員會會議錄, 제14대국회의 尙武臺工事代金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公職者税金不

正事件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12.12軍事쿠데타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平和의 댐 建設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三豊百貨店崩壞事件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제15대국회의 韓寶事件國政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등이 보존회의록 및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다.

3) 임시.배부.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

(1) 임시.배부.보존회의록

본회의(위원회)에서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위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취소하게 한 발언"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게재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을 배부회의록이라 하고, 이 배부회의록발간 전에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오기.오자 등을 정정하여 정확한 회의록을 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 부수를 발간하여 다음 회의에 의원에게 배부하고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회의록을 임시회의록이라 한다. 본회의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보존회의록이라 한다. 영구보존회의록에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제3대국회부터 제7대국회초까지는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지 아니하고 정식 배부회의록을 회의 의일에 의원에게 배부하여 자구정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다가 제7대국회 중반부터 임시회의록을 발간 배부하여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구의 정정과 내용의 착오여부를 검토한 후 재인쇄하여 배부.보존회의록을 발간하였다.

제9대국회부터는 일반적인 자구정정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부분까지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였다.

제9대국회 제10대국회에서는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 본회의에서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선포하거나 또는 발언자가 발언취소에 동의한 것은 임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취소하게 한 부분은 임시회의록에 포함시켜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면서 이 회의록은 불게재부분이 포함된 회의록이니 열람한 후에 배부한 즉시에 반환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요망사항을 첨부한 예도 있었으나 그 반환이행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

제11대 제12대국회에서는 국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내용은 임시회의록 자체에서부터 게재하지 아니하고 발간하였으며 이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시회의록의 배부를 보류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시회의록 표지상단에 "臨時"라는 朱印을 찍었다.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내용은 "-.-.-"로 표시하고 영구보존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전부 게재하되 그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표시는 제9대 및 제10국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2) 비공개회의록

제헌국회부터 제6대국회까지는 비공개회의록내용을 부분적으로 기록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며, 제7대국회부터 현재까지는 대부분 기록하여 원고로서 보관하고 있다.

제헌국회부터 제6대국회까지 비공개회의록을 작성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948년 10월 4일 제헌국회 제1회임시회 제81차본회의에서 행정각부장관의 시정연설중 국방부장관의 시정연설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속기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 1949년 2월 7일 제헌국회 제2회정기회 제24차본회의에서 '남북평화통일에 관한 결의안' 토의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였는데 참모총장의 군사에 관한 보고연설만 속기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토론내용은 속기록에 전부 게재하였다.

. 1949년 02월 21일 제헌국회 제2회정기회 제36차본회의에서 '議員(曹奉岩)拘束同意要請' 토론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였는데 토론내용 전부를 속기록에 게재하였다.

. 1949년 7월 2일 제헌국회 제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로당국회내 푸락치사건에 대한 국방부장관 보고의 경우 인명을 제외한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였다.

1950년 10월 30일 제2대국회 제8회임시회 제38차본회의에서 행한 의원사절단보고에서 張澤相부의장과 金東成의원의 보고중 일부분은 비공개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 1951년 3월 30일 제2대국회 제10회정기회 제55차본회의에서의 居昌事件, 怪壁報事件 및 在日學徒義勇軍處遇에 관한 件의 국무총리보고의 경우에는 비공개회의의 내용 전부를 속기록에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 1953년 8월 1일 제2대국회 제16회임시회 제31차본회의에서 休戰會談에 관한 件의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보고의 경우에는 비공개회의의 내용 전부를 속기록에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 1955년 7월 13일 제3대국회 제20회정기회 제74차본회의에서 '議員(朴在洪)懲戒에 관한 件' 심사보고 및 토론의 경우 비공개회의의 내용 전부를 속기록에 게재하였다.

. 1956년 2월 29일 제3대국회 제22회정기회 제5차본회의 및 1956년 3월 2일 제3대국회 제22회정기회 제6차본회의에서 '國會議員(都晉熙)逮捕拘禁同意要請에 관한 件' 토론의 경우 비공개회의의 내용 전부를 속기록에 게재하였다.

. 1964년 6월 11일 제6대국회 제43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非常戒嚴宣布에 대한 報告' 중 국방부장관의 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회의록의 게재여부를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 1968년 2월 1일 제7대국회 제6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무장공비에 관한 보고중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회의록 게재여부를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보관하였다.

. 제7대국회 제63회임시회부터 현재(제15대)까지의 비공개회의(본회의,위원회)의 내용을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2. 회의록의 변천

1) 제호(명칭)의 변천

제헌국회 이전인 1946년 南朝鮮過渡立法議院부터 速記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이래 1948년 5월 31일 개원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회회의록이라 함은 국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회의록을 총칭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국회본회의 회의록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헌국회 이래 잦은 회의록 제호의 표기변천으로서 용어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온 때문이라 하겠다.

제헌국회부터 제4대국회까지는 국회의 기록을 '會議錄'과 '速記錄'의 둘을 작성하였다. 즉 會議錄은 의결의 결과에 중점을 두어 작성한 회의의 기록으로서 의사의 내용은 요점만을 기재하였고, 速記錄은 속기방법에 의하여 의사에 관하여 발언한대로 기록하였다. 제5대 국회부터는 이 둘을 통합하여 會議錄 하나로 작성하였다.

회의록 제호의 명칭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 과도입법의원-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 제헌국회- '國會速記錄' 또는 '國會會議錄'
- 제2대.제3대.제4대국회- '國會定期會議速記錄' 또는 '國會臨時 會議速記錄'
- 제5대국회-양원제하에서 '民議院速記錄'-民議院事務處, '參議 速記錄'-參議院, '兩院合同會議速記錄'-參議院
- 제6대.제7대.제8대.제9대.제10대.제11대국회-'國會會議錄'
- 제12대.제13대.제14대.제15대(현재)국회-'國會本會議會議錄'

(2) 위원회

제헌국회와 제2대국회에는 지금과 같은 위원회회의록은 발간하지 못하고 위원회 회의 경과와 결과를 요약한 의사록만을 작성하였다. 제2대국회 말 예산결산위원회의 신설로 동위원회 의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위원회속기록 작성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전체위원회 속기록은 작성되지 못하였다. 회의록 제호는 제5대국회인 1960년 9월 26일까지는 '○○委員會速記錄'으로, 동년 9월 27일부터는 '○○委員會會議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 표기 및 체제의 변천

표기 및 체제의 변천은 제헌국회 이래 15대국회에 이르는 동안 수차례 걸친 변화가 있어 왔다. 역대국회별로 본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그간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헌국회

제헌국회는 제1회부터 제6회까지로서 제헌국회의 회의록은 '第○回 國會速記錄 第○號 國會事務處'라 하여 횡(세로)전단으로 제호를 넣고, 내용은 횡3단으로, 段 사이는 가로선을 그어 구분하였다. 테두리는 바깥쪽은 굵은 선 안쪽은 가는 선으로 사방으로 넣었으며 테두리 바깥 왼쪽위에 縱(가로)으로 "第○回-第○號"라 기입하였다.

날짜표기는 檀紀로, 시간은 上午.下午로 12時制를 사용하였다.

표지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1면에 제호 다음에 일자, 다음에 "議事日程(第○次會議)"라 하고 의사일정 명을 기재하고 세로선을 그은 다음 "討議된案件"이라 하여 안건명을 기재한 다음 세로선으로 마감한 다음 "(上午○時○分 開議)"라 기재하고 "○議長(申翼熙)"와 같이 직함 다음의 성명에는 괄호를 하고 의원명은 그대로 "○○○○議員"이라 표기하였다.

개의를 선포한 후 前次 회의록을 낭독하였으며, 이때 표기는 줄을 바꾸어 "(記錄員=第○次會議錄朗讀)"이라 하였다. 다시 의장이 낭독한 회의록의 이의유무를 물은 후 접수하여 통과시킨 후, 보고사항이나 의사일정을 상정하였다.

보고사항의 경우 사무총장이 보고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기재하였으며, 보고중에 "(場內拍手)"와 같은 상황도 그대로 묘사하였다.

의사일정 상정의 경우는 횡선을 긋고 "-(國會運營委員長人事의件)-"처럼 대쉬(-)를 하고 괄호안에 의사일정명을 기재한 다음 대쉬(-)로 마감하였다. 이때 시간표기는 하지 않았다.

외래어는 '유.엔'과 같이 꺾음괄호를 사용하였으며, 한자는 국한문 혼용으로 순수 우리말이나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한자를 사용하였다. 숫자표기 또한 전부 한자로 표기하였다.

상황표기는 "(議員一同 拍手), (李承晚議員 議長席에 登壇), (李允榮議員 祈禱 一同拍手), (舉手表決), ([可否可否]하는 이 多數 있음), (笑聲), ([안돼요]하는 이 多數 있음), (場內騷然), (拍手)" 등 다양한 표현으로 회의장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크기는 4×6배판 사이즈로 8포인트의 글자 크기에 갱지를 사용하여 공판인쇄를 하였다.

開會式과 閉會式을 따로 거행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2) 제2대국회

제2대국회는 제7회부터 제18회까지로서 제7회임시회의 경우 회기가 1950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로서 6.25동란 중에 제1차와 제2차의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는 인쇄조차 하지 못하고 모조지에 필경으로 작성한 속기록이 존재한다.

표기방법은 제헌국회와 유사하나 횡2단에 글자크기는 11포인트 정도의 펜글씨로 행간이 넓게 쓰여졌다. 테두리는 단선으로 긋고 단 사이도 선으로 그어 구분하였다. 선 바깥 상단에 아라비아 글씨로 면수를 표시하고 반괄호를 하였다.

이때는 테두리 밖의 표기방법이 회별로 혹은 차수별로 상이하여 통일되지 못하였다. 즉 제8회의 개.폐회식의 경우 오른쪽 상단에 橫으로 "檀紀 年月日"과 "第三種郵便物認可"를 2줄로 기입하고 반대쪽 상단에 縱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필경으로 면수표기를 하였으나 제13회 제29호의 경우는 면수 옆에 괄호하고 "(第13回29號)"라 기입하고 왼쪽열 하단 부분에는 한자로 면수를 기입하였다.

제8회 국회의 경우에는 '國會臨時會議速記錄目次'를 따로 작성하였다. 또한 비공개회의시는 공개회의 도중 "(非公開會議로드러감)"이라 한줄로 상황만 표기하고 시작시간이나 끝나는 시간의 표기가 없이 바로 공개회의로 이어지는 기록이 있다.

제2대국회의 경우에도 개회식과 폐회식의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이때까지는 활자의 크기라든지 활자 모양이나 체제 등이 회마다 호마다 각기 상이하여 통일을 기하지 못하였다.

(3) 제3대국회

제3대국회는 제19회부터 제28회까지이며 제2대국회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테두리 바깥 상단에 "第○回○號"나 "(第○回○號)"와 같이 괄호의 사용이 일정하지 않고 면수의 표기는 단아래 쪽에 세로로 한자표기하였다.

특이한 점은 마지막 회의 다음에 그 회기중의 회의록에 대한 正誤表를 따로 작성하였다.

(4) 제4대국회

제4대국회는 제29회부터 제35회까지로서 제4대국회에서는 前次 회의록 낭독시 "(議事課長=第○次會議錄朗讀)"이라 표기하였다.

의사국장의 보고사항시 보고내용을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당선통지서나 청가원이나 상임위원배정통지서나 각종 문서를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하였다.

또한 이 때부터 附錄을 따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5) 제5대국회

제5대국회는 제36회부터 제38회까지이며 양원제로서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뉘어서 각각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제호의 표기시 참의원의 경우 "第○回國會 參議院速記錄 第○號 參議院"이라 하였고, 민의원의 경우 "第○回國會 民議院速記錄 第○號 民議院事務處"라 하여 기관의 표기가 서로 상이하다. 양원 합동의 회의를 한 경우에는 "第○回國會 兩院合同會議速記錄 開會式 參議院"이라 하여 기관이 참의원으로 되어 있다. 이때부터는 한자의 사용이 비교적 줄어들고 한글의 사용이 많아졌다.

제5대국회는 5.16혁명이라는 헌정의 중단으로 제36회와 제37회 제38회 세차례밖에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

제4대까지는 오른쪽 상단에 세로로 "檀紀○年○月○日"과 "第三種郵便物認可"를 2줄로 기입하던 것이 없어지고 테두리 바깥 상단에 "第○回-第○號"라 하여 괄호가 없어졌다.

의사일정 상정 표기는 전과 동일하게 횡선 굵고 댕쉬하고 괄호에 안건명과 댕쉬한 것은 동일하나 이때부터 시간표기를 하였다. 즉 "-(休會에 關한件)- 下午二時十分"이라 하였다.

(6) 제6대국회

제6대국회는 제39회부터 제60회까지이며 이때부터 제호를 '國會會議錄'이라 하였다. 제5대

국회까지는 회의록 첫머리에 議事日程란 다음에 '討議된案件'으로 표기하던 것을 6대국회부터는 '討議된案件'이나 '付議된案件'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테두리 바깥 상단 왼쪽에는 "(第○回-第○號)"라 기입하고 상단 오른쪽에는 "(官報附錄-第○號)"라 하였다.

면수는 하단 안쪽에 횡으로 한자 기입하였다.

또한 제54회 제15차회의부터 의사국장의 보고사항은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라 하여 산회후의 끝에 기재하게 되었다.

제46회 제1차회의록의 경우만 특이하게 횡2단으로 기록하였다.

(7) 제7대국회

제7대국회는 제61회부터 제76회까지로서 제7대국회에는 표기 및 체제의 커다란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

제61회부터 제62회까지는 제6대국회의 체제와 같은 표기였다. 다른 점은 테두리 바깥 부분 '(第○回-○號)' 옆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당해 차수의 면수를, 하단옆쪽에 세로로는 제본시의 전체 면수를 기입하였으며 크게 달라진 점은 상단 안쪽에 '一九六七年○月○日 休會에 관한件'과 같이 날짜와 의사일정명을 기입하였다.

또한 이때부터는 '付議된 案件'으로 용어가 통일되었다.

제63회부터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시 국회공문서내규 제9조의 공문서는 '가로쓰기'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회내에서의 각종 의안 및 간행물을 橫書로 발간 배부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문서·유인물·교과서 등을 횡서로 발간하였으므로 이와 통일을 기하고 실무면에서 횡서로 작성하는 것이 능률을 기한다는 점에서 1968년 1월 31일 제7대국회 제63회임시회 개최식부터는 회의록을 횡서 좌우 2단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제호의 경우 "第63回 國會會議錄 開會式 大韓民國國會事務處"라 하여 숫자의 표기는 아라비아로, 기관명은 大韓民國國會事務處라 표기하였다.

또한 의사일정 상정의 경우에는 궤선을 굵고 안건명을 기재한 다음 "(午前11時35分)"과 같이 시간 표기를 하였다.

또한 테두리 바깥 하단에 면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고 바로 옆에 '1968年2月1日 武裝 共匪侵入狀況에 관한 報告'에서처럼 날짜와 안건명을 기입하였다.

제72회까지는 이 체제대로 운영되다가 제73회국회부터는 다시 한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제헌국회부터 1969년 12월 23일 제7대국회 제72회정기회까지는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특히 제헌국회와 제2대국회에는 한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제7대국회 제63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체제변경 및 한자사용제한에 관한 동의의 건' 심사에서 특수한 용어는 한자로 표기하되 일반적인 사항은 당시 한국신문협회에서 선정한 2,000자(당시 문교부선정은 1,300자) 범위내로 한자사용을 제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7대국회 제72회 말에는 의사일정, 회의록 및 국회공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다만 성명·지

명 등 고유명사는 한자로, 뜻의 전달이 곤란한 단어는 괄호안에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1970년 5월 11일 제7대국회 제73회임시회부터 1973년 6월 27일 제9대국회 제87회임시회까지는 한글전용으로 회의록을 발간하였다.

이 때 성명의 표기는 한글로 한 다음 괄호 안에 한자로 이중 표기를 하였다. 즉 "○의장이효상(李孝祥)", "○국무총리 정일권(丁一權)"과 같이 표기하였다.

따라서 숫자의 표기도 아라비아숫자로 바뀌었다.

(8) 제8대국회

제8대국회는 제77회부터 제84회까지로서 제8대국회의 경우도 제7대국회 말에 이어서 한글전용의 표기였다.

다만 약간 달라진 점은 "○의장 白斗鎭", "○부의장 張炯淳"과 같이 성명만 한자표기하였으며, 드물지만 "신년교례(交禮)"나 "적화(赤化)" 혹은 "구보(驅步)"와 같이 한글로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은 괄호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보고사항의 경우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과 같이 한글식 표현으로 바뀌었다.

정회나 속개의 경우도 제7대국회까지는 한자로 "停會", "續開"라 하였는데 제8대국회부터는 "회의중지", "계속개의"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었다.

시간표기 역시 제7대국회초까지는 "午前 ○時○分", "午後 ○時○分"으로 12시제를 한자로 표기하였으나 제8대국회부터는 "11시45분", "15時" 등과 같이 24시제를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였다.

(9) 제9대국회

제9대국회는 제85회부터 제100회까지로서 제87회까지는 한글전용에 성명만 한자로 표기하다가 1973년6월27일 제88회정기회 개회식부터 다시 국.한문혼용으로 환원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국회에서의 발언은 주로 법률·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문분야에 속하는 용어의 사용이 많으며, 이와 같은 발언은 한자로 표기하여야만 올바른 이해와 해독이 가능하고, 둘째 한글 및 한자를 혼용함으로써 법률용어 등 전문용어와 한문 인용 발언 등의 본원적인 뜻을 정확하게 파악 전달할 수 있으며, 셋째 한글 전용으로 회의록을 표기하여 발간 배부한 결과 각계각층, 특히 국회의원으로부터 회의록의 閱讀이 불편하므로 국.한문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국.한문 혼용으로 안건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었다. 회의록에서의 국.한문혼용은 특히 명사 동음이의어, 전문용어, 한글로 표기하여 난해한 것, 한자로 제출된 참고문서, 발언보충서 그리고 각종 기호 도면 등은 정부에서 지정한 상용한자 1,800자의 범위내에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때는 "(10時5分 開議)"와 같이 숫자는 아라비아로 나머지는 조사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자로 표기하였다. 또한 테두리 바깥의 "우편번호-100"과 "(관보부록)"의 표시가 없어졌다가 제89회부터는 다시 "(郵便番號-100)"을 표시하였다.

제92회 제1호에는 비공개회의의 표기를 "(10時10分 非公開會議開始)"와 "(20時32分 非公開

會議終了)”라 하였다.

제97회부터는 테두리선 바깥 상단에 기입하던 “○年○月○日”, “第3種郵便物認可”가 없어지고 상단 오른쪽에 “第○回-第○次)”만 기입하였다.

(10) 제10대국회

제10대국회는 제101회부터 제105회까지로서 의석발언의 경우 “(議席에서 ○○○○議員-.....)”, “(登壇하면서 ○○○○議員-.....)”, “(壇上에서 ○○○○議員-.....)”으로 표기하였다.

제104회임시회의 경우는 개최되지 못하고 다만 104회국회에 관한 자료가 부록으로서 남아 있으며 부록의 테두리 바깥에는 “許可없이 轉載.複製를 禁함)”이라 하였으며 이는 11대국회까지 회의록 상단에 기입하였다.

제105회 개최식에는 제호 다음칸에 “(第104回國會臨時會는 開議되지 않았음)”이라 한줄로 기입하였다.

(11) 제11대국회

제11대국회는 제106회부터 제124회까지로서 제10대국회와의 사이에 일시적인 헌정중단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부의 기능을 대신한 기간이 있었다.

제11대국회에서는 개원식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장.부의장선거시 임시의장의 표기를 “○議長職務代行 ○○○”라 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이전까지 “付議된 案件”이라 하던 것을 “附議된 案件”으로 표기하였다. 제11대 제106회국회 개최식부터 제119회국회 제16차회의까지 테두리 바깥 왼쪽 상단에 “(許可없이 轉載.複製를 禁함)”이라 기입하였다.

그 외에는 11대국회에서는 이전에 비하여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12) 제12대.제13대.제14대국회

제12대국회는 제125회부터 제140회까지, 제13대국회는 제141회부터 제156회까지 제14대국회는 제157회부터 제178회까지로서 제12대국회부터 제14대국회까지는 제11대국회와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였다.

(13) 제15대국회

제15대국회는 제179회부터 현재(1997.12.31)까지로서 제15대국회에 와서는 제호를 ‘國會本會議會議錄’이라 하였다.

제헌국회 이래 14대국회까지는 내용상의 체제만 약간씩 개선.보완하며 발전해오다가 15대국회에 와서는 회의록 발간업무의 전산화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다.

즉, 회의록 매면의 외곽테두리와 양단구분 세로선을 제거하고, 종전까지는 4×6배판의 규격이던 것을 공문서 규격과 일치하는 A4크기로, 종전의 활자크기가 9포인트이던 것을 10포인트 크기로 확대시키고, 지질도 중질지이던 것을 미색모조의 고급지로 하여 회의록 품질을 개선

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보였고, 한자의 사용도 한글 전용에 가깝게 성명이나 핵심어만 한자를 사용하고 가급적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14) 기타-국가보위입법회의

제10대국회와 제11대국회 사이인 1980년부터 1981년 사이에 일시적인 헌정중단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의 입법기능을 담당한 기관이 국가보위입법회의였다. 이때도 국회의회의록에 대신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형식과 체제는 국회의회의록을 그대로 따랐다.

다른 점은 테두리 바깥 상단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고 면수만 한쪽 끝에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였고 하단 안쪽에는 "1980年10月29日 開會式"과 같이 기입하였다. 한편 제호는 "國家保衛立法會議會議錄 第〇號 國家保衛立法會議事務處"라 하였다.

3) 회의록작성 내용의 변천

회의록 작성방식은 위항에서도 설명한 바 있으나 크게 나누어 보면 제헌국회 이래 전차회의록통과, 보고사항, 연호와 시간표기 등이 변경되었다.

(1) 전차회의록 통과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 제37회정기회(민의원 제22차본회의, 참의원 제16차본회의)까지는 의사일정 제1항에 [전차회의록통과]가 기재되어 의장이 본회의 개의선포후 전차회의록을 의사과장으로 하여금 낭독케 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통과시키는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1960년 9월 26일 제9차 개정국회법에 의하여 종전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통합하여 회의록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제5대국회 제37회정기회 민의원 제23차 본회의, 참의원 제17차 본회의부터는 그 절차를 폐지하였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은 본회의 개의선포후 부의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 또는 의사국장이 보고하였다.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 제37회정기회(민의원 제22차 본회의, 참의원 제16차 본회의)까지는 의사일정 제2항에 기재하였으나, 제9차 개정국회법에 의하여 1960년9월28일부터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다가 1963년 12월 21일 제6대국회 제39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부터 1976년 12월 18일 제9대국회 제96회정기회까지는 보고사항을 의사일정 제1항에 기재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 6월 20일 제9대국회 제97회임시회부터는 의사일정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개의선포후 부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국장이 보고하고 있다.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 제37회정기회(민의원 제22차 본회의, 참의원 제16차 본회의)까지는 보고사항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원본과 보고내용을 그대로 全文 속기록 서두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제5대국회 제37회정기회(민의원 제23차 본회의, 참의원 제17차본회의)부터 제7대국

회까지는 "(報告事項은 末尾에 記載)"로, 제8대국회 제77회임시회 제1차분회의부터는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이라 표기하고 회의록 끝에 공문서 원본과 보고내용 전문 그대로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요점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3) 年號(紀元) 및 시간표기

연호(기원)표기는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까지는 [檀紀]로, 1963년12월 제6대국회부터는 [西紀]로 하고 있다.

시간표기는 제헌국회부터 1970년 6월 9일 제7대국회 제73회임시회까지는 上.下午 12시간제로, 1970년 6월 19일 제7대국회 제74회임시회부터는 24시간제로 하고 있다.

(4) 개회식, 폐회식

국회가 개회되면 매회기마다 초일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회기말일에 폐회식을 거행하였다.

개회식은 제헌국회 제1회임시회부터 회기마다 거행(제4대국회 제29회임시회, 제6대국회 제39회임시회, 제7대국회 제71회임시회, 제10대국회 제104회임시회는 사정에 의하여 개회식을 못하였음)하였으며, 폐회식은 제헌국회 제1회임시회부터 1960년8월31일 제5대국회 제36회임시회까지는 매회기마다 거행(제2대국회 제7회임시회, 제4대국회 제34회 및 제35회임시회는 폐회식을 못하였음)하였으나 제5대국회 제37회정기회부터는 거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개회식 식순은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대동소이하나 제헌국회부터 1964년9월1일 제6대국회 제45회정기회 개회식까지는 식순에 만세삼창이 있었으나 1964년12월29일 제6대국회 제46회임시회부터는 만세삼창을 하지 아니하였다.

(5)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회의록게재

본회의에서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제헌국회부터 제8대국회까지는 국회의 의결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국회의의결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의제별 또는 발언의 종류별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제한한 사례는 없고 발언이 길거나 발언자수가 많을 경우 시간절약상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또는 미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였다.

그 예를 보면 1948년 9월 22일 제헌국회 제72차분회의에서 '양곡매입법안' 심의시 金 喆·金用在·元長吉의원의 미발언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였다.

1949년 1월 15일 제헌국회 제2회정기회 제5차분회의에서 '유엔韓委會 보내는 메세지通過의件'의 발언자인 李文源의원의 취지발언중 의장의 발언제지로 마치지 못한 부분을 속기록에 게재하였다.

1964년 5월 9일 제6대국회 제42회임시회 제5차분회의에서 '換率制度改正과 이에 따른 經濟對策에 관한 報告'에 대한 질문시 시간절약상 질문시간을 30분 이내로 정하여 柳昌烈의원의 질문중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였다.

1968년9월11일 제7대국회 제67회정기회 제8차분회의에서 林甲守의원의 신상발언중 마치지 못한 부분은 발언보충서로 회의록에 게재하였다.

제9대국회부터는 의원의 발언시간을 발언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였고,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자동타이머에 의하여 발언종료신호와 동시에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언의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였다.

제14대국회부터는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다음 (보기)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보기)

발언내용 생략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발언내용 생략

.....
○議長 ○○○ 생략

3. 발간과정의 변천

1) 속기조의 편성

속기조는 주무와 부무 2인을 1조로 편성하여 동시에 기록하며 부득이한 경우 1인을 1조로 편성하여 속기업무를 담당하던 관행이 초창기부터 지속되어 왔다.

1994년 4명의 컴퓨터속기사의 채용으로 부분적으로 주무 1인에 부무2인(컴퓨터속기)의 3인 1조를 일시 운영한 적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속기사수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1인1조로 운영하는 체제 아래서는 3인1조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뿐더러 검토시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때문에 주무1인에 多副務의 팀제로의 계획은 현재는 무산되다시피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는 2인1조 원칙에 부득이한 경우 1인1조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속기시간은 2인1조를 기준으로 하여 익일발간의 경우, 즉 본회의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타 특별한 경우 10분간 속기 후 다음 조와 교대하며, 익일발간이 아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경우 20분간 속기 후 다음 조와 교대하는 관행이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원칙이다. 다만 국정감사.조사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별도의 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1인이 10분마다 교대하거나 20분마다 교대하거나 혹은 30분마다 교대하는 등 팀마다 회의시간이나 인원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속기 및 번문수단

회의록 작성 업무중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인 속기업무는 회의의 개회에서부터 산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회의진행시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들을 회의현장에서 속기방법에 의하여 수필로 속기하거나 근래(94년 이후)에는 일부이지만 기계나 컴퓨터로도 입력하고 있다.

변문의 경우는 제헌국회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원고지에 손으로 옮겨적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동안 변한 것이라고는 연필에서 펜으로, 만년필로, 볼펜으로, 플러스펜으로 바뀌는 필기도구의 교체에 불과하였다.

1980년대 후반 잠시 4벌식 한글타자기로 변문 후 手記로 한자를 고치는 2중작업을 하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원고지 변문으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1993년부터 속기과에 386급 PC가 2인 1대 정도로 도입되면서 한글2.0에서 일부는 원고지에 수필변문, 일부는 PC에 변문하여 A4용지에 출력만 하는 원고상태의 혼합 양상이었다.

1994년 후반부터 기존의 386급 PC에 486급 PC를 추가하여 1인1대를 갖추게 되어 한글2.1에 변문한 원고만 출력하여 제출하는 반 수동상태의 형태로 바뀌었다.

1995년부터는 모든 원고를 PC 한글2.5에 변문한 후 FD(플로피디스크)까지 제출하게 되어 비로소 변문 전산화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

1996년부터는 한글3.0에서 디스크 제출을 생략하고 원고제출과 동시에 자신의 파일을 펜티엄급인 공용 PC의 해당 디렉토리에 입력만 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3) 검토절차

PC도입 이전에는 속기조가 담당계장에게 제출한 원고를 순서대로 취합.결합하여 검토한 후 편집직원에게 넘기는 단순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속기조가 작성한 원고를 담당계장에게 제출하면 담당계장은 속기시간별로 일련번호를 매긴 원고를 순서대로 취합하고 검토한 후 속기조로 하여금 오.탈자나 체제의 미비점 등 보완사항을 보정하게 한다. 속기조는 검토시 체크된 부분을 자기 파일에서 보정한 후 원고를 최종 제출한다. 담당계장은 보정을 마친 파일을 PC에서 결합한다. 1996년 이전에는 일일이 파일을 불러오기-끼워넣기의 방식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중간에 파일이 없어지는 등의 술한 시행착오를 거치던 중 국회도서관의 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의 부수적인 산물로 속기과에서는 쓰리소프트사의 협조로 merge프로그램과 delmark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즉, 모든 속기조가 보정을 마치면 담당계장은 순서대로 정렬된 파일을 merge프로그램에 의해 결합한 후 delmark프로그램에 의해 각 원고의 감지를 떼어내면 표지에서부터 개회-산회까지의 원고가 하나로 결합된다. 결합된 원고를 FD와 함께 편집직원에게 넘긴다.

그러나 앞으로는 앞절 회의록 발간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절차로 바뀌게 된다 즉, 속기사의 현장속기→ 변문→ 편집직원의 회의록체제 편집→ 속기계장의 검토.보정→ 편집직원의 교정→ 속기계장의 최종OK→ 인쇄소의 납품→ 배부의 절차를 거치면 회의록발간작업이 종료된다.

- 日本議會議의速記및會議錄作成관련자료 국회사무처 일본주재관, 1998
- 中國議會議의速記및會議錄作成관련자료 국회사무처 중국주재관, 1997
- 러시아議會議의速記및會議錄作成관련자료 국회사무처 러시아주재관, 1997
- 英國議會議의速記및會議錄作成관련자료 영국주재 대사관, 1998
- 스위스議會議의速記및會議錄作成관련자료 스위스주재 대사관, 1998
- 캐나다議會議의速記및會議錄作成관련자료 캐나다주재 대사관, 1998
- UN의速記및會議錄作成관련자료 UN주재 대사관, 1998
- 世界大百科事典 학원사, 1971
- 東亞日報 동아일보사, 1950-1960
- 東亞年鑑 동아일보사, 1960-1998
- 聯合年鑑 연합통신사, 1980-1998
- 萬國速記史 大阪早稻田速記專門學校 兼子次生, 1980
- 日本衆議院速記者養成所관련자료 일본중의원속기자양성소장, 遠藤敏明, 1998
- 日本官報 號外 第83回 帝國議會 衆議員議事速記錄 第1號,
1943 Official Reporters of Debates of the U. S.
Senate Senate Historical Office, 1990
- The House and Senate Explained Ellen Greenberg
W. W. Norton &Company, New York, London 1996
- 美下院速記및會議錄作成관련자료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Chief Reporter, Ray A.Boyum, 1998
- 美上院速記및會議錄作成관련자료
U. S. Senate Chief Reporter, Ronald Kavulick, 1998
- 스위스議會議速記및會議錄作成 관련자료
Parliamentary Service of the Official Bulletin of the Swiss Federal Assembly
Chief Reporter, Francois Comment, 1998
- 中國偉亞式速記詞田 劉坤如.徐汝淙, 1991
- 第8代全國人民代表大會 第4次會議文件 編 全人大常務委員會 辦公廳, 1996

< 편찬후기 >

<韓國速記五十年史>의 편찬을 마치고

우리나라 의정사와 함께 성장해온 한국속기 50년의 발자취를 한데 묶은 <韓國速記五十年史>를 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말속기가 창안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록문화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속기계는 그간 이렇다 할 속기사적 자료를 정립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속기계 역사를 정리해 보고자 1997년 5월 韓國速記五十年史編纂委員會를 구성하여 근 1년8개월간의 노력끝에 <韓國速記五十年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속에 우리말속기의 발자취를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자부하기에는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제한된 기한내에 속기관련 자료와 원로 속기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속기계의 역사를 엮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완작업이 계속된다면 보다 충실한 韓國速記史가 발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池大燮 회장님과 바쁘신 가운데 격려와 함께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과 감수위원을 비롯한 원로 속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력을 다 해주신 집필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속기관련 자료의 제공 그리고 원고정리, 행정지원 등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협조해 주신 속기인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8년 12월

韓國速記五十年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權龍太

< 편찬조직 >

한국속기50년사 편찬조직

■ 편찬위원회

- 위원장 : 권용태
- 편찬위원 : 신세화, 전해성, 김순철, 송기철, 김기영, 황인하, 유순태

■ 감수위원

- 위원장 : 권용태
- 위 원 : 김진기, 신세화, 김성한, 이강현, 김기영, 황인하, 채강희

■ 집필위원

- 대표집필 : 유순태
- 위 원 : 김선옥, 김은숙, 김점동, 김치원, 박정호, 손재옥, 장미경, 채강희,
한동춘, 홍기표 (가나다순)

■ 실무위원회

- 위원장 : 성천영
- 간 사 : 박정호, 간찬기
- 기획·편집 : 도움사